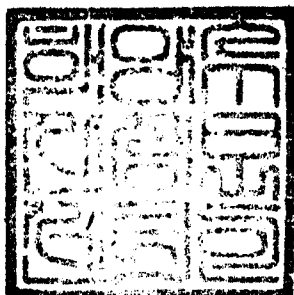


全國 港灣의 施設使用料率 算定에 관한 研究



金 亨 泰
韓 廣 錫

1997. 10



韓國海洋水產開發院
Korea Maritime Institute

머 리 말

최근 들어와 우리나라 항만을 둘러싼 環境變化는 급격하다. 港灣開發資金面에서 정부의 財政逼迫現象이 계속되어 民資誘致를 통한 항만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계획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民資事業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港灣運營 측면에서는 금년도에 埠頭賃貸를 통한 埠頭運營體制 소위 TOC 制度가 실시되어 민간에 의한 效率的인 埠頭運營 및 民間資本에 의한 機械化가 대폭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아직은 확고하게 정착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동 제도의 평가에 관하여 貨主, 船主, 埠頭運營業體 및 정부와 학계간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항만시설의 확충계획 및 민간에 의한 부두운영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항만에 있어서의 滯船現象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가 質的으로 向上되었다는 평가도 충분히 내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우리나라 항만의 실정과는 달리 競爭港灣에서는 시설의 先導的인 확충을 통한 未來需要에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항만의 이용자까지 빼앗아가는 적극적인 港灣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다. 경쟁항만에서는 서비스의 質的 향상을 통해 이용자를 誘致하고 있는 점도 우리와는 상이한 하나의 특징이다. 이를 위해 경쟁항만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부두를 임대운영해 왔고 埠頭賃貸運營制度에 부합하는 港灣施設使用料體系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국내외의 항만환경변화는 우리나라의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 대한 根本的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民資를 통한 항만시설의 확충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및 수준이 적합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요청되고 있다. 埠頭的 賃貸運營制度가 정착되기 위해서도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항만시설의 공급에 투입된 原價가 어느 정도로 시설사용료에 반영되어 회수되고 있는지의 확인을 위해서도 현행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이용자가 특정 사용료 항목으로 지불한 금액이 실제로 이용한 시설에 대한 사용대가인지에 대한 의문도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항만환경변화에 積極的으로 대응하고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착수되었다. 물론 본 연구가 현재의 모든 항만환경변화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수행된 것은 아니며 그럴수도 없는 限界點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民間에 의한 埠頭開發 및 埠頭運營制度가 종래의 國有國營體制에 대한 代案으로 제시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의 기본적인 틀(Paradigm)을 변경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굳건하게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진외국항만의 시설사용료 체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용료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그동안 本 開發院이 축적해 온 노하우가 示顯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본인은 크나큰 자랑거리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거대한 작업이었기에 하나의 팀이 구성되어 수행되었다. 본원의 金亨泰 博士가 연구책임자가 되고 韓廣錫 研究員, 李智英 招請研究員, 金敏映 招請研究員 및 李惠玉 研究助員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과 현행 시설사용료와 관련되는 특징 및 문제점, 외국 항만시설사용료의 특징 및 시사점, 원가회수가 가능한 사용료의 산정 및 새로운 사용료 산정대안과 결론 등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은 연구책임자인 金亨泰 博士가 직접 집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 항만별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요구되었다. 특히 항만별 原價水準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항만별 施設管理臺帳의 入手와 分類作業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엄청난 시간의 투입과 노력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韓廣錫 研究員과 李智英 招請研究員이 과외의 시간을 활용하면서까지 수행하였다. 특히 數値作業이 많았던 만큼 원고의 정리 및 타이핑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金敏映 招請研究員이 몸을 아끼지 않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李惠玉 研究助員이 전체적인 스타일의 조정을 해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순전히 본 과제를 수행한 연구팀이 제시한 것이며 여러가지 예상되는 연구상의 각종 문제점 또한 연구진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地方海洋水產廳에서 港灣管理, 財産管理 및 港灣統計業務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및 일선담당자 모두 많은 협조를 해주었다. 특히 海洋水產部の 朴正天 港灣運營課長은 본 연구가 자신의 업무인

듯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汎洋商船의 催林燁 次長, 現代商船의 張泳五 代理, 興亞海運의 관계자 및 朴丁換 課長 등도 實務的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橫浜市 港灣局의 港灣施設使用料 關係者, 港灣 勞動經濟研究所의 土山國男 理事, LA港의 M. Morimoto 國際마케팅課長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本 開發院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님을 밝혀둔다.

1997년 10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 長 洪 承 湧

目 次

第 1 章 序 論	1
1.1 研究의 背景	1
1.2 研究目的	2
1.3 研究의 内容	3
1.4 研究의 進行方法	4
第 2 章 港灣施設使用料에 관한 既存의 研究 現況	6
2.1 國內의 既存 研究 現況	6
2.2 海外의 既存 研究 現況	8
2.3 本 課題의 研究範圍	11
第 3 章 現行 港灣施設使用料 體系와 問題點	12
3.1 港灣施設使用料 體系의 現況	12
3.1.1 貿易港의 港灣施設使用料 體系 /12	
3.1.2 開發埠頭專用使用料 /15	
3.1.3 國有財産法 規程 /16	
3.1.4 埠頭貸貸料 /16	
3.2 港灣施設使用料 體系上の 問題點	16
第 4 章 外國港灣의 使用料體系	22
4.1 美國	22
4.1.1 港灣施設使用料 現況 /22	
4.1.2 施設使用料 算定原理 /27	
4.1.3 港灣施設使用料의 規制内容 /28	
4.1.4 使用料 改定 /29	

4.1.5 賃貸料	30
4.2 日本	32
4.3 其他 主要港灣의 施設使用料 體系	35
4.4 特徵 및 示唆點	37

第5章 새로운 港灣施設使用料 體系 構築 39

5.1 港灣施設使用料 體系構築原則의 設定	39
5.1.1 港灣別 施設使用料 水準의 設定 /39	
5.1.2 利用主體, 使用料項目과 原價回收對象施設과의 關係 明確化 /39	
5.1.3 使用料 重複賦課 防止 /40	
5.1.4 混雜緩和를 위한 價格메카니즘의 導入 /40	
5.2 港灣施設別 使用主體, 使用料 負擔主體	40
5.2.1 水域施設 /41	
5.2.2 標識施設 /42	
5.2.3 外廓施設 /42	
5.2.4 共用埠頭施設 /43	
5.2.5 專用埠頭施設 /46	
5.3 港灣施設使用料 賦課基準	46
5.3.1 水域施設 /46	
5.3.2 標識施設 /47	
5.3.3 外廓施設 /47	
5.3.4 岸壁・船席 /48	
5.3.5 에프런 /48	
5.3.6 野積場・헛간 /48	
5.3.7 埠頭內 道路 /49	
5.3.8 專用埠頭施設 /49	
5.4 港灣施設使用料 項目의 簡素化	49
5.4.1 水域施設 /50	
5.4.2 標識施設 /51	
5.4.3 外廓施設 /51	
5.4.4 水域・標識・外廓施設 /52	

5.4.5	岸壁・船席 /53	
5.4.6	에프린, 野積場・히간 및 埠頭內道路 /54	
5.4.7	賃貸料 /57	
5.4.8	小結 /57	
5.5	使用料 變更事項	59
5.5.1	貨物入出港料의 撤廢 /59	
5.5.2	碇泊料의 撤廢 /59	
5.5.3	私設埠頭의 碇泊料 變更 /59	
5.5.4	賃貸埠頭에 대한 埠頭使用料 徵收主體의 變更 /60	
第 6 章	港灣別 原價分析	61
6.1	運營原價 算定方式	61
6.2	運營原價 適用對象의 範圍	64
6.2.1	沿岸港의 運營原價 除外 /64	
6.2.2	港灣運營과 無關한 財産 除外 /65	
6.2.3	賃貸施設의 原價 및 賃貸料 /66	
6.2.4	寄附採納 資産의 定算金額 處理問題 /67	
6.3	使用料 項目別 原價分析方法	67
6.4	港灣別 原價分析	68
第 7 章	原價回收 使用料水準 算定	74
7.1	原價回收 使用料 算定 原則	74
7.2	原價回收 使用料 算定方式	74
7.3	1998年度 運營原價 算定	75
7.4	港灣別 需要 推定	80
7.4.1	港灣別 外航船 入港船舶 需要 推定 /80	
7.4.2	岸壁接岸 톤수 및 時間推定 /81	
7.4.3	港灣別 入出港 貨物量 推定 /85	
7.5	施設使用料 水準算定	86
7.5.1	船舶入出港料 算定(1998年度) /86	
7.5.2	船席使用料 算定(1998年度) /87	

7.5.3 埠頭使用料 算定(1998年度) /88	
7.6 原價回收 使用料 水準	89
7.7 其他使用料 水準	90
7.7.1 野積場 専用使用料 水準 算定 / 90	
7.7.2 滯貨料 水準 算定 / 91	
7.7.3 水域占用料의 水準 算定 / 93	
第 8 章 새로운 施設使用料 水準 代案	94
8.1 港灣施設使用料 算定時의 考慮事項	94
8.2 港灣運營 環境變化	95
8.2.1 國內港灣運營 環境變化 /95	
8.2.2 世界的 港灣運營의 環境變化 /98	
8.3 各 代案別 使用料 水準	100
8.3.1 새로운 使用料 水準(Ⅰ) /101	
8.3.2 새로운 使用料 水準(Ⅱ) /105	
8.3.3 새로운 使用料 水準(Ⅲ) /108	
第 9 章 結論 및 建議事項	116
9.1 研究의 考察	116
9.2 研究의 結果	117
9.3 建議事項	121
參考文獻	130
附 錄	133

表 目 次

<表 3-1>	貿易港의 港灣施設使用料 項目 및 原價回收 對象施設	12
<表 3-2>	貿易港의 港灣施設使用料 賦課基準 및 水準	13
<表 3-3>	現行 貨物裝置料의 水準 및 賦課基準	14
<表 3-4>	우리나라 港灣運營收支의 年度別 推移	17
<表 3-5>	主要港灣別 運營收支關係의 年度別 推移	17
<表 4-1>	美國 港灣의 컨테이너埠頭 運營現況(1977年)	23
<表 4-2>	美國 港灣의 施設使用料 現況	24
<表 4-3>	캘리포니아州 港灣의 施設使用料 項目 및 原價回收 方法	25
<表 4-4>	美國 워싱턴州 港灣의 施設使用料 現況	25
<表 4-5>	美國 各 地域港灣의 施設使用料 改定頻度	29
<表 4-6>	LA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31
<表 4-7>	뉴올리언즈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32
<表 4-8>	日本 港灣의 施設使用料 項目과 原價回收對象施設 및 原價反影程度	33
<表 4-9>	日本 公共埠頭內 敷地의 利用形態	33
<表 4-10>	요코하마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34
<表 4-11>	밴쿠버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35
<表 4-12>	로테르담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35
<表 4-13>	싱가포르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36
<表 4-14>	함부르크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36
<表 4-15>	포르크랑(말레이시아)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36
<表 4-16>	카오슝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37
<表 4-17>	홍콩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37
<表 5-1>	水域施設・標識施設・外廓施設의 使用料 項目 및 賦課基準	52
<表 5-2>	새로운 港灣施設使用料 體系의 設定	58
<表 6-1>	港灣別 一般管理費의 人件費 適用 比率	63
<表 6-2>	運營原價 構成要因	64
<表 6-3>	海洋水産部の 管轄港灣	65
<表 6-4>	施設使用料 項目別 原價	67

<表 6-5>	釜山港 原價分析表(1995年)	69
<表 6-6>	仁川港 原價分析表(1995年)	69
<表 6-7>	東海港 原價分析表(1995年)	69
<表 6-8>	大山港 原價分析表(1995年)	70
<表 6-9>	群山港 原價分析表(1995年)	70
<表 6-10>	馬山港 原價分析表(1995年)	70
<表 6-11>	木浦港 原價分析表(1995年)	70
<表 6-12>	麗水港 原價分析表(1995年)	71
<表 6-13>	蔚山港 原價分析表(1995年)	71
<表 6-14>	浦項港 原價分析表(1995年)	71
<表 6-15>	濟州港 原價分析表(1995年)	71
<表 6-16>	港灣別 使用料 項目別 原價 總括(1995年)	72
<表 6-17>	1995年度 港灣運營原價 및 收入實績(Ⅰ)	73
<表 6-18>	1995年度 港灣運營原價 및 收入實績(Ⅱ)	73
<表 7-1>	個別 港灣施設의 使用料 算定節次	75
<表 7-2>	釜山港 原價分析表(1998年)	76
<表 7-3>	仁川港 原價分析表(1998年)	76
<表 7-4>	東海港 原價分析表(1998年)	77
<表 7-5>	大山港 原價分析表(1998年)	77
<表 7-6>	群山港 原價分析表(1998年)	77
<表 7-7>	馬山港 原價分析表(1998年)	77
<表 7-8>	木浦港 原價分析表(1998年)	78
<表 7-9>	麗水港 原價分析表(1998年)	78
<表 7-10>	蔚山港 原價分析表(1998年)	78
<表 7-11>	浦項港 原價分析表(1998年)	78
<表 7-12>	濟州港 原價分析表(1998年)	79
<表 7-13>	港灣別 使用料項目別 原價總括	79
<表 7-14>	港灣別 外航船 入港 톤수의 年度別 推移	80
<表 7-15>	港灣別 接岸能力 總括	81
<表 7-16>	港灣別 內・外港船 入港총톤수의 年度別 推移	84
<表 7-17>	港灣別 公共埠頭 利用物量(1995年)	85

<表 7-18>	港灣別 船舶入出港料 算定	86
<表 7-19>	港灣別 船席使用料 算定	87
<表 7-20>	埠頭使用料 算定原價	88
<表 7-21>	1998年度의 港灣別 埠頭使用料	89
<表 7-22>	原價回收 可能한 使用料 水準	90
<表 7-23>	野積場專用使用料 算定	91
<表 7-24>	滯貨料水準의 算定	92
<表 7-25>	海上荷役船舶의 船席使用料 水準 算定	93
<表 7-26>	水域占用料	93
<表 8-1>	釜山港의 滯船率 現象 推移	97
<表 8-2>	싱가포르港과 로테르담港의 港灣運營收益 比較	99
<表 8-3>	새로운 使用料水準의 代案別 內容	100
<表 8-4>	새로운 使用料 水準(Ⅰ)	103
<表 8-5>	使用料 水準(Ⅰ) 適用時의 港灣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1998年度) ..	104
<表 8-6>	使用料水準(Ⅰ) 適用時의 年度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 推移	105
<表 8-7>	새로운 使用料 水準(Ⅱ)	106
<表 8-8>	使用料 水準(Ⅱ) 適用時의 港灣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1998年度) ..	107
<表 8-9>	使用料 水準(Ⅱ) 適用時의 年度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 推移	108
<表 8-10>	새로운 使用料 水準(Ⅲ)	109
<表 8-11>	使用料 水準(Ⅲ) 適用時의 港灣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Ⅲ)(1998年度) ..	110
<表 8-12>	使用料水準(Ⅲ) 適用時의 年度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 推移	111
<表 8-13>	各 代案別 港灣施設使用料 水準 比較	112
<表 8-14>	代案別 港灣施設使用料 收入과 原價比重	113
<表 8-15>	港灣施設使用料 代案別 追加負擔分 推定	114
<表 9-1>	貿易業界의 年度別 主要物流費 負擔現況	128

第1章 序 論

1.1 研究의 背景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항만시설의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대가이다. 항만시설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건설에 투입된 투자비가 적절한 방법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항만시설은 單一施設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航路, 防波堤, 標識施設, 岸壁, 에프런, 物揚場, 野積場 및 헛간 등 복합적인 시설로 구성된다. 따라서 항만시설사용료는 이 같이 다수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다수사용료의 복합체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에는 「선박입항료」, 「접안료」, 「화물입출항료」, 「체화료」, 「창고 및 야적장 전용사용료」, 「정박료」, 「수역점용료」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각 사용료 항목은 개별 항만시설의 원가를 회수하고자 설정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각 사용료 항목과 원가회수대상 시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반드시 상호관계가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을 먼저 설정하고, 당해 항목으로 특정시설의 원가를 회수하고자 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특정사용료 항목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원가회수 대상시설간에 관계설정의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용료체계하에서는 특정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대가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어떤 경우에는 직접 이용하였으면서도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용자가 사용대가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구나 현행 사용료 수준은 항만시설의 제공에 투하된 운영원가 수준과는 별 관련없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관리주체가 합리적인 항만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비의 보전 및 장래의 투자재원 확보 등에 관한 예상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운영원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설사용료 항목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항만시설사용료

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징수되고 있는지, 이같은 현행 방식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항만운영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개별 항만시설을 어떻게 분류하여 이에 적합한 사용료 항목을 설정하여 원가를 회수해야 하고, 어떤 이용주체에게 어떤 사용료항목을 부과해야 할 것인가를 정립하고자 하며, 이같은 분석하에 원가개념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사용료 수준의 산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과제를 연구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가 과연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원가회수 대상시설과 사용료항목 및 사용료 부담주체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만약 현행 시설사용료 체계에 불합리성이 내재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해소·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설사용료 체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항만시설의 원가회수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사용료 체계를 바탕으로 항만별 원가분석을 통한 사용료 수준을 새롭게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2 研究目的

위와 같은 배경하에 수행되는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구축 및 효율수준의 산정시에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및 효율수준은 객관성과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산정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효율수준에 대한 적절성 여부의 판단이 힘들고 그 결과 효율개정시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각 항만별 원가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시설사용료 수준과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행 시설사용료 수준으로 획득되는 수입이 어느 정도 원가를 회수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에 대하여 「企業會計方式」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항만

비용과 항만수입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借款事業의 원활화를 위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항만건설에 투자된 자금이 제대로 회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특정 항만투자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투자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항만투자의 적절성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만운영원가의 파악과 항만수입의 비교·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항만별 원가 구조 및 원가수준을 파악해 보고 「원가」 개념의 도입을 통한 효율수준의 산정방식 및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용료수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셋째,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심도있게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시설사용료 체계 개편시에 참고하고자 한다.

1.3 研究의 內容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간략한 검토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과제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내용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상에 내재해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선진 외국주요항만에 있어서의 사용료체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사용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과제를 통하여 구축되는 사용료 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용료 수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제6장에서는 항만별 원가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이같은 원가분석을 통해 제7장에서는 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사용료 수준을 산정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사용료 수준은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8장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몇가지 사

용료수준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이 실천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사항을 건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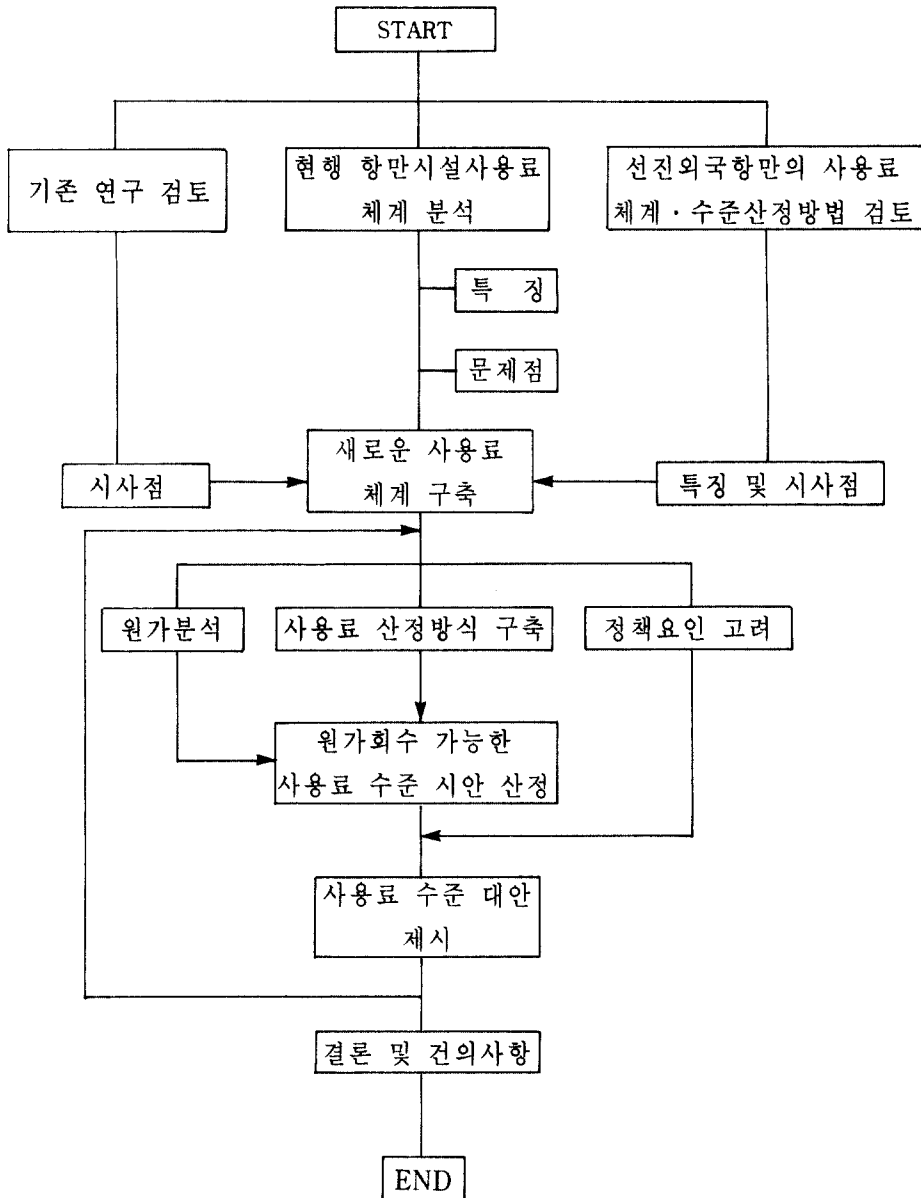
1.4 研究의 進行方法

본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자는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기수집된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과 관련해서는 실제 항만시설사용료 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정책입안자 및 일선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외국 주요항만의 사용료 체계 현황 및 특징과 관련해서는 당해항만의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 및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에 적합하게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연구수행방법에 입각한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은 흐름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1>

研究의 흐름도



第2章 港灣施設使用料에 관한 既存의 研究 現況

본 장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기존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종래에 수행된 연구성과를 조명해 보고 그 내용을 검토하며 아울러 한계점을 명확하게 분석해야만 본 과제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내용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國內의 既存 研究 現況

우리나라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성과가 거의 없는 편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항만시설사용료 문제가 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취급되어 왔고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의 대상으로는 거의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구자에 의한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로서는 우선 연구자들이 항만시설사용료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연구도 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되어 온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국내의 연구성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컨테이너料率體系改善 및 開發埠頭 專用使用料 算定 등에 관한 研究

1990년 「해운산업연구원」과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상기 연구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개발부두」¹⁾의 전용사용료 산정방식이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동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개발부두의 전용사용료는 개발부두시설에 대한 투자비 뿐

1)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부두」란 석탄·양곡·고철 등 특정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차관 도입으로 안벽·야적장 등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헛간·하역장비 및 운영 건물 등을 일괄 건설한 부두를 뜻한다. 현재 「개발부두」는 인천항석탄부두, 부산항양곡부두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두는 모든 시설을 일괄 단일 하역회사에 임대·운영하고 있다.

만 아니라 영업권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투자비의 회수를 위해서는 투자비의 10%에 해당하는 「투자보수율」을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영업권에 대한 임대료로서는 순이익금 중에서 「투자귀속률」을 징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동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부두의 專用使用料에 대해 「원가회수」가 가능한 사용료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그러나 동 연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분석시에는 수역시설, 외곽시설 및 부두시설의 사용대가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가의 내용이 분석되어야 하는데, 상기보고서는 오직 하역장비 및 건물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시설사용료 중 특히 일부분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하역장비 등에 대한 전용사용료로서 소위 營業權을 계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업권을 소위 개발부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컨테이너부두나 일반부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② 港灣施設使用料 政策方向

1994년에 해운산업연구원의 정봉민 박사에 의하여 수행된 상기 연구에 의하면 적정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투입된 자본의 機會費用을 반영하도록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 때 투입자본의 기회비용이란 代替投資代案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본의 사회적 할인율과 감가상각률을 합계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봉민 박사는 사회적 할인율을 7%로 적용할 경우 현재의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그리하여 위의 투자회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을 120%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 연구는 적정 투자회수비의 확보를 위해 설정해야 할 사용료 수준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하였다고 여겨지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의 결정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에 중점을 둔 나머지 개별 사용료 항목의 설정에 대한 적절성과 그 수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서

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개별 사용료 항목으로서 회수해야 할 원가회수 대상시설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하지 않고 있다.

셋째, 각 항만시설사용료 항목과 원가회수대상시설간의 관계, 사용료 부과방법, 사용료 부과대상 등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항만시설사용료를 구성하는 요인중의 하나인 「개발부두」와 임대부두의 임대료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2 海外의 既存 研究 現況

① Bennathan과 Walters의 研究

Bennathan, E.와 Walters, A.A.는 1979년에 *Port Pricing and Investment Policy for Developing Countries*라는 연구서에서 항만시설사용료의 결정방식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동 연구서에서 특정 수준의 항만시설사용료가 국내화주, 항만당국 및 당해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수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一國의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사용료는 限界費用價格決定方式(Marginal Pricing)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계비용원리에 의한 가격결정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시켜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들은 외국선주의 이용이 많은 항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Bennathan과 Walters의 연구성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들의 연구는 근대경제학의 분석방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이론분석상 한계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매우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단위로 분할하기 어려운 항만시설에 대해 과연 限界(Marginal)개념을 도입한 분석방법론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둘째, 그들은 항만시설사용료를 매우 전략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여 경쟁적인 요율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價格彈力度(elastisity)를 사전에 알아야만 한다. 그런데 항만시설사용료의 가격탄력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과제가 아니다.

셋째, 항만시설사용료는 개별 사용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사용료 항목간의 관계, 사용료항목과 원가회수 대상시설과의 관계가 전혀 분석되지 않고 있다.

② 美國 海事廳(Marad)의 研究

미국 해사청에서는 1981년에 공공항만의 시설사용료 산정방법을 위한 연구보고서 (*Usage Pricing for Public Marine Terminal Facilities*, 1981)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항만시설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원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하에 사용료 산정절차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제시된 시설사용료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항만의 운영원가를 산정한다. 이를 위해 감가상각비, 보수비, 세금 및 보험료, 부두운영비, 일반관리비를 산정한다. 둘째로 당해항만에 위임된 귀속비용(imputed cost)을 추정·산정한다. 셋째로 상기 이외의 기타 원가를 산정·추가한다. 여기에는 토지수익률, 시설 및 장비의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항만이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으로 회수해야 할 총수입을 합산한다.

다음으로는 부두사용료(Wharfage)를 제외한 각종 사용료 항목으로 회수해야 할 수입을 먼저 산정한다. 여기에는 접안료(Dockage), 부두우선사용료(Preferential Assignment Rates), 보관료(Storage) 및 기타사용료 수준을 산정한다.

다음으로는 항만시설사용료로 회수해야 할 총수입에서 위의 각종 사용료 총수입의 합계를 공제한다. 그리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당해항만의 총화물량으로 나누는데 이 금액을 화물단위당 부두사용료(Wharfage)로 설정한다.

미 해사청에서 발표한 위의 항만시설사용료 산정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별원가의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까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사용료 체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의 연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하겠다.

첫째, 위의 연구내용에 의하면 각종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부두의 임대료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 임대료가 항만시설사용료중의

큰 부분을 점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위의 연구내용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는 주로 「육상항만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만을 분석하고 있는 반면 「해상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항만시설 중에는 육상시설 못지 않게 해상시설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해상시설의 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인해 위의 연구보고서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ESCAP/UNDP 모델

1989년에 ESCAP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항만을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구축하였다. 동 연구보고서(ESCAT/UNDP Model Port Tariff Structure Find Report)에 의하면 육상 및 해상의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 항목의 설정, 원가요인, 사용료 항목과 원가회수 대상시설과의 관계 등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 연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가 원가를 반영하면서 정책적인 요인도 고려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사용료 항목의 명칭, 특정 사용료로 회수해야 할 원가의 범위, 원가의 계산방법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동 연구보고서가 항만시설사용료와 관련된 방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ESCAP이 제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접안료(Dockage)와 부두사용료(Wharfage)의 운영원가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접안료와 부두사용료의 운영원가인 부두시설의 제공서비스를 結合生産物(Joint Procuction)로 간주하여 각각의 사용료 항목으로 회수해야 할 원가의 비중을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부두시설의 서비스를 결합생산물로 간주할 경우 이를 접안료와 부두사용료로 구분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게 되는데 그럴 경우 부두시설의 원가를 접안료와 부두사용료로 배분하는 것은 임의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의 제시는 개별 사용료 수준의 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임대료의 산정방식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부두의 임대운영형태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서는 임대료 산정방식이 항만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이 결여됨으로서 항만시설사용료 전체의 체계설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3 本 課題의 研究範圍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육상시설 및 해상시설을 포함한 모든 항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료 체계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어떠한 형태로 설정되어야 가장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 ① 개별 항만시설의 이용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사용료 부과대상을 누구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
- ② 사용료 부과기준으로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
- ③ 사용료의 징수주체는 과연 누구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

둘째, 항만시설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운영원가」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항만에 대하여 운영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사용료 수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운영원가만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요금」의 설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원칙은 어떠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도 분석해야 한다.

셋째, 소위 「운영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산정한다고 할 때 「운영원가」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고 원가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넷째, 각 시설사용료 항목과 개별 운영원가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第3章 現行 港灣施設使用料 體系와 問題點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港灣施設使用料 體系의 現況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종류의 사용료 체계가 있다.

- ①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 ② 부두임대료
- ③ 개발부두전용사용료
- ④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이하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3.1.1 貿易港의 港灣施設使用料 體系

첫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항목, 원가회수 대상시설, 사용료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다.

<表 3-1> 貿易港의 港灣施設使用料 項目 및 原價回收 對象施設

사용료 항목	원가회수 대상시설	부담주체
선박입항료	수역시설 중 항로와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외항선사
화물입항료	수역시설, 화물처리장, 임항교통시설	화 주
접 안 료	안벽, 물양장, 잔교	선 사
계 선 료	계선장	선 사
정 박 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와 선류장	선 사
화물장치료	야적장과 창고 및 에프런	이용자
체 화 료	무료장치기간의 경과후에 지불	이용자
전용사용료	야적장과 창고 및 에프런의 전용사용시에 지불	이용자

둘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및 수준은 다음과 같다.

<表 3-2>

貿易港의 港灣施設使用料 賦課基準 및 水準

사용료의 종류	요율수준	부과기준	비고
선박입항료	128원	GT당	1) 무역항에만 적용 2) 피난선 등은 면제 3) 4회이상(컨테이너선은 5회) 입항시 10% 면제
접안료	(1)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외항선 : 340원 내항선 : 114원 (2) 기타 선박은 별도로 정함	10GT · 12시간 당	1) 12시간 초과시에는 6시간마다 기본료의 50%씩 가산 2) 피난선 등은 면제 3) 접안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선박 면제
정박료	외항선 : 178원 내항선 : 58원	10GT · 12시간당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대상
계선료	외항선 : 27원 내항선 : 9원	10GT · 12시간당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대상
화물입항료	① 외항화물 입항 출항 { 부산항 323원 192원 { 인천항 306원 192원 { 기타항 184원 114원 ② 내항화물 { 부산항 85원 { 인천항 85원 { 기타항 51원 ③ 기계하역화물 외항 내항 { 부산항 192원 48원 { 인천항 192원 48원 { 기타항 114원 48원 ④ 송유관이용화물 외항 105원 내항 71원 ⑤ 무연탄 : 26원	송유관 이용화물 : 10바렐당 기타 화물 : 톤당	1) 환적화물은 1회만 부과 2) 선박입항료의 10%면제 선박이 운송하는 화물은 20% 면제
수역점용료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비관리청항만공사로 해상구역 사용하여 국가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 설치시의 사용료
여객터미널 사용료	1,100원	출항 여객 1인당	국제여객터미널 이용시, 6세미만은 제외
화물장치료	<표 3-3> 참조		

<表 3-3>

現行 貨物裝置料의 水準 및 賦課基準

사용료 항목	수 준	부과기준
창고 및 야적장 전용사용료	· 창고전용사용료 - ㄱ 외항화물 : 부산·인천항 1,288원, 기타항 1,029원 - ㄴ 내항화물 : 부산·인천항 929원, 기타항 743원 · 포장야적장 전용사용료 - ㄱ 외항화물 : 부산·인천항 571원, 기타항 420원 - ㄴ 내항화물 : 부산·인천항 409원, 기타항 307원 · 비포장 야적장 전용사용료 - ㄱ 외항화물 : 부산·인천항 306원, 기타항 277원 - ㄴ 내항화물 : 부산·인천항 224원, 기타항 203원	m'당
에프런전용사용료	부산·인천항 : 571원, 기타항 : 420원	m'당
컨테이너 조작장(CFS)	사용자와의 임대차 계약	
싸이로·냉장창고 등 특수창고 사용료	1) 비관리청공사에 의한 귀속시설로서 무상사용시 : 총사업비의 50/1000(연간 전용사용료) 2) 유상사용시 : 지가의 50/1000	m'당
화물체화료	· 요금면제기간 - ㄱ 외항화물 : 입항 5일, 출항 7일 - ㄴ 내항화물 : 입출항 모두 4일 (단, 인천항과 울산항은 외항화물에 대해 입항 4일, 출항 6일임) · 야적장 체화료 - ㄱ 1~10일 경과시 : 외항 81원, 내항 62원 11~20일 경과시 : 외항 178원, 내항 125원 21~30일 경과시 : 외항 232원, 내항 174원 31~90일 경과시 : 외항 277원, 내항 199원 - ㄴ 91일~ 경과시 : 31~90일 요금에 10% 할증 가산 · 야적장 체화료 - ㄱ 1~10일 경과시 : 외항 178원, 내항 125원 11~20일 경과시 : 외항 260원, 내항 186원 21~30일 경과시 : 외항 277원, 내항 199원 31~90일 경과시 : 외항 321원, 내항 224원 - ㄴ 91일~ 경과시 : 31~90일요금에 10% 할증 가산	

위에서 살펴본 현행 무역항의 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및 수준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료항목과 원가회수 대상시설을 각각 분류하여 상호 연계시켜 놓고 있

다. 이점에 미루어 볼 때 개별 항만시설 사용료항목은 기본적으로 개별 항만시설의 운영원가를 회수하고자 하는 개념하에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용료항목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선박입항료·화물입출항료는 「이용물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접안료·정박료·계선료·장치장사용료는 「이용물량」과 「이용시간」을 결합한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물량」과 「시간」을 결합한 단위를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항만시설의 신속한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관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화물 및 선박의 在港時間을 단축시켜 港灣流通의 合理化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전국항만 유사요율」 수준이라는 점이다. 특히 선박입항료, 정박료, 계선료의 경우에는 항만별로 요율수준이 동일하다. 이는 항만별 원가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설정한 「政策料率」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화물입출항료」와 「화물장치료」에 대해서는 「부산항」, 「인천항」 및 「기타항」으로 전국항만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부과하고 있다.

3.1.2 開發埠頭專用使用料

「개발부두」란 정부가 특정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해외차관을 도입하여 선석, 야적장, 헛간 및 대형하역장비를 직접 투자·소유하고 있는 부두로서 여기에는 부산항의 「고철·광석부두」, 「양곡부두」, 인천항의 「고철·산물부두」, 「석탄부두」가 있다. 이러한 부두는 특정 하역회사가 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專用使用를 허가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개발부두의 전용사용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고 있다.

첫째, 전용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실적사용료」로 구성된다.

둘째, 초년도의 「기본사용료」는 임대시설에 대한 투자비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투자비의 10%를 부과하는 것은 투자비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본사용료에 대해서는 「기본물량」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기본물량은 최근 3년간의 평균처리물량으로 산정하고 있다. 「기본물량」을 초과하는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실적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사용료」는 전용사용자에게 인센

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기본물량의 톤당사용료를 50% 할인하여 적용하고 있다.

3.1.3 國有財産法 規程

항만용도로 이용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과 관련된 특정용도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부지 감정가액의 5%를 부과하고 있다.

3.1.4 埠頭賃賃料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 항만시설사용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발부두의 사용료는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규정」을, 기타 항만부지는 「국유재산법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항만시설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무상으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사용료는 위의 각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컨테이너 부두시설의 임대료는 소위 「轉賃料」로서 특정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마다 적정 임대료를 예상·고시하여 이를 수용하는 임차인에게만 임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설의 임대시에는 임차인과 다소의 협상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설로서는 현재 부산항의 「자성대컨테이너부두」, 「신선대컨테이너부두」, 「우암피더부두」, 「부산항 4단계부두」, 「광양항 1단계부두」 및 「인천항 4부두」 등이 있다.

3.2 港灣施設使用料 體系上の 問題點

현행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이 원가의 회수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 ① 해양수산부가 매년 발행하는 「기업회계결산보고서」에 의하면 항만운영수지는 구조적으로 적자임이 확인된다. 이는 <表 3-4>에 잘 나타나 있다.

<表 3-4>

우리나라 港灣運營收支의 年度別 推移

(단위 : 백만원)

연도	원가	사용료 수입	손익
1990	172,061	136,186	△35,875
1991	204,493	136,774	△67,719
1992	242,304	138,488	△103,816
1993	258,335	150,656	△107,679
1994	272,527	165,178	△107,343
1995	317,125	181,027	△136,099
1996	334,019	211,659	△122,359

자료 : 해양수산부, 「기업회계결산보고서」, 각년도판에 의거 작성한 것임.

- ② 한편 주요항만별 수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表 3-5>를 살펴보아도 특정항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적자임을 알 수 있다.

<表 3-5>

主要港灣別 運營收支關係의 年度別 推移

(단위 : 백만원)

항만	1993			1994		
	원가	사용료수입	손익	원가	사용료수입	손익
부산항	49,221	39,580	△ 9,641	50,758	44,604	△ 7,447
인천항	39,061	37,441	△ 1,619	40,458	42,542	△ 1,149
마산항	21,899	5,538	△ 16,361	23,848	7,242	△ 16,606
여수항	34,093	18,333	△ 15,759	33,407	19,026	△ 14,381
울산항	20,116	24,862	4,746	21,502	28,192	6,690
포항항	23,337	12,516	△ 10,821	25,194	10,593	△ 14,600
동해항	18,393	5,128	△ 13,265	18,772	4,864	△ 13,908
군산항	13,896	5,950	△ 7,945	19,042	6,696	△ 12,341
목포항	9,421	998	△ 8,423	9,965	1,038	△ 8,926
제주항	10,061	308	△ 9,753	11,056	381	△ 10,675

자료 : <表 3-4>와 동일함.

둘째, 운영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시설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현재 정박료 수준은 접안료 수준에 비해 50% 낮게 설정되어 있다. 「정박료」는 「정박지 및 선류장 시설」의 사용료로 설정되어 있으며, 「접안료」는 「안벽·물양장 및 잔교시설」의 사용료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박지 및 선류장 시설은 준설에 의해 정비된 곳도 있지만 일부 천연의 공유수면중 일부가 정박지 및 선류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회수해야 할 원가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접안료」는 안벽·물양장 및 잔교시설의 사용료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수준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면 그 수준은 정박료에 비해 월등하게 높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 정박료와 접안료의 수준차이는 단순히 두배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접안료와 정박료는 기본적으로 원가수준의 분석을 통해 설정된 합리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화물입출항료의 경우에도 요율수준 산정시에는 부두 내부지에 대한 운영원가가 포함되어 사용료수준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사용료수준에는 부지의 수익성개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원가회수 대상시설과 사용료항목간의 관계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① 「항만법」에 의하면 「水域施設」은 항로와 선회장, 정박지, 선류장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항로」와 「선회장」의 운영원가는 「선박입항료」로, 「정박지」와 「선류장」은 「정박료」로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수역시설의 원가는 「선박입항료」 및 「정박료」로 구분되어 회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역시설」의 원가를 「화물입출항료」로도 회수하고 있다. 수역시설의 운영원가가 복수의 사용료 항목으로 나누어 회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시설의 원가를 상이한 이용주체에게 상이한 사용료 항목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더구나 이용주체별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령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때 원가를 이용주체별로 배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② 수역시설의 사용료를 「선박입항료」 및 「정박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역시설의 운영원가를 항로, 선회장, 정박지 및 선류장의 운영원가로 세분화시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가항목을 임의로 세분화하여 수역시설의 사용대가를 상이한 사용료항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는 현행 사용료 항목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繫船場」은 「繫留施設」로 간주되기 쉬우나 대부분 「수역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수역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계선장을 수역시설과 달리 접안시설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 ④ 수역시설의 정비는 「浚渫」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준설된 수역시설은 유형자산으로서 관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 해양수산부가 작성하는 「기업회계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수역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등 운영원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역시설의 원가는 단순히 「보수비」로 계상되거나, 수역시설과 동시에 건설되는 타시설 즉 안벽이나 방파제 등에 흡수되어 계상되고 있는 것이다.
- ⑤ 현재 수역시설의 운영원가는 기본적으로 「선박입항료」항목으로 회수하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화물입출항료」로도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화물이 수역시설의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화물이 수역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船舶」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용할 뿐이다. 따라서 수역시설의 사용대가는 직접적인 이용주체인 「선박」에게 부과해야 하지, 「화물」에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넷째, 각 항만별 운영원가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각 항만별 원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항만별로 시설사용료 수준이 상이해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항만별로 투자된 시설의 건설원가 및 인건비 수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만의 시설사용료가 대부분 동일하다. 예를들어 동해항의 야적장전용사용료와 마산항의 야적장전용사용료가 동일한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산항의 야적장시설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동해항의 야적장시설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현행 야적장 전용사용료는 이같은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요율수준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全國港灣 同一料金體系」로 되어 있으며 항만별 실정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동일항만내의 사용료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원가수준을 적절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요율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인천항 입항

선박은 갑문을 출입하든 출입하지 않은 동일한 선박입항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갑문을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게 부당하게 높은 요율을 부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실제로 운영원가가 거의 소요되지 않는 「공공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대가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 ① 현행 「정박료」는 정박지 및 선류장에 대한 사용대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정박지 가운데에는 사설돌핀시설에 면해있는 정박지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정박지의 조성에는 원가가 투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수면의 위치에 따라 준설이 필요하여 원가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부분은 준설이 필요 없는 「公有水面」이 있다. 그리고 이 공유수면은 公共財에 해당한다. 물론 동 공유수면을 특정기업이 占有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두의 계류시설에 접안하는 선박도 岸壁前面의 船席 즉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있다. 이 안벽전면의 공유수면도 광의의 의미에서는 선박이 정박하는 「정박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공유수면에 정박할 경우에는 정박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설부두 전면의 정박지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해 정박료를 부과하는 것과 모순된다. 따라서 이같은 정박지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정박료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정박지에는 위와 같이 사설돌핀시설에 면해있는 정박지 이외에도 해상에서 하역을 하기 위해 선박이 정박하는 「정박지」, 「박지」 및 「점역료박지」(단, 점역 시간동안은 사용료면제) 등이 있다. 현재의 정박료는 이러한 박지에 대한 사용대가로도 징수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박지는 대부분 자연 그대로 형성된 것이며, 이용시에 혼잡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公共財이며 건설비가 소요되지 않는 정박지라 하더라도 이용시 混雜現狀이 발생하면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료를 부과할 필요는 있다.

- ③ 현행 「화물입출항료」는 임항교통시설(임항도로)의 원가도 회수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임항도로는 「부두내도로」와 「부두바깥의 임항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부두바깥의 임항도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도로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일반 불특정다수가 무료로 이용하는 두가지 형태의 도로가 있다.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有料道路의 경우에는 특별히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에게 貨物入出港料를 추가로 부과할 필요가 없으며, 무료로

이용시키는 도로에 대해서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無料道路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화물장치료로 설정하고 있는 「滯貨料」와 「야적장 및 창고 전용사용료」는 성격이 매우 상이한데 이를 거의 동일한 성격의 사용료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화료」는 원래 부두내에 화물이 장기간 장치되지 않도록 장치되는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사용요율을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에 반해 「야적장 및 창고전용사용료」는 이용일수에 관계없이 月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장치장 이용화물은 이 두 사용료중 하나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규정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일별로 누진적인 사용료를 설정하고 있는 「체화료」나 월별로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야적장 및 창고전용사용료」가 동일한 시설의 운영원가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第 4 章 外國港灣의 使用料體系

본 장에서는 외국주요항만의 시설사용료 체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4.1 美國

4.1.1 港灣施設使用料 現況

미국에서는 항만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주체가 시설별로 상이하다. 우선 크게 대별하면 「해상항만시설」과 「육상항만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연방정부에서 직접 건설 및 관리하고 있으나 후자는 각 포트오소리티가 건설 및 관리하고 있다. 해상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과 항로준설은 연방정부의 美陸軍工兵隊(U.S. Corp. of Army)가 수행하고 있으며, 포트오소리티는 이러한 시설의 건설·관리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외곽시설과 수역시설의 신규건설비 및 유지보수비는 1985년 까지만 해도 연방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연방정부의 赤字로 인해 일반재원을 더 이상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1986년에는 「水資源開發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을 제정하여 외곽시설 및 수역시설의 건설·관리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였다. 기금의 명칭은 港灣維持信託基金(Harbour Maintenance Trust Fund)인데, 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港灣維持補修費(Harbour Maintenance Fee)를 설정하였다.

항만유지보수비의 부과대상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입항외항선」에 대해 NT당 0.5cent를 부과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화주에게 항만이용수출입화물의 가격에 대한 0.04%를 부과하는 것이다. 항만유지보수비는 1985년 6월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연방정부는 동 기금으로 미육군공병대의 예산중 40%를 충당하려고 계획하였으며, 일부의 재원은 각 포트오소리티가 신설항만의 건설시에 미공병대의 예산으로 준설해 주는 사업에 대해 포트오소리티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여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때 미공병대가 각 포트오소리티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준설되는 수심의 깊

이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즉 건설비의 10%는 기본 징수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수심의 수준에 따라 45feet로 준설할 경우에는 10% 추가, 65feet로 増深할 경우에는 25% 추가, 65~105feet로 増深할 경우에는 50% 추가하는 등 상이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포트오소리티가 미공병대에 지불하는 부담분을 포트오소리티가 船舶入港料(Harbour Fee)로 선사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港灣維持補修費(Harbour Maintenance Fee)는 현재 세관이 징수하고 있는데, 1990년도에는 징수기준이 수출입화물 가격의 0.04%에서 0.125%로 인상되었고, 1991년 이후에는 미공병대 예산의 100%를 충당하도록 조치되었다. 한편 동 수입금액은 美沿岸警備隊(U.S.Coast Guard)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있다. 현재 항만유지보수비는 2002년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선박에게 부과되는 항만유지보수비는 연간 4회 이상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한편 포트오소리티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은 「선박입항료」를 제외하고 육상항만시설의 사용대가에 국한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이 각 항만별로 대부분 상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항만별 부두운영방식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항만별 부두운영방식의 상이함은 다음의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부두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설사용료 체계 또한 상이하다.

<表 4-1> 美國 港灣의 컨테이너埠頭 運營現況(1977年)

		현재	장래
항만수		27	33
부두수		35	24
선석이용	선사에 임대/선사에 우선사용권부여	12	9
	하역회사에 임대	11	3
	항만당국운영부두(선착순 방식적용)	16	12
크레인 공급자	항만당국이 공급, 임대/공용 사용	16	16
	선사나 하역회사	19	4
컨테이너 장치장 및 부지		에프런	마살링 야드
	전용사용(임대)	8	5
	우선사용권부여(사용료)	8	7
	선착순방식적용	10	13
	미 정	1	1

자료 : Paul A. Amundsen, *Current Trends in Port Pricing*, Aug. 1978. p. 24.

그러나 대다수 항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추출하면 <表 4-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表 4-2>

美國 港灣의 施設使用料 現況

사용료 항목	부과대상	원가회수대상시설
Dockage	선박	안벽이용
First Call on Berth	선박	선석의 독점적 이용
Service & Facilities Charge	선박	에프런 및 서비스 (화물인수, 인도, 검수, 경비 등)
Sheddage	선박	헛간
Space Rental	이용자	부지의 월별 이용료
Storage	선박	에프런의 이용촉진을 위한 부과료
Wharf Demurrage	선박	안벽이용촉진을 위한 부과료
Wharfage	화물	부두통과
Licence Fee	하역회사 부두운영회사 선박대리점	년간 500~1,500\$ 년간 1,250~1,500\$ 년간 100\$
Harbour Fee (Harbour Maintenance Fee)	선박	- 화재방지·소방시설(걸프지역), 선박당 150\$ - 선회장, 항로유지관리, 교통질서유지(5대호, 걸프, 남대서양 지역), 선박당 25\$
Environmental Service Charge	선박	- 선박당 300\$(단, 기금은 미공병대가 사용)

다음으로는 특정 사용료 항목으로 어떤 종류의 시설에 대한 원가를 회수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설원가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사용료항목도 지역이나 항만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데 여기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항만들이 위치해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항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항만들은 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 장치장사용료 및 체화료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원가를 회수하고 있다.

한편 미 북서부의 워싱턴주에 위치한 항만의 시설사용료 항목과 원가회수방법은 대부분 다음과 같다.

<表 4-3>

캘리포니아州 港灣의 施設使用料 項目 및 原價回收 方法

사용료 항목	부담주체	원가회수방법
선석사용료 (Dockage)	선사	선석준설비(안벽에서 100feet까지의 수면)의 100%, 에프런 · 안벽운영원가의 50%, 야적장 · 헛간원가의 12%(이는 부두통로운영원가의 40%에 해당하며, 장치장 면적의 30%에 해당함)
부두사용료 (Wharfage)	화물	에프런 · 안벽운영원가의 50%, 야적장 · 헛간운영원가의 88%, 임대부지는 제외, 통로운영원가의 60%. 실제로는 총부지의 원가에서 장치장 수입 및 화물체화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부두사용료로 회수
장치장사용료 (Storage)	화물	원가회수대상시설 없음.
화물체화료 (Cargo Demurrage)	화물	원가회수대상시설 없음.

주 : 1) 캘리포니아州 항만이란 캘리포니아州내에 있는 11개 항만을 지칭함.

2) 장치장사용료 및 화물체화료는 원가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며, 일종의 penalty적인 성격의 부과료임.

<表 4-4>

美國 워싱턴州 港灣의 施設使用料 現況

사용료 항목	부담주체	원가산정방식
선석사용료(Dockage)	선사	부두원가의 10%
부두사용료(Wharfage)	화주	부두원가의 45%
서비스 및 장비 사용료 (화물처리장 이용료)	선사	부두원가의 45%
장치장사용료(Storage)	화주	임대부지만 산정
선적/양하 서비스	화주	직접비용(노동 · 장비비)
Handling 서비스	선사	직접비용(노동 · 장비비)
기타 사용료	이용자	직접비용(노동 · 장비비)

주 : 워싱턴州 항만이란 워싱턴州내에 있는 9개 항만을 지칭함.

<表 4-3> 및 <表 4-4>에 나타나 있는 미국 주요항만의 시설운영원가 회수방법에 대한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시설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 장치장사용료, 체화료 등으로 구분되는데 「선석사용료」는 선사에게, 「부두사용료」는 화주에게, 「장치장사용료」 및 「체화료」는 화주에게 각각 부담시키고 있다. 이때 선석사용료와 부두사용료는 부두시설(안벽 및 부두부지)의 사용대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중 부두사용료의 부담주체는 항만별·부두별로 약간씩 상이하다. 定期船 埠頭の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주가 이를 부담하지만, 선사가 代納하거나 선사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不定期船 埠頭の 경우 부두사용료는 화주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

둘째, 부두시설(안벽 및 부두부지)의 사용주체를 각 시설별로 분리하지 않고, 화주 및 선주가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도 선사 및 화주에게 공동으로 부과하고 있다. 즉, 부두시설의 공급서비스를 結合生産物(Joint Product)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안벽을 포함한 부두시설 운영원가의 40~45%는 선박에게, 나머지 40~45%는 화물에게 각각 부과하고, 나머지 10~20%의 원가는 기타 사용료 항목으로 회수하고 있다. 이와같이 부두의 총원가를 「선석사용료」와 「부두사용료」에 일정비율로 배분하는데, 이때 배분비율은 항만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다. 서해안 항만은 대부분 50 : 50 이지만 동부 및 걸프지역 항만은 40 : 60 으로 되어 있다.

셋째, 장치장사용료 및 화물체화료는 원가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것은 아니며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정되는 사용료 항목이라는 점이다. 즉 이들 사용료 항목은 운영원가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것은 아니며, 항만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장기체화 화물 및 항만내 일정부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료 항목은 원가와 무관하지만 일단 수입으로 징수되는 금액이 총수입의 10~20%를 점하기 때문에, 실제 일상적으로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 및 화물에게는 부두운영원가의 80~90%를 회수하고 있다.

넷째, 시설사용료와는 무관하고 직접 인력 및 기계장비로 제공되는 하역서비스 및 장비제공서비스 등의 항만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서비스의 공급에 직·간접으로 투입되는 비용만을 정확하게 부과·회수하고 있다.

4.1.2 施設使用料 算定原理

그러면 미국의 항만들은 운영원가를 어느정도 반영하여 시설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을까. 다음으로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다수 항만은 항만시설사용료로 원가를 거의 100% 회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가는 안벽건설비, 부지조성비, 토지수익률(7% 내외)²⁾, 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투자수익률(7% 내외) 등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항만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감가상각비, 투자수익률 등이 변동할 수 있다. 그런데 항만자산의 평가방법은 항만에 따라 전부 상이하며 전국항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은 없다. 더구나 투자보수비 수준도 항만에 따라 전부 상이하다. 그리고 이때 적용하는 투자보수율이나 유지보수율 등도 항만에 따라 다소 상이한데 참고로 캘리포니아州 항만의 시설사용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① 토지수익률 : 항만내 토지가격의 가중평균치를 구하여 m²당 수익률을 산정하고 있다. 이때 부지로서는 에프런, 헛간, 야적장, 부두내도로 등 부두내의 모든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익률은 현재 7~8%를 적용하고 있다.
- ② 구조물에 대한 투자보수비 : 구조물에 이미 투자된 투자비에 대한 보수는 대개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수익률(5.5%)+2.5% = 8% 즉, 포트오소리티가 발행하는 채권의 수익률을 5.5% 내외로 간주하면 수익률은 8% 내외가 된다.
- ③ 감가상각비 : 내구년수 동안 대개 정액제로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자산 평가는 時價 즉 대체비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④ 기타 장비·서비스가격
- ⑤ 보수비 : 보수비는 실제 발생한 보수비의 5년간 평균치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다.
- ⑥ 인건비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는 개별 원가를 합계하여 각 시설사용료 수준을 산

2) 1948년에 미국의 Freas Study 에서는 토지수익률을 항만부지의 시세에 대한 7%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후 FMC도 이를 수용하여 7~8%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항만에서는 13~14%를 적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함.

정하고 있다.

한편 북서지역 항만의 시설사용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두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 ① 인건비
- ② 토지수익률 : 토지가격의 8.5% 적용
- ③ 보수비 : $\{(\text{취득가격} - \text{감가상각비}) \times 8.5\% + \text{보수비} \times 8.5\%$
- ④ 감가상각비
- ⑤ 조명비용
- ⑥ 유지관리비
- ⑦ 일반관리비

위와 같이 산정되는 개별원가수준을 합하여 총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만시설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공급에 투입되는 각종 원가(운영비, 보수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산정하지만 사용료 산정의 최종단계에서는 원가수준 뿐만 아니라 부과될 요율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특히 선석사용료 등은 원가분석보다는 料率分析 및 타 항만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정 사용료 항목으로 반드시 특정원가를 회수하는데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총수입으로 전체적인 항만시설 운영원가를 회수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4.1.3 港灣施設使用料의 規制內容

미국에서는 항만간의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요율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어떤 통일된 방식으로 항만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시스템도 항만별로 모두 상이하다고 하겠다.

한편 美聯邦海事委員會(Federal Maritime Committee : FMC)는 항만요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내용은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이 ① 경쟁항만을 비합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부두소유자나 부두운영업자의 총원가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② 부두운영으로 인한 재정상의 건전성을 손상시킬 정도의 낮은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³⁾. 그리하여 FMC는 각 항만당국의 부두임대료를 FMC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이때 FMC는 당해 임대료의 불법성, 공정성, 차별성 및

편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항만당국이 항만시설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도 FMC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4 使用料 改定

최근 들어와 대다수 항만에서는 거의 매년 사용료 수준을 검토·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역회사와 항만노조간의 협약이 3년마다 한번씩 행해지고 인건비가 주요원가를 구성하는 항만에서는 3년마다 사용료 수준을 개정하고 있다.

사용료 개정시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가분석을 통하여 인상수준의 초안을 작성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沿岸(Coast)에 위치해 있는 인근항만의 사용료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항만간에 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48~1968년 간에는 선석사용료 및 부두사용료가 거의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이 최소한 물가상승율은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캘리포니아州 항만들은 1970년도에 회합을 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매년 개

<表 4-5> 美國 各 地域港灣의 施設使用料 改定頻度

항목	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			
	1968	1977	인상회수		1968	1977	인상회수	
			68~72	73~77			68~72	73~77
북대서양 항만	100	173	8	11	100	198	7	12
남대서양 항만	100	196	7	24	100	244	10	18
걸프지역 항만	100	185	7	7	100	194	5	13
태평양 항만	100	324	22	24	100	268	8	23
평균	100	201	44	66	100	268		
도매물가지수	100	196			100	196		
건설자재물가지수	100	224			100	224		

자료 : Marad, ibid, pp. 54~55.

3) Marad, *Usage Pricing for Public Marine Terminal Facilities*, Vol.1, 1981, p. 8.

정하기로 하여 1970년대에는 매년 사용료를 개정하였다. 이와같이 사용료를 매년 개정하고자 한 것은 대폭적인 인상을 줄 낮추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2~3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다.

4.1.5 賃貨料

사실 미국의 경우에도 임대료 산정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산정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회수해야 할 원가수준도 항만에 따라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① 完全賃貨施設

임대부두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로서는 임대료를 적용한다. 임대료는 최종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협의시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설정시에는 원가의 회수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실제의 임대료는 선석사용료와 부두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한편 부두임차인은 자신이 직접 부두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이용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부두의 이용형태에 따라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사용료항목은 상이할 수 있다. 먼저 임차인이 부두를 自家埠頭로 이용하지 않고 營業用埠頭로 타 이용자에게 이용시킬 경우 사용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때 부두임차인은 실제이용자로부터 선석사용료와 부두사용료 및 체화료 등을 징수한다. 그리고 사용료 수준은 당해부두의 운영주체인 임차인이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임차인이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시설사용료는 항만당국이 공표하는 항만시설사용료(Tariff) 수준과 상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때 임차부두의 이용화물에 따라 「부두사용료」의 징수대상이 상이하다. 임차부두가 「컨테이너부두」인 경우에는 부두임차인이 선사로부터 「선석사용료」와 「부두사용료」를 징수하지만 「부정기선부두」의 경우에는 선사로부터 「선석사용료」를, 화주로부터는 「부두사용료」를 각각 징수한다. 물론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에도 부두임차인이 선사로부터 「선석사용료 및 부두사용료」 항목으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하역료」의 형태로 징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징수항목이나 방법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즉 이용선사에 따라 전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률적이지 않다.

② 一部賃貸施設

임대시설 중에 선석은 임대하지 않고 항만부지만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시설사용료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때 항만당국은 선사로부터 선석사용료를 징수하며 항만부지의 임대 에 대해서는 항만당국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부지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이때 항만당국이 임차인으로부터 「부두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항만당국이 임차인과 임대료를 결정할 때 원래 항만당국이 Tariff로 공표하는 「부두사용료」를 임대료로 결정하게 되면 항만당국은 부두사용료의 징수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당해부지의 사용권한만 임대하여 부두사용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항만당국이 선석사용료와 부두사용료를 이용자(선사)로부터 징수한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를 요약하여 LA港과 뉴올리언즈항의 실제 사용료 항목과 징수방법 및 사용료부담주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4-6>

LA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시설내역	사용료 항목	징수방법	사용료 부담주체
수역·외곽·표지 시설	Harbour Maintenance Fee	화물가격의 0.125%	화주
	입항료(Harbour Dues)	선박규모	선사
공영부두	선석사용료(Dockage)	부두원가의 약 40%	선사
	부두사용료(Wharfage) ¹⁾	부두원가의 약 40%	화주/선사(무료장치기간 부여)
	체화료*		화주(무료장치기간경과후 부과)
	부지전용사용료	부지원가(월별)	임차인
임대부두	임대료	부두원가	임차인
정기선 부두	선석사용료·부두사용료 체화료	임차인이 실제이용자에게 부과	선사 화주
부정기 선부두	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체화료	임차인이 실제이용자에게 부과	선사 화주

주: 1)은 컨테이너의 경우 선사부담(해상운임으로 회수), 부정기선 화물은 화주부담임.

2) *는 원가회수 위한 사용료가 아니라 항만유통 합리화를 위한 penalty성 사용료임.

<表 4-7>

뉴올리언즈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시설내역	사용료 항목	징수방법	사용료 부담주체
수역·외곽· 표지시설	Harbour Maintenance Fee	화물가격의 0.125%	화주
	입항료(Harbour Fee)	선박규모	선사
	정박료(Supplemental Harbour Fee)	선박(해상하역시)	선사
공영부두	선석사용료(Dockage)	선박길이·시간	선사
	계선료	선박길이·시간	
	부두사용료(Wharfage)1)	부두원가의 약 40%	화주/선사(무료장치기간 부여)
	체화료		화주(무료장치기간경과후 부과)
	부지전용사용료	부지원가(월별)	임차인
임대부두	임대료	부두원가	임차인

4.2 日本

일본에서도 항만시설은 「해상항만시설」과 「육상항만시설」로 구분된다. 해상항만시설 중 표지시설은 중앙정부의 海上保安廳이 건설·운영하며 사용료는 무료로 되어 있다. 그러나 표지시설을 제외한 해상항만시설 즉 水域施設과 外郭施設 및 陸上港灣施設은 港灣管理者에 의하여 건설·관리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항만시설의 건설에는 시설종류에 따라 중앙정부가 상당한 자금을 보조하고 있다. 이때 보조율은 항만의 중요성과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전부 상이하다.

한편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에는 톤세, 특별톤세, 입항료, 안벽사용료, 장치장사용료 및 부지사용료 등이 있는데, 각 사용료 항목별 원가회수대상시설의 내역과 사용료부과대상 및 원가반영정도는 <表 4-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表 4-8>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안벽사용료」는 안벽의 사용대가이고, 부지사용료는 부지의 장단기 전용임대료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지에는 「장치장사용료」를 부과하는 부지와 「전용사용료」를 부과하는 부지가 있다. 한편 야적장의 사용형태에는 「일반사용」과 「전용사용」이 있는데 공공부두의 에프런과 야드(야적장)는 대부분 일반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5일간의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부두용지

<表 4-8> 日本 港灣의 施設使用料 項目과 原價回收對象施設 및 原價反影程度

사용료 항목	부과대상	원가회수대상시설	원가반영도
톤세/특별톤세	선박	입국세금/외곽시설, 수역시설	매우 미약
입항료	선박	외곽시설, 수역시설	매우 미약
안벽사용료	선박	안벽, 안벽전면수심, 준설비, 부두시설(야적장·헛간 제외)	매우 미약
계선부표사용료	선박	계선부표	미약
부지사용료	부지사용자	부두부지	매우 미약
야적장, 헛간사용료	이용자	야적장 헛간	매우 미약
체화료	화물	원가회수대상시설 없음	원가개념 없음
임대료	임차인	임대부두의 안벽 및 부두시설	100%
수역점용료 (계선료)	선박, 계선부표, 하역기계, 잔교 등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용대가	원가개념 없음

및 컨테이너야드 등은 전용사용 형태로 이용되며 계약기간도 대부분 1년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30일 단위로 계약정신하고 있음).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4-9> 日本 公共埠頭內 敷地の 利用形態

부두	임대시설	임차인	계약내용	계약기간	체 화 료
컨테이너 부두	마살링야드	선사	일반사용	15일 (연속가능)	화물은 반입/반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일수계산되므로 체화료 발생
	컨테이너야드	하역업자	전용사용	30일 (연속가능)	
재래부두	화물처리장	하역업자	일반 /전용	15/30 (연속가능)	

한편 일본에도 「수역점용료」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항만에서는 공공부두에 민간선박의 장기계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박의 장기계류는 민간부두에만 인정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설치된 해상의 브이(buoy)에만 인정하고 있다. 해상브이에 민간이 선박을 계류시킬 경우에는 「수역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박료」 항목이 없다. 공유수면에 있는 항만시설로서는 항로, 묘박지 및 박지가 있다. 이러한 시설은 모두 해상보안청이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 다만 「錨泊地」에서는 검역 내지는 단순한 묘박만 하고 해상하역은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泊地」에서는 해상하역이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묘박지는 港灣管理者가 항만시설로 고시하지 않고 있으나, 박지는 항만관리자에 의해 항만시설로 고시되어 있다. 박지에서 海上荷役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부두의 운영원가는 안벽건설비, 부지조성비, 토지수익률, 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투자수익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外貿埠頭公社」가 건설하여 임대운영하는 부두를 제외하고는 원가반영수준이 매우 미약하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를 요약하여 요코하마港의 실제사용료 항목과 징수방법 및 사용료 부담주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4-10> 요코하마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시설내역	사용료 항목	부담주체	비 고
수역·외곽시설	입항료	선사	
계 선 장	수역점용료	공유수면점용자	
안벽·선석	안벽사용료	선사	안벽사용료와 화물입항료중 하나를 지불
에프런	에프런사용료	선사/하역회사(임대)	기본요율
상 옥	헛간사용료	하역회사(임대)	기본요율
무료장치기간 경과후	체화료	선사/하역회사	기본요율일수 경과후 부과
임대부두*	임대료	임차인	항만당국이 임차인에게 부과
안벽·선석	안벽사용료	선사	임차인이 실제이용자에게 부과
에프런	에프런사용료	화주	임차인이 실제이용자에게 부과
무료장치기간 경과후	체화료	화주	임차인이 실제이용자에게 부과

주: *는 外貿埠頭公社가 직접 건설 및 賃貸하고 있음.

4.3 其他 主要港灣의 施設使用料 體系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 중 주요항만의 시설사용료 체계는 미국, 일본 중 특정 국가의 사용료 체계와 유사하거나 이의 혼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항만별로 그 내용만을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表 4-11> 벤쿠버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시설내역	사용료항목	부과대상	부담주체
수역 · 외곽시설	입항료(Harbour Dues)	선박	선박
안벽 · 선석	선석사용료(Berthage)	선박 · 시간	선사
	계선료	선박 · 시간(선석사용료의 50%)	선사
부 두	부두통과료(Wharfage)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 화물 이외	선사 화주
	채화료	무료사용기간 경과후 부과	화주

<表 4-12> 로테르담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시설내역	사용료 항목	부과대상	부담주체
수역 · 표지 · 외곽시설	입항료(Harbour Dues)	화물/선박(선종별 차등 요율, 대형유조선 상대 적으로 높음)	선 사
			선 사
	계선선의 입항료	선박	선 사
	연료보급선박 · 오물하 역선박의 입항료	선박	선 사
안 벽 · 선 석	선석사용료(Quay Dues)	안벽길이, 시간, 수심	선 사
부두용지(안벽, 에프런, 헛간 · 야적장 등)	임대료	부지	임차인

<表 4-13>

싱가포르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시설내역	사용료항목	부과대상	부담주체
수역시설	선박입항료(Port Dues)	선박규모 · 시간	선사
	정박선박의 입항료	10일 이상 재항선박대상	선사
	연료보급선박의 입항료	선박규모 · 시간	선사
	조선소입거선박의 입항료	선박규모 · 시간	선사
안벽 · 선석	선석사용료(Dockage)	선박규모 · 시간	선사
화물장치장	장치장사용료(Storage Charges)	화물 · 시간	선사

<表 4-14>

함부르크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시설내역	사용료항목	부과대상	부담주체
수역시설 · 외곽시설	입항료(Port Dues)	선박	선사
	정박료	항내장기정박선박	선사
안벽 · 선석	선석사용료(Berth Charge)	선박 · 시간	선사
	부두통과료(Weight Dues)	화물	
기타부두 시설		무료장치기간 부여	화주
	보관료(체화료)	무료장치기간 경과후 부과	화주
	에프린 · 야적장전용사용료	월별 · 화물	화주
부두용지	임대료	부지 · 기간	임차인

<表 4-15>

포트크랑(말레이시아)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시설내역	사용료 항목		징수방법	사용료 부담주체
수역 · 외곽 · 표지시설	등대사용료(Light Dues)		선박규모	선사
공영부두	부두 사용 료	Wharfage	화물톤	선사(벌크화물), 컨테이너화물은 하역료 속에 포함
		Berthing Fee	선박규모	선사
	화물입항료		수출입, 환적, 헛간사용여부	선사
부지시설	보관료		화물 · 일수	화주(무료장치기간 부여)

<表 4-16>

카오송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시설내역	사용료 항목	징수방법	사용료 부담주체
수역·외곽·표지시설	입항료	화물	화주
계선부표	계선부표사용료	선사	선사
선석·안벽	선석사용료(Dockage)	선박	선사
보관시설	보관료	화물·일수	화주
기타부두시설	부두통과료(Wharf Passage)	화물	선사
부두시설	임대료	면적·기간	임차인

<表 4-17>

홍콩港의 施設使用料 體系 現況

시설내역	사용료 항목	징수방법	사용료 부담주체
수역·표지시설	등대사용료(Light Dues)	선박	선사
	정박료(Anchorage)	선박	선사
계선부표	부표사용료(Buoy Dues)	선박	선사
선석·안벽	선석사용료(Dockage)	선박	선사
부지시설	보관료	화물·일수	화주
부두시설	부두통과료(Wharfage)	화물	화주(선사가 대납)

4.4 特徵 및 示唆點

위의 외국주요항만 시설사용료 체계의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국가별·항만별로 시설사용료 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항만의 사용료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이와같이 一國內에서도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상이함이 발생하는 것은 항만에 따라 부두운영방식 및 당해 항만고유의 관행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설사용료는 크게 「해상항만시설」과 「육상항만시설」의 사용료로 구분된다. 해상항만시설사용료는 대부분 入港料(Port Dues) 항목으로 선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대만 등에서는 같이 화주에게도 일정부분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육상항만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가의 일부를 「선석사용료」(Dockage) 항목으로 선사에게, 원가의 나머지 일부는 「부두사용료」(Wharfage) 항목으로 화주에게 각각 부과하고 있다.

셋째, 임대부두의 사용료 체계는 매우 간소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일부두 전체를 임차한 임차인은 항만당국에 임대료만 지불하며 항만당국도 임대료 이외의 사용료(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 체화료 등)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임대부두의 경우 임차인과 실제 부두이용자가 상이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실제이용자는 임차인에게 당해 부두시설의 사용료(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 등)를 지불하는데 이 수입은 항만당국으로 귀속되지는 않는다. 동 사용료 항목과 사용료 수준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실제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부두의 경우 임차인은 실제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 항목이 아닌 「하역료」를 부과하여 원가를 회수하고도 있다. 따라서 어떤 사용료 항목으로 임차시설을 이용케 하여 임대료를 회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임차인과 실제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지 항만당국이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넷째, 「부두사용료」의 궁극적인 부담자는 화주이지만, 정기선 화물의 경우 선사가 代納 내지는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선사가 부담할 경우에는 이를 해상운임 등으로 대신하고 있다.

다섯째, 항만운영 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해 원가와 관련성은 미약하나 사용료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체화료」 및 「수역점용료」가 이에 해당한다. 「체화료」는 어떤 특정시설의 원가를 회수하기 보다는 항만내에 화물의 장기보관을 허용치 않음으로서 항만내 화물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수역점용료」도 일정 공유수면을 특정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한 무질서를 규제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섯째, 정박지 및 묘박지의 사용대가로 징수하는 정박료 항목은 거의 없으며 이러한 시설에 장기계선시키는 경우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항만내의 일정수역을 독점적으로 점유할 경우에는 수역점용료를 부과하여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第5章 새로운 港灣施設使用料 體系 構築

본 장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5.1 港灣施設使用料 體系構築原則의 設定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1.1 港灣別 施設使用料 水準의 設定

현재 「全國港灣 同一(類似)料率」 체계로 되어 있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별 실정에 부합하도록 「港灣別 差等料率」 체계로 설정해야 한다. 항만별로 사용료를 차등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항만별로 운영원가 및 이용률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행 요율체계와 같이 항만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요율이 산정되면 흑자항만의 이윤으로 적자항만의 손실을 보전하는 소위 항만간의 「内部補助」(cross-subsidization) 문제가 제기되어 항만이용자는 이를 불공평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동일한 항만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시설현황, 원가구조 및 이용방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에는 지역에 따른 차별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1.2 利用主體, 使用料項目과 原價回收對象施設과의 關係 明確化

항만시설의 이용자중에는 확인이 어려운 불특정다수가 많지만 대다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확인이 가능하다. 즉 사용주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주체와 이용시설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사용료 항목과 원가회

수대상시설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연관지워야 한다. 이용주체, 사용료 항목 및 원가 회수대상시설간의 관계가 부정확하게 연결될 경우에는 불합리성이 발생한다. 물론 일부 항만시설의 경우 이용주체, 사용료항목 및 원가회수대상시설간의 상호관계가 반드시 一致하지는 않겠으나, 가능하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시설이용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3 使用料 重複賦課 防止

특정시설의 사용대가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사용료 체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선박입항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및 「계선료」는 모두 수역시설의 사용대가로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역시설의 이용대가가 二重, 三重으로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향후의 시설사용료 체계는 이용시설과 사용료항목간의 관계가 1 : 1 대응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5.1.4 混雜緩和를 위한 價格메카니즘의 導入

원가가 투입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료이용으로 인해 이용률이 높아져 오히려 항만의 혼잡 등 이용상의 불합리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混雜防止料率」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공유수면의 상당부분은 원가가 소요되지 않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무료로 이용시킬 경우 장기 정박(계선)선박이 증가하여 항만의 체선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사용대가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5.2 港灣施設別 使用主體, 使用料 負擔主體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특정항만시설의 사용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항만 시설별 사용주체가 밝혀지게 되면 사용료 부과대상이 누구이어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2.1 水域施設

水域施設은 항로, 선회장, 선류장, 정박지 등으로 구성된다. 수역시설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일시적인 정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역시설의 사용주체는 선박인 것이다.

그런데 화물도 수역시설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화물도 수역시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화물이 수역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선박」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화물이 직접 수역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역시설의 사용료 부담주체는 선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박이 직접 수역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용자인 선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물에게 수역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사실 선사에게 수역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선사는 이를 화주에게 轉嫁시키게 될 것이므로 선사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화주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것이 징수의 편의성이나 궁극적인 부담주체 등의 면에서 타당하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첫째,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입출항하는 선박이 있는데 이러한 선박이 수역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역시설의 사용료는 과연 누구에게 부과해야 타당한 것일까.

둘째, 선박에는 대형선박과 소형선박이 있다. 吃水(Draft)가 낮은 소형선의 입출항에는 수심이 깊은 항로나 선류장, 정박지 등은 불필요하지만, 흘수가 깊은 대형선박에게는 필요하다. 따라서 수심유지를 위해 준설되는 航路浚渫費 등을 회수하기 위한 수역시설의 사용료는 대형선박에게 높게 부과해야 하며 소형선박에게는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한다 하더라도 부담율이 매우 낮아야 한다. 따라서 수역시설의 사용료 부과대상을 선박으로 하지 않고 화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소형선박」 및 「대형선박」 등 이용선박의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적재된 화물에게 모두 동일한 수역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셋째, 수심이 좋은 항로 등 수역시설은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는 소형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비해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같은 관점에 입각할 경우 수

역시설사용료를 화물에 부과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떠한 규모의 선박에 적재되는냐에 따라 화물에 대한 수역시설사용료의 부담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수역시설사용료는 「선박」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된다.

한편 선사에 수역시설의 이용대가를 부과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이유도 있다.

첫째, 수역시설은 기본적으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즉 수역시설은 「화물」에 의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에 의해 이용된다. 따라서 선사에게 수역시설의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화물도 수역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박」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화물과 수역시설과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용관계에 있지 않은 화주에게 수역시설의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을 벗어남을 알 수 있다.

셋째, 선박은 해상운송과정에서 수역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해상운송과정은 관행상 선사의 책임영역에 속하며 화주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관행을 고려해 볼 때 수역시설의 사용료는 선박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2.2 標識施設

標識施設은 燈臺, 浮漂, 燈浮漂, 立漂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설은 모두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이용주체도 船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지시설의 사용료도 수역시설에 대한 설명과 동일한 논리로 선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5.2.3 外廓施設

外廓施設은 防波堤, 導流堤, 波制堤, 防砂堤 등으로 구성되며 선박의 안전한 항내 운항 및 정박을 가능케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이용주체는 船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외곽시설의 사용대가를 부과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선사와 화주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외곽시설의 사용대가도 수역시설 및 표지시설의 경우와 같

이 선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수역시설사용료를 선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5.2.4 共用埠頭施設

부두시설은 안벽, 선석, 에프런, 야적장, 헛간, 부두내도로, 화단, 울타리, 照明燈, 부두운영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적인 시설이다. 이중 화단, 울타리, 조명등, 부두 운영건물 등은 에프런, 야적장, 헛간, 안벽, 부두내도로 등 항만기능시설의 付屬施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이러한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며,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안벽·선석, 에프런, 야적장, 헛간, 부두내도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부두시설은 다수의 시설로 구성된 종합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주체는 각 시설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1) 岸壁・船席

岸壁(Quay, Wharf)과 船席(Berth)은 선박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안벽은 선박이 계류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며 선석은 선박을 안벽에 계류시키기 위해 일정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안벽과 선석은 선박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안벽과 선석의 사용대가는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안벽과 선석이 선박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료도 선박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수역시설에 대한 논거와 대동소이하다.

(2) 野積場・헛간

野積場(Open Storage)과 헛간(Transit Shed)은 화물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즉 항만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화물을 부두내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보관시설인 것이다. 따라서 야적장과 헛간의 사용료는 「화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埠頭內道路

항만시설로서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臨港道路」(Port Road)로 불리우는데 여기

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부두내 도로」로서 항만화물의 운반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이다. 이러한 도로는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를 회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부두외곽의 임항도로」이다. 「부두외곽의 임항도로」는 다시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대규모 임항도로로서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이용시키는 도로인데 이러한 도로는 톨게이트에서 이미 「도로사용료」로 원가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두번째 부두외곽의 도로는 해양수산부가 건설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임하는 도로이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이용시키고 있다. 일반 불특정다수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의 사용료를 항만이용자인 화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임항도로는 「공공재」로 간주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부여하여 건설해 준 것으로 간주해야 하지 이 비용을 항만시설사용료로 회수해야 할 원가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두내 도로」에 대해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부두내의 도로는 화물의 이동을 위해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이용주체는 운송수단이다. 따라서 부두내 도로의 사용료는 직접적인 이용자인 운송수단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지도 모른다. 사실 부두내 도로의 사용료는 화물과 운반차량중 어느 편에게 부과하더라도 무방하다. 다만 사용료 부과방식의 용이함과 이용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일반관행을 중요시하여 부과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부두내 도로의 사용료를 화물과 운반차량에 각각 부과할 경우의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화물에 부과할 경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용료 부과단위가 간단하며 사용료 부과방식이 매우 편리하다.
- ② 부두내 도로의 원가는 화주에게 부과하여 회수하고 있는 것이 현행 관행이기 때문에 현행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운반차량에 부과할 경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부두내 도로의 사용료를 운반차량에 부과할 경우 부과단위의 설정이 다소 힘들다. 이때에는 차량규모, 적재중량 및 이용구간 등 여러가지 사용료 부과기준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의 하나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동반된다.

- ② 운반차량이 부두내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언제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사용료 지불절차로 인해 항내 유통합리화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 ③ 부두내도로를 통과하는 하역장비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운반수단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어떠한 형태로 부과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 ④ 운반차량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는 결국 화주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징수상의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⑤ 부두내 도로의 사용료를 하역작업 차량 및 이용차량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따라서 부두내도로의 사용료는 부두를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4) 에프런

에프런(Apron)은 안벽으로부터 야적장이나 헛간까지의 사이에 위치한 부지로서 화물의 하역 및 분류작업을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에프런은 화물에 의해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에프런은 화물도 이용하지만 하역장비나 운반차량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더구나 에프런상에는 고정하역장비가 설치되기도 한다. 그런데 고정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공용에프런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러면 에프런의 사용료는 누구에게 부과해야 할 것인가? 하역장비가 에프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역장비주에게, 화물이 에프런을 이용할 경우에는 화주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동하역장비가 하역작업을 위해 에프런을 불가피하게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때 하역장비를 에프런의 주요 이용주체로 간주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화물의 하역작업이 필요없다면 장비가 에프런을 독자적으로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프런의 이용주체는 貨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에프런을 이용하는 하역장비는 화물의 통과를 보조해주는 보조시설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에프런사용료를 하역장비에 부과한다면 전술한 부두내도로의 경우에서 분석한 바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에프런사용료는 에프런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5.2.5 專用埠頭施設

專用埠頭施設은 공용부두시설과 시설의 구성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설사용주체와 사용방식이 상이하다. 즉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상이하다. 전용사용시설의 대상으로서는 ① 에프런, ② 야적장, ③ 헛간, ④ 에프런, 야적장, 헛간의 일부 내지는 전부, ⑤ 모든 부두시설 등의 5가지 형태가 있다. 부두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전용으로 사용시킬 경우에는 專用使用者 내지는 賃借人에게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때 사용료 항목은 전용사용료 내지는 「임대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임차시설의 실제이용자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즉 임차인과 실제의 이용자가 상이할 수도 있다. 임차시설의 실제이용자와 임차인이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이용자가 임차인의 허락하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형태가 된다.

5.3 港灣施設使用料 賦課基準

다음으로는 위에서 분석한 각 항만시설별 사용주체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각 시설의 사용대가 부과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으로서는 「시간」 요인과 「이용물량」 요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요인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3.1 水域施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역시설의 사용료는 선박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으로서는 선박의 GRT, NRT, LOA 등 여러가지 기준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선박규모 이외에 「시간」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역시설은 용도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항로, 검역지 등과 같이 항만의 입출항시에 1회 이용으로 이용목적이 충족되는 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선

류장, 정박지 등과 같이 1회 이용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다. 전자의 시설들은 대부분 1회 이용으로 이용목적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시간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선박의 규모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후자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간요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내에 선류장과 정박지가 부족하여 정박을 원하는 타 선박에게 待期(waiting) 현상을 발생케 한다면 항내수역시설의 이용합리화를 위해 「정박시간」의 길이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박지의 조성을 위해 준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셋째, 繫留施設이 부족하여 항계내의 정박지에 선박을 장기계선시켜야 할 경우에도 정박지(계선장)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간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역시설이라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을 상이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항로, 검역지 등 1회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선박규모만을 부과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류장, 정박지 등 장기정박 내지는 장기계선용으로도 이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선박규모와 함께 시간요인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5.3.2 標識施設

표지시설의 사용료도 선박에게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 표지시설은 선박의 항만입출항시 순간적으로(1회) 이용되며 장기간 이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시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선박규모나 사용회수 등을 사용료 부과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3 外廊施設

외곽시설의 경우에는 특정 외곽시설로 인해 보호를 받는 靜穩水域을 통과하거나 靜穩水域내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외곽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항만내에서 선박은 통상 외곽시설의 보호를 받는 정온수역내에 정박하게 되며 더구나 장시간 정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점을 고려하면 외곽시설의 사용료

부과기준에는 시간요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곽시설의 사용료 부과기준에 시간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외곽시설의 보호를 받는 수역이 많을 경우에는 입항선박이 모두 靜穩水面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외곽시설이 건설되어 있기는 하나 외곽시설로 둘러싸인 정온수면을 이용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당해 외곽시설의 보호를 받는 수역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지 정온수역내에 있는 선박이 외곽시설을 장기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외곽시설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서는 「이용시간」 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이용선박의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4 岸壁・船席

안벽과 선석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서는 이용선박의 규모와 이용시간을 결합한 요인을 대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실 안벽・선석은 부족한 것이 일상적이다. 따라서 시설이용시에 시간적 제약을 부과하지 않으면 항만유통합리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즉 안벽・선석은 접안하는 선박의 규모와 이용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5.3.5 에프런

에프런의 이용주체는 화물이기 때문에 이용물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에프런의 용도는 화물의 하역 및 분류에 있고 보관에 있지 않으므로 사용료 부과기준으로서 시간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5.3.6 野積場・헛간

야적장 및 헛간도 화물이 이용주체이며 일시적인 보관을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화물이 장기보관되어 항만화물유통의 합리화가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물량」과 「이용시간」을 결합한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3.7 埠頭內 道路

부두내 도로는 화물이 이용주체라고 할 수 있다. 도로는 에프런과 같이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간요인을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즉 사용료는 화물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8 專用埠頭施設

에프런·야적장·헛간·부두내 도로 등 부두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특정인에게 전용으로 이용시킬 경우에는 전용사용자에게 「전용사용료」나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때 전용사용료나 임대료는 임대한 시설의 각 시설별 사용료 합계로 설정하기 보다는 임대시설을 일괄하여 단일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임대시설이 에프런이든, 야적장이든, 부두내 도로이든 기본적으로 임대면적이나 화물처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4 港灣施設使用料 項目의 簡素化

항만시설은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수역시설·표지시설·외곽시설·안벽·에프런·야적장·헛간 및 부두내 도로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는 시설별로 사용료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구분에 따라 각각 상이한 사용료, 즉, 수역시설사용료, 표지시설사용료, 외곽시설사용료, 안벽사용료, 에프런사용료, 헛간사용료, 부두내도로사용료 등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들어 부두시설의 경우 부두별로 야적장이든 에프런이든 다수 있으며, 각 야적장과 에프런의 건설원가 및 운영원가가 상이할 것이다. 이용물량의 규모 또한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각 야적장 및 에프런별로 사용료를 상이하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만, 아니면 각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상이하더라도 용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는 동일용도이지만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시설의 사용료를 각 시설별로 상이하게 설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일화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고

자 한다.

5.4.1 水域施設

항로·검역지·정박지·선류장 등 수역시설은 公有水面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나, 각 시설은 항계내의 단일장소에 위치해 있지 않고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다. 특히 정박지·선류장의 경우는 그 수가 매우 많다. 그런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박지가 실제로는 港界내의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 정박지·선류장·항로 등의 건설원가는 모두 상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원가가 각각 상이한 정박지·선류장·항로 등의 이용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수준의 정박료·선류장사용료·항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

각종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개별시설별로 설정하느냐 단일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항로·검역지·정박지·선류장 등 각 수역시설의 건설원가를 시설별로 계산하고 있는가의 여부 및 각 시설별로 이용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가의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각 수역시설의 준설비가 개별 시설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이용물량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각 시설별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이용여부 확인의 용이성과 사용료 산정 및 부과상의 경제성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들어 특정항만의 수역시설이 약 50여개의 개별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선박이 50여개 중 30여개를 이용했다고 하면 30여개의 시설사용료는 부과하고, 사용하지 않은 20여개의 시설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개별 수역시설의 이용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매번 이용한 시설을 확인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경제적인 일이 될 것이다. 즉 선박에 따라 몇개의 수역시설을 사용했는지 그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없고 각 시설별로 세분하여 수역시설의 사용료를 설정해야 한다면, 이는 사용료 산정상의 복잡함만 가중시켜 사용료 징수를 위한 불편이 사용료의 정확한 계산·징수로 인한 장점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개별 수역시설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과기준이 상이한 시설별로 이원화시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들어 항로·점역지 등 입출항하는 외항선박이 반드시 이용하며 용도가 동일한 수역시설은 항계내 어떤 위치의 시설을 이용하든 단일사용료를, 정박지·선류장의 경우에도 당해시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준설비가 모든 정박지·선류장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할지라도 단일사용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4.2 標識施設

표지시설도 기본적으로 수역시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항만내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표지시설 중 실제 이용한 표지시설의 사용료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표지시설 중 특정선박이 이용한 표지시설의 운영원가만을 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표지시설의 사용료 수는 표지시설의 개수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항만당국에서 표지시설사용료 산정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지시설의 개수는 많으나 표지시설의 이용개수에 관계없이 모든 표지시설의 사용료는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5.4.3 外廓施設

외곽시설도 항내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외곽시설의 보호를 받는 수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외곽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외곽시설은 위치에 따라 길이나 규모가 상이하고 건설비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외곽시설별로 원가와 이용율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때에도 수역시설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각 외곽시설별 건설비의 관리여부와 외곽시설별 이용물량의 예측가능성, 이용자의 이용여부확인 용이성 및 사용료 산정상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곽시설은 항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港界內이지만 외곽시설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정박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외곽시설의 보호를 받는 항계내지역과 그렇

지 않은 항계내 지역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부과할 경우의 징수 편의성과 이용자의 이해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는 외곽시설의 사용료를 개별시설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단일화시키거나 항만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를들어 인천항의 경우 갑문시설이 있다. 갑문시설은 현재 외곽시설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갑문시설은 선거내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하며, 인천외항이나 평택항 입항선박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부과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5.4.4 水域・標識・外廓施設

위에서 분석한 수역시설・표지시설 및 외곽시설의 용도,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료 항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表 5-1> 水域施設・標識施設・外廓施設의 使用料 項目 및 賦課基準

시 설		용 도	부과기준	사용료항목	단일여부
수역 시설	항로・검역지	일시이용	선박규모	항로사용료	동일항만내 단일요율
	정박지 ・선류장	일시・장기이용	선박규모 ・이용시간	정박료・계선료	동일항만내 단일요율
표지시설		일시이용	이용회수 (선박규모)	표지시설사용료	동일항만내 단일요율
외곽시설		일시・장기이용	선박규모 (이용회수)	외곽시설사용료	동일항만내 단일요율. (단, 지역별 차등가능)

그런데 수역시설중 정박지・선류장을 제외하면 표지시설・외곽시설과 사용료부과기준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세가지 사용료항목은 통합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세가지 항목을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① 이용자의 이해정도 ② 사용료 계산 및 징수상의 편의성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위 세가지 사용료는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론적 및 현실적 상황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용료

가 실제로도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역시설·표지시설·외곽시설은 선박이 이용하기 때문에 선박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일괄 하나의 사용료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할 것인가. 각 원가항목의 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부과기준」이 동일해야 한다. 항로를 제외한 수역시설·표지시설·외곽시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용시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즉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시간」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이용선박의 톤수를 사용료 부과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 시설들은 일괄하여 하나의 사용료항목으로 묶는 것이 사용료 항목의 간소화 및 징수의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

5.4.5 岸壁·船席

안벽도 그 수가 매우 많은데, 모든 안벽의 사용료를 단일화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안벽별로 사용료를 상이하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를 문제가 제기된다. 안벽의 사용료는 ① 안벽의 운영형태, ② 접안선박의 종류(船種 및 船型), ③ 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두별로 수심조건이 상이한 「일반부두」와 「특정화물 전용부두」를 구분하여 지정선박만의 접안을 각각 허용하고 지정된 선박 이외의 접안은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벽의 사용대가를 각 부두별로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부두별로 요율을 결정할 경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두별 원가를 고려하여 부두별 사용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운영원가를 이용주체에게 정확하게 부담시킬 수 있다.

둘째, 건설비가 많이 투자된 시설의 이용자는 건설비가 적게 투자된 시설의 이용자에 비해 높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受益者負擔 原則이 적용되며 공정하다.

셋째, 이용자로서는 어떤 부두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효용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많이 투입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높은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넷째, 모든 부두별로 원가를 산정하여 부두별 사용료를 각각 상이하게 설정한다면 이용자는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이같은 장단점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범

위내에서 부두별로 사용료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동일유형의 선박을 처리하는 동일한 「일반부두」의 경우에도 부두 및 선석에 따라서는 수심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심조건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료를 각 부두별 내지는 선석별로 설정하기 보다는 일반부두 전체를 일괄하여 단일사용료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부산항 재래부두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각 부두별로 사용료를 상이하게 설정한다면 이용자는 이를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부산항의 재래부두는 동일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산항의 재래부두와 컨테이너전용부두의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이용자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두별 구분을 하여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관점에 입각할 경우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부두」는 「일반부두」와 분리하여 선석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와 「일반부두」는 취급선박이 상이하며, 수심이나 운영형태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를 두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부두는 제1부두, 제2부두, 중앙부두, 제3부두 및 제4부두로 위치가 떨어져 있고 수심조건이 다소 상이하지만 운영형태나 이용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요율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인천항의 선박입출항료는 「외항」, 「내항」 및 「평택항」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인천외항과 인천내항간에는 갑문의 이용 여부가 달라지며 따라서 갑문시설의 이용대가는 내항이용선박에게만 부과해야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택항은 인천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원가수준이나 선박이용률 등이 인천항과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5.4.6 에프런, 野積場·헛간 및 埠頭內道路

에프런, 야적장, 헛간 및 부두내도로의 사용에 대해서는 화주에게 사용료를 부과함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에프런, 야적장, 헛간 및 부두내도로의 사용료를 각각 에프런사용료, 야적장사용료, 헛간사용료 및 도로사용료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일괄하여 「埠頭使用料」라는 항목으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문제도 결국 ① 각 시설이용확인의 용이성, ② 사

용료계산의 용이성, ③ 이용자의 이해정도, ④ 각 시설별 원가관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화물이 부두내의 특정시설을 이용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고, 각 시설별로 원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각 시설별로 부과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각 시설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항만화물이 에프런, 부두내 도로, 야적장, 헛간 등의 이용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각각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단일화시킬 수 있다면 각각의 사용료로 세분하여 부과하기 보다는 일괄요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에프런·부두내도로와 야적장·헛간의 사용료 부과기준은 각각 상이하다. 전자는 이용물량이, 후자는 이용물량과 이용시간의 결합된 기준이 각각 부과기준으로 된다. 그런데 부과기준이 이렇게 상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일요금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항만화물이 에프런과 부두내도로는 무조건 이용하게 되며, 야적장과 헛간의 이용여부는 화물의 종류와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야적장과 헛간은 에프런, 부두내도로와 같이 일시 이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화물에 대해서도 이용이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이때 야적장과 헛간의 장기이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즉, 부두이용화물은 기본적으로 야적장과 헛간의 일정기간 이용을 허용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滯貨料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면 에프런, 부두내도로, 야적장 및 헛간의 복합적인 이용에 대해 하나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용료 항목으로서는 貨物入港料, 埠頭使用料, 埠頭通過料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埠頭使用料(Wharfage)로 명명함이 적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두내 각종시설의 사용료를 통합시켜야 사용료항목이 단순화되고, 야적장 및 헛간이용에 대해 무료장치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관행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다음으로 부두사용료를 부두별로 상이하게 설정해야 하느냐 아니면 부두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화시켜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부두사용료의 원가구성 항목인 부두내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두가 지역별로 떨어져 있고, 부두별로 에프런·야적장·헛간면적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는 단일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항 재래부두는 1부두, 2부두, 중앙부두, 3부두, 4부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도 떨어져 있다. 그러나 취급화물이나 운영형태는 동일하므로 단일사용료를 부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천항 석탄부두와 같이 인천항 선거내 부두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취급화물 및 취급선박이 완전히 상이한 경우에는 부두사용료를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부두사용료는 화물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데 화물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균일요율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화물에 따른 차등요율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단일부두를 이용할 경우에도 화물에 따라 부두시설의 이용도가 상이한 화물이 있다. 수입화물의 경우 揚荷된 후 선박의 출항과 함께 부두를 빠져나오는 화물, 부두내에 2~3일 보관된 후 부두를 빠져나오는 화물, 부두내에 저장될 경우에도 화물의 성질에 따라 보관높이가 상이하여 동일한 부피나 중량이라 하더라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화물, 하역작업과 동시에 부두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부두를 빠져나오는 화물 등 화물의 하역패턴 및 부두시설의 이용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모든 하역패턴 및 부두시설의 이용 정도에 대해 사용료를 각각 상이하게 부과하게 된다면 사용요율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및 운영자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범위내로 국한시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별 부두사용료를 어느 정도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액체화물이나 撒物 중 파이프라인과 벨트컨베이어가 설치되어 하역과 동시에 부두외곽으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화물에 대해서는 부두내에 장치되었다가 빠져나가는 화물과는 부두사용료를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전자의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서는 부두내에 에프런과 동 화물을 자동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설치될 공간만 있어도 되는데 고정시설이 설치되는 부지의 사용료로서 부두사용료와는 별도로 「敷地専用使用料」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화물에 대해서는 부두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 후자의 화물은 에프런, 야적장, 헛간 및 부두내 도로 등을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부두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액체화물과 乾貨物은 야적공간 및 적재단적수가 상이할 뿐 아니라 화물의 수량기준도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료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부두중에는 일부의 부지시설을 전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의 부두사용료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때에는 전체 부두부지 중 전용임대면적만큼의 원가를 공제한 원가를 부두사용료로 설정하면 된다.

5.4.7 賃賃料

임대시설은 기본적으로 부두의 부지가 대상이 된다. 물론 부두내 부지에는 에프런, 야적장, 부두내 도로 등이 있다. 이러한 부두의 부지를 일괄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는 동부지 운영원가의 합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부지를 이용하자는 화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부두사용료 수입의 합계가 임대료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두의 임대료가 경쟁하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술한 부두사용료 수입의 합계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제시하는 웅찰자에게 임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임대부두에 대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1차 입찰에서 웅찰자가 전혀 없게 되어도 무리하게 임대해야 할 경우에는 최종임대료가 부두사용료 수입의 합계를 하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임대부두에 대해 임대료만 징수하고 기타 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이용자가 입차부두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입차인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든 그것은 부두입차인(부두운영업자)과 실제이용자간에 협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다. 다만, 임대부두간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독점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5.4.8 小結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항만시설은 용도가 상이한 다수의 시설로 구분 가능하며 각 시설의 사용주체 또한 상이하므로 시설별로 사용료 지불주체와 사용료 부과기준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수역시설 중 장기정박이 가능한 정박지 등을 제외한 항로, 검역지 등과 표지시설 및 외곽시설의 사용료는 단일화하여 선박에게 부과하며 이용하는 선박규모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수역시설중 장기정박이 가능하며 타 선박의 이용에 待期現狀을 발생케 할 수 있는 계선장 및 정박지 등에 대해서는 원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선박에게 시간요인 및 선박규모를 결합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안벽과 선석의 사용료는 부두의 용도 및 운영형태별로 구분하여 접안선박의

규모 및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선박에게 부과해야 한다.

넷째, 에프런, 야적장, 헛간 및 부두내 도로의 사용료는 일괄하여 단일사용료로 화주에게 부과하며 부과단위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때 야적장 및 헛간은 장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無料裝置期間(free time)을 설정하며 동 기간의 경과 후에는 이용일수에 따른 누진적인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다섯째, 에프런, 야적장 및 헛간 등 부두의 일부를 전용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사용자에게 전용사용료 내지는 임대료를 부과하며 임차인과 실제이용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허락하에 시설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의 시설사용료는 임차인과 실제이용자간의 협의로 결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부두를 일괄하여 특정 이용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부과하며 이때 임차인과 실제사용자가 상이할 경우에도 임차인의 허락하에 시설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때의 시설사용료는 임차인과 실제이용자간의 협의로 결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를 요약하면 <表 5-2>와 같다.

<表 5-2>

새로운 港灣施設使用料 體系의 設定

시 설		사용료항목	지불자	비 고
수역시설(선류장 및 정박지 제외), 표지시설, 외곽시설,		선박입출항료	선사	선박규모
부 두 시 설	선류장 및 정박지	계선료	선사	선박규모 · 사용시간
	안벽, 선석(안벽전면수역)	선석사용료	선사	선박규모 · 사용시간
	에프런, 야적장, 헛간, 부두내도로, 조명, 기타 부두내의 시설	부두사용료	화주	화물톤, 장치장 무료사용일수 부여, 단, 무료장치기간 경과후 사용시는 체화료 부과
	에프런, 야적장 헛간, 부두내도로의 일부	임대료(장치장 전용사용료)	임차인	부지의 면적(능력) · 사용기간
	부두부지(안벽 제외한 모든 시설)	임대료		
여객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국제여객터미널 사용료	이용객	
운영건물, 청사 등		각 사용료 항목에 배분		적절히 배분
사설부두 전면수역		수역점용료	부두설치자	점용면적

5.5 使用料 變更事項

이상에서 새로운 사용료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한 사용료 체계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사용료 체계중 변화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다. 특히 철폐해야 할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으로서는 화물입출항료, 정박료, 사설부두의 부두사용료를 지적할 수 있고, 기타 변화되어야 하는 사용료 항목 등도 있는데 그 내용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5.5.1 貨物入出港料의 撤廢

현행 화물입출항료는 수역시설, 임항도로 및 화물장치장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 수역시설의 사용대가는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서 선박입항료로 회수하게 된다. 그리고 임항도로를 살펴보면 이중 부두내도로는 부두사용료로 회수하며 부두외곽도로는 원가를 회수해야 할 항만시설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임항도로의 운영원가도 회수하는 셈이 된다. 또한 화물장치장 시설도 부두사용료로 회수하게 되므로 화물입출항료로 회수해야 할 원가항목은 모두 회수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화물입출항료는 철폐해야 한다.

5.5.2 碇泊料의 撤廢

종전의 정박료는 ① 해상의 묘박지 및 정박지에 정박하거나 하역하는 선박, ② 사설부두의 돌핀에 접안하는 선박에 대해 부과하였다. 그러나 ①의 묘박지 및 정박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서 선박입출항료등 타사용료 항목으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의 정박지에 대해서는 「수역시설점용료」로 회수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정박료는 당연히 철폐해야 한다.

5.5.3 私設埠頭の 碇泊料 變更

현재 사설부두의 돌핀시설에 선박이 접안하는 경우 「정박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정박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동 공유수면은 선박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지만, 특정선박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된다고 간주하기 보다는 사설부두시설의

설치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된다고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제의 사용료는 「수역점용료」를 설정하여 당해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최대 선박의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5.4 賃貸埠頭に 대한 埠頭使用料 徵收主體의 變更

현재 해양수산부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통하여 임대하고 있는 부두로서는 BCTOC/PECT/우암부두/부산항 4단계부두/광양항 1단계부두/인천항 4부두 등이 있다. 이러한 부두에 대해서는 현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임대료 이외에 정부는 화물입출항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화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화물입출항료는 향후 소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화물입출항료는 수역시설과 부두내 화물처리장 및 임항교통시설의 원가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가는 이미 회수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역시설은 선박입항료에, 임항도로시설은 임대료나 무료로, 화물장치장은 임대료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임대부두에 대해서는 사설부두와 동일하게 부두사용료를 정부가 화주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화주로부터 징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第6章 港灣別 原價分析

6.1 運營原價 算定方式

항만시설의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begin{aligned} & \text{감가상각비} + \text{보수비} + \text{투자보수비} + \text{인건비} \\ & + \text{일반관리비} + \text{부대시설운영원가} \end{aligned}$$

위의 각 원가항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減價償却費

감가상각비는 당해 구조물의 자산가치를 내용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는 특정 시설이 당해년도에 제공됨으로써 당해년도에 감모한 자산가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만시설의 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다. 고정자산의 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① 장부가액(취득가액)과 ② 시가(현재의 취득가액)의 두가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중 어떤 방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감가상각비 수준이 상이하게 된다. 항만시설은 이 중 ②의 시가(대체비용)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적인 가치를 회수하기만 하면 되지만, 항만자산은 사회적효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지관리와 대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취득원가에 의한 감가상각은 합당하지 않다. 時價(제조당가격)에 의한 「수정자산평가」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가상승, 기술혁신 등 항만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취득가격으로의 시설대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항로 등의 수역시설은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一回의 투자비용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 비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라는 문

제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특정년도의 손익에 전부 반영시킨다면 특정년도의 운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이후의 연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수역시설도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건설비에 포함시켜 처리하든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동기간내에 균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補修費

모든 항만시설에는 유지보수비가 소요된다. 그런데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유지보수비가 적게 소요되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유지보수비가 대량으로 소요된다. 따라서 유지보수비의 실적을 가지고 보수비로 산정하기 보다는 시설물에 일정하게 요구되는 「유지보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비용을 유지보수비 원가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지보수비율을 자산재평가액의 1%로 적용한다.

(3) 投資報酬費

투자보수비는 두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투자하여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 투자된 자금을 대한 報酬費(return)이며, 다른 하나는 항만부지의 機會費用 즉 收益性(profitability)이다. 먼저 일회의 투자로 고정자산화된 항만시설은 내용년수기간중에 균일하게 상환된다. 그런데 내용년수가 아직 경과하지 않은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보수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보수비율」로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10%를 적용한다.

한편 港灣敷地の 수익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수익성은 당해부지의 위치, 형상 및 용도 등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는 당해부지의 감정가격에 일정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때 일정수익률을 몇%로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수익률은 5%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人件費

항만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를 뜻한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항만건설 및 운영과 관련없는 해양정책실, 수산진흥국, 수산자원국, 수산물유통국 등의 인건비는 항만운영원가의 산정시에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해양수산부는 「기업회계결산보고서」에서 해운항만관련 인원만 추출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5) 一般管理費

항만의 관리운영업무와 관련된 각종 부수적인 경비를 뜻한다. 이 비용도 현재에는 년도에 따라 기복이 심하며 일정한 기준없이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비용도 인건비나 감가상각비에 대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과제에서는 항만별 과거 5년간의 실적을 고려하여 인건비에 대한 일정비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한다.

<表 6-1> 港灣別 一般管理費의 人件費 適用 比率

항만	적용비율(%)	항만	적용비율(%)
부산항	80	목포항	50
인천항	80	여수항	120
동해항	40	울산항	110
대산항	100	포항항	70
군산항	100	제주항	110
평택항	80		

(6) 附帶施設 및 其他서비스 提供 原價

항만시설의 보안·소방에 소요되는 비용, 항만내 경찰기능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현재 원가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도 원래 항만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도 항만운영원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대시설 및 기타 서비스 제공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힘들다. 그리하여 실제의 원가산정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이상에서 분석한 원가항목의 구성요인을 요약하면 <表 6-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表 6-2>

運營原價 構成要因

감가상각비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대장의 가액기준.
보수비	시설 재산가격의 1% 내외로 설정함.
투자보수비	○ 두종류로 구분 가능. 하나는 이미 투자하여 고정자산으로 되어있는 시설에 투자된 자금을 대한 보수비(return)이며, 다른 하나는 항만부지의 수익성(profitability)임. ○ 전자에 대한 「투자보수비율」로서는 일반적인 「시장이자율」 10%를 적용함. ○ 토지수익성은 당해부지의 위치, 형상 및 용도 등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는 당해부지의 감정가격에 일정수익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수익율은 5% 내외를 적용함.
인건비	항만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를 뜻함. 해양수산부가 발표하는 「기업회계결산보고서」상에 계상되고 있는 인건비를 활용함.
일반관리비	항만의 관리운영업무와 관련된 각종 부수적인 경비를 뜻함. 이 비용은 현재 년도에 따라 기록이 심하며 일정한 기준없이 산정되고 있으나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6.2 運營原價 適用對象의 範圍

그런데 항만운영원가에서 제외시켜야 할 원가요인들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6.2.1 沿岸港의 運營原價 除外

우리나라의 항만은 「貿易港」과 「沿岸港」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무역항만 관리하고 있으며 연안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연안항의 항만시설 건설과 대규모 유지보수는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고 있다. 연안항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투자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연안항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이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안항은 궁극적으로 낙후지역의 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개발 및 유지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항만건설 및 운영비용은 해양수산부의

시설사용료로 회수해야 할 운영원가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즉 연안항에 있는 모든 항만시설은 해양수산부의 시설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설은 항만시설사용료로 회수해야 할 원가산정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表 6-3>

海洋水産部の 管轄港灣

지방청	무역항(27개)	연안항(18개)
부산청	부산항	부산남항
인천청	인천항, 평택항	연평도항
마산청	마산항, 통영항, 진해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고현항, 옥포항	
울산청	울산항	
동해청	동해항, 묵호항, 속초항, 삼척항, 옥계항	주문진항
군산청	군산항, 장항항, 보령항	
목포청	목포항, 완도항	대흑산도항, 거문도항, 홍도항
포항청	포항항	월포항, 울릉항, 구룡포항, 후포항
제주청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포항, 한림항, 화순항, 애월항
대산청	대산항	대천항, 비인항
여수청	여수항, 광양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6.2.2 港灣運營과 無關한 財産 除外

현재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는 항만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시설들이 다수 있다. 부산항의 해기연수원시설, 해운대와 광안리 등에 있는 방파제, 임야, 제방, 부산항과 인천항에 있는 선원학교, 예선, 기중기선, 일반 시내에 위치한 토지 및 일반건물 등은 모두 항만의 운영과 무관하다. 이러한 시설 이외에도 이 범주에 속하는 시설은 방대하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이 항만운영과는 거의 관계없는 시설이면서도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국유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의 소유내용, 취득원가, 감가상각현황 등도 현재 해양수산부가 작성하는 「기업회계결산보고서」상

의 재무제표에는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향후 항만운영원가의 산정시에는 공제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는 항만운영원가에 산정해서는 안되며 이는 항만운영과는 무관한 자산으로서 별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6.2.3 貨貨施設의 原價 및 貨貨料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소유재산이지만 수익권리를 항만관리와 무관한 기관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시설이 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예선 및 기중기선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무상으로 양도받은 기관에서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고, 수익권리도 양도받은 기관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동 시설들에 대한 감가상각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등은 항만운영원가에 산정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開發埠頭」의 하역장비 및 운영건물도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을 위한 운영원가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부두 전용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시설들은 「항만시설사용료」로 징수되어야 할 성격의 시설이 아니라 「하역료」로 원가가 회수되어야 하는 성격의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양도시설이나 위탁시설 중에서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부두관리협회 공사」에 각각 임대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원가는 원가산정시 포함해야 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시설과 부두관리협회(공사)에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 일반부두시설은 항만시설사용료의 원가산정시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현재 해양수산부와는 별도의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동 기관의 업무는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인건비는 항만운영원가에서는 제외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인건비는 항만시설의 건설원가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두관리협회(공사)는 시설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항만시설사용료와는 별도로 「경비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건비는 항만운영원가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한편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수익금은 현재 해양수산부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수익금은 해양수산부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시

에 고려해야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가 유상 및 무상으로 임대하는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시설의 기능에 따라 이를 항만시설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운영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6.2.4 寄附採納 資産의 定算金額 處理 問題

현재 민간이 투자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당해시설을 무상으로 전용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용사용료는 실제로 수취하는 수입은 아니지만, 귀속시설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료 징수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금액만큼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산정해야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상사용기간 종료까지는 항만운영원가 산정에서 제외시켜 계산하는 것이 간편하다.

6.3 使用料 項目別 原價分析方法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각 원가요인을 각 시설사용료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表 6-4>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表 6-4> 施設使用料 項目別 原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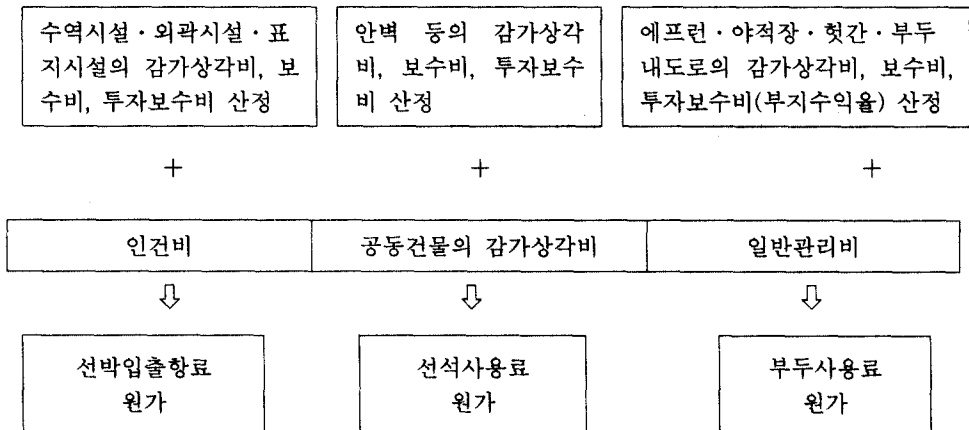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 표지시설 및 외곽시설의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공동시설의 감가상각비
선석사용료	안벽전면 수역준설비, 안벽의 감가상각비, 인건비, 보수비, 일반관리비, 투자보수비 및 공동시설의 감가상각비
부두사용료	부지(에프런 포함)의 수익율, 부지위 상부구조물의 감가상각비, 인건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일반관리비 및 공동시설의 감가상각비
에프런·야적장전용사용료	에프런·야적장의 수익율, 포장시설의 감가상각비, 인건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일반관리비 및 공동시설의 감가상각비
헛간전용사용료	에프런·야적장 전용사용료 + 헛간의 감가상각비·보수비·투자보수비

임대료	임대시설의 감가상각비, 인건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일반관리비 및 공동시설의 감가상각비
해상하역 선석사용료	해상하역선박에게 부과. 원가와의 관련성은 미약하나 선박의 적체해소를 위해 계류시설 선석사용료의 일정비율(20%) 적용.
수역점용료	원가와의 관련성이 미약하지만 항내 운영합리화 및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용대가로 부과
체화료	원가와의 관련은 없으나 항만화물의 적체해소를 위해 현행 방식대로 적용.
여객터미널 사용료	여객용시설의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공동시설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사용료항목별 운영원가의 산정절차는 <그림 6-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그림 6-1>

港灣施設使用料 項目別 運營原價 算定節次



6.4 港灣別 原價分析

위와같은 방법으로 1995년도의 항만별 원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다.

<表 6-5>

釜山港 原價分析表(1995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평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129,934	2,972	1,313	12,712	694	555	18,246
선석사용료							8,010
컨부두	53,694	1,714	542	5,205	305	244	9,078
재래부두	58,628	2,216	592	5,649	345	276	
부두사용료							71,320
컨부두	1,318,265	130	55	66,254	2,711	2,169	24,973
재래부두	454,833	147	61	23,057	949	760	
합 계		7,179	2,563	112,877	5,004	4,003	131,627

<表 6-6>

仁川港 原價分析表(1995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평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갑 문	36,143	1,180	361	3,496	1,065	852	6,955
인 천	13,442	376	134	1,306	384	307	2,509
평 택	1,027	49	10	98	33	27	217
선석사용료							
선거내	20,580	4,071	206	1,651	1,253	1,002	8,183
선거외	45,991	1,598	460	4,439	1,374	1,099	8,970
평택항	11,302	437	113	1,087	346	277	2,259
부두사용료							
인 천	378,695	534	109	19,428	4,243	3,394	27,708
평 택	3,758	1	0.3	190	40	32	264
합 계		8,246	1,394	31,695	8,739	6,991	57,065

<表 6-7>

東海港 原價分析表(1995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평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82,286	1,677	835	8,104	2,578	1,031	14,225
선석사용료	20,195	663	205	1,964	688	275	3,795
부두사용료	84,244	245	45	4,433	1,147	459	6,329
합 계		2,585	1,085	14,502	4,412	1,765	24,349

<表 6-8>

大山港 原價分析表(1995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평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1,869	55	19	128	399	399	999
항만운영비	2,019	63	20	196	550	550	1,378
합 계		118	39	323	949	949	2,377

<表 6-9>

群山港 原價分析表(1995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평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9,341	332	95	909	416	416	2,168
선석사용료	59,964	1,611	613	5,885	2,521	2,521	13,149
부두사용료	51,132	1,993	721	12,069	4,595	4,595	23,974
합 계	-	1,993	721	9,493	3,795	3,795	19,797

<表 6-10>

馬山港 原價分析表(1995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평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84,152	1,147	845	8,321	1,756	1,405	13,475
선석사용료	53,035	1,208	533	5,196	1,181	945	9,063
부두사용료	125,577	55	24	5,902	1,018	815	7,813
합 계		2,410	1,402	19,419	3,956	3,164	30,351

<表 6-11>

木浦港 原價分析表(1995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평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12,231	388	124	1,192	861	431	2,997
선석사용료	28,836	1,065	293	2,795	2,099	1,050	7,302
부두사용료	39,677	68	19	2,085	1,098	549	3,819
합 계		1,520	437	6,072	4,058	2,029	14,117

<表 6-12>

麗水港 原價分析表(1995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평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47,668	1,319	490	4,689	2,429	2,915	11,841
선석사용료	32,216	1,073	331	3,151	1,703	2,043	8,301
부두사용료	42,675	61	17	2,236	865	1,038	4,216
합 계		2,453	839	10,075	4,997	5,996	24,359

<表 6-13>

蔚山港 原價分析表(1995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평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19,267	470	195	1,891	502	553	3,611
선석사용료	78,348	2,409	792	7,641	2,131	2,344	15,317
부두사용료	102,042	64	24	3,238	654	719	4,699
합 계		2,943	1,011	12,771	3,287	3,616	23,627

<表 6-14>

浦項港 原價分析表(1995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평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156,985	3,150	1,572	15,550	2,224	1,557	24,052
선석사용료	90,868	2,989	910	9,001	1,415	990	15,306
부두사용료	62,166	181	76	3,482	410	287	4,436
합 계		6,321	2,558	28,033	4,049	2,834	43,794

<表 6-15>

濟州港 原價分析表(1995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평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29,802	727	596	2,907	733	807	5,771
선석사용료	7,624	232	153	739	195	214	1,533
부두사용료	203,264	36	30	10,235	1,785	1,964	14,049
합 계		995	778	13,881	2,714	2,985	21,354

위에서 산정한 원가분석표를 총괄하면 <表 6-16>과 같다.

<表 6-16>

港灣別 使用料 項目別 原價 總括(1995年)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박입항료	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	합 계
부산항 (컨부두)	18,246 -	17,088 (8,010)	96,293 (71,320)	131,627 -
(일반부두)	-	(9,078)	(24,973)	-
인천항 (선거내)	9,464 (6,955)	17,153 (8,183)	27,711 -	54,328 -
(선거외)	(2,509)	(8,970)	-	-
평택항	217	2,259	265	2,741
동해항	14,225	3,795	6,328	24,349
군산항	2,168	13,149	4,480	19,797
대산항	2,377	-	-	2,377
목포항	2,997	7,302	3,818	14,117
여수항	11,841	8,301	4,216	24,359
포항항	24,052	15,306	4,436	43,794
마산항	13,475	9,063	7,812	30,351
울산항	3,611	15,317	4,699	23,627
제주항	5,771	1,533	14,049	21,353
합 계	108,444	110,266	174,107	392,817

한편 <表 6-17>은 1995년도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원가 및 실제수입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는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수입」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접안료 수입 및 전대료 수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합계한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총수입은 1995년도의 경우 2567억원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는 원가의 65.4%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이용율이 높은 부산항은 92.5%, 인천항은 87.7%, 여수항은 81.4%, 울산항은 137.0%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즉 대형항만일수록 원가회수율이 높고 중소형항만일수록 원가회수율이 낮은 것이다.

<表 6-17>

1995年度 港灣運營原價 및 收入實績(Ⅰ)

(단위 : 백만원)

항만	선박입항료		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		기타 수입	합계		
	원가	수입	원가	수입	원가	수입		원가	수입	회수율 (%)
부산항	18,246	17,688	17,088	11,444	96,293	17,165	75,459	131,627	121,756	92.5
인천항	9,681	9,170	19,412	14,690	27,976	19,935	6,250	57,069	50,045	87.7
(평택항)	-	-	-	-	-	-	-	-	-	-
동해항	14,225	746	3,795	1,618	6,328	1,677	337	24,349	4,378	18.0
군산항	4,545	2,032	13,149	1,608	4,480	2,171	1,651	22,174	7,462	33.7
(대산항)	-	-	-	-	-	-	-	-	-	-
목포항	2,997	164	7,302	416	3,818	322	215	14,117	1,117	7.9
여수항	11,841	6,936	8,301	1,736	4,216	6,892	4,252	24,359	19,816	81.4
포항항	24,052	1,658	15,306	5,229	4,436	3,890	535	43,794	11,312	25.8
마산항	13,475	2,096	9,063	2,772	7,812	1,159	1,976	30,351	8,003	26.4
울산항	3,611	9,851	15,317	3,709	4,699	11,232	7,581	23,627	32,373	137.0
제주항	5,771	15	1,533	85	14,049	143	227	21,353	470	2.2
합계	108,444	50,355	110,266	43,307	174,107	64,585	98,485	392,817	256,732	65.4

주 : 위 수입항목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접안료 수입, 전대료수입과 해양수산부의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수입이 포함되어 있음.

다음으로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수입항목과 개발부두전용사용료를 제외하고 해양수산부가 항만시설사용료로서만 징수하는 수입실적을 원가와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表 6-18>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表 6-18>

1995年度 港灣運營原價 및 收入實績(Ⅱ)

(단위 : 백만원)

항만	선박입항료		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		기타 수입	합계		
	원가	수입	원가	수입	원가	수입		원가	수입	회수율 (%)
부산항	18,246	17,688	17,088	6,813	96,293	17,165	4,272	131,627	45,938	34.9
인천항	9,681	9,170	19,412	12,779	27,976	19,935	2,078	57,069	43,962	77.0
(평택항)	-	-	-	-	-	-	-	-	-	-
동해항	14,225	746	3,795	1,618	6,328	1,677	69	24,349	4,110	16.9
군산항	4,545	2,032	13,149	1,608	4,480	2,171	1,072	22,174	6,883	31.0
(대산항)	-	-	-	-	-	-	-	-	-	-
목포항	2,997	164	7,302	416	3,818	322	97	14,117	999	7.1
여수항	11,841	6,936	8,301	1,705	4,216	6,892	3,684	24,359	19,217	78.9
포항항	24,052	1,658	15,306	5,229	4,436	3,890	535	43,794	11,312	25.8
마산항	13,475	2,096	9,063	2,772	7,812	1,159	198	30,351	6,225	20.5
울산항	3,611	9,851	15,317	3,709	4,699	11,232	7,498	23,627	32,290	136.7
제주항	5,771	15	1,533	85	14,049	143	0	21,353	243	1.1
합계	108,444	50,355	110,266	43,307	174,107	64,585	98,485	392,817	171,179	43.6

주 : <表 6-17>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수입항목과 개발부두전용사용료를 제외한 해양수산부의 수입실적임.

第7章 原價回收 使用料水準 算定

본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원가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에 맞추어 원가회수가 가능한 사용료 수준을 산정해 보고자 한다.

7.1 原價回收 使用料 算定 原則

향후 항만시설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원가개념을 도입하여 산정하며, 산정방식도 원가분석을 통해 산정하도록 한다.

항만운영원가의 회수가 가능한 시설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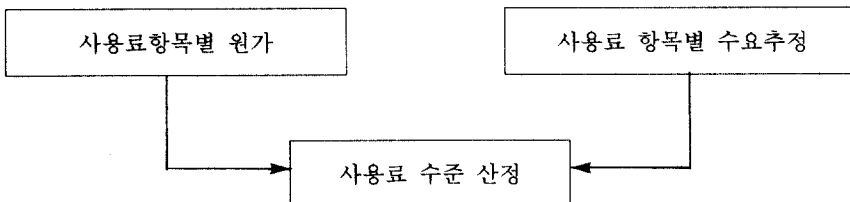
$$\boxed{\text{항만시설사용료}} - \boxed{\text{항만시설운영원가}} = \boxed{0}$$

7.2 原價回收 使用料 算定方式

새로운 사용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7-1>

港灣施設使用料 算定方式



그리고 개별 사용료 항목의 수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산정한다.

<表 7-1>

個別 港灣施設の 使用料 算定節次

선박입출항료	- 항만입출항 외항선 총톤수 추정 - 선박입출항료 총수입 산정 - 선박입출항료 = 선박입출항료 총수입 / 항만 입출항 외항선 총톤수
선석사용료	- 접안선박 총톤수 · 시간 추정 - 선석사용료 총수입 산정 - 선석사용료 = 선석사용료 총수입 / 접안선박 총톤수 · 시간
부두임대료	- 기본적으로 운영원가를 기준으로 설정. 즉 부두별 임대료는 당해부두 이용화물로부터 획득하는 「부두사용료」 적용 - 임차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개경쟁 활용. - 임차인이 단독일 경우에는 부두사용료 총수입 수준을 설정함.
에프린 · 야적장 · 헛간전용사용료	- 운영원가 산정 - 운영원가 / 총면적
체 화 료	- 체화물량 추정 - 화물체화료 총수입 추정 - 화물체화료 = 체화료 총수입 / 체화물량
해상하역 선석사용료	- 요율(12시간 · GT) = 계류시설 선석사용료 수준 × 20%
부두사용료	- 공공부두사용 화물량 추정 - 부두사용료의 회수원가(총수입) = 부두시설 운영원가 - (체화료 수입 + 부두임대료수입 + 에프린 · 야적장 · 헛간전용사용료 수입 + 선석사용료 수입) - 부두사용료 = 부두사용료 총수입 / 공공부두이용 화물량
수역점용료	- 공유수면 점용면적 추정 - 수역점용료 총수입 추정 - 수역점용료 = 수역점용료 총수입 / 면적단위(m²)

7.3 1998年度 運營原價 算定

원가회수가 가능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년도를 먼저 설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1998년도를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1995년도의 자료로 분석된 항만운영원가를 1998년도의 예상원가표로 추정,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분석한 1995년도의 실적치를 1998년 추정치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감가상각비 : 1995년도의 실적치 적용

- ② 보수비 : 토지를 제외한 자산가액의 1%를 계상함. 단, 1995년 재평가가액을 1998년 추정재평가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물가상승율을 년 4%로 적용하였음.
- ③ 투자보수비 : 1998년도 추정재평가가치에서 보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 적용. 단,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액의 5% 적용.
- ④ 인건비 : 과거 5년간 실적치의 증가율을 반영하였음.
- ⑤ 일반관리비 : 과거 5년간 실적치를 고려하여 인건비에 대한 일정비율을 적용.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1998년도의 각 항만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表 7-2>

釜山港 原價分析表(1998年)

(단위 : 백만원)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2,972	1,476	14,486	1,237	989	21,160
선석사용료						
컨부두	1,714	610	5,986	543	434	9,287
재래부두	2,216	666	6,536	615	492	10,525
부두사용료					0	0
컨부두	130	64	74,536	4,880	3,904	83,514
재래부두	147	69	25,946	1,708	1,367	29,236
합 계	7,179	2,886	127,490	8,983	7,186	153,724

<表 7-3>

仁川港 原價分析表(1998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갑문내	1,180	407	4,025	1,248	998	7,858
외 항	376	151	1,497	450	360	2,835
평택항	49	12	114	39	31	245
선석사용료						
선거내	4,071	231	2,292	1,466	1,173	9,233
선거외	1,598	517	5,122	1,609	1,287	10,133
평택항	437	127	1,259	405	324	2,552
부두사용료						
인천항	534	4,260	42,172	10,442	8,354	65,761
평택항	1	42	419	103	82	647
합 계	8,246	5,747	56,899	15,762	12,610	99,264

<表 7-4>

東海港 原價分析表(1998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1,677	939	9,211	4,628	1,851	18,306
선석사용료	663	230	2,261	1,234	494	4,882
부두사용료	245	51	5,009	2,076	830	8,211
합 계	2,585	1,220	16,480	7,938	3,175	31,399

<表 7-5>

大山港 原價分析表(1998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55	21	208	645	645	1,575
항만운영비	63	23	225	704	704	1,717
합 계	118	44	433	1,349	1,349	3,292

<表 7-6>

群山港 原價分析表(1998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계
선박입항료	332	107	1,048	586	586	2,661
선석사용료	1,611	689	6,731	3,558	3,558	16,148
부두사용료	50	15	3,042	1,224	1,224	5,555
합계	1,993	811	10,821	5,369	5,369	24,364

<表 7-7>

馬山港 原價分析表(1998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1,147	953	9,392	2,290	1,832	15,614
선석사용료	1,208	600	5,919	1,540	1,232	10,500
부두사용료	55	27	7,208	1,453	1,162	9,904
합 계	2,410	1,580	22,519	5,283	4,226	36,019

<表 7-8>

木浦港 原價分析表(1998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388	140	1,370	1,424	712	4,034
선석사용료	1,065	330	3,231	3,470	1,735	9,831
부두사용료	68	22	2,350	1,830	915	5,185
합 계	1,520	492	6,952	6,724	3,362	19,050

<表 7-9>

麗水港 原價分析表(1998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계
선박입항료	1,319	551	5,367	3,527	4,232	14,996
선석사용료	1,073	373	3,627	2,472	2,966	10,511
부두사용료	61	19	2,521	1,267	1,521	5,389
합 계	2,453	943	11,515	7,266	8,719	30,896

<表 7-10>

蔚山港 原價分析表(1998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470	219	2,153	526	578	3,946
선석사용료	2,409	891	8,756	2,229	2,452	16,739
부두사용료	64	27	5,891	1,106	1,217	8,304
합 계	2,943	1,137	16,800	3,861	4,247	28,989

<表 7-11>

浦項港 原價分析表(1998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선박입항료	3,150	1,768	17,492	3,319	2,323	28,052
선석사용료	2,989	1,023	10,125	2,094	1,466	17,697
부두사용료	181	85	3,916	620	434	5,236
합 계	6,321	2,877	31,534	6,032	4,222	50,986

<表 7-12>

濟州港 原價分析表(1998年)

(단위 : 백만원)

항 목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계
선박입항료	727	335	3,319	969	1,066	6,416
선석사용료	232	86	849	258	284	1,709
부두사용료	36	17	11,515	2,557	2,813	16,937
합 계	995	438	15,682	3,784	4,162	25,062

위에서 분석한 1998년도의 항만별 추정원가분석표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7-13>

港灣別 使用料項目別 原價總括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박입항료	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	합 계
부산항	21,160	19,814	112,750	153,724
(컨부두)	-	(9,289)	-	-
(일반부두)	-	(10,525)	-	-
인천항	10,693	19,366	65,761	95,820
(선거내)	(7,858)	(9,233)	-	-
(선거외)	(2,835)	(10,133)	-	-
평택항	245	2,552	647	3,444
동해항	18,306	4,882	8,211	31,399
군산항	2,661	16,148	5,555	24,364
대산항	3,292	-	-	3,292
목포항	4,034	9,831	5,185	19,050
여수항	14,996	10,511	5,389	30,896
포항항	28,052	17,697	5,236	50,986
마산항	15,614	10,500	9,904	36,018
울산항	3,946	16,739	8,304	28,989
제주항	6,416	1,709	16,937	25,062
합 계	129,415	129,749	243,879	503,043

7.4 港灣別 需要 推定

다음으로는 항만별 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7.4.1 港灣別 外航船 入港船舶 需要 推定

1998년도의 항만별 외항선 입항톤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실적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의 년도별 외항선 입항톤수 실적은 <表 7-14>에 나와있는 바와 같다.

<表 7-14>

港灣別 外航船 入港 톤수의 年度別 推移

(단위 : 톤)

항만	93년	94년	95년	96년
부산항	131,239,924 (15,079)	153,126,757 (16,859)	163,764,101 (18,264)	177,217,411 (19,310)
인천항	49,618,037 (4,723)	57,885,670 (4,965)	68,550,156 (5,466)	74,419,853 (5,909)
평택항	7,382,771 (82)	10,209,989 (103)	13,796,515 (197)	17,026,156 (396)
동해항	5,925,409 (541)	6,208,100 (517)	6,335,076 (526)	5,411,464 (433)
군산항	4,718,372 (1,095)	5,623,407 (761)	7,485,998 (947)	9,168,192 (1,107)
대산항	8,927,929 (466)	10,988,013 (542)	11,597,362 (531)	22,219,034 (859)
목포항	1,305,807 (732)	1,407,416 (369)	3,220,210 (506)	2,798,354 (519)
여수항	57,617,927 (3,550)	58,197,588 (3,785)	63,516,583 (4,244)	69,539,131 (4,793)
포항항	24,469,338 (1,882)	24,868,353 (1,881)	27,177,363 (2,056)	28,420,023 (2,296)
마산항	13,517,396 (2,210)	16,461,766 (2,421)	21,104,890 (2,739)	24,551,084 (3,247)
울산항	78,439,989 (5,220)	85,814,434 (5,817)	101,141,163 (6,644)	106,036,800 (6,787)
제주항	147,927 (113)	110,122 (139)	121,984 (128)	356,215 (167)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연도판에 의거 작성한 것임.

주 : ()안은 척수임.

<表 7-14>의 연도별 실적치를 근거로 1998년도의 입항톤수는 연평균 7%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7.4.2 岸壁接岸 톤수 및 時間推定

선석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안벽에 접안하는 선박의 톤수와 접안시간을 추정하여야 한다. 현재 「접안선박톤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발표되고 있으나 「접안시간」에 대한 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벽접안톤수·시간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기로 하였다. 즉 먼저 모든 부두의 「適正接岸率」을 60%로 가정하였다. 그러면 부두별 연간 접안시간이 산출된다. 한편 각 부두는 선석별로 접안능력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공부두에 접안할 수 있는 총 접안능력이 산출된다. 해양수산부는 총접안능력을 DWT 단위로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료 부과기준인 GT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 DWT를 GT로 환산하는 계수는 船種別로 각각 상이하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선종별로 이를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선종에 평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1.25를 환산계수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항만별 부두별 연간 적정접안능력이 산출된다. 동 접안능력에는 적정접안을 60%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접안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다만 私設埠頭는 무상전용사용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선석사용료가 징수되지 않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접안능력 산정시에 이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무상전용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선석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전용사용기간이 종료된 사설 부두는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表 7-15>

港灣別 接岸能力 總括

항만	부두명	동시접안능력(DWT)	연간 적정접안능력(GT)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410,000	
	북항부두	485,400	
	감천부두	411,000	
	돌핀(민유)	41,000	
	소계	1,306,400	6,584,256,000

항만	부두명	동시접안능력(DWT)	연간 적정접안능력(GT)
인천항	선거내부두	1,462,000	
	남항돌핀(민유)	122,000	
	남항부두(귀속·전용사용)	9,000	
	남항석탄부두	150,000	
	북항돌핀(민유)	315,000	
	연안항돌핀(민유)	45,000	
	└ 평택LNG부두	└ 64,000	
	└ 평택돌핀(민유)	└ 77,000	
	└ 평택부두(귀속·전용사용)	└ 80,000	
	└ 평택국가관리부두	└ -	
	소계	1,676,000	8,447,040,000
동해항	동해항 부두	243,000	
	동해항 돌핀(민유)	3,000	
	묵호항 부두	40,000	
	삼척항 부두	13,000	
	삼척항 2부두(민간개축)	13,000	
	옥계항 부두(귀속,무상사용)	85,000	
	속초항 부두	16,000	
	소계	312,000	1,572,480,000
군산항	외항 1~3부두	145,000	
	돌핀부두(민유)	26,200	
	자동차부두(민간전용사용·귀속)	20,000	
	부잔교	40,000	
	물양장	-	
	합계	185,000	932,400,000
대산항	대산항내 돌핀(민유)	638,400	
	보령항내 돌핀(민유)	110,000	
	보령항내귀속돌핀(무상전용사용)	135,000	
	태안항내돌핀(민유)	150,000	
	소계	0	0
목포항	1~2·대불부두	113,800	
	여객선부두	6,000	
	물양장	(1,018m)	
	국유부두(귀속·전용사용)	40,000	
	완도부두(1~3부두)	33,600	
	물양장	(2,014m)	
	여객선잔교	200	
	소계	153,600	774,144,000
여수항	여수항 부두	30,000	
	여천항(낙포)	143,000	
	광양항	97,000	
	소계	270,000	1,360,800,000

항만	부두명	동시접안능력(DWT)	연간 적정접안능력(GT)
포항항	제1~제8부두 구항부두 물양장	1,143,000 22,000 -	
	소계	1,165,000	5,871,600,000
마산항	마산 제1~서항부두	259,000	
	돌핀부두(민유)	120,000	
	한중·삼성부두(민간전용사용·귀속)	23,000	
	물양장(중앙부두)	-	
	충무항 일반부두	3,000	
	진해항 일반부두	45,000	
	삼천포항 한전전용부두	150,000	
	삼천포항 일반부두	22,000	
	장승포항 물양장	-	
	고현항 전용부두	10,000	
	고현항 일반부두	1,000	
	옥포항 전용부두	20,000	
	합계	330,000	1,663,200
울산항	석탄~일반부두	331,000	
	역무선부두	1,000	
	돌핀(국유·국가관리)	1,000	
	울산국유(민간전용사용·귀속)	253,000	
	울산민유부두	50,000	
	울산민유돌핀	333,000	
	울산민유브이	925,000	
	온산국유(민간전용사용·귀속)	80,000	
	온산국유돌핀(민간전용사용)	40,000	
	온산민유브이	560,000	
	온산민유돌핀	250,000	
	미포국유(민간전용사용)	20,000	
	소계	333,000	1,678,320,000
제주항	제주항내 부두	42,300	
	제주항내 물양장	-	
	서귀포항내 부두	13,200	
	서귀포항내 물양장	-	
	소계	55,500	279,720,000

주 : 연간 적정접안능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음.

$$* \text{연간 적정접안능력} = \text{동시접안능력} \times 24\text{h} \times 365\text{日} \times 60\%$$

그런데 실제의 선석접안율은 60%를 상회할수도 하회할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60%를 상회할 경우 이는 당해 항만당국의 경영노력에 의해 달성된 것이며, 60%를 하회할 경우에는 경영성과의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그런데 선석사용료는 외항선과 내항선을 구별하여 요율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접안능력을 외항선과 내항선으로 각각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항만별 내·외항선의 비율에 대한 실적추이를 고려하여 <表 7-16>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평균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表 7-16>

港灣別 內·外港船 入港총톤수의 年度別 推移

(단위 : 천톤)

항 만	1993		1994		1995		평 균	
	외항선	내항선	외항선	내항선	외항선	내항선	외항선	내항선
부산항	131,240 (92.7)	10,429 (7.3)	153,127 (93.0)	11,485 (7.0)	163,764 (92.3)	13,539 (7.7)	92.7	7.3
인천항	49,618 (63.3)	28,808 (36.7)	57,856 (64.7)	31,548 (35.3)	68,550 (70.3)	28,969 (29.7)	66.1	33.9
평택항	7,383 (73.3)	2,687 (26.7)	10,210 (72.2)	3,936 (27.8)	13,797 (77.4)	4,026 (22.6)	74.3	25.7
동해항	5,745 (34.8)	10,782 (65.2)	6,208 (34.1)	11,981 (65.9)	6,345 (31.7)	13,655 (68.3)	33.5	66.5
군산항	4,718 (62.2)	2,865 (37.8)	5,624 (64.4)	3,106 (35.6)	7,426 (66.8)	3,684 (33.2)	64.5	35.5
대산항	8,928 (82.6)	1,886 (17.4)	10,988 (82.6)	2,311 (17.4)	11,597 (82.8)	2,417 (17.2)	82.7	17.3
목포항	1,306 (41.9)	1,809 (58.1)	1,408 (41.6)	1,977 (58.4)	3,220 (56.7)	2,456 (43.3)	46.7	53.3
여수항	57,618 (72.1)	22,296 (27.9)	58,197 (70.8)	23,997 (29.2)	63,517 (70.7)	26,349 (29.3)	71.2	28.8
포항항	24,496 (87.5)	3,485 (12.5)	24,868 (87.1)	3,685 (12.9)	27,177 (84.6)	4,935 (15.4)	86.4	13.6
마산항	13,517 (74.6)	4,614 (25.4)	16,460 (74.4)	5,654 (25.6)	21,104 (77.4)	6,168 (22.6)	75.5	24.5
울산항	78,440 (83.3)	15,740 (16.7)	85,814 (83.5)	16,898 (16.5)	101,141 (84.0)	19,245 (16.0)	83.6	16.4
제주항	148 (6.1)	2,262 (93.9)	110 (4.2)	2,511 (95.8)	122 (14.9)	2,389 (95.1)	5.1	94.9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연도판에 의거 작성한 것임.

주 : ()안은 비율임.

7.4.3 港灣別 入出港 貨物量 推定

다음으로는 「부두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항만별 입출항 화물량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화물에게 부과되는 부두사용료는 화물의 하역형태나 貨種에 따라 요율상의 차이를 설정하고 있다. 즉 ① 기계하역되는 외항화물과 ② 기계하역되는 내항화물, ③ 기계하역되지 않는 외항입항화물 ④ 기계하역되지 않는 외항출항화물 ⑤ 기계하역되지 않는 내항화물 ⑥ 송유관으로 하역되는 화물 및 ⑦ 무연탄의 7개 요금구조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부두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화물그룹을 이같은 현행방식대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사용료 체계에서는 私設埠頭를 경유하는 화물이나 송유관 등 이미 개별기업에게 전용으로 임대한 一定數地만을 경유하여 하역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부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화물그룹은 제외해야 한다. 그리하여 송유관으로 하역하는 화물과 사설부두를 경유하는 화물을 제외하고 공공부두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1995년도 실적을 정리하면 <表 7-17>에 나와있는 바와 같다. 그리고 1998년도의 입출항 화물량은 1995년도를 기본으로 연평균 7%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表 7-17>

港灣別 公共埠頭 利用物量(1995年)

(단위 : 톤)

항만	외항입항	외항출항	내항	기계외항	기계내항	무연탄
부산항	21,851,763	14,462,610	5,274,261	38,854,078	542,518	306,132
인천항	19,433,000	6,949,000	158,000	7,037,000	1,315,000	355,000
평택항	-	-	5,116,808	10,107,422	591,807	-
동해항	1,932,219	389,871	5,153,350	3,102,643	-	337,061
군산항	3,090,966	235,120	1,227,678	-	-	-
목포항	782,819	70,082	2,079,008	94,104	-	13,240
여수항	1,910,573	3,001,335	2,869,119	-	-	44,866
포항항	1,979,184	1,448,412	1,621,153	28,614,146	4,066,626	691,436
마산항	3,012,354	2,168,480	2,272,887	369,072	1,222	27,618
울산항	3,913,000	893,000	1,711,000	11,000	385,000	127,000
제주항	26,358	6,404	1,998,235	-	-	10,734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임.

주 : 인천항은 96년도 물량추정치임.

7.5 施設使用料 水準算定

여기에서는 7.2에서 추정된 1998년도의 항만별 운영원가와 7.3에서 추정된 항만별 수요를 고려하여 원가회수가 가능한 선박입출항료, 선석사용료 및 부두사용료 수준을 산정하기로 한다.

7.5.1 船舶入出港料 算定(1998年度)

<表 7-18>의 원가항목은 7.2에서 추정된 수치이며, 외항선입항톤수 항목은 7.3.1에서 추정된 것이다. 이와같이 추정된 원가 및 수요를 고려하여 1998년도의 항만별 선박입출항료를 산정한 것이 <表 7-18>의 네 번째 항목에 나와 있다. 여기에 산정된 항만별 선박입출항료 수준은 1998년도의 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表 7-18>

港灣別 船舶入出港料 算定

항만	원가(백만원)	외항선입항 톤수(천GT)	선박입출항료 (원/GT)
부산항	21,160	200,618	105
인천항	10,693	79,628	-
(선거내)	(7,858)	(69,454)	113(149)
(선거외)	(2,835)	(79,628)	36
평택항	245	16,902	14
동해항	18,306	7,761	2,359
군산항	2,661	9,171	290
대산항	3,292	14,207	232
목포항	4,034	3,945	1,023
여수항	14,996	77,811	193
포항항	28,052	33,293	843
마산항	15,614	25,855	604
울산항	3,946	123,902	32
제주항	6,416	149	43,060
합 계	129,415	593,242	218

주 : 1) 외항선 입항톤수는 95년 실적을 근거로 이후 연평균 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2) 인천항 선거내 입항선박의 사용료는 인천 외항입항시의 GT 당 36원에다 갑문통과시 부담해야 하는 GT 당 113원을 합계한 GT 당 149원이 된다.

3) 현행 수준은 GT당 128원임.

<表 7-18>에 산정된 선박입출항료 수준을 현행 수준에 비하면 인천항 외항, 평택항 및 울산항 등 일부항만을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의 사용료 수준은 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7.5.2 船席使用料 算定(1998年度)

<表 7-19>의 원가항목은 7.2에서 추정된 것이며, 내외항선별 적정접안능력은 7.3.2에서 추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추정된 원가 및 수요를 고려하여 항만별 내외항선별 선석사용료를 산정한 것이 <表 7-19>의 오른쪽 항목에 나와있다. 여기에 산정된 항만별 선석사용료 수준은 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表 7-19>

港灣別 船席使用料 算定

항만	원가 (백만원)	연간적정접안 능력(천DWT·h)	선석사용료 (원/120h·GT)			
			외항선	내항선	외항선	내항선
부산항 (컨부두)	9,289	2,066,400	1,915,553	150,847	453	152
(재래부두)	10,525	4,517,856	4,188,053	329,803	235	79
인천항 (선거내)	9,233	7,368,480	7,169,531	198,949	122	41
(선거외)	10,133	756,000	159,516	596,484	2,706	908
평택항	2,552	322,560	239,662	82,897	915	307
동해항	4,882	1,572,480	526,781	1,045,699	533	179
군산항	16,148	932,440	601,424	331,016	2,175	730
대산항	-	-	-	-	-	-
목포항	9,831	777,144	362,926	414,218	1,880	631
여수항	10,511	1,360,800	968,890	391,910	918	308
포항항	17,697	5,871,600	5,073,062	798,538	319	107
마산항	10,500	1,633,200	1,233,066	400,134	736	247
울산항	16,739	1,678,320	1,403,076	275,244	1,076	361
제주항	1,709	279,720	14,266	265,454	1,588	533
합 계	129,749		23,855,806	5,281,193	486	163

주 : 1) 산정방식 : 원가÷(DWT × 1.25(GT환산계수) ÷ 120h·GT)

2) 대산항에는 공공부두가 없기 때문에 선석사용료를 구태여 산정할 필요가 없음.

3) 현행수준은 120GT·시간당 외항선 340원, 내항선 114원임.

그런데 <表 7-19>에 산정되어 있는 선석사용료 수준은 인천항 선거내 부두 및 부산항 재래부두를 제외하고 현행 수준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7.5.3 埠頭使用料 算定(1998年度)

<表 7-20>의 원가항목은 7.2에서 추정된 것이며 그룹별 화물량은 7.3.3에서 추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추정된 원가 및 수요를 고려하여 항만별 화물그룹별 부두사용료 수준을 산정한 것이 <表 7-21>에 나와 있다. <表 7-21>에 산정된 부두사용료 수준은 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表 7-21>에 산정된 부두사용료 수준은 현행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원가회수가 가능한 부두사용료 수준이 다른 시설사용료 항목에 비해 이와같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원가분석에서 산정된 부두사용료의 원가가 현실화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종래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港灣敷地」의 수익성이 원가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表 7-20>

埠頭使用料 算定原價

(화물량 단위 : 천톤)

항만	원가(백만원)	외항입항	외항출항	내항	기계외항	기계내항	무연탄
부산항	112,750	26,769	17,717	6,461	47,598	665	375
인천항	65,761	23,806	8,513	-	-	-	-
평택항	647	-	-	6,268	12,382	725	-
동해항	8,211	2,367	478	6,313	3,801	-	413
군산항	5,555	3,787	288	1,504	-	-	-
목포항	5,185	959	86	2,547	115	-	16
여수항	5,389	2,341	3,677	3,515	-	-	55
포항항	5,236	2,425	1,774	1,990	35,054	4,982	847
마산항	9,904	3,690	2,656	2,784	452	1	34
울산항	8,304	4,794	1,094	2,096	13	472	156
제주항	16,937	32	8	2,448	-	-	13
합계	243,879	70,970	36,291	35,926	99,415	6,845	1,909

<表 7-21>

1998年度の 港灣別 埠頭使用料

(단위 : 원/톤)

항만	외항입항	외항출항	내항	기계외항	기계내항	무연탄
부산항	1,238	736	326	736	184	99
인천항	2,015	1,264	559	1,264	316	171
평택항	103	64	29	64	27	15
동해항	1,203	746	333	746	314	170
군산항	1,267	786	351	786	331	179
목포항	2,895	1,796	801	1,796	756	408
여수항	961	596	266	596	251	136
포항항	184	114	51	114	48	26
마산항	1,551	962	429	962	405	219
울산항	1,199	743	332	743	313	169
제주항	23,639	14,659	6,542	14,659	6,172	2,333
현행(기타항)	184	114	51	114	48	26
부산항	323	192	85	192	48	26
인천항	306	192	85	192	48	26

주 : 1995년 이후 항만화물량은 연평균 7%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7.6 原價回收 使用料 水準

위에서 산정된 사용료를 사용료 수준은 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실제 모든 항만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수준이기도 하다. 위의 사용료 수준은 원가수준을 100%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表 7-22>

原價回收 可能な 使用料 水準

항만	선박입항료 (원/GT)	선석사용료(원/120h · GT)		부두사용료
		외항선	연안선	
부산항	105	-	-	3.83배
(컨부두)	-	455	150	-
(재래부두)	-	235	80	-
인천항	-	-	-	6.58배
(선거내)	115(150)	120	40	-
(선거외)	35	2,705	910	-
평택항	15	915	310	0.56
동해항	2,360	535	180	6.54배
군산항	290	2,175	730	6.90배
대산항	230	-	-	-
목포항	1,025	1,880	630	15.75배
여수항	195	920	310	5.23배
포항항	845	320	110	1.0
마산항	605	735	250	8.44배
울산항	30	1,075	360	6.52배
제주항	43,060	1,590	535	128.58배
합 계	220	485	165	5.44배

주 : 부두사용료는 현행 화물입항료 수준과 대비한 수준임.

7.7 其他使用料 水準

그런데,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에는 앞에서 산정한 「선박입출항료」 「선석사용료」 및 「부두사용료」 뿐만 아니라 公營埠頭를 이용할 경우의 「체화료」와 「야적장 및 창고 전용사용료」, 해상하역 선박의 「선석사용료」, 장기계선선박 및 사설부두 전면공유수면의 사용대가인 「수역점용료」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사용료 항목의 수준도 산정하고자 한다.

7.7.1 野積場 專用使用料 水準 算定

먼저 「야적장 전용사용료」를 산정하고자 한다. 단일 부두의 모든 부지를 특정 민

간에게 전용으로 사용시킬 경우에는 「야적장 전용사용료」 혹은 「임대료」를 부과해야 하고, 동 부두를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항만당국이 「부두사용료」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 부두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로부터 원래 획득할 수 있는 부두사용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적장 전용사용료」로 회수해야 한다. 그러면 부두의 총부지면적으로 동 부두의 부두사용료 총수입을 나누면 단위면적당 야적장 전용사용료가 산정된다. 이와같이 하여 산정한 항만별 야적장전용사용료는 <表 7-23>에 나와있는 바와 같다.

<表 7-23>

野積場専用使用料 算定

항만	면적(m ²)	부두사용료원가(백만원)	전용사용료(원/월 · m ²)
부산항	2,632,871	112,750	3,570
인천항	1,830,129	65,761	2,995
평택항	96,128	647	560
동해항	976,827	8,211	700
군산항	897,572	5,555	515
대산항	-	-	-
목포항	210,950	5,185	2,050
여수항	231,422	5,389	1,940
포항항	1,014,544	5,236	430
마산항	1,002,885	9,904	825
울산항	777,463	8,304	890
제주항	370,133	16,937	3,815
합계	10,040,880	243,879	2,025

7.7.2 滯貨料 水準 算定

다음으로는 「체화료」를 산정하고자 한다. 체화료는 새로운 사용료 체계에 의하면 원가와 무관하지만 부두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 ① 먼저 무료장치기간(free time)은 장기보관비율이 높고, 신속한 회전율이 요구되는 항만일수록 짧게 부여하고, 장기보관비율이 낮고 실제이용율이 낮은 항만일수록 길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11~20일간의 체화료는 1~10일간의 체화료에 비해 2배, 21~30일간의 체화료

는 3.2배, 31~90日간의 체화료는 4.5배 수준으로 기간별 누진율을 漸增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③ 내항화물은 외항화물에 비해 25% 인하하여 산정한다.

④ 체화율이 극히 높은 부산항은 현행 수준에 비하여 20%, 상당히 높은 인천항과 울산항은 10% 인상하여 산정하였으나, 체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산항, 군산항, 목포항, 제주항은 현행수준에 비하여 10%, 매우 낮은 동해항, 포항항 및 여수항은 20% 인하하여 산정한다.

이와 같은 체화료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한 체화료 수준은 <表 7-24>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表 7-24>

滯貨料水準의 算定

(단위 : 10톤, 1일)

항만	무료장치기간	보관기간	야적장		창고	
			외항	내항	외항	내항
부산항	입항 5 출항 7 내항 4	1~10日	100	75	195	145
		11~20日	195	145	290	220
		21~30日	310	235	390	290
		31~90日	440	330	485	365
인천항	입항 4 출항 6 내항 3	1~10日	90	65	180	135
		11~20日	180	135	265	200
		21~30日	285	215	355	270
		31~90日	400	300	445	335
동해항 포항항 여수항	입항 10 출항 10 내항 10	1~10日	50	35	100	75
		11~20日	100	75	145	110
		21~30日	155	120	195	150
		31~90日	220	165	245	185
울산항	입항 2 출항 3 내항 2	1~10日	90	65	180	135
		11~20日	180	135	265	200
		21~30日	285	215	355	270
		31~90日	400	300	445	335
마산항	입항 4 출항 6 내항 4	1~10日	75	55	145	110
		11~20日	145	110	220	165
		21~30日	235	175	290	220
		31~90日	330	250	365	275
군산항 목포항 제주항	입항 7 출항 10 내항 5	1~10日	75	55	145	110
		11~20日	145	110	220	160
		21~30日	235	175	290	220
		31~90日	330	250	365	275

주 : 91日 이상 보관시의 야적장·창고 체화료는 매 10일 마다 31日~90日간의 적용요금에 20%의 할증료를 가산함.

7.7.3 水域占用料의 水準 算定

다음으로는 해상하역선박의 「선석사용료」와 「수역점용료」를 산정하고자 한다. 해상하역선박의 선석사용료는 새로운 사용료체계의 설정시에 계류선박 선석사용료의 20%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물론 20%라는 수치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表 7-25> 海上荷役船舶의 船席使用料 水準 算定

항 만	사용료수준
전국항만	안벽시설에 대한 선석사용료의 20%

한편 수역점용료는 현행 정박료 수준의 50% 이하로 인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자 한다.

<表 7-26> 水域占用料

항 만	사용료수준	비 고
전국항만	m ² 당 300원(외항선) 150원(내항선)	계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함. 단 계선기간이 15일 이하시에는 일당계산이 가능함

第8章 새로운 施設使用料 水準 代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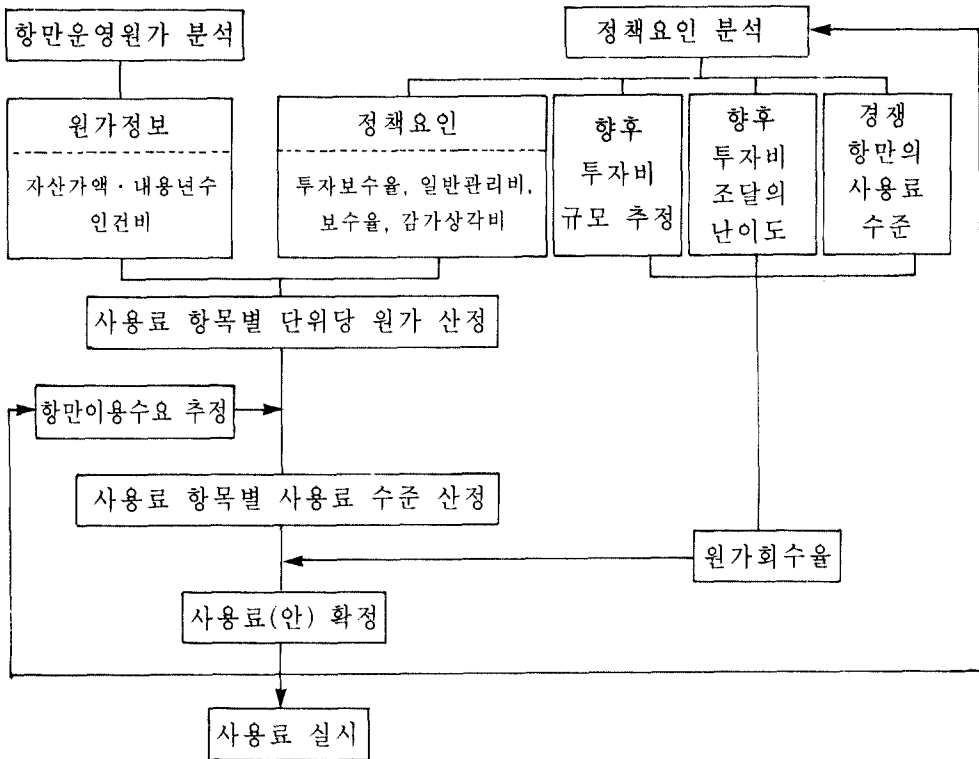
본장에서는 원가분석 이외에 실제의 사용료 수준 산정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고, 사용료 수준 산정과 관련된 최근의 환경변화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실제 사용료 수준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8.1 港灣施設使用料 算定時의 考慮事項

앞장에서 산정한 사용료 수준은 항만운영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사용료 수준은 항만별로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항, 평택항, 울산항 등 일부항만의 선박입출항료와 부산항 재래부두 및 인천항 선거내 부두의 선석사용료 등은 현행 사용료 수준보다 훨씬 낮게 산정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몇몇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항만들의 경우 원가회수가 가능한 사용료 수준은 현행 사용료 수준에 비하면 매우 높게 산정되었다. 특히 부두사용료는 현행 수준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현행 부두사용료(화물입출항료)가 원가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때문이라고 하겠다. 특히 항만부지의 수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원가요인들을 100%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료 수준은 현행 사용료 수준과는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의 사용료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사용료 수준과 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사용료 수준 및 정책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료 수준을 산정해야 한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8.2 港灣運營 環境變化

8.2.1 國內港灣運營 環境變化

최근 들어와 항만운영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항만 시설사용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변화요인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부두의 임대운영, ② 원가의 회수개념도입 ③ 항만시설의 부족을 심화 ④ 항만민자유치의 부진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① 埠頭賃賃運營制度의 擴大

부두의 임대운영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부두의 임대료 산정방식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부두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개발부두에 대해서는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다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컨테이너 부두 등의 임대료도 그때 그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준을 산정하고 있을 뿐이며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둘째, 컨테이너부두, 개발부두 및 일반부두의 임대시에는 임대료 산정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컨테이너부두나 개발부두라고 하여 높은 임대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두에 적용되는 객관적인 임대료 산정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임대료와 임대료 이외의 시설사용료 관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현재 公營埠頭の 사용료는 임대부두의 사용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그런데 공영부두이든 임대부두이든 부두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주체에 의하여 운영되느냐에 따라 시설사용료 수준이 상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의 시설사용료, 개발부두전용사용료, 컨테이너부두의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요율수준을 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② 原價回收概念의 導入

컨테이너 부두의 출현 이래 전세계적으로 부두의 상업적인 운영이 확산되고 있다. 컨테이너 부두는 종래의 일반부두에 비해 건설 및 운영원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용형태 또한 상이하다. 이같은 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항만당국이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는 건설 및 운영원가의 확보를 항만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구미지역의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항만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상 컨테이너부두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원가의 회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운영원가를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추세가 향후에는 컨테이너부두 뿐만 아니라 일반부두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로 인해 향후 항만운영시에는 원가회수에 많은 비중이 두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의 재검토와 원가개념을 도입한 사용료 수준의 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③ 港灣施設の 不足率 深化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증가율이 미약하여 주요항만에서는 滯船現狀이 발생해 왔다. 체선현상의 발생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현상으로 정착되어 왔다. 특히, 부산항, 인천항 및 울산항 등 비교적 대형항만의 경우 체선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表 8-1>은 1990년대 전반의 부산항 체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같이 체선율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증가하는 화물량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항만시설에 대한 확충율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증가율이 미약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의 부족에 기인하는데 이는 결국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사용료 수준에 그 원인이 있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원가회수율을 현재보다 높게 반영하여 항만투자재원의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8-1>

釜山港의 滯船率 現象 推移

부두	항목	1992	1993	1994	1995	1996
BCTOC	입항척수	1,498	1,563	1,625	1,427	1,681
	체선척수	97	111	201	314	293
	체선율(%)	6.5	7.1	12.4	22.0	17.4
PECT	입항척수	803	1,012	1,274	1,379	1,213
	체선척수	34	55	92	128	91
	체선율(%)	4.2	5.4	7.2	9.3	7.5
일반부두	입항척수	1,514	1,146	1,621	4,128	5,090
	체선척수	184	190	337	853	910
	체선율(%)	12.4	9.1	10.8	13.4	11.2
합계	입항척수	3,815	3,721	4,520	6,934	7,984
	체선척수	356	356	630	1,295	1,294
	체선율(%)	8.3	9.6	13.9	18.7	16.2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④ 港灣民資誘致의 不振

최근 들어와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도가 왕성해지고 있다. 특히 1994년 8월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정 이후에는 활발하다고

할 정도로 민자로 개발하고자 하는 항만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외형적인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그 內實은 매우 저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타부문의 민자유치사업에 비해 외견상 다소 양호한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 항만민자사업이지만 현재 「민자유치기본계획」상에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이 지정되었으나 이 중 1997년 10월 현재 「인천항 종합여객시설건설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검토중이고, 「목포신외항사업」과 「부산신항만사업」은 실시협약을 체결한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위 「민자유치법」 제정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민간자본의 유치가 부진한데, 그 이유는 ① 민자유치사업이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② 투자재원조달방법 또한 확대되지 않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확대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사업수익성이 불투명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 있는 부대사업의 수행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현재 실제로 착공된 민자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항만민자유치사업이 이와같이 부진한 이유에는 상기한 이유 이외에도 현행 항만 시설사용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특히 「화물입항료」 수입은 민자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며, 집안료 등의 수준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낮은 사용료 수준과 사용료 항목의 징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않으면 민자유치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은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항만민자유치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항만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도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은 원가반영도를 높혀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8.2.2 世界的 港灣運營의 環境變化

① 外國 主要港灣의 財政狀況

외국 주요항만은 기본적으로 운영원가를 시설사용료로 회수하는 獨立採算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항, 미국의 LA항, LB항, 시애틀항, 뉴욕·뉴저지항, 영국의 펠릭스토우항, 싸우스햄프턴항, 벨기에의 앤트워프항, 독일의 함부르크항, 브레멘항, 프랑스의 르아브르항, 마르세이유항, 이탈리아의 제노아항, 스페인의 바르세로나항, 호주의 멜버른항, 시드니항,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항 등 세계주요국의 항만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들 항만중 일부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일부

支援(assistance)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제한된 경우에 한정되고 기본적으로는 원가회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항만은 단순히 원가회수가 가능한 사용료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수준을 낮추기 위한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다.

한편 외국 주요항만의 항만운영수입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表 8-2>는 싱가포르港과 로테르담港의 항만운영수입을 우리나라 전체 항만운영수입과 비교한 것이다.

<表 8-2> 싱가포르港과 로테르담港의 港灣運營收益 比較

항만명	내 용	1990	1991	1992	1993	1994
싱가포르港 (PSA)	총항만운영수입 (백만싱가포르\$)	881.7	1,057.7	1,169.7	1,303.4	1,519.7
	(억원)	(5,422)	(6,505)	(7,194)	(8,016)	(9,346)
	항만운영이익 (백만싱가포르\$)	363.0	452.9	465.4	559.6	646.6
	(억원)	(2,232)	(2,785)	(2,862)	(3,442)	(3,977)
	총취급화물량(백만톤)	187.8	206.4	238.4	273.7	290.1
	화물톤당수입(원)	2,887	3,152	3,018	2,929	3,222
로테르담港	총항만운영수입 (천길더)	560,014	603,352			
	(억원)	(2,800)	(3,017)	-	-	-
	입항료수입비중	64.3%	63.5%	-	-	-
	임대료수입비중	33.0%	33.7%	-	-	-
	기타수입비중	2.7%	2.8%			
	총취급화물량(백만톤)	287.8	291.8			
	화물톤당수입(원)	973	1,034			
한국의 항만	해양수산부하만수입(억원)	1,362	1,368	1,385	1,507	1,652
	컨공단수입(억원)	361	377	509	628	758
	총항만수입(억원)	1,723	1,745	1,994	2,138	2,410
	총취급화물량(백만톤)	346.6	414.2	456.0	508.3	587.4
	화물톤당수입(원)	497	421	437	421	410

자료 :1) PSA, PSA Annual Report, 1994.

2) Rotterdam Port Management, Annual Report 1991.

3) 해양수산부, 「기업회계결산보고서」(각년도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결산보고서」(각년도판)

주 : 1) 1싱가포르\$는 615원으로, 1길더는 500원으로 각각 환산하였음.

싱가포르港의 관리주체인 PSA(Port of Singapore Authority)의 항만운영수입은 1994년 현재 9,346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항만전체의 수입수준인 2,410억원의 약 3.9배에 이르고 있다. 물론 PSA의 항만운영수입에는 하역료 수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단일항만의 운영수입으로서는 규모가 엄청남을 알 수 있다. 한편 로테르담港의 항만운영수입은 1991년도에 3,017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같은해 우리나라 항만총수입인 1,745억원의 1.7배를 능가하고 있다.

<表 8-2>에는 항만별 처리물량 단위당 사용료수준 또한 비교되어 있다. 싱가포르港의 경우 1990년~1994년간에 총항만화물량은 1억 8천만톤 ~ 2억 9천만톤을 기록하여 톤당 2,900~3,300원 정도의 사용료수입을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항만의 톤당 사용료수입인 410~500원의 7~9배나 능가하고 있다. 한편 로테르담港의 1990~1991년간 총항만화물량은 약 2억 9천만톤으로서 톤당 사용료수입은 1,000원 내외를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항만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된다. 물론 이같은 비교를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임금수준, 물가수준 및 구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이상의 단순비교만으로도 우리나라의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수준 및 사용료 수입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8.3 各 代案別 使用料 水準

여기서는 위에서 분석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료 수준의 대안을 세가지로 제시하

<表 8-3>

새로운 使用料水準의 代案別 內容

사용료 수준의 대안	내 용
사용료 수준(I)	● 98년도의 원가회수율을 42.5%로 설정 ○ 각 시설별 이용율이 높아 시설별 원가수준을 회수하고 있는 사용료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요율수준을 유지하거나 원가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 각 시설별 이용율이 낮아 시설별 원가수준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항만 중에서도 향후 시설별 이용율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고 대형화주의 이용이 많은 항만에 대해서는 원가회수가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도 현행 원가회수율보다 소폭 인상한 원가 회수율을 설정함. ○ 항만이용율이 매우 낮아 원가의 회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항만에 대해서는 원가수준과 무관하게 정책요율을 설정함. ○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용료 수준은 현행 요율수준과 비교하여 $\pm 20\%$의 범위내에서 조정함.

사용료 수준의 대안	내 용
사용료 수준(Ⅱ)	● 98년도의 원가회수율은 41.5%로 설정 ○ 항만별 사용료 수준의 인상·인하율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용료 수준(Ⅰ)과 유사하게 설정함. ○ 단 각 사용료 항목의 上下限 개정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선박입출항료의 상한 인상률 : 18% - 선석사용료의 상한 인상률 : 15% - 부두사용료의 상한 인상률 : 10% - 각 사용료 항목의 하한 인하율 : 20%
사용료 수준(Ⅲ)	● 98년도의 원가회수율을 45.5%로 설정 ○ 각 사용료 항목의 인상율은 사용료 수준(Ⅱ)와 동일하게 설정함. ○ 단 부두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항목의 인하율은 0%로 하여 최저 요율을 현행 수준으로 조정함.

고자 한다. 각 대안별 사용료 수준을 설정한 근거 및 이유는 <表 8-3>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8.3.1 새로운 使用料 水準(Ⅰ)

전장에서 산정한 사용료수준은 원가를 100% 회수하기 위한 수준이었으나, 사용료 수준(Ⅰ)에서는 이를 다소 완화하여 사용료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자 한다.

(1) 船舶入出港料

- ① 부산항의 선박입출항료 원가는 이미 100%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요율수준을 인상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한다.
- ② 인천항 외항 및 울산항은 입항척수가 많아 현재의 使用料 水準으로 선박입출항료 원가를 이미 100% 회수하고 있으므로 현행요율 수준을 10% 인하시키도록 한다. 다만 인천항 선거내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 ③ 평택항도 현재의 使用料 水準으로 원가를 충분히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수준보다 15% 인하시키도록 한다.
- ④ 동해항, 군산항, 포항항의 경우에는 원가회수율이 매우 낮아 이를 다소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17% 인상시키도록 한다.

- ⑤ 마산항 및 여수항은 원가회수율이 매우 저조하지만 지나친 요율수준의 인상은 오히려 항만이용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용률 제고를 위해 현행수준 대비 10% 인상시킨 140원을 적용한다.
- ⑥ 대산항은 현행수준으로 원가회수가 가능하므로 현행요율수준을 유지한다.
- ⑦ 목포, 제주항은 원가회수율이 낮으나 지역개발 보조차원에서 현행 요율수준을 유지한다.

(2) 船席使用料

- ①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울산항, 평택항, 인천항 외항은 현행수준으로는 원가회수율이 낮으나 선박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현행수준에 비해 20% 인상하도록 한다.
- ② 동해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마산항도 현행수준으로는 원가회수율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항만이용률 또한 낮기 때문에 지나친 요율수준의 인상은 오히려 항만이 용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박의 유치를 위해 현행수준에 비해 10%만 인상한다.
- ③ 포항항은 현행수준으로 원가를 100% 회수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수준 대비 6% 인한다.
- ④ 부산항 재래부두, 인천항 선거내 부두는 현행수준으로도 원가를 충분히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수준 대비 20% 인한다.
- ⑤ 제주항은 원가회수율이 매우 낮으나 지역개발 보조차원에서 현행 요율수준을 유지한다.
- ⑥ 내항선은 외항선의 35% 수준을 적용한다.

(3) 埠頭使用料

- ① 부산항 및 인천항은 원가회수율이 매우 낮으나 항만이용율은 높기 때문에 원가회수율 제고를 위해 20% 인상한다.
- ② 평택항은 이미 원가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20% 인한다.
- ③ 동해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마산항 및 울산항은 원가회수율이 매우 낮으나 항만이용율 또한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항만이용율 제고를 위해 현행수준 대비 10%만 인상한다.
- ④ 포항항은 이미 원가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수준을 유지한다.

- ⑤ 제주항은 원가회수율이 매우 낮으나 지역개발 보조차원에서 현행 요율수준을 유지한다.

이상과 같은 산정근거하에 새롭게 산정한 使用料 水準(Ⅰ)은 다음과 같다.

<表 8-4>

새로운 使用料 水準(Ⅰ)

항 만	선박입항료 (원/GT)	선석사용료 (원/120h · GT)		부두사용료 (현행 대비 증감율 : %)	원가비중(%)
		외항선	연안선		
부산항	130	-	-	20	46.9
(컨부두)	-	410	140	-	-
(재래부두)	-	270	90	-	-
인천항	-	-	-	20	46.5
(선거내)	150	270	90	-	-
(선거외)	120	410	140	-	-
평택항	110	410	140	△20	120.4
동해항	150	370	130	10	18.8
군산항	150	370	130	10	21.2
대산항	130	370	130	-	56.1
목포항	130	370	130	10	15.1
여수항	140	370	130	10	52.6
포항항	150	320	110	0	55.1
마산항	140	370	130	10	28.1
울산항	110	410	140	10	73.7
제주항	130	340	120	0	2.2
합 계					42.5

使用料 水準(Ⅰ)을 적용할 경우 1998년도의 항만별 추정수입 및 원가회수율은 <表 8-5>와 같이 예상된다.

<表 8-5> 使用料 水準(Ⅰ) 適用時の 港灣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1998年度)

항만	선박입항로	수입(백만원)	선석사용료		수입 (백만원)	부두사용료 (인상율:%)	수입(백만원)	총수입	원가비중(%)
			외항선	내항선					
부산항 (컨부두) (채래부두)	130	26,080	-	-	20,489	20	25,511	72,080	46.9
	-	-	410	140	(8,401)	-	-	-	-
	-	-	270	90	(12,088)	-	-	-	-
인천항	-	11,639	-	-	20,902	20	11,978	44,519	46.5
(신거내)	150	(10,418)	270	90	(20,351)	-	-	-	-
(신거외)	120	(1,221)	410	140	(1,551)	-	-	-	-
평택항	110	1,859	410	140	1,144	△20	1,143	4,146	120.4
동해항	150	1,164	370	130	3,446	10	1,301	5,911	18.8
군산항	150	1,376	370	130	2,766	10	1,029	5,171	21.2
대산항	130	1,847	370	130	-	-	-	1,847	56.1
목포항	130	513	370	130	1,960	10	404	2,877	15.1
여수항	140	10,894	370	130	4,265	10	1,098	16,257	52.6
포항항	150	4,994	320	110	17,825	0	5,264	28,083	55.1
마산항	140	3,620	370	130	5,294	10	1,212	10,126	28.1
울산항	110	13,629	410	140	6,394	10	1,330	21,353	73.7
제주항	130	19	340	120	382	0	151	552	2.2
합계		77,634			85,867		50,421	213,922	42.5
(원가합계)		129,415			129,746		243,879	503,040	
(비중)		60.0			66.2		20.7	42.5	

새로운 사용료수준(Ⅰ)을 적용할 경우의 연도별 추정수입금액 및 원가회수율 추이는 <表 8-6>과 같이 추정된다.

<表 8-6> 使用料水準(Ⅰ)適用時の 年度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 推移

구분	'95년 현행 요율		'96년(Ⅰ)		'98년(Ⅰ)	
	사용료합계	원가회수율 (%)	사용료합계	원가회수율 (%)	사용료합계	원가회수율 (%)
부산항	56,851	43.2	65,810	47.5	72,080	46.9
인천항	38,426	70.7	37,698	58.3	44,519	46.5
(평택항)	3,493	127.4	4,015	136.8	4,146	120.4
동해항	4,371	18.0	5,394	20.4	5,911	18.8
군산항	3,675	18.6	5,040	23.8	5,171	21.2
대산항	1,484	62.4	2,889	109.0	1,847	56.1
목포항	2,132	15.1	2,677	17.2	2,877	15.1
여수항	12,152	49.9	14,959	56.7	16,257	52.6
포항항	23,189	53.0	26,686	57.9	28,083	55.1
마산항	7,253	25.1	9,790	29.6	10,126	28.1
울산항	18,307	77.5	19,220	76.3	21,353	73.7
제주항	423	2.0	560	2.5	552	2.2
합계	172,114	43.8	194,738	45.9	213,922	42.5

8.3.2 새로운 使用料 水準(Ⅱ)

8.3.1에서는 항만별 使用料 水準을 현행수준과 비교하여 $\pm 20\%$ 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였다. 그런데 20% 인상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인하율은 최대 -20%로 하지만, 인상율은 선박입항료의 경우 18%, 선석사용료는 15%, 부두사용료는 10%로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산정한 使用料 水準(Ⅱ)은 <表 8-7>에 나와있는 바와 같다.

<表 8-7>

새로운 使用料 水準(Ⅱ)

항만	선박입항료 (원/GT)	선석사용료 (원/120h · GT)		부두사용료 (현행 대비 증감율 : %)	원가비중(%)
		외항선	연안선		
부산항	130	-	-	10	45.2
(컨부두)	-	390	130	-	-
(재래부두)	-	270	90	-	-
인천항	-	-	-	10	45.6
(선거내)	140	270	90	-	-
(선거외)	120	390	130	-	-
평택항	110	390	130	△20	118.6
동해항	140	370	130	10	18.6
군산항	140	370	130	10	20.8
대산항	130	370	130	-	56.1
목포항	130	370	130	10	15.1
여수항	140	370	130	10	52.6
포항항	140	320	110	0	54.4
마산항	140	370	130	10	28.1
울산항	110	390	130	10	72.6
제주항	130	340	120	0	2.2
합 계					41.5

새로운 使用料 水準(Ⅱ)을 적용할 경우의 98년도 항만별 추정 수입 및 원가회수율은 <表 8-8>과 같이 예상된다.

使用料 水準(II) 適用時の 港灣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1998年度)

항 만	선박입항료	수 입 (백만원)	선석사용료		수입 (백만원)	부두사용료 (인상율 : %)	수 입 (백만원)	총수입	원가비중 (%)
			외항선	내항선					
부산항	130	26,080	-	-	20,074	10	23,385	69,539	45.2
(컨부두)	-	-	390	130	(7,986)	-	-	-	-
(재래부두)	-	-	270	90	(12,088)	-	-	-	-
인천항	-	10,944	-	-	21,807	10	10,980	43,731	45.6
(선거내)	140	(9,724)	270	90	(20,351)	-	-	-	-
(선거외)	120	(1,221)	390	130	(1,456)	-	-	-	-
평택항	110	1,859	390	130	1,083	△20	1,143	4,085	118.6
동해항	140	1,087	370	130	3,446	10	1,301	5,834	18.6
군산항	140	1,283	370	130	2,766	10	1,029	5,078	20.8
대산항	130	1,847	370	130	-	-	-	1,847	56.1
목포항	130	513	370	130	1,960	10	404	2,877	15.1
여수항	140	10,894	370	130	4,265	10	1,098	16,257	52.6
포항항	140	4,661	320	110	17,825	0	5,264	27,750	54.4
마산항	140	3,620	370	130	5,294	10	1,212	10,126	28.1
울산항	110	13,629	390	130	6,073	10	1,330	21,032	72.6
제주항	130	19	340	120	382	0	151	552	2.2
합 계		76,437			84,975		47,297	208,709	41.5
(원가합계)		129,415			129,746		243,879	503,040	
(비중)		59.1			65.5		19.4	41.5	

<表 8-8>의 새로운 使用料 水準(Ⅱ)를 적용할 경우의 연도별 추정수입금액 및 원가회수율 추이는 다음과 같다.

<表 8-9> 使用料 水準(Ⅱ) 適用時의 年度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 推移
(단위 : 백만원, %)

항 만	95년 현행요율		96년(Ⅱ)		98년(Ⅱ)	
	사용료합계	원가회수율	사용료합계	원가회수율	사용료합계	원가회수율
부산항	56,851	43.2	63,538	45.8	69,539	45.2
인천항	38,426	70.7	38,706	55.9	43,731	45.6
평택항	3,493	127.4	3,957	134.8	4,085	118.6
동해항	4,371	18.0	5,340	20.1	5,834	18.6
군산항	3,675	23.3	4,949	23.3	5,078	20.8
대산항	1,484	15.1	2,889	109.0	1,847	56.1
목포항	2,132	49.9	2,677	17.2	2,877	15.1
여수항	12,152	53.0	14,958	56.7	16,257	52.6
포항항	23,189	25.1	26,402	57.3	27,750	54.4
마산항	7,253	77.5	9,790	29.6	10,126	28.1
울산항	18,307	2.0	18,899	75.1	21,032	72.6
제주항	423		560	2.5	552	2.2
합계	172,114	43.8	189,708	44.7	208,709	41.5

8.3.3 새로운 使用料 水準(Ⅲ)

8.3.2에서는 항만별 사용료 인상율을 최대 +18%, -20%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하율을 0으로 하고, 인상율만 使用料 水準(Ⅱ)과 같이 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여 산정한 使用料 水準(Ⅲ)은 <表 8-10>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새로운 使用料 水準(Ⅲ)을 적용할 경우의 98년도 항만별 추정수입 및 원가회수율은 <表 8-11>과 같이 예상된다.

<表 8-10>

새로운 使用料 水準(III)

항만	선박입항료 (원/GT)	선석사용료 (원/120h · GT)		부두사용료 (현행 대비 증감율 : %)	원가비중(%)
		외항선	연안선		
부산항	130	-	-	10	47.0
(컨부두)	-	390	140	-	-
(재래부두)	-	330	110	-	-
인천항	-	-	-	10	51.3
(선거내)	150	330	110	-	-
(선거외)	130	390	140	-	-
평택항	130	390	140	△20	128.8
동해항	150	370	130	10	18.8
군산항	150	370	130	10	21.2
대산항	130	370	130	-	56.1
목포항	130	370	130	10	15.1
여수항	140	370	130	10	52.6
포항항	150	330	110	0	56.1
마산항	140	370	130	10	28.1
울산항	130	390	140	10	81.2
제주항	130	340	120	0	2.2
합 계					43.9

〈表 8-11〉 使用料 水準(Ⅲ) 適用時의 港灣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Ⅲ)(1998年度)

항 만	선박임항료	수 입 (백만원)	선석사용료		수 입 (백만원)	부두사용료 (인상율:%)	수 입 (백만원)	총수입	원가비중(%)
			외항선	내항선					
부산항 (권부두) (채래부두)	130	26,080	-	-	22,776	10	23,385	72,241	47.0
인천항 (선거내)	-	-	390	140	(8,002)	-	-	-	-
(선거외)	-	-	330	110	(14,774)	-	-	-	-
평택항	-	11,741	-	-	26,391	10	10,980	49,112	51.3
동해항	150	(10,418)	330	110	(24,873)	-	-	-	-
군산항	130	(1,323)	390	140	(1,518)	-	-	-	-
대산항	130	2,197	390	140	1,095	△20	1143	4,435	128.8
목포항	150	1,164	370	130	3,446	10	1301	5,911	18.8
여수항	150	1,376	370	130	2,766	10	1029	5,171	21.2
포항항	130	1,847	370	130	-	-	-	1,847	56.1
마산항	130	513	370	130	1,960	10	404	2,877	15.1
울산항	140	10,894	370	130	4,265	10	1098	16,257	52.6
제주항	150	4,994	330	110	18,354	0	5,264	28,612	56.1
	140	3,620	370	130	5,294	10	1,212	10,126	28.1
	130	16,107	390	140	6,101	10	1,330	23,538	81.2
	130	19	340	120	382	0	151	552	2.2
합 계		80,552			92,830		47,297	220,679	43.9
(원가합계)		129,415			129,746		243,879	503,040	
(비 중)		62.2			71.5		19.4	43.9	

<表 8-11>의 새로운 使用料水準(Ⅲ)을 적용할 경우의 연도별 추정수입금액 및 원가회수율 추이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表 8-12> 使用料水準(Ⅲ) 適用時の 年度別 推定收入 및 原價回收率 推移
(단위 : 백만원, %)

구분	'95년 현행 요율		'96년(Ⅲ)		'98년(Ⅲ)	
	사용료합계	원가회수율	사용료합계	원가회수율	사용료합계	원가회수율
부산항	56,851		66,240	47.8	72,241	47.0
인천항	38,426	43.2	40,945	63.3	49,112	51.3
평택항	3,493	70.7	4,307	146.7	4,435	128.8
동해항	4,371	127.4	5,394	20.4	5,911	18.8
군산항	3,675	18.0	5,040	23.8	5,171	21.2
대산항	1,484	23.3	2,889	109.0	1,847	56.1
목포항	2,132	15.1	2,677	17.2	2,877	15.1
여수항	12,152	49.9	14,959	56.7	16,257	52.6
포항항	23,189	53.0	27,215	59.1	28,612	56.1
마산항	7,253	25.1	9,790	29.6	10,126	28.1
울산항	18,307	77.5	21,048	83.6	23,538	81.2
제주항	423	2.0	560	2.5	552	2.2
합계	172,114	43.8	201,064	47.4	220,679	43.9

<表 8-4> ~ <表 8-12>를 종합한 것이 <表 8-13> 및 <表 8-14>이다. <表 8-13> 및 <表 8-14>에 나와 있는 대안별 사용료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로운 시설사용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 항만당국은 항만시설의 운영원가 수준을 어느정도 반영하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항만기능도 중시하여 지나친 인상 수준이 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대안별 시설사용료 수준은 기본적으로 원가수준을 고려하였으나 항만별 시설이용율 및 사용료수준이 항만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조정한 「정책요율」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각 대안의 차이는 요율인상폭으로서 제Ⅰ안은 현행요율수준의 $\pm 20\%$ 범위내에서 조정된 요율이며, 제Ⅱ안은 상한 $10\% \sim 18\%$ 수준, 하한 20% 수준에서 조정된 것이며, 제Ⅲ안은 현행요율수준에 비

各 代 案 別 港 灣 施 設 使 用 料 水 準 比 較

(단위 : 원)

<表 8-13>

항만	사용료(I)				사용료(II)				사용료(III)			
	(a)선박 임출항료	(b) 선석사용료		(c)부두사용료 (현행대비 인상수준(%))	(a)선박 임출항료	(b) 선석사용료		(c)부두사용료 (현행대비 인상수준(%))	(a)선박 임출항료	(b) 선석사용료		(c)부두사용료 (현행대비 인상수준(%))
		외항	내항			외항	내항			외항	내항	
부산항 (권부두) (재래부두) 인천항 (신거내) (신거외) 평택항 동해항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 여수항 포항항 마산항 울산항 제주항	130 - - - 150 120 110 150 150 130 130 140 150 140 110 130	- 410 270 - 270 410 410 370 370 370 370 320 370 410 340	- 140 90 - 90 140 140 130 130 130 130 110 130 140 120	20 - - 20 - - △20 10 10 - 10 10 0 10 10 0	130 - - - 140 120 110 140 140 130 130 130 140 140 110 130	- 390 270 - 270 390 390 370 370 370 370 320 370 390 340	- 130 90 - 90 130 130 130 130 130 110 130 130 120	10 - - 10 - - △20 10 10 - 10 10 0 10 10 0	130 - - - 150 130 130 150 150 130 130 140 140 130 130	- 140 110 - 110 140 140 130 130 130 110 130 140 120	10 - - 10 - - △20 10 10 - 10 10 0 10 10 0	

<表 8-14>

代案別 港灣施設使用料 收入과 原價比重

(단위 : 백만원)

항만	원가	사용료(I)				사용료(II)				사용료(III)						
		선박입출 항로 수입	선식사용 료 수입	부두사용 료 수입	합계	원가 회수율	선박입출 항로 수입	선식사용 료 수입	부두사용 료 수입	합계	원가 회수율	선박입출 항로 수입	선식사용 료 수입	부두사용 료 수입	합계	원가 회수율
부산항 (권부두)	153,724	26,080	20,489	25,511	72,080	46.9	26,080	20,074	23,385	69,539	45.2	26,080	22,776	23,385	72,241	47.0
(제래부두)	-	-	(8,401)	-	-	-	-	(7,986)	-	-	-	-	(8,002)	-	-	-
(제래부두)	-	-	(12,088)	-	-	-	-	(12,088)	-	-	-	-	(14,774)	-	-	-
인천항	95,820	11,639	20,902	11,978	44,519	46.5	10,944	21,807	10,980	43,731	45.6	11,741	26,391	10,980	49,112	51.3
(신거내)	-	(10,418)	(20,351)	-	-	-	(9,724)	(20,351)	-	-	-	(10,418)	(24,873)	-	-	-
(신거외)	-	(1,221)	(1,551)	-	-	-	(1,221)	(1,456)	-	-	-	(1,323)	(1,518)	-	-	-
평택항	3,444	1,859	1,144	1,143	4,146	120.4	1,859	1,083	1,143	4,085	118.6	2,197	1,095	1,143	4,435	128.8
동해항	31,399	1,164	3,446	1,301	5,911	18.8	1,087	3,446	1,301	5,834	18.6	1,164	3,446	1,301	5,911	18.8
군산항	24,364	1,376	2,766	1,029	5,171	21.2	1,283	2,766	1,029	5,078	20.8	1,376	2,766	1,029	5,171	21.2
대산항	3,292	1,847	-	-	1,847	56.1	1,847	-	-	1,847	56.1	1,847	-	-	1,847	56.1
목포항	19,052	513	1,960	404	2,877	15.1	513	1,960	404	2,877	15.1	513	1,960	404	2,877	15.1
여수항	30,896	10,894	4,255	1,088	16,257	52.6	10,894	4,255	1,088	16,257	52.7	10,894	4,255	1,088	16,257	52.6
포항항	50,986	4,994	17,825	5,264	28,083	55.1	4,661	17,825	5,264	27,750	54.7	4,994	18,354	5,264	28,012	56.1
마산항	36,018	3,620	5,294	1,212	10,126	28.1	3,620	5,294	1,212	10,126	28.1	3,620	5,294	1,212	10,126	28.1
울산항	28,989	13,629	6,394	1,330	21,353	73.7	13,629	6,073	1,330	21,082	74.7	16,107	6,101	1,330	23,538	81.2
제주항	25,062	19	382	151	552	2.2	19	382	151	552	2.2	19	382	151	552	2.2
합계	503,040	77,634	85,867	50,421	213,922	42.5	76,437	84,975	47,297	208,709	41.5	80,552	92,830	47,297	220,679	43.9
원가		129,415	129,746	243,879	503,040		129,415	129,746	243,879	503,040		129,415	129,746	243,879	503,040	
원가비중		60.0	66.2	20.7	42.5		59.1	65.5	19.4	41.5		62.2	71.5	19.4	43.9	

해 II안과 거의 유사하나 부두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의 최저수준을 현행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결국 제 I안에 의한 항만별 요율수준의 차이가 다른 안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대안에 비하여 항만별 원가수준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個別原價主義에 가까운 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항만시설사용료의 총수입면에서는 제III안 > 제 I안 > 제II안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總括原價主義의 입장을 선호한다고 하면 제III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II안을 적용하여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을 급격히 인상시키는 것은 화주나 선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제III안 보다는 제 I안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사용료수준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항만이용자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사용료 인상폭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表 8-15> 港灣施設使用料 代案別 追加負擔分 推定 (단위 : 백만원)

1995년도(α)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부두사용료 수입의 합계(A) : 158,249
	정박료, 수역이용료, 대합실이용료 수입의 합계(B) : 19,503
	항만시설사용료 총수입(C) : 177,752
1995년도의 사용료 수준으로 획득가능한 1998년도의 항만시설사용료 예상총수입 ($\alpha 1$): 217,754	
1998년도의 대안별 항만시설사용료 수입 추정치(A)($\beta 1$)	I : 213,922
	II : 208,709
	III : 220,679
1998년도의 해상시설사용료 수입추정치(B)($\beta 2$)	14,335
1998년도의 대안별 총항만시설사용료 (β) 총수입추정치(C)(현행수준대비 증가율)	I : 228,257(4.8%)
	II : 223,044(2.4%)
	III : 235,014(7.9%)

<표 8-15>의 1996년도 수입(α)은 실적치이며, 1998년도의 예상 총수입($\alpha 1$)은 '96년도의 실적치를 '98년도 예상치로 환산한 것이다. 1998년도의 해상시설사용료 수입추정치($\beta 2$)는 1996년도 실적치의 60%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1998년도의 대안

별 항만시설사용료 총수입추정치(β)는 β_1 과 β_2 를 합산한 것이다.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바에 의하면 사용료 수준(I)을 적용할 경우 항만이용자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부담분은 현행 부담분에 비해 4.8% 높으며, 사용료수준(II)을 적용할 경우에는 2.4%, 사용료수준(III)을 적용할 경우에는 7.9%로 추가부담분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같이 항만이용자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몫이 예상외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사용료체계가 현행 사용료 체계와는 대폭적으로 상이한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부두를 이용하는 항만이용자의 사용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사설부두시설의 이용자나 송유관, 벨트 컨베이어 등 자동적으로 하역되는 화물 및 해상시설만의 이용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第9章 結論 및 建議事項

9.1 研究의 考察

필자는 본 과제를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바탕으로 원가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용료 수준을 산정해 보았다. 새로운 시설사용료는 항만운영원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항만별 원가분석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같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사용료 수준을 새롭게 산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항만운영원가를 100% 반영할 수 있는 사용료 수준을 제시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항만은 운영원가를 적정수준 반영하여 항만을 경영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 행정사업의 일환으로 항만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원가회수에 반드시 구속되어 항만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가수준을 일부분 반영하여 사용료 수준을 산정할 필요는 있지만, 반드시 100% 원가회수에 구속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원가」 개념의 도입을 통한 사용료의 산정은 시급하고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투자비의 100%를 회수할 수 있는 사용료수준을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투자비의 100%를 회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항만운영원가를 전혀 무시하여 사용료를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항만시설이 계속 확충되어 이용자가 요구하는 시점에 요구하는 수준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항만에 대한 투자·운영자금이 계속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국가의 일반재원이 압박되어 가는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충분한 재원을 확보받기는 어렵게 되고 있다. 이같은 관점을 고려해 볼 때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운영자금은 가능한 한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관점에서 원가수준의 반영을 통한 사용료수준의 산정이 중요함을 새롭게 인식하였고, 이같은 관점에서 원가수준을 합리적 및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용료 항목과 사용료 부담주체를 새롭게 정립해 본 것이다.

9.2 研究의 結果

위와 같은 인식하에 수행해 온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첫째,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사용료항목」과 「원가회수대상시설」이 반드시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개별항만시설의 운영원가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는 있다.
- ② 사용료 항목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선박입항료의 부과기준은 「입항톤수」이며, 접안료의 부과기준은 「톤·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사용료항목별 사용료부과기준이 상이한 것은 港灣流通의 合理化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전국항만의 사용료 수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항만별 시설사용료 수준이 항만별 원가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정책적인 판단에 근거한 「정책요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현행사용료 체계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① 대다수 항만의 운영수지가 구조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울산항 등 항만에 따라서는 黑字港灣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대다수 항만이 적자상태에 있으며, 소규모 항만일수록 수지상황은 보다 악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그러나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은 항만운영원가를 분석하여 산정되고 있지는 않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기업회계결산보고서」를 통해 항만운영원가를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가분석결과는 시설사용료 산정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 ③ 원가회수대상시설과 사용료 항목간의 관계가 부적합한 경우가 일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역시설의 원가가 「선박입항료」 및 「화물입출항료」로 분리되어 징수되고 있어 사용주체와 사용료 부담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④ 사설돌핀시설 등을 이용하는 선박과 화물은 「정박료」 및 「화물입출항료」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데 부과금액이 공공부두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공공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공유수면의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사설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사설부두의 이용화물은 정부가 건설·운영하는 공공부두의 에프런 및 부두내도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부두를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공공부두를 이용하는 화물과 동일하게 이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의 원가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 ⑤ 「야적장 및 창고 전용사용료」가 「체화료」와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되어 원가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즉 체화료를 일종의 장치장사용료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겠다. 체화료는 원가와 무관하며 부두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도입된 일종의 penalty로 해석해야 타당할 것이다.
- ⑥ 현행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은 원가회수대상시설의 정확한 파악이나 원가수준의 분석을 통해 산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행 사용료 수준은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보다는 과거부터 답습되어 온 수준에 물가상승을 등 정책적 관점이 가미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사용료 수준이 원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다. 특히 현행사용료 수준은 항만토지(야적장, 항만내도로, 에프런 등)에 대한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정되고 있다. 항만토지는 국유이고, 동재산은 감가상각이나 유지보수가 불필요하며, 더구나 해양수산부가 구입자금을 투입하여 구매하는 재산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하여 운영원가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기 위해 살펴본 외국주

요항만의 시설사용료체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 ① 국가 및 항만에 따라 사용료 체계가 전부 상이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동일한 국가내의 항만이라 하더라도 사용료 체계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부두운영방식 및 특정항만에만 고유한 특수성 내지는 관행이 항만별로 상이한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 ② 사용료 체계는 크게 대별하여 「해상항만시설사용료」와 「육상항만시설사용료」로 구분하고 있다. 해상항만시설사용료는 대다수의 항만에서 「선박입항료」(Port Dues) 항목으로 선박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 및 대만 등에서는 같이 화주에게도 일부 부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육상항만시설의 사용료는 대부분 「船席使用料」(Dockage)와 「埠頭使用料」(Wharfage)로 선사 및 화주에게 각각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임대부두의 경우 사용료 체계는 매우 간소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단일부두를 일괄 임차한 임차인은 항만당국에 임대료만 지불하며 항만당국도 임대료 이외의 사용료(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 체화료 등)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임대부두의 경우 임차인과 실제의 부두이용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이용자가 임차인에게 시설사용료(선석사용료, 부두사용료 등)를 지불하는데 이는 항만당국에게 귀속되는 수입항목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실제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또한 임대부두의 경우 임차인은 실제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 항목이 아닌 「하역료」를 통해 임대료를 회수할 수도 있다. 사실 임대부두의 경우 어떤 사용료 항목으로 임대시설을 이용케 하며, 임대료를 회수하는가 하는 것은 임차인과 실제이용자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사항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④ 「부두사용료」의 궁극적인 부담주체는 화주이겠으나, 정기선 화물의 경우에는 선사가 代納 내지는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선사는 부두사용료를 화주에게 직접 청구하기도 하고, 해상운임으로 보전하기도 한다. 정기선의 경우 항만당국이 다수의 화주로부터 부두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항만운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가와와의 관련성은 미약하지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화물체화료」 및 항만내 「공유수면점용료」가 이에 해당한다.

- ⑥ 정박지 및 묘박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선박을 동 시설에 장기계선시키는 경우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一定水域을 독 점적으로 사용시킬 경우에는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하여 무제한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넷째, 위와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과제에서 현행 사용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료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새로운 사용료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① 항만시설별 이용주체와 동 주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사용료 항목간의 관계가 일치되며, 특정사용료 항목으로 원가를 회수해야 할 대상시설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었다. 특히 원가회수대상시설과 사용료항목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선박이 공해상으로부터 입항하여 접안할 때까지 이용하는 「해상시설」(수역, 항로, 방파제, 호안 등)의 사용료는 「선박입출항료」를 설정하여 「선사」에게만 부과하며, 화주에게도 부과하고 있는 현행 二重賦課體制로부터 탈피하였다. 그리고 선박이 접안하는 안벽과 안벽전면의 수심준설비용은 「선석사용료」를 설정하여 「선박」에게, 안벽의 배후부터 에프런, 장치장, 부두내도로 및 부두게이트까지의 육상항만시설의 원가는 「부두사용료」 항목을 설정하여 「화주」에게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장치장을 사용하는 화물은 이미 사용료를 부두사용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특별히 장치장 사용료라고 하는 항목으로 사용료를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장기보관을 하여 항만내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만 무료장치를 허용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체화료를 부과해야 한다.
- ② 「原價」概念을 도입하여 사용료 수준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원가는 항만별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개별 사용료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되도록 하였다. 사용료 설정을 위하여 원가분석이 요구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본 과제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의 원가파악방법 및 원가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가분석을 항만별로 수행하여 시설사용료 산정시에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사용료체계에서의 사용료수준은 현행 全國 同一料率體系로부터 탈피하게 되고 각 항만별 실정이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 ③ 운영원가와 관련성은 미약하지만,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

게 價格메카니즘의 도입을 통해 使用期間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였다. 부두내에 장기보관되는 화물 및 해상에서 장기간 하역하는 선박과 장기간 계선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같은 관점에서 「화물체화료」 및 「수역점용료」 등의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 ④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사용료 체계는 기존의 사용료 체계에 비하면 매우 간소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래에 임대부두를 이용할 경우 화주는 화물입항료, 체화료를 항만당국에 지불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사용료 체계에서는 화주가 항만당국에 시설사용료를 지불할 필요는 전혀 없게 된다. 화주가 公營埠頭를 이용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사용료 항목으로 임차부두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화주와 당해부두의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용료체계는 사용료 항목의 단순한 「간소화」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현행 사용료 체계의 근본적인 大變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⑤ 원가분석 및 새로운 사용료 수준의 산정을 통해 현행 사용료 수준이 원가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즉 원가수준의 약 41.9%만이 회수되고 있으며 항만에 따라 원가회수율도 각각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기대된 부산항과 인천항 등 이용율이 높은 항만의 원가회수율은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동 항만에서의 土地收益性이 원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반면,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시설이 상대적으로 작고, 민간자본에 의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울산항, 여수항, 대산항, 인천항 등의 경우에는 원가회수율이 평균보다 높거나 100%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3 建議事項

이상에서 분석한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설사용료 항목은 원가회수대상 시설별로 그 수준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향후 각 시설별 원가수준이 정확하게 집계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시설사용료 항목은 원가회수대상시설별로 감가상각비, 보수비 등 원가항목의 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선석사용료의 원가회수대상인 안벽

과 선석중 선석의 감가상각비 및 보수비는 현재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고 있다. 선석의 감가상각비란 안벽전면수심 준설비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산정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선석은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준설비는 현재 보수비로 계상되고 있다. 이미 과거에 투자된 준설비는 모두 당해연도의 보수비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시설사용료 산정시에는 이를 다시 고려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선석의 준설비를 안벽시설에 포함시켜 관리하여 선석사용료의 산정시에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석의 건설비(開發浚渫費), 보수비(維持浚渫費)를 항상 별도로 기록·관리해 두어야 한다.

또한 수역시설의 상당수도 준설을 통해서 확보된다. 그러나 수역시설은 무형의 시설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지 않고, 개발준설비이든 유지준설비이든 모두 보수비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준설비는 방파제 등 외곽시설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유지준설비는 보수비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가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항만은 상당기간 운영원가의 회수에 구속되기보다는 「政策料率」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운영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사용료를 산정해 본 결과 그 수준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었다. 더구나 항만별로 사용료 수준 또한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각 항만별 사용료 수준이 항만별 운영원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설정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隣接港灣간에 지나친 요율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이는 오히려 이용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상당기간 시설사용료 수준은 원가수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산정하기 보다는 상당부분 「政策料率」을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정책요율의 반영이 계속 필요함을 건의하고자 한다.

셋째, 항만자산에 대한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사실 현행 항만자산에 대한 관리체제는 매우 부실하다. 사실 항만운영원가의 분석을 통한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년도별 운영자금의 흐름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된 자산에 대한 관리기록이 제대로 정비되고 활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현행 해양수산부 지방청의 인력현황으로는 이같은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현황에 대한 정확한 집계 및 이에 대한 년도별 재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력의 보강 및 재조정이나 업무의 민간에 대한 위탁을 통해 재산관리 및 운영원가의 적절한 분석을 하여 운영원가의 산정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이다.

넷째, 새로운 사용료체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관련당사자가 그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한다. 사실 본 과제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는 현행 사용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大變革을 의미한다. 특히 송유관, 벨트컨베어 등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하역되는 화물이나, 사설부두만 통과하는 화물 등은 부두사용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임대부두를 이용하는 화물도 항만당국에게 부두사용료 및 체화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당해부두의 임차인에게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료항목의 변경 뿐만 아니라 사용료 부과주체 및 사용료 납부대상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 사용료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료 체계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항만당국과 부두임차인 및 실제부두이용자에게 이러한 변화의 내용 및 의미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변화의 내용과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용료체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항만당국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용료체계의 변화내용이 이용자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인식시켜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의미 등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사용료체계는 현행 사용료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행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동시에 변화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항자성대컨테이너부두, 신선대컨테이너부두, 부산항 4단계부두, 부산항 우암피더부두, 광양항 1단계부두, 인천항 4부두를 이용하는 화물에 대한 부두사용료의 징수권리는 향후 동부두들의 임차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런데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현행 수준의 轉賃料만을 징수하고 동부두들에서의 부두사용료 징수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한다면 임차인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중의 하나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②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전대료를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다. 동부두들을 이용하는 화물이 종래 화물입출항료를 부담하였는데 사용료항목이 「부두사용료」로 변경하여 징수주체를 정부로부터 임차인으로 변경한다면 임차인에게 특혜가 부여되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수입으로 귀속될 부두사용료 수입금

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대료가 현행 전대료에 추가되어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전대료 수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인데 이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 ⑤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전대하고 있는 부두에서의 부두사용료를 계속해서 해양수산청이 징수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징수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 방식이 채택되면 이는 현행 사용료 체계나 징수체계와 형식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거의 없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새로운 사용료 체계로의 이행이 불필요한 것이다.
- ⑥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전대하고 있는 부두에서의 부두사용료를 임차인이 이미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부두들에서의 부두사용료는 철폐하는 방법이다. 현재 인천항 4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임대하고 있는 부두의 경우 임대료는 일반부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관점을 고려해 볼 때 동부두들에서의 임대료에는 이미 부두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임대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임차인에 대한 부두사용료의 징수권리부여나 화주에 대한 부두사용료 부과를 철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동부두들을 이용하는 화주는 상당한 혜택을 입게 된다. (물론 임차인의 상황은 현행과 동일하게 됨.) 이렇게 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최근들어와 새롭게 임대한 소위 TOC부두에 대한 임대료 산정시에 부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TOC부두의 임대료속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이는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섯째, 원가분석을 통한 시설사용료의 산정 및 원가개념의 도입을 통한 항만운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企業會計制度를 적극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항만관계 회계는 기본적으로 현금수입과 현금지출 행위만을 취급하는 單年度式「官廳會計方式」으로 처리되고 있다. 물론 현행 회계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항만사업을 일반 민간기업의 사업과는 달리 이익을 창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복식부기를 바탕으로 하는「企業會計方式」을 적용하지 않고 현금수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바탕이 되어 있는「관청회계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회계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① 현금회계방식에서는 flow와 stock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고「資本的經費」

와 「經常的經費」가 구분되지 않는다.

- ② 현행 회계방식은 항만자산과 자금관리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자산의 적절한 대체, 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 ③ 특정 항만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적절성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회계방식」의 도입과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에도 해양수산부는 항만재무관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처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항만운영에 거의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작성·정리되고 있는 현행 항만회계처리에는 방대한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기업회계결산 보고서 자체의 작성에만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뿐 이의 유용한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목적달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 항만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가능하면 항만시설사용료 수입과 상호 연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특정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수입관계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당해 목적을 위해 투입된 투자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해 투자가 과잉상태인지, 아니면 과소상태인지의 여부와 항만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가의 여부 또한 평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 항만업무를 가능하면 港灣收支와 연계시켜야 하며 업무에 대한 업적평가도 이와 연계시켜야 한다. 항만수지를 업적평가와 연계시키게 되면, 실적을 중시하는 업무체계가 수립되게 되고, 그 결과 항만수지 또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 ㉢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코스트다운(cost down)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항만수지 결과를 업적평가와 연계시키게 되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게 되며, 이를 통해 이윤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원가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 ㉣ 원가분석 및 경영분석을 활용하여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과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경영부진에 대한 원인 및 처방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경영성과의 창출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한 것이다.

일곱째, 향후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 및 개정해 나가

야 할 것이다.

- ① 사용료 인상은 일정한 주기로 즉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가능한 한 인상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즉, 수년간 개정하지 않고 일시에 높게 인상하기 보다는 인상주기를 단축하면서 인상율을 낮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요율 인상시에는 이용자에게 널리 알려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료 인상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용자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④ 합리적인 불만은 수용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해 두어야 한다.

여덟째, 향후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의 결정은 가능하면 지방청에 위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해양수산부 본부에서는 차년도 시설사용료 개정수준의 범위를 미리 결정하여 지방청에 알리고 지방청은 이를 바탕으로 각 항만별 특성을 자율적으로 반영하여 사용료 수준을 산정하며 마지막으로 본부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은 港灣市場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고 당해항만의 고유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되므로 가능하면 당해항만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청에서 책임을 지고 사용료 수준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때 각 지방청별로 이용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결 요건임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개발부두전용사용료」는 향후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내에 흡수되고 「부두임대료」로 그 성격이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개발부두를 해양수산부는 특정하역회사에 독점적으로 전용사용케하고 그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대가를 「개발부두전용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동부두시설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하역회사는 하역료 수입중 일부를 전용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실제의 이용자인 화주나 선사는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으로 동부두시설의 사용대가를 지불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개발부두의 원가는 하역료로서 회수되고 있지 시설사용료로 회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개발부두를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내로 흡수하여 컨테이너부두나 TOC부두와 같이 임대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개발부두를 컨테이너부두나 TOC부두처럼 임대료를 산정하고 시설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개발부두를 컨테이너부두 및 TOC부두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① 사용료 산정방식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② 전

용사용기간의 短期性에 의해 전용사용자는 고정장비의 투자 등 기계화도 어렵게 되며, ③ 특정 하역회사를 객관적 기준없이 선정하여 전용사용케 하여 사업자선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개발부두의 운영도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로 끌어들여 TOC부두나 컨테이너부두와 같이 임대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모든 종류의 부두운영방식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열번째, 향후 항만운영원가의 회수율을 연도별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료 수준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전대료수입과 개발부두의 전용사용료 수입을 제외한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이 1995년 현재 원가수준의 약 42%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이 저조한 운영 원가회수율로는 항만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도별로 현행 수준의 원가회수율을 조정하여 2010년 무렵에는 80% 내외의 수준에는 도달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항만에 따라서 이용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높은 대산항, 울산항, 포항항, 여수항 등은 그 이전에 원가회수가 거의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제주항, 동해항, 마산항, 목포항 등 이용율이 매우 낮아 정책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항만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연도별, 항만별로 원가회수율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가지 노력이 경주될 것이고 그 결과 항만운영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다.

더구나 현재의 우리나라 항만운영수입은 일부 선진경쟁항만의 운영수입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경쟁항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항만이용자 또한 이러한 원가회수율 목표설정에 무조건 저항하기 보다는 항만당국의 사정 및 외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께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열한번째, 항만시설사용료의 최종 부담자인 화주도 항만시설사용료의 소폭적인 인상에 지나치게 민감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表 9-1>은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무역업계의 연도별 주요물류비 부담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위 표에 의하면 화주의 물류비에 가장 많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항목으로는 「컨테이너육송료」 및 「항만하역료」이며 그 다음으로는 「항만운송부대서비스료」 및 「THC료」로 나타나 있다. 「항만시설사용료」의 부담분은 그 다음 차례이며 비중에 있어서도 4~8%를 점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주

<表 9-1>

貿易業界의 年度別 主要物流費 負擔現況

항 목	93년부담		94년부담		95년부담		96년부담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항만하역료	4,837	26.4	5,035	25.7	6,516	27.4	7,216	269.1
검수·검량·감정료	494	2.7	511	2.6	681	2.9	778	2.8
보세장치장/창고하역료	1,124	6.1	1,170	6.0	938	3.9	1,089	3.9
THC	1,857	10.1	2,126	10.8	2,013	8.5	2,393	8.7
CFS charge	779	4.2	781	4.0	-	-	-	-
영업용보세구역보관료	1,105	6.0	1,217	6.2	1,392	5.9	1,598	5.8
컨테이너육송료	4,320	23.6	4,688	23.9	6,587	27.7	8,092	29.3
항만시설사용료	860	4.7	903	4.6	1,677	7.1	1,975	7.2
항만운송부대서비스료	1,667	9.1	1,725	8.8	2,233	9.4	2,594	9.4
항공화물취급수수료	30	0.2	32	0.2	37	0.2	42	0.2
예선료	537	2.9	573	2.9	675	2.8	739	2.7
도선료	191	1.0	204	1.0	254	1.1	284	1.0
컨테이너세	438	2.4	499	2.5	567	2.4	611	2.2
경비료(부산·인천)	104	0.6	148	0.8	204	0.9	200	0.7
합 계	18,333	100	19,612	100	23,774	100	27,611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내부자료에 의한.

및 물류업계의 항만시설사용료의 변화에 대한 반응은 지나치게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항만시설사용료도 화주의 전체 물류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동 요인이 점하는 비중에 걸맞는 반응이 중요하지 마치 항만시설사용료가 전체 물류비를 주도하는 듯한 자세로 반응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이 결국은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해 본다면 항만시설사용료의 점진적인 인상은 선박의 체선현

황 완화 및 질높은 항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고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열두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용료 부과기준중 선박규모로서는 GRT, NRT, LOA 등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화물기준도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이외의 화물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료 부과기준을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했다.

한편 사용료항목의 간소화와 관련하여 항만이용자에게 보다 중요한 시설은 「해상항만시설」 보다는 「육상항만시설」이다. 따라서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개편시 해상시설보다는 육상시설에 많은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항만시설에 동일한 정도의 비중이 두어진 느낌이 든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김형태, 「부두운영효율화 방안」, 해운산업연구원, 1993년 12월.
- 김형태, 「항만특별회계의 신설과 항만운영과제」, 해운산업연구원 「해운산업연구」, 1994년 2월호.
- 김형태,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해양수산물동향」, 1997년 6월호.
- 김형태,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개편방안」,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항만정책토론회 자료, 1997. 6. 16.
- 손장현, 「기업회계제도의 추진현황과 발전계획」, 「계간 해운항만」, 해운항만청, 1991 겨울호.
- 윤주현, 「항만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평가제도 연구」, 해운산업연구원, 1991년 5월.
- 이상윤,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적극 검토되어야」,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해양수산물정보」 866호 (1997. 9. 8)
- 임진수·조용갑·최종희, 「항만원가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운산업연구원, 1994. 12.
- 정봉민, 「항만시설사용료 정책방향」, 해운산업연구원, 1994.
- 해양수산부, 「기업회계결산보고서」, 각 연도판.
- 해운산업연구원, 「항만시설사용료 효율체계 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1996. 12.
- 秋山龍・岡部保 監修, 「歐美諸國の港灣管理と財政」, 日本港灣協會・國際港灣協會財團, 1977年.
- 岡野行秀, 「外部環境の變化と港灣經營」, 日本港灣經濟學會, 「港灣經濟研究」, No, 22, 1984年.
- 喜多村昌次郎, 「歐米の港灣勞動」, 港灣綜合研究所, 1973年.
- 東京都 港灣局, 「東京港 港灣料率表」, 1992年.
- 横浜市 港灣局, 「横浜港 港灣料率表」, 横浜港振興協會, 1992年.
- Baudelaire, J. G. *Port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okyo : The IAPH, 1986.
- Bennathan, E. and A. A. Walters, *Port Pricing and Investment Policy for*

-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Board of Commissioners of the Port of New Orleans, *Dock Department Tariff*, 1990.
- Committee on Finance U.S. Senate, *Users Fee for Ports and Waterway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6.
- Dep. of Transportation(Taiwan), *Taiwan International Ports Tariff of Port Charges*, 1994. 1.
- ESCAP, *ESCAP/UNDP Model Port Tariff Structure Find Report*, 1989.
- Goss, R. O., *Seaports Should Not Be Subsidized*,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Vol. 13, No. 2, 1986.
- John Arnold, *Port Tariffs : Current Practices and Trends*, World Bank, 1988.
- Marad(U.S.A.), *Usage Pricing for Public Marine Terminal Facilities*, 1981.
- Marad(U.S.A.), *A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Status of the Public Ports of the United States 1986-1987*, Washington, D.C., 1988.
- Paul, Amundsen, *Current Trends in Port Pricing*, U.S. Dep. of Commerce / Marad, 1978.
- Port Klang, *Port Tariff*, 1995.
- Port of L.A., *Tariff No. 4. Naming Rates, Charges and Regulation*.
- Port of Portland, *Terminal Tariff No. 7*. 1994.
- Port of Seattle, *Terminal Tariff No. 4*.
- Port of Singapore Authority, *PSA Tariff*, 1996.
- Port of Singapore Authority, *Annual Report*, 1994.
- Rotterdam Port Management, *Annual Report*, 1991.
- UNCTAD, *Port Pricing*, New York, 1975.
- U.S. Dep of Commerce, *Automated Port Pricing Model*, 1986.
- Vancouver Port Corporation, *Wharfage and Berthage Tariff Notice N-1*. 1995.
- 1.

부 록

〈부록 A〉 항만별 시설현황

〈부록 B〉 항만별 시설사용료 원가분류표

〈부록 C〉 항만별 98년도 추정원가표

〈부록 D〉 부두사용료 산정방식

〈부록 E〉 현행사용료 적용시 98년도 사용료
예상수입 및 원가회수율

<부록 A> 港灣別 施設現況

1. 港灣別 埠頭用地 現況

항만	면적(m ²)	지가(백만원)
부산항		
(재래부두)	(385,485)	(333,572)
(컨부두)	(2,037,679)	(1,310,720)
(감천부두)	(209,707)	(114,521)
인천항		
(선거내)	(1,198,956)	(230,938)
(외항)	(602,764)	(128,661)
(연안)	(28,409)	(8,174)
평택항	96,128	3,720
동해항	976,827	78,259
포항항	1,014,544	54,259
울산항	773,463	98,584
마산항	1,002,885	122,325
여수항	231,422	26,089
목포항	210,950	37,015
군산항	897,527	49,587
대산항	-	-
제주항	370,133	201,777

2. 港灣別 接岸施設 現況

1) 부산항

항 만	부두명	접안능력	항 만	부두명	접안능력
북항	1부두	200×2	북항	신선대부두	50,000×4
		3,000×1		양곡부두	50,000×1
		10,000×4		7부두	5,000×2
	2부두	4,000×1			6,000×1
		10,000×3			15,000×1
		20,000×1		8부두	1,000×1
	중앙부두	10,000×4			10,000×3
	3부두	500×1			15,000×2
		5,000×2		연합부두	1,000×1
		10,000×3			4,000×3
		20,000×1		동명부두	500×1
	4부두	3,000×1			1,000×2
		3,500×1			5,000×1
		5,000×1		용호부두	20,000×1
		10,000×3		청학부두	1,000×3
		20,000×1		동국제강	500×3
		20,000×1			3,000×3
	감만부두	10,000×1	북항유류부두	유공돌핀	5,000×1
		5,000×1		LG안벽	5,000×2
	자성대부두	50,000×4			20,000×1
		10,000×1		경인돌핀	6,000×1
항 만	부두명	접안능력	항 만	부두명	접안능력
감천항	중앙부두	20,000×1	감천항	5부두	10,000×2
		10,000×1			5,000×3
		5,000×1		6부두	50,000×1
		3,000×1			20,000×1
	1부두	8,000×1		7부두	50,000×2
		6,000×1			
		5,000×1			
		3,000×1			
		2,000×3			
	2부두	20,000×2			
		10,000×2			
	3부두	10,000×1			
		5,000×4			
		1,000×1			

2) 인천항

항 만	부두명	접안능력	항 만	부두명	접안능력
선거내	1부두	50,000×1	남항	한일탱크돌핀	3,000×1
		40,000×3		LG가스돌핀	5,000×1 2,000×1
		30,000×1		쌍용돌핀	10,000×1
		5,000×2		LNG돌핀	75,000×1
		2,000×3		한라돌핀	10,000×1
	2부두	30,000×1	북항	동양돌핀	10,000×1
		20,000×2		한전돌핀	20,000×1
		8,000×4		LG돌핀	5,000×1
	3부두	20,000×1		LG가스브이	40,000×1
		10,000×2		KAL돌핀	50,000×1
		8,000×4		한화돌핀	75,000×1 50,000×1 75,000×1
	4부두	30,000×2	연안항	수협잔교	-
		50,000×1		7잔교	-
		40,000×3		유공잔교	20,000×1 3,000×1 1,500×1
	5부두	50,000×5		쌍용돌핀	20,000×1 500×1
	6부두	50,000×2 30,000×3		LNG부두	64,000×1
	7부두	50,000×4	평택항	한전돌핀	20,000×1
		2,000×1		LPG돌핀	55,000×1
	8부두	50,000×4		철강부두 (귀속)	50,000×1 30,000×2
남항	석탄부두	100,000×1 50,000×1		관리부두	436m
	모래부두	3,000×2			
	물양장	3,000×1			

3) 동해항

항 만	부 두 명	접안능력	비 고
동해항	중앙부두	50000×1	석회석
	북부두	30000×2 5000×1 3000×1	시멘트·부원료·원목 등 (동양시멘트 운영)
	남부두	30000×2 10000×1 5000×1	시멘트·부원료(쌍용양회 운영)
	석탄부두	50000×1	유연탄(동해산업운영)
	돌핀	3000×1	유류(LG정유/유공)(민유)
목호항	중앙부두	3000×1	잡화·백운석(일반부두)
	1부두	6000×2	무연탄·크링카·백운석 등
	2부두	168m	해경부두
	3부두	10000×2	시멘트·유류 (시멘트 부두)
	4부두	5000×1	시멘트(시멘트 부두)
삼척항	1부두	1000×3	유류
	2부두	8000×1 5000×1	시멘트(개축, 국가귀속, 투자비 보전)
	3부두	5000×2	시멘트
옥계항	1부두	50000×1	유연탄(귀속, 무상전용사용)
	2부두	20000×1	시멘트·부원료(귀속, 무상전용사용)
	3부두	10000×1	시멘트·부원료(귀속, 무상전용사용)
	돌핀	5000×1	유류(민유)
속초항	신부두	5000×2	해경, 연안여객선, 관광선 이용
	관공선부두	3000×2	
		1000×2	

4) 군산항

부두명 (준공년도)	구분	연장 (m)	접안능력 (톤)	선석 수	선석길이 (m)	하역능력 (톤/연)	비고
외항1부두 (’79.6)	전용(G/C) 일반	525	20,000 10,000	1 2	165	453,600 478,500	크레인 300T/H
외항2부두 (’90.6)	일반	551	20,000 5,000	2 1	195 130	604,500 162,500	
외항3부두 (’95.7)	전용(시멘트) 일반	640	20,000 20,000	1 2	195	756,000 604,500	벨트콘베이어 500T/H
자동차부두 (’97.3)	전용	300	20,000	1	300	3,024,000	귀속, 무상전용사용 (대우자동차)
군산내항	부잔교	444	8,000	3	11		역무선사용 수심(-)2.0이하
돌핀부두	한국유리돌핀	53	700	1		226,800	크레인150T/H(규사)
	한화화학돌핀	60	3,000	1		액체화물(VCM)	
	한국전력돌핀	200	2,000	1		유류	
			1,000	2		“	
	유공LG돌핀	282	3,000	1		“	
			6,000	1		“	
	쌍용정유돌핀	119	3,000	1		“	
			1,500	1		“	
현대정유돌핀	150	5,000	1			“	
물양장	군산내·외항	1,239		719	200	143,800	(-)3.5M 이하
				520	400	208,000	(-)3.5M 이상
소계	23선석(2만×7, 1만×2, 8천×3, 6천×1, 5천×2, 3천×3, 2천×1, 1.5천×1, 1천×2, 0.7천×1)					6,662,200	
장항부잔교	일반	285	8,000	2	165	478,500	국유(한라싸이로 는 귀속)
장항물양장	물양장	968			923	184,600	어선물양장
소계	2선석(8천×2)					663,100	

5) 대산항

항만	부두	선석명	접안능력(DWT)	비고
대산항	현대정유돌핀	계선부표	250,000	민유
		11	400	
		12	3,000	
		13	5,000	
		14	20,000	
		15	100,000	
		16	30,000	
	현대석유돌핀	21	100,000	민유
		22	10,000	
	삼성종합돌핀	31	100,000	민유
		32,33	10,000×2	
	물양장 현대정유 현대석유 삼성종합		3,000 3,000 4,000	민유
보령항	보령화력	11	110,000	민유
	돌핀	12	135,000	귀속, 전용사용
	물양장 보령화력		3,000	귀속, 전용사용
태안항	태안화력돌핀	11	150,000	민유
	물양장 태안화력		2,000 1,000	민유

6) 목포항

항만	부두	선석명(길이m)	접안능력	비고
목포항	제1부두(외항)	11(168)	10,000×1	
		12(250)	30,000×1	
		13(240)	30,000×1	
		14(135)	5,000×1	
	제2부두(삼학내항)	21(180)	2,000×2	
		22(340)	700×3	
		23(160)	100×4	
24(208)		100×4		
제3부두(영해내항)	물양장		어선·소형선	
제4부두	카페리부두(150) 잔교(4기)	4,000×1 500톤이하	여객선	
제5부두(서산물양장)	어선부두(528)	200톤이하	어선	
목포항	대불항부두 한라부두(중력식)	1.5(340)	20,000×1.5	정부투자
		시멘트(160)	10,000×1	귀속·무상전용사용
	쌍용부두(중력식) 동양돌핀	조선소강제(216)	20,000×1	“
		165	10,000×1	귀속·무상전용사용
			10,000×1	민유
			10,000×1	
완도항	제1부두	11,12(141)	300×2	
		관공선잔교	100톤이하	
		물양장(1954m)	300톤이하	
완도항	제2부두	여객잔교	100톤이하	
		21(275)	3,000×1	
		카페리잔교	5,000×1	
		22(190)	100톤이하	
완도항	제3부두	31(210)	5,000×1	
			20,000×1	

7) 여수항

부두별	선석별	길이(m)	수심(m)	이용선박규모 (DWT)	비고
1부두	11	145	5.3	5,000	
	12	145	6.3	5,000	
2부두	21	121	4.8	2,000	
3부두	31	80	4.9	1,000	
	32	100	6.3	2,000	
	33	110	6.1	3,000	
	34	145	6.2	6,000	
	35	145	6.2	6,000	
	-	239			
관공선부두 물양장	1부두 물양장	892			
	2부두 물양장	503			
	구항물양장	440			
	수협물양장	123			
	여객부두	137			

8) 포항항

부두명		선석명	길이 (m)	접안능력 (DWT)	야적장 (천㎡)	하역장비 (기)	임항창고 (동)
총계		43선좌	9,051	1,165,000	906	27	9
신 항 부 두	소계	36선좌	8,269	1,143,000	800	27	4
	1부두	10번	1,680	250,000	88	9	-
		11		150,000			
		12,13,14		100,000×3			
	(소계)	(5선좌)		(700,000)			
	2부두	21번	1,010	2,000	40	3	-
		22		5,000			
		23		50,000			
		24		20,000			
	(소계)	(5선좌)		10,000 (87,000)			
	3부두	31, 32번	545	5,000×2	44	4	-
	(소계)	(3선좌)		10,000 (20,000)			
4부두	41번	420	30,000	24	4	-	
(소계)	(2선좌)		20,000 (50,000)				
5부두	51번	855	20,000	89	4	2	
	52		10,000				
(소계)	53,54 (4선좌)		5,000×2 (40,000)				
6부두	61,62,63	734	2,000×3	57	-	-	
(소계)	64 (4선좌)		5,000 (11,000)				
7부두	70,71	1,577	10,000×2	232	-	-	
	72		5,000				
	73		10,000				
	74,75		30,000×2				
(소계)	76 (7선좌)		20,000 (115,000)				
8부두	81,82	1,448	30,000×2	226	3	2	
	83		10,000				
	84,85		20,000×2				
(소계)	86 (6선좌)		10,000 (120,000)				
구 항 부 두	소계	7	782	22,000			
	송도부두	1,2 3,4,5	544	5,000×2 2,000×3			
	여객부두	1,2	238	3,000×2			
	물양장	송도부두 동빈부두 신항5부두	150m 1,813m 25m				

9) 울산항

구분	수심 (m)	길이 (m)	선석 수	접안능력(DWT×척)	하역능력(천톤) / 비고
합계		10,352	68	1,894,000	17,257
소계		7,626	48	586,000	17,257
석탄부두	12	270	1	40,000×1	1,512
1부두	8	149	1	5,000×1	298
2부두	9,12	602	3	40,000×1/20,000×1 /5,000×1	1,552
3부두	9	347	2	10,000×2	798
4부두	11	322	2	20,000×1 5,000×1	764(비료원료 : 기계하역)
5부두	11.5	220	1	20,000×1	561
6부두	13	750	3	30,000×3	1,872
7부두	9	450	2	30,000×1 20,000×1	1,139
일반부두	8	799	8	5,000×2/1,000×6	1,490
현대정공돌핀	6	24	1	1,000×1	잔교식·국유·국가관리
역무선부두	8	414	1	1,000×1	
유공1부두	7.5	260	2	5,000×2	중력식·귀속·전용사용
유공2부두(중력식)	7.5	150	1	5,000×1	중력식·귀속·전용사용
한진중공업부두	7	190	2	5,000×1/1,000×1	중력식·귀속·전용사용 (조선소)
용잠1부두	7	143	1	3,000×1	중력식·귀속·전용사용
용잠2부두	11	20	1	20,000×1	돌핀·귀속·전용사용
용잠3부두	7	100	1	3,000×1	중력식·귀속·전용사용
양곡부두	13	185	1	50,000×1	3,024 (잔교·귀속·전용사용)
가스부두	7.5	360	3	1,000×1/3,000×1 /5,000×1	중력식·귀속·전용사용
염포부두	5	225	2	1,500×2	405 (중력식·귀속·국가관리)
자동차부두	11.5	830	3	40,000×3	3,026 (잔교식·귀속·전용사용)
화암부두	7	816	6	4,000×6	816 (중력식·귀속·전용사용)

구 분		수심 (m)	길이 (m)	선석 수	접안능력(DWT×척)	하역능력(천톤) / 비교
소계			2,726	20	1,308,000	
울 산 항	유공2부두(잔교식)	8	430	3	$3,000 \times 2/4,000 \times 1$ $/6,000 \times 1$	민유
	유공3부두	12	130	1	$35,000 \times 1$	민유(돌핀)
	유공4부두	10	228	2	$10,000 \times 1/4,000 \times 2$	민유
	유공5부두		798	4	$2,000 \times 2/4,000 \times 1$ $/5,000 \times 1/10,000 \times 1$	민유
	유공6부두	15	347	1	$70,000 \times 1$	민유
	유공7부두	15	370	1	$70,000 \times 1$	민유
	유공8부두	18	400	1	$150,000 \times 1$	민유
	동양부두	6	23	1	$1,000 \times 1$	민유
	유공브이(Ⅰ)	22	1기	1	$300,000 \times 1$	민유(브이)
	유공브이(Ⅱ)	27	1기	1	$300,000 \times 1$	민유(브이)
	유공브이(Ⅲ)	27	1기	1	$325,000 \times 1$	민유(브이)
소계				6	120,000	
온 산 항 국 유 부 두	온산1부두	11	210	1	$20,000 \times 1$	중력식·귀속·전용사용 (기계하역 비료원료:울산비료)
	온산2부두	11	210	1	$20,000 \times 1$	중력식·귀속·전용사용 (기계하역 동정강:럭키금성)
	온산3부두	12	230	1	$20,000 \times 1$	잔교식·귀속·전용사용 (기계하역 동정강:고려아연)
	온산4부두	11	210	1	$20,000 \times 1$	중력식·귀속·전용사용 (기계하역:한라시멘트)
	쌍용1부두	12	270	2	$20,000 \times 2$	돌핀·귀속·전용사용
소계				11	810,000	
온 산 항 민 유 부 두	쌍용정유브이	27	1기	1	$260,000 \times 1$	민유
	석유개발공사브이	27	1기	1	$300,000 \times 1$	민유
	쌍용2부두	15.5	340	2	$80,000 \times 1, 10,000 \times 1$	민유
	정일부두	11	178	1	$20,000$	민유
	유화1부두	12	320	2	$50,000 \times 1, 30,000 \times 1$	민유
	유화2부두	11	391	2	$20,000 \times 2$	민유
	유화3부두	9	275	2	$10,000 \times 2$	민유
미포국유부두		9	210	1	$20,000$	중력식·귀속·전용사용

10) 마산항

부 두 명	구분	건설 연도	연장 (m)	선석길이 (m)	선석수	수심	접안능력 (톤)	시간당 능력	비고
제1부두	일반부두	'43	292	155	2	-6	8,000		
제2부두	일반부두	'43	385	70	3	-5	1,000		장치장 없음. 탱커선
제3부두	일반부두	'76	420	195	2	-11	20,000		잡화·철재
중앙부두	물량장	'43	1,022	400		-3			골재류, 소형선 및 장치장으로 이용
쌍용부두	전용부두	'77	돌핀	1기	1	-7	5,000	350	컴프레사(500t/h)
제4부두	전용부두	'82	1,050	1기	1	-11	20,000	280	L.L.C(40t/h)
	일반부두			195	4		20,000		
제5부두	일반부두	'87	420	195	2	-11	20,000		
한중부두	전용부두	'82	240	2기	1	-11	20,000	500	G/C(500t/h)
삼성부두	전용부두	'95	80	1기	1	-5	3,000	315	G/C(450t/h)
서항부두	일반부두	'85	821		3	-11	20,000		수심 미확보로 능력제외
물 량 장	물량장		667	667					수심 3.5m이상
유류부두	유공부두	'83	계선주		1	-7	3,000		유류제품으로 제외
	호유부두	'90	돌핀		1	-7.5	6,000		
	한일합섬	'90	계선주		1	-7	3,000		
합 계	2만×13, 8천×2, 6천×1, 5천×1, 3천×3, 1천×3 (23)								

부두명	구분	연장 (m)	선석길이 (m)	선석수	접안능력 (톤)	시간당 능력	비고
통영항	안벽	일반부두	140	105	1	3,000	배면부지 없으나 접안가능
	물양장	물양장	1,028	1,028			
	동호안	안벽	936		3	1,000	
	동호안	물양장	1,005				
진해항	안벽	일반부두	883		7	20,000×1	(기계하역)귀속·유상사용 정부건설 정부건설
	물양장	물양장	123			20,000×1 1,000×5	
삼천포항	한전부두	전용부두	580		1	100,000	Ship Unloader 예프런만 귀속, 무상사용 Ship Unloader 귀속, 무상전용사용 정부건설 정부건설 정부건설
	잡화부두	일반부두	643		1	50,000	
					1	10,000	
					2	5,000	
					2	1,000	
장승포항	물양장		968				
	잔교			6기			
고현항	안벽	전용부두	122	70	1	20,000×1	크레인 (15톤) (삼성중공업)귀속, 무상전용사용 국가건설
		일반부두	110		1	1,000×1	
옥포항	안벽	전용부두	100		1	20,000×1	크레인 (30톤/h) (대우조선)귀속, 무상전용사용

11) 광양항(여천)

부두별	선석 별	길이 (m)	수심 (m)	이용선박규모 (DWT)	비고
사포부두	1	319	15.7	100,000	중력식, 귀속, 무상전용사용
낙포부두	1	120	6.7	3,000	국가건설(돌핀)
	2	200	9.4	20,000	"
	3	220	9.4	20,000	"
	4	270	14	50,000	"
	5	240	12.6	50,000	"
중흥부두	1-3	300	6.6	3,000	국가건설(일부민간이 보전, 무상 사용)
	4	130	8.5	5,000	귀속(무상전용)
	5	130	8	5,000	귀속(무상전용)
LPG 부두	1	352	11.2	65,200	국가귀속(돌핀) 무상사용
석탄부두	1	185	7.4	15,000	국가귀속(화력발전소)무상사용
호남정유부두	1	125	11.6	7,000	민유(돌핀)
	2		6.8	2,000	"
	3	305.5	13	35,000	"
	4		5.6	5,000	"
	5	216.5	12.1	50,000	"
	6		7	5,000	"
	7	170	11.6	12,000	"
원유부두	1	405	21.5	255,000	민유(돌핀)
	2	481	23.5	285,000	"
코스모스 부두	1	123	6.6	5,000	민유(돌핀)
호유에너지 부두	1	120	5.1	3,000	민유(돌핀)
럭키소재 부두	1	280	6.6	5,000	민유(돌핀)
낙포물양장	1	100	5.6		국가건설
중흥물양장	1	50	0.8		"
코스모스 물양장	1	90	0.2		"
삼남부두	1			3,000	돌핀(민유)
사포 2부두	1			100,000	안벽(귀속, 무상전용사용)

부두별	선석별	길이(m)	수심(m)	이용선박규모(DWT)	비고
원료부두	1, 2	각 130	15	5,000 × 2	귀속(전체)
	3	370	21.5	200,000	
	4	400	21.5	250,000	
	5	400	22.5	250,000	
	6	370	18	150,000	
C.T.S반출부두	1	262.5	11.8	30,000	귀속
제품부두	1	280	14	50,000	귀속 국가건설 귀속, 무상전용 사용 " "
	2, 3, 4	각 240	12	30,000 × 3	
	5	240	11	20,000	
	6,7,8,9,10	각 126.6	7	5,000 × 5	
	11	107	7	3,500	
관리부두	1	103	4.8	3,000	국가건설 " "
	2	103	4.8	3,000	
	3	61	4.0	1,000	
컨테이너부두	1	280	14	50,000	국가건설
연관단지물양장		132.2			
고철부두	5	260	12	50,000	귀속, 무상전용 사용

12) 제주항의 접안시설 현황

항만	부두명	접안능력	비고
제주항	제1부두(물양장) 11번 선석~16번	329m, 수심(-3m), 100톤×6	관공선·항내운항선용
	제2부두 21 22 23 24	3000×1(-5m) 3000×1(-5m) 300×1(-4m) 1000×1(-4m)	여객선 부두
	제3부두 31-33 34-35 36-37	5000×1(-7.5m) 3000×1(-6m) 3000×1(-6m)	일반부두
	제5부두 51-52 53-54 57-58 55-56	1000×2(-5m) 3000×1(-6m) 3000×1(-6m) 5000×1(-7.5m)	일반부두
	제6부두 61 62	10000×1 1000×1	여객/일반부두
	서부두(물양장)	150m	어선전용
	제1부두 제2부두 제3부두 관공선부두 어선부두	300×4 1000×1 2000×1 3000×3 57m 257m	여객선부두
합계			

13) 항만별 집안능력 총괄

항만	부 두 명	총집안능력(DWT)	연간 적정집안능력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북항부두 감천부두 돌핀(민유)	410,000 485,400 411,000 41,000	
	소계	1,306,400	6,584,256,000
인천항	선거내부두 남항돌핀(민유) 남항부두(귀속·전용사용) 남항석탄부두 북항돌핀(민유) 연안항돌핀(민유) ├ 평택LNG부두 ├ 평택돌핀(민유) ├ 평택부두(귀속·전용사용) └ 평택국가관리부두	1,462,000 122,000 9,000 150,000 315,000 45,000 ├ 64,000 ├ 77,000 ├ 80,000 └ -	
	소계	1,676,000	8,447,040,000
동해항	동해항 부두 동해항 돌핀(민유) 묵호항 부두 삼척항 부두 삼척항 2부두(민간개축) 옥계항 부두(귀속,무상사용) 속초항 부두	243,000 3,000 40,000 13,000 13,000 85,000 16,000	
	소계	312,000	1,572,480,000
군산항	외항 1~3부두 돌핀부두(민유) 자동차부두(민간전용사용·귀속) 부잔교 물양장	145,000 26,200 20,000 40,000 -	
	합계	185,000	932,400,000
대산항	대산항내 돌핀(민유) 보령항내 돌핀(민유) 보령항내귀속돌핀(무상전용사용) 태안항내돌핀(민유)	638,400 110,000 135,000 150,000	
	소계	0	0

항만	부 두 명	총접안능력(DWT)	연간 적정접안능력
목포항	1~2·대불부두 여객선부두 물양장 국유부두(귀속·전용사용) 완도부두(1~3부두) 물양장 여객선잔교	113,800 6,000 (1,018m) 40,000 33,600 (2,014m) 200	
	소계	153,600	774,144,000
여수항	여수항 부두 여천항(낙포) 광양항	30,000 143,000 97,000	
	소계	270,000	1,360,800,000
포항항	제1~제8부두 구항부두 물양장	1,143,000 22,000 -	
	소계	1,165,000	5,871,600,000
마산항	마산 제1~서항부두 돌핀부두(민유) 한중·삼성부두(민간전용사용·귀속) 물양장(중앙부두) 충무항 일반부두 진해항 일반부두 삼천포항 한전전용부두 삼천포항 일반부두 장승포항 물양장 고현항 전용부두 고현항 일반부두 옥포항 전용부두	259,000 120,000 23,000 - 3,000 45,000 150,000 22,000 - 10,000 1,000 20,000	
	합계	330,000	1,663,200
울산항	석탄~일반부두 역무선부두 돌핀(국유·국가관리) 울산국유(민간전용사용·귀속) 울산민유부두 울산민유돌핀 울산민유브이 온산국유(민간전용사용·귀속) 온산국유돌핀(민간전용사용) 온산민유브이 온산민유돌핀 미포국유(민간전용사용)	331,000 1,000 1,000 253,000 50,000 333,000 925,000 80,000 40,000 560,000 250,000 20,000	
	소계	333,000	1,678,320,000

항만	부두명	총접안능력(DWT)	연간 적정접안능력
제주항	제주항내 부두	42,300	
	제주항내 물양장	479m	
	서귀포항내 부두	13,200	
	서귀포항내 물양장	314m	
	소계	55,500	279,720,000

주) 적정접안능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음.

$$* \text{적정접안능력} = \text{총접안능력} \times 24\text{h} \times 350\text{日} \times 60\%$$

<부록 B> 항만별 시설사용료 원가분류표

1. 동해항

1) 선박입항료

개별자산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잔존 상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거진동대 기계실	40	1,227,082	167	79,356	12,271	114,773
거진동대 발전기	15	366,000	58	68,148	3,660	29,785
거진동대 사무실	50	2,710,518	548	48,792	27,105	266,173
거진동대올타리	20	17,100,000	228	769,500	171,000	1,633,050
거진동대원격제어기	15	96,330,000	168	4,334,856	963,300	9,199,514
거진동대직원숙소	50	1,712,130	275	67,236	17,121	164,489
거진동대직원숙소	50	2,242,044	275	88,056	22,420	215,399
거진항 거진동대	50	2,921,971	398	79,284	29,220	284,269
거진항방파제동대	50	2,741,760	460	64,368	27,418	267,739
거진항방파제동대	50	2,450,000	451	58,668	24,500	239,133
고성 아야진동대	50	324,979	398	8,820	3,250	31,616
고성 오호리동대	50	4,293,656	464	99,936	42,937	419,372
금진서방파제동대	50	4,246,200	564	81,312	42,462	416,489
금진항방파제동대	50	4,246,200	564	81,312	42,462	416,489
남애남방파제동대	50	13,264,513	564	254,004	132,645	1,301,051
남애항동방파제동대	50	5,346,842	508	113,676	53,468	523,317
대진남방파제동대	50	5,120,640	564	57,197	51,206	506,344
대진동국기계양대	30	40,920	247	1,788	409	3,913
대진동대	50	6,099,219	564	116,796	60,992	598,242
대진동대 발전기	15	766,000	58	142,632	7,660	62,337
대진동대 사무실	50	3,432,000	408	90,852	34,320	334,115
대진동대등탑	60	358,276,400	696	5,559,456	3,582,764	35,271,694
대진동대직원숙소	50	23,472,409	564	449,472	234,724	2,302,294
대진동대직원숙소	50	1,273,884	408	33,720	12,739	124,016
대진동대직원숙소	50	1,414,713	408	37,452	14,147	137,726
대진동대직원숙소	50	2,416,862	503	51,888	24,169	236,497
대진북방파제동대	50	4,152,960	564	46,389	41,530	410,657
대포항방파제동대	50	922,382	309	32,244	9,224	89,014
덕산 비말동대	50	1,955,344	354	59,652	19,553	189,569
덕산항남방파제동대	50	5,241,600	564	100,368	52,416	514,123
덕산항북방파제동대	50	4,233,600	564	81,072	42,336	415,253
동해방동레이콘	15	34,200,000	168	2,198,568	342,000	3,200,143
동해시 한진동대	50	338,995	245	14,940	3,390	32,406
동해항 파고계	15	14,000,000	144	1,050,000	140,000	1,295,000

동해항남방파등대	50	4,586,400	495	100,068	45,864	448,633
동해항남방파제	50	823,147,640	491	18,105,900	8,231,476	80,504,174
동해항남측호안	50	5,431,345,469	453	102,598,464	54,313,455	532,874,701
동해항남측호안	50	1,181,474,000	588	21,700,548	11,814,740	115,977,345
동해항북방파등대	50	9,800,000	453	233,640	98,000	956,636
동해항북방파제	50	10,083,640,700	453	240,404,676	100,836,407	984,323,602
동해항북방파제	50	2,047,230,000	588	37,602,180	20,472,300	200,962,782
동해항북측호안	50	3,146,221,466	453	75,009,252	31,462,215	307,121,221
목호간이철탑등대	30	708,177	324	23,604	7,082	68,457
목호등국기계양대	30	50,377	235	2,316	504	4,806
목호등대	50	53,408,580	487	1,184,424	534,086	5,222,416
목호등대 발전기	15	1,100,835	71	167,448	11,008	93,339
목호등대 사무실	50	2,461,600	245	108,516	24,616	235,308
목호등대 욕실	40	72,765	137	5,736	728	6,703
목호등대 창고	40	77,175	125	6,672	772	7,050
목호등대 창고	40	91,508	125	7,908	915	8,360
목호등대 창고	40	540,274	367	15,900	5,403	52,437
목호등대무신호실	40	717,728	137	56,580	7,177	66,115
목호등대유류창고	40	199,553	172	12,528	1,996	18,703
목호등대직원관사	50	37,224,771	564	178,203	372,248	3,704,657
목호등대직원숙소	50	41,500,000	588	2,286,720	415,000	3,921,328
목호방파제경비실	40	388,748	535	7,848	3,887	38,090
목호소발동발전기	15	539,671	459	4,232	5,397	53,544
목호항방사제	50	623,397,600	403	16,706,436	6,233,976	60,669,116
목호항방사제등대	50	14,044,800	564	268,944	140,448	1,377,586
목호항방파제	50	8,931,118,135	403	176,410,881	89,311,181	875,470,725
목호항방파제	50	650,000,000	600	11,700,000	6,500,000	63,830,000
목호항파제벽	50	1,383,465	488	30,612	13,835	135,285
문암리등대	50	10,401,401	564	199,176	104,014	1,020,223
사천진항방사제등대	50	7,084,000	564	135,648	70,840	694,835
사천진항방파제등대	50	7,084,000	564	135,648	70,840	694,835
삼척방사제등대	50	2,644,488	455	62,772	26,445	258,172
삼척북방파제등대	50	3,430,000	455	81,420	34,300	334,858
삼척항 호안	50	95,410,224	550	1,717,380	954,102	9,369,284
삼척항방사제	50	137,297,462	398	3,725,664	1,372,975	13,357,180
삼척항방파제	50	3,053,421,188	398	178,637,923	30,534,212	287,478,327
삼척항방파제	50	927,754,460	588	17,040,384	9,277,545	91,071,408
삼척항파고관측소	50	531,216	369	15,552	5,312	51,566
삼척항파제벽	50	43,560,496	515	913,500	435,605	4,264,700
속초등국기계양대	30	35,560	247	1,560	356	3,400
속초등대	50	36,067,339	487	799,848	360,673	3,526,749
속초등대 동력실	40	4,998,000	380	142,044	49,980	485,596
속초등대 발전기	15	6,524,000	127	554,796	65,240	596,920
속초등대 발전기	15	1,100,835	71	167,448	11,008	93,339
속초등대 사무실	50	675,475	263	27,744	6,755	64,773
속초등대 창고	40	4,312,000	419	111,144	43,120	420,086
속초등대무신호기	15	9,415,735	144	706,176	94,157	870,956
속초등대직원관사	50	22,083,770	474	503,172	220,838	2,158,060
속초등대직원관사	50	150,142	251	6,456	1,501	14,369
속초북방파제등대	50	1,478,400	515	31,008	14,784	144,739

속초항 돌제	50	145,238,699	551	2,614,296	1,452,387	14,262,440
속초항 조도등대	50	6,422,050	524	132,360	64,221	628,969
속초항 파제벽	50	98,204,400	465	2,280,876	982,044	9,592,352
속초항 호안	50	65,332,248	398	1,772,832	653,322	6,355,942
속초항관측소창고	40	913,500	367	26,880	9,135	88,662
속초항남방파등대	50	2,070,348	539	41,484	20,703	202,886
속초항남방파제	50	71,556,566	398	1,941,732	715,566	6,961,483
속초항방파제	50	349,266,040	588	6,415,092	3,492,660	34,285,095
속초항북방파제	50	345,981,371	407	308,447,602	3,459,814	3,753,377
속초항파고관측소	50	411,692	359	12,384	4,117	39,931
속초항파고관측소	50	14,775,950	453	352,272	147,760	1,442,368
수로국사무소	60	46,692,190	587	859,068	466,922	4,583,312
아야진남방파등대	50	22,000,000	576	240,625	220,000	2,175,938
아야진남방파등대	50	22,000,000	588	168,365	220,000	2,183,164
아야진북방파등대	50	18,000,000	576	196,875	180,000	1,780,313
아야진북방파등대	50	18,000,000	588	192,857	180,000	1,780,714
양양 수산단등대	50	5,777,547	490	127,344	57,775	565,020
오호항방파제등대	50	10,401,401	564	199,176	104,014	1,020,223
옥계항 방파제	50	16,917,388,886	576	26,433,420	169,173,889	1,689,095,547
옥계항 방파제	50	16,917,388,886	588	103,575,852	169,173,889	1,681,381,303
임원항등대	50	9,725,750	463	192,713	97,258	953,304
임원항방사제등대	50	24,300,000	600	1,093,500	243,000	2,320,650
임원항방파제등대	30	5,404,154	303	162,120	54,042	524,203
장호등대	50	1,041,600	367	30,648	10,416	101,095
장호방파제등대	50	4,756,920	539	95,316	47,569	466,160
장호항방사제등대	50	9,998,889	564	191,472	99,989	980,742
저진등대 전도등	50	298,402,230	564	8,764,032	2,984,022	28,963,820
저진등대 후도등	50	47,747,448	564	914,316	477,474	4,683,313
저진등대원격제어기	15	197,157,600	144	14,786,820	1,971,576	18,237,078
정동진등대	50	3,667,440	476	123,744	36,674	354,370
주문진 무신호기	15	16,000,000	144	1,200,000	160,000	1,480,000
주문진간이철탐등대	30	1,011,680	324	33,720	10,117	97,796
주문진등대	50	25,980,543	487	576,156	259,805	2,540,439
주문진등대 숙소	50	2,440,858	359	73,428	24,409	236,743
주문진등대 숙소	50	356,357	239	16,104	3,564	34,025
주문진등대 숙소	50	5,292,000	453	126,168	52,920	516,583
주문진등대 창고	40	3,580,231	377	102,564	35,802	347,767
주문진등대발전기	15	3,528,667	127	300,072	35,287	322,860
주문진등대발전기	15	3,528,667	127	300,072	35,287	322,860
주문진등대발전기	15	1,100,835	71	167,448	11,008	93,339
주문진등대사무실	50	19,016,186	497	413,232	190,162	1,860,295
주문진등무신호실	40	274,523	126	23,532	2,745	25,099
주문진방사제등대	50	1,744,400	451	41,772	17,444	170,263
주문진항 방파제	50	395,662,308	564	7,576,512	3,956,623	38,808,580
주문진항돌제	50	684,200,000	588	12,566,940	6,842,000	67,163,306
주문진항돌제등대	50	4,949,466	534	100,104	49,495	484,936
주문진항방사제	50	91,244,629	398	2,475,984	912,446	8,876,865
주문진항방파제	50	2,739,483,953	398	113,689,173	27,394,840	262,579,478
주문진항방파제	50	936,273,070	588	17,196,852	9,362,731	91,907,622

청초호방파제	50	2,000,000,000	600	36,000,000	20,000,000	196,400,000
현북 기사문동대	50	1,678,929	232	78,156	16,789	160,077
합계		80,708,184,558		1,602,522,571	807,081,846	7,910,566,199

2) 선석사용료

개별자산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잔존 상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동해 남부두안벽	40	2,408,054,857	329	79,048,608	24,080,549	232,900,625
동해 북부두안벽	40	3,342,741,047	329	109,731,312	33,427,410	323,300,974
동해석탄부두안벽	40	2,065,715,807	359	62,144,100	20,657,158	200,357,171
동해일반부두안벽	40	1,442,551,147	329	47,354,268	14,425,511	139,519,688
동해중앙부두안벽	40	2,065,133,841	371	60,117,108	20,651,338	200,501,673
동해항석탄부두	40	47,338,000	480	1,065,108	473,380	4,627,289
동해항중앙부두	40	287,523,570	480	6,469,284	2,875,236	28,105,429
목호중앙부두안벽	40	258,623,083	130	21,485,604	2,586,231	23,713,748
목호항 1부두안벽	40	2,529,081,940	244	43,379,008	25,290,819	248,570,293
목호항 2부두안벽	40	378,778,405	244	16,765,596	3,787,784	36,201,281
목호항 3부두안벽	40	1,632,095,237	244	72,240,276	16,320,952	155,985,496
목호항 4부두안벽	40	303,082,514	251	13,041,000	3,030,825	29,004,151
목호항경사물양장	40	70,908,295	444	1,724,796	709,083	6,918,350
삼척항1,3부두안벽	40	389,113,205	213	19,729,680	3,891,132	36,938,353
속초항 안벽	40	953,052,213	444	34,763,367	9,530,522	91,828,885
속초항관공선부두	40	563,680,360	444	13,711,140	5,636,804	54,996,922
속초항신부두안벽	40	235,262,006	278	9,139,680	2,352,620	22,612,233
속초항철광석부두	40	109,059,569	278	4,236,852	1,090,596	10,482,272
속초항청초호부두	40	725,747,621	444	17,653,320	7,257,476	70,809,430
합계		19,807,542,717		633,800,107	198,075,427	1,917,374,261

3) 부두사용료

(1) 건물, 공작물

개별자산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잔존 상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동해근로자휴게소	60	84,276,360	671	1,264,140	842,764	8,301,222
동해항 조명장치	35	16,800,000	408	259,413	168,000	1,654,059
목호근로자휴게소	60	66,677,042	633	1,137,612	666,770	6,553,943
목호근로자휴게소	50	7,300,692	455	173,292	73,007	712,740
목호항 물양장	40	3,515,539,581	184	206,346,888	35,155,396	330,919,269
목호항 쇄빙실	50	9,237,276	409	243,924	92,373	899,335
목호항 조명장치	35	25,200,000	600	264,600	252,000	2,493,540
북평노무자휴게실	60	74,514,652	611	1,317,120	745,147	7,319,753

삼척근로자휴게소	50	68,111,590	541	1,226,004	681,116	6,688,559
삼척노무자대기실	50	5,002,140	418	129,240	50,021	487,290
삼척항굴삭물양장	40	340,587,761	444	8,284,572	3,405,878	33,230,319
삼척항부두포장실	50	69,295,191	418	1,790,400	692,952	6,750,479
삼척항부두화장실	40	1,214,223	310	42,300	12,142	117,192
항만근로복지회관	60	55,983,025	684	883,944	559,830	5,509,908
항만근로자목욕탕	50	28,807,898	576	540,144	288,079	2,826,775
합계		4,368,547,431		223,903,593	43,685,474	414,464,384

(2) 토지

개 별 자 산 명	지 번	지목	면적 (M ²)	재평가액(원)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282-7	잡	9,188.00	150,499,44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681	도로	4,253.00	69,664,14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681-1	도로	609.00	9,975,42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681-2	도로	42.00	687,96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681-3	도로	205.00	3,357,90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681-4	도로	729.00	11,941,02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682	잡	8,706.00	142,604,28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682-1	잡	5,022.00	82,260,36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682-2	잡	340.00	5,569,20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682-3	잡	1,803.00	29,533,14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682-4	잡	633.00	10,368,54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1682-5	잡	122.00	1,998,36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855-11	대지	9,180.00	300,094,20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855-13	잡	248.00	12,290,88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855-15	잡	569.00	28,199,64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855-2	도로	7,454.00	369,420,24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855-5	잡	438.00	21,707,28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855-6	잡	1,091.00	54,069,960
동해 1부두용지	동해 송정 855-7	잡	10,853.00	537,874,680
동해 3부두용지	동해 송정 606-1	잡	38,540.00	4,424,392,000
동해 3부두용지	동해 송정 606-40	잡	10,431.00	662,994,360
동해 3부두용지	동해 송정 613-15	잡	207.00	11,055,870
동해 3부두용지	동해 송정 613-7	잡	179.00	9,560,390
동해 3부두용지	동해 송정 613-9	잡	17.00	907,970
동해 3부두용지	동해 송정 852-51	잡	11.00	359,59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408-1	잡	317.00	12,248,88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408-3	도로	1,323.00	16,855,02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409-3	잡	79.00	3,052,56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413	잡	27,144.00	1,048,844,16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430-3	잡	63.00	2,434,32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439	잡	1,240.00	47,913,60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440-1	잡	2,195.00	85,410,96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441	잡	906.00	35,007,84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11-2	잡	6,989.00	257,334,98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59	공장	40,162.00	1,605,275,14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70	잡	9,948.00	385,783,44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82-1	잡	6.00	320,46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87	잡	1,400.00	74,774,00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87-2	잡	641.00	34,235,81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87-3	잡	5.00	267,05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88	잡	196.00	10,468,36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88-1	대지	223.00	11,910,43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91-1	대지	804.00	42,941,64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92-7	잡	4.00	213,64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95	잡	14,270.00	762,160,70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95-1	전	44.00	2,350,04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95-2	잡	2,499.00	133,471,59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95-3	잡	14.00	747,74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95-4	잡	527.00	28,147,07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97-1	대지	66.00	3,525,06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597-2	대	7.00	373,87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605-5	대지	42.00	2,243,22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650	잡	3,728.00	144,571,84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650-5	잡	636.00	24,664,080
동해 4부두용지	동해 송정 650-6	잡	12.00	465,360
동해 5부두용지	동해 송정 119	잡	1,506.00	52,920,840
동해 5부두용지	동해 송정 12-1	잡	11,248.00	395,254,720
동해 5부두용지	동해 송정 18-19	도로	782.00	27,479,480
동해 5부두용지	동해 송정 290	잡	11,345.00	280,334,950
동해 5부두용지	동해 송정 60	공장	119,416.00	4,196,278,240
동해 5부두용지	동해 송정 606-2	도로	31,361.00	1,187,641,070

동해 5부두용지	동해 송정 606-41	도로	4,985.00	204,833,650
동해 5부두용지	동해 송정 88-1	잡	4,647.00	163,295,580
동해 5부두용지	동해 송정 90	도로	28,125.00	988,312,500
동해 5부두용지	동해 송정 91	잡	976.00	10,726,240
동해 5부두용지	동해 송정 92	잡	183.00	2,011,170
동해 6부두용지	동해 송정 18-20	잡	39,614.00	1,392,035,960
목호 1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58	잡	922.00	56,795,200
목호 1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59	제방	33.00	669,900
목호 1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60	제방	56.00	1,136,800
목호 2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03	제방	112.00	2,563,680
목호 2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25	제방	36.00	824,040
목호 2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26	잡	86.00	3,732,400
목호 2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27	잡	17.00	737,800
목호 2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80	잡	11,931.00	3,365,735,100
목호 2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85	잡	8,457.00	1,539,174,000
목호 3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28	잡	8,101.00	351,583,400
목호 3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52	구거	59.00	1,350,510
목호 3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54	제방	9,887.00	226,313,430
목호 3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15-155	구거	93.00	2,128,77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95-2	잡	9,010.00	851,445,0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95-22	대	1,047.00	106,270,5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95-37	잡	9,563.00	970,644,5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95-46	잡	60.00	11,256,0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목호진 95-51	구거	17.00	529,55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2-1	철도	1,825.00	9,453,5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2-2	잡	13,206.00	206,145,66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2-27	대지	1,727.00	89,095,93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2-3	도로	867.00	13,533,87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2-44	도로	1,502.00	23,446,22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2-8	철도	1,034.00	16,140,74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27-1	잡	2,712.00	189,840,0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27-82	철도	187.00	12,042,8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27-91	잡	562.00	39,340,0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27-93	잡	46.00	2,543,8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41-1	전	165.00	81,196,5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41-5	전	31.00	2,170,0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43-1	잡	12,533.00	745,713,5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44-1	잡	815.00	42,787,500
목호 5부두용지	동해 발한 701	구거	995.00	18,178,65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27-2	잡	38,003.00	2,101,565,9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27-72	도로	1,131.00	20,663,37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27-75	구거	152.00	2,777,04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27-76	잡	2,975.00	160,352,5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27-83	잡	19.00	3,950,1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27-95	잡	66.00	3,649,8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43-14	잡	364.00	20,384,0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43-2	잡	54,831.00	3,262,444,5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43-23	잡	45.00	2,677,5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43-6	도로	7,897.00	155,333,99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43-7	잡	15,831.00	886,536,0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45-1	잡	42.00	2,205,0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46-3	전	392.00	20,580,0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47-5	대지	56.00	2,940,0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53	대지	149.00	6,153,70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54-10	철도	31.00	609,770
목호 7부두용지	동해 발한 54-9	철도	149.00	2,930,830
목호 9부두용지	동해 발한 80-172	구거	132.00	2,596,440
목호 9부두용지	동해 발한 80-174	구거	145.00	2,852,150
목호 9부두용지	동해 발한 80-175	제방	1,490.00	30,977,100
목호 9부두용지	동해 발한 80-176	잡	4,959.00	295,060,500
목호 9부두용지	동해 발한 80-177	도로	1,309.00	25,748,030
목호 9부두용지	동해 발한 80-179	구거	2,152.00	42,329,840
목호 9부두용지	동해 발한 80-171	잡	8,142.00	512,946,0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1-169	도로	13.00	798,07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1-170	도로	13.00	782,6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1-171	도로	36.00	2,167,2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1-173	잡	363.00	21,852,6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1-179	잡	2,278.00	191,352,0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1-186	잡	21,133.00	1,161,194,65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1-187	제방	4,818.00	261,039,24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1-213	잡	10.00	602,0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1-214	잡	14.00	842,8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1-215	잡	4.00	240,8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03	대지	195.00	10,374,0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05	대지	139.00	7,394,8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23	대지	89.00	5,607,0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28	대지	53.00	2,819,6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8-222	대지	132.00	9,119,0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8-62	대지	69.00	3,670,800
삼척 1부두용지	삼척 정하 48-63	대지	63.00	3,351,600
삼척 4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	대지	3,863.00	201,394,900
삼척 4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31	대지	367.00	19,524,400
삼척 4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32	대지	53.00	2,819,600
삼척 4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33	대지	63.00	3,351,600
삼척 4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34	대지	73.00	3,883,600
삼척 4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35	대지	126.00	6,703,200
삼척 4부두용지	삼척 정하 48-28	대지	277.00	13,262,760
삼척 4부두용지	삼척 정하 48-30	대지	63.00	3,016,440
삼척 4부두용지	삼척 정하 48-5	잡	7,260.00	386,232,000
삼척 4부두용지	삼척 정하 48-6	잡	407.00	21,652,400
삼척 4부두용지	삼척 정하 48-7	잡	23,467.00	1,123,599,96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사 48-33	대지	340.00	16,279,2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00	대지	192.00	10,214,4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30	대지	314.00	19,782,0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38	대지	149.00	7,926,8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39	대지	66.00	3,511,2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9	잡	17,296.00	833,757,12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26	대지	79.00	3,782,52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27	대지	56.00	2,681,28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29	대지	321.00	15,369,48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31	대지	9.00	430,92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32	대지	106.00	5,075,28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34	대지	99.00	4,740,12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35	대지	73.00	3,495,24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36	대지	169.00	8,091,72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37	대지	13.00	622,44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38	대지	155.00	7,421,4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39	대지	112.00	5,362,56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40	대지	136.00	6,511,68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41	대지	36.00	1,723,68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42	대지	36.00	1,723,68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43	대지	86.00	4,093,6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45	대지	40.00	1,915,2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46	대지	10.00	532,0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48	대지	26.00	1,383,2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50	대지	76.00	4,043,2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51	대지	119.00	7,497,0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52	대지	89.00	4,734,8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54	대지	13.00	691,6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64	대지	83.00	4,415,6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71	대지	109.00	5,798,8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75	대지	89.00	5,607,000
삼척 5부두용지	삼척 정하 48-76	대지	129.00	6,176,52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02	대지	56.00	2,979,2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12	대지	63.00	3,969,0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13	대지	93.00	5,859,0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16	대지	119.00	6,330,8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18	대지	83.00	5,229,0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36	대지	205.00	10,906,0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60	대지	7.00	372,4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80	잡	5.00	239,4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81	구거	427.00	20,444,76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88	대지	301.00	14,411,88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90	잡	3,891.00	207,001,2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191	대지	26.00	1,764,4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201	잡	9,954.00	452,210,22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202	제방	1,380.00	62,693,4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205	대지	2,082.00	94,585,26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48-218	잡	5,683.00	258,178,69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87-11	대지	33.00	1,720,95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87-15	대지	2.00	106,4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87-16	대지	56.00	2,979,2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87-18	잡	33.00	1,755,6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87-19	대지	139.00	7,394,8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87-20	대지	20.00	1,064,0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87-23	공장	2,556.00	119,876,400
삼척 6부두용지	삼척 정하 87-25	공장	1,849.00	86,718,100
속초 1부두용지	속초 동명 1-128	대지	258	39,732,000
속초 1부두용지	속초 동명 1-131	잡	29,822	6,784,505,000
속초 1부두용지	속초 동명 1-143	제방	5,718	429,478,980
속초 1부두용지	속초 동명 53-3	잡	59,350	17,255,396,100
속초 3부두용지	속초 동명 383-1	잡	30,915	5,388,484,500
속초 3부두용지	속초 동명 466-94	제방	186	13,970,460
속초 4부두용지	속초 금호 482-105	대지	3,560	1,176,451,500
속초 4부두용지	속초 금호 482-276	잡	4,412	1,297,128,000
속초 4부두용지	속초 동명 53-9	대지	82	15,096,200
속초 4부두용지	속초 청학 482-336	구거	30	3,305,400
속초 4부두용지	속초 청학 482-337	잡	7,017	2,342,976,300
속초 4부두용지	속초 청학 482-338	구거	96	10,577,280
속초 4부두용지	속초 청학 482-344	잡	996	334,656,000
속초 4부두용지	속초 청학 482-453	대지	81	27,045,900
속초 4부두용지	속초 청학 482-59	대지	83	25,912,600
속초1부두용지	속초 동명 53-16	잡	272	50,075,200
속초4부두용지	속초 청학 482-454	잡	52	17,362,800
속초4부두용지	속초 청학 482-458	잡	63	21,035,700
합계			976,827.00	78,259,328,230
평균지가				80,116

4) 참고사용료

개별자산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잔존 상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목호항 옥개시설	50	38,297,070	435	950,820	382,971	3,734,625
목호항 옥개시설	50	53,624,130	423	1,369,128	536,241	5,225,500
목호항 옥개시설	50	53,624,130	453	1,278,456	536,241	5,234,567
목호항 임항창고	50	16,193,966	179	977,064	161,940	1,521,690
목호항 임항창고	50	16,193,966	179	977,064	161,940	1,521,690
목호항비산탄시설	50	1,476,364,622	479	95,376,659	14,763,646	138,098,796
목호항유류저장고	40	11,510,430	419	296,688	115,104	1,121,374
비산탄방지시설	50	204,994,558	564	3,925,428	2,049,946	20,106,913
비산탄방지시설	50	230,520,858	564	4,414,224	2,305,209	22,610,663
삼척항 창고	40	2,766,750	331	62,256	27,668	270,449

삼척항 창고	40	38,620,000	480	868,956	386,200	3,775,104
석탄하역장비창고	40	3,327,196	394	91,200	33,272	323,600
속초항 창고	40	29,663,730	480	667,428	296,637	2,899,630
시멘트분쇄실	50	2,997,010,890	546	59,281,536	29,970,109	293,772,935
컨테이너백창고	50	18,800,000	588	115,104	188,000	1,868,490
컨테이너백창고	50	18,800,000	564	360,000	188,000	1,844,000
컨테이너백창고(A)	50	37,900,800	564	725,760	379,008	3,717,504
컨테이너백창고(B)	50	37,900,800	564	725,760	379,008	3,717,504
합계		5,286,113,896		172,463,531	52,861,139	511,365,037

5) 여객터미널 사용료

개별자산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잔존 상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목호여객터미널담	40	3,488,212	368	102,372	34,882	338,584
목호여객터미널화단	30	1,070,836	248	46,632	10,708	102,420
목호항여객터미널	60	410,455,973	684	6,480,888	4,104,560	40,397,509
합계		415,015,021		6,629,892	4,150,150	40,838,513

6) 공통

개별자산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잔존 상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강원905호	20	47,153,773	95	5,360,640	471,538	4,179,313
강원907호	20	530,844,600	204	28,103,532	5,308,446	50,274,107
동해901호	20	613,125,830	240	27,590,664	6,131,258	58,553,517
동해청 청사	60	746,001,032	564	14,285,124	7,460,010	73,171,591
동해청 관사창고	40	852,600	367	25,092	8,526	82,751
동해청 수위실	50	3,430,000	467	79,320	34,300	335,068
동해청 전산실	60	112,193,630	708	5,134,284	1,121,936	10,705,935
동해청 직원관사	50	11,714,547	407	310,848	117,145	1,140,370
동해청 직원관사	50	5,785,519	407	153,528	57,855	563,199
동해청 직원관사	50	11,654,737	407	309,264	116,547	1,134,547
동해청 직원관사	50	17,004,164	407	451,212	170,042	1,655,295
동해청 직원숙소	50	82,200,363	462	1,921,572	822,004	8,027,879
동해청발동발전기	15	700,000	42	180,000	7,000	52,000
동해청사 배구장	30	2,373,000	247	103,764	23,730	226,924
동해청사 정구장	30	4,620,000	247	202,008	46,200	441,799
동해청소각장	30	21,700,000	348	673,452	217,000	2,102,655
동해청체력단련실	40	24,920,000	311	865,392	249,200	2,405,461
동해항 간이차고	15	1,065,833	107	107,580	10,658	95,825
동해항 변전실	40	4,408,495	359	132,624	44,085	427,587

동해항 변전실	50	470,358,974	576	8,819,232	4,703,590	46,153,974
동해항 변전실	50	133,209,100	600	7,193,304	1,332,091	12,601,580
동해항 수위실	40	7,313,040	311	253,956	73,130	705,908
동해항소방파출소	60	21,783,791	573	410,580	217,838	2,137,321
동해항이동용초소	15	690,069	105	70,980	6,901	61,909
목호출장소 청사	60	197,961,255	633	2,189,844	1,979,613	19,577,141
목호테니스장펜스	20	1,410,955	191	63,492	14,110	134,746
목호항 경비실	50	4,425,036	433	110,376	44,250	431,466
목호항 경비실	40	36,776	313	1,272	368	3,550
목호항 변전실	50	19,610,052	433	489,120	196,101	1,912,093
목호항 적부실	40	217,350	313	7,500	2,174	20,985
목호항 정문초소	50	9,448,574	537	190,032	94,486	925,854
목호항 정비고	50	45,765,720	421	1,174,032	457,657	4,459,169
목호항 펌프실	50	20,919,360	433	521,772	209,194	2,039,759
목호항부두사무실	60	46,473,080	541	927,744	464,731	4,554,534
목호항부두사무실	60	3,127,390	455	74,232	31,274	305,316
목호항선원휴게실	50	2,238,304	503	48,060	22,383	219,024
민방위대피소	50	41,404,107	491	910,716	414,041	4,049,339
삼척선원복지회관	60	129,887,800	684	2,050,860	1,298,878	12,783,694
삼척출장소 청사	60	93,328,116	557	1,896,648	933,281	9,143,147
석탄하역 변전실	40	5,683,642	395	155,400	56,836	552,824
속초출장소 관사	50	216,678	263	8,892	2,167	20,779
속초출장소 청사	60	74,351,582	670	1,115,268	743,516	7,323,631
속초항방파제초소	15	243,040	119	22,056	2,430	22,098
테니스장 대기실	40	9,368,188	444	227,880	93,682	914,031
합계		3,581,220,102		114,923,148	35,812,201	346,629,695

2. 군산항

1) 선박입항료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천원)	잔존상각 월수	당년감가상각비 (천원)	보수비 (천원)	투자보수비 (천원)
곰 소 등 주	50	715	415	19	7	70
울 호 등 표	50	22,375	475	509	224	2,187
장 은 서 등 표	50	47,452	267	1,919	475	4,553
군산항제23호등부표	15	1,793	120	161	18	163
군산항제24호등부표	15	1,841	120	166	18	168
군산항제5호등부표	15	2,271	53	463	23	181
군산항제9호등부표	15	2,271	53	463	23	181
군산항10호등부표	15	2,271	53	463	23	181
군산항11호등부표	15	2,271	53	463	23	181
군산항20호등부표	15	4,090	120	368	41	372
군산항6호등부표	15	5,009	120	451	50	456
군산항제1호등부표	15	5,362	120	483	54	488
군산항제3호등부표	15	5,830	120	525	58	531
군산항제4호등부표	15	5,830	120	525	58	531
군산항13호등부표	15	4,300	120	387	43	391
파장금항 방파제 등대	50	46,820	600	843	468	4,598
소당도 남방등표	15	190,130	180	11,408	1,901	17,872
남측도류제등부표	15	21,800	180	1,308	218	2,049
군산항15호등부표	15	4,311	120	388	43	392
군산항1호등부표	15	3,809	120	343	38	347
소당도 남방 등표	15	190,130	180	11,408	1,901	17,872
남측도류제 등부표	15	21,800	180	1,308	218	2,049
파장금항 방파제 등대	50	46,820	600	843	468	4,598
십이동파도등대	50	36,047	461	844	360	3,520
소횡경도등대	50	6,891	406	183	69	671
어청도방파제등대	50	2,275	406	61	23	221
만리포방파제등대	50	8,875	437	219	89	866
거륜도등대	50	20,871	524	430	209	2,044
상왕도등대	50	34,713	271	1,383	347	3,333
파장금방파제등대	50	1,882	358	57	19	183

법성포등대	50	16,383	157	1,127	164	1,526
역경등대	30	15,505	261	642	155	1,486
개섬등대	30	15,505	261	642	155	1,486
가진서등대	50	41,761	539	837	418	4,092
비용도등대	50	32,296	503	693	323	3,160
갈매여등표	50	132,130	540	2,643	1,321	12,949
봉래산등대	50	6,661	527	137	67	652
횡경도등대	50	18,383	540	368	184	1,802
북측도류명암등대	50	4,456	540	89	45	437
신항만도류제A호등	50	4,456	540	89	45	437
연도북방파제등대	50	9,014	540	180	90	883
격포북방파제등대	50	11,634	540	233	116	1,140
격포북방파제등대	50	11,634	540	233	116	1,140
파장금항방사제등대	50	28,500	540	570	285	2,793
군산방사제북단등대	50	11,935	169	763	119	1,117
군산방사제서단등대	50	3,658	425	93	37	357
연도등대	50	14,105	310	491	141	1,361
안마도등대	50	93,954	158	6,422	940	8,753
연도항방파제등대	50	4,957	405	132	50	482
말도등대	50	84,390	537	1,697	844	8,269
곰 소 항 입 표	50	1,195	263	49	12	115
할 머 녀 입 표	50	1,173	431	29	12	114
군 산 항 입 표	50	11,853	527	243	119	1,161
말도등대 사무실	50	757	320	26	8	73
군산항항만관제실	60	362,947	635	6,173	3,629	35,677
통신실발동발전기	15	590	20	319	6	27
통신실발동발전기	15	7,828	120	705	78	712
말도 발동발전기	15	12,923	120	1,163	129	1,176
어청도발동발전기	15	11,148	120	1,003	111	1,014
어청도발동발전기	15	32	8	43	0	0
어청도발동발전기	15	40	11	39	0	0
파장금발동발전기	15	7,239	107	731	72	651
관제실발동발전기	15	10,750	105	1,106	108	964
어청도발동발전기	15	2,687	70	415	27	227
말도 발동발전기	15	32	8	43	0	0

태양광발전장치	15	60,564	100	6,541	606	5,402
태양광발전장치	15	111,094	120	9,998	1,111	10,110
말도등대 동력실	40	12,395	347	386	124	1,201
말도등대무신호실	40	10,446	95	1,188	104	926
어청도등무신호실	40	49	95	6	0	4
격렬비도 동력실	40	1,332	50	288	13	104
어청도등대동력실	50	26,451	452	632	265	2,582
어청도등대화장실	40	4,368	405	116	44	425
말도등대급수설비	30	18,154	299	656	182	1,750
어청도 급수설비	30	22,248	300	801	222	2,145
안마도등대올타리	20	1,057	180	63	11	99
대천통신실보안담	40	10,712	359	322	107	1,039
연도등대 올타리	20	8,158	180	489	82	767
말도등대 올타리	40	17,043	71	2,592	170	1,445
어청도등대올타리	40	6,116	81	815	61	530
어청도등대저수조	40	5,919	357	179	59	574
말도등대저수조	40	5,810	357	176	58	563
말도등대 선착장	40	55,404	395	1,515	554	5,389
파고관측소 잔교	40	2,137	276	84	21	205
장항항 제수제	50	24,783	60	4,461	248	2,032
고정항 호안	50	5,521,976	496	120,237	55,220	540,174
말도등대 호숙소	50	56,377	467	1,304	564	5,507
어청도등대 숙소	50	56,944	467	1,317	569	5,563
등대자녀합숙소	50	17,634	359	530	176	1,710
어청도등부속창고	40	8,523	380	242	85	828
어청도등대 창고	40	16,538	420	425	165	1,611
말도등대물품창고	40	820	71	125	8	70
말도등대유류창고	40	9,307	392	256	93	905
풍향풍속계	15	2,181	120	196	22	198
자동감시제어장치	15	119,076	120	10,717	1,191	10,836
어청도 무선호기	15	9,368	107	946	94	842
말도등대무신호기	15	5,195	70	802	52	439
말도등대무신호기	15	5,697	79	779	57	492
어청도 무선호기	15	6,061	79	829	61	523
파장금 무선호기	15	14,385	107	1,452	144	1,293

군산항제16호등부표	15	4,300	120	387	43	391
용도 발동발전기	15	2,536	58	472	25	206
말도등대 방풍벽	40	6,015	420	155	60	586
군산내항 파계제	50	615,373	155	42,878	6,154	57,250
군산내항 호안	50	52,126	151	3,728	521	4,840
한전변전소 호안	50	70,151	415	1,826	702	6,833
어청도등대무선주	30	3,783	167	245	38	354
대천항통신실창고	40	1,506	359	45	15	146
대천통신실무선탑	30	12,317	215	619	123	1,170
어청도등대무선탑	30	10,479	247	458	105	1,002
외항관제실무선탑	30	11,802	263	485	118	1,132
외항관제실무선탑	30	14,127	275	555	141	1,357
외항관제실무선탑	30	4,708	275	185	47	452
격렬비등대양하기	15	4,289	71	652	43	364
병 호 등 표	50	1,024	0		10	102
민 야 합 등 표	50	1,024	0		10	102
전 망 산 등 표	50	7,099	0		71	710
군산항제19호등부표	15	643	0		6	64
군산항제2호등부표	15	570	0		6	57
오식도 4호등부표	15	659	0		7	66
군산항3호등부표	15	719	0		7	72
군산항7호등부표	15	313	0		3	31
군산항12호등부표	15	344	0		3	34
군산항16호등부표	15	509	0		5	51
군산항17호등부표	15	466	0		5	47
군산항22호등부표	15	318	0		3	32
군산항18호등부표	15	466	0		5	47
외항제11호등부표	15	659	0		7	66
격렬비도무신호기	15	365	0		4	37
격렬비발동발전기	15	546	0		5	55
격렬비발동발전기	15	145	0		1	15
어청도등대사무실	60	11	0		0	1
어청도등대	50	2,238	0		22	224
전북919호	20	229,399	143	17,325	2,294	21,207
합계		9,058,717		310,033	90,587	874,871

2)선석사용료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천원)	잔존상각 월수	당년감가상각비 (천원)	보수비 (천원)	투자보수비 (천 원)
장항항울종도교	30	11,448	300	412	114	1,104
군산내항울종도교	30	19,448	300	700	194	1,875
역무선부두도교	30	184,847	300	6,654	1,848	17,819
역무선부두도교	30	184,847	300	6,654	1,848	17,819
장항항 울종 도교	30	31,055	300	1,118	311	2,994
군산외항캠프시설	50	612,654	433	15,281	6,127	59,737
외항 2부두 안벽	40	11,753,228	420	302,226	117,532	1,145,100
군산내항물양장	40	83,141	420	2,138	831	8,100
군산외항물양장	40	225,932	313	7,796	2,259	21,814
장항항물양장	40	208,793	81	27,839	2,088	18,095
내항해당동물양장	40	3,760,651	350	116,043	37,607	364,461
고정항 물양장	40	556,117	364	16,500	5,561	53,962
내항소룡동물양장	40	261,388	395	7,147	2,614	25,424
장항항물양장	40	7,689,717	420	197,736	76,897	749,198
외항 3부두 안벽	40	7,931,635	480	178,462	79,316	775,317
외항 3부두 안벽	40	20,322,926	480	457,266	203,229	1,986,566
외항 1부두 안벽	40	2,467,723	313	85,148	24,677	238,257
군산역무선부두	40	1,415,837	420	36,407	14,158	137,943
장항A잔교 조절탑	40	153,591	93	17,836	1,536	13,575
내항 계선부표	15	14,468	0		145	1,447
장항항 계선부표	15	963	0		10	96
내항A잔교 조절탑	40	13,266	0		133	1,327
군산내항물양장	40	58,331	0		583	5,833
내항B잔교 조절탑	40	13,266	0		133	1,327
내항C잔교 조절탑	40	14,685	0		147	1,469
장항B잔교 조절탑	40	161,527	93	18,758	1,615	14,277
합계		58,151,484		1,502,122	581,515	5,664,936

3) 부두사용료

(1) 공작물 + 건물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천원)	잔존상각 월수	당년감가상각비 (천원)	보수비 (천원)	투자보수비 (천 원)
외항1부두 휴게실	50	4,232	540	85	42	415
외항2부두 휴게실	50	15,447	540	309	154	1,514
외항노무자휴게소	60	136,499	549	2,685	1,365	13,381
군산외항 망루대	40	4,763	346	149	48	461
군산외항 경비실	40	10,291	347	320	103	997
군산외항 변전실	50	33,767	527	692	338	3,308
군산외항 변전실	50	18,361	420	472	184	1,789
장항후문초소	40	10,551	420	271	106	1,028
군산외항 화장실	40	13,906	407	369	139	1,354
외국인전용화장실	40	6,281	354	192	63	609
군산내항 보안담	20	22,192	180	1,332	222	2,086
군산외항 보안담	40	124,780	322	4,185	1,248	12,059
장항항 보안담	40	69,166	245	3,049	692	6,612
해망동부지울타리	40	6,034	420	155	60	588
외항야적장포장	15	157,755	120	14,198	1,578	14,356
내항부두조명등주	35	1,200	360	36	12	116
역무부두조명탑제2호	35	23,593	360	708	236	2,289
역무선부두조명탑	35	14,386	360	432	144	1,395
역무선부두조명탑	35	23,377	360	701	234	2,268
외항1부 조명등탑	35	23,362	253	997	234	2,236
외항2부 조명등탑	35	282,542	359	8,500	2,825	27,404
외항부두조명등탑	35	67,018	360	2,011	670	6,501
장항항조명등주	35	12,263	253	523	123	1,174
외항2부 조명등탑	35	157,582	420	4,052	1,576	15,353
합계		1,239,348		46,423	12,393	119,293

(2) 토지

개 별 자 산 명	지 번	지목	면적 (㎡)	재평가액(천원)
고정항물양장부지	보령 오천 오폭 1158	잡	6,558	217,463
군산외항1,2부두	군산 소룡 11	잡	509,862	19,986,590

내항ABC잔교부지	군산 장미 1-4	철도	22,182	8,203,517
외항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524-17	잡	1,120	78,770
임항지구부지	군산 금암 273-34	대지	100	15,500
임항지구부지	군산 금암 292-11	대지	2,585	400,675
임항지구부지	군산 해망 1003	대지	133	22,371
임항지구부지	군산 해망 1003-5	대지	3,208	539,604
임항지구부지	군산 해망 1003-11	대지	10	1,833
임항지구부지	군산 해망 1011-20	잡	4,994	194,267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1-4	잡	10,964	394,700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1-5	잡	1,249	44,960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1-6	잡	3,794	136,500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1-3	잡	30,684	1,104,600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10	잡	56,824	3,182,133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11	도로	12,313	482,658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1-1	잡	2,016	81,850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5	잡	28,616	1,602,513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524-16	잡	2,468	100,201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524-8	잡	2,298	66,532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7	도로	16,505	924,302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8	잡	115,710	6,479,738
임항지구부지	군산 해망 1524-12	잡	208	17,715
임항지구부지	군산 소룡 1524-8	잡	2,132	1,958,718
임항지구부지	장항 신창 420-23	잡	6,246	484,065
임항지구부지	장항 신창 420-27	잡	558	41,515
임항지구부지	장항 신창 420-3	잡	1,526	63,237
임항지구부지	장항 신창 420-56	잡	5,184	385,690
임항지구부지	장항 신창 420-57	대지	2,390	157,023
임항지구부지	장항 신창 420-8	잡	224	17,405
임항지구부지	장항 신창 935-2	도로	778	63,732
임항지구부지	장항 신창 935-5	도로	1,904	107,009
장항 A,B잔교부지	장항 신창 164-4	철도	3,418	85,655
장항 A,B잔교부지	장항 신창 417	도로	5,088	72,700
장항 A,B잔교부지	장항 신창 418	도로	3,769	53,557
장항항 A잔교부지	장항 신창 164-3	대지	1,858	46,561
장항항 A잔교부지	장항 신창 164-5	대지	767	19,221

장항항 A잔교부지	장항 신창 164-6	대지	2,235	56,009
장항항 A잔교부지	장항 신창 164-7	대지	836	20,950
장항항 A잔교부지	장항 신창 420-4	잡	12,969	356,771
장항항 B잔교부지	장항 신창 164-2	대지	1,974	49,468
장항항 B잔교부지	장항 신창 164-8	대지	3,335	677,005
장항항 B잔교부지	장항 신창 420-2	대지	5,647	557,032
장항항 B잔교부지	장항 신창 164-94	대지	288	34,272
합계			897,527	49,586,587
평균지가			55,248	

4) 공통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천원)	잔존상각 월수	당년감가상각비 (천원)	보수비 (천원)	투자보수비 (천 원)
장항항항만관리실	50	4,629	353	142	46	449
군산청 민원실	60	17,044	536	343	170	1,670
군산외항 관리실	60	227,781	553	4,449	2,278	22,333
외항 소방파출소	60	55,030	551	1,079	550	5,395
대천항항무통신실	60	46,202	575	868	462	4,533
군산청 청사	60	174,438	493	3,821	1,744	17,062
장항출장소 청사	60	72,846	550	1,430	728	7,142
군산항 선원회관	60	253,418	647	4,230	2,534	24,919
군산외항변전소	35	373,983	253	15,964	3,740	35,802
외항 비상발전기	15	57,178	180	3,431	572	5,375
전북918호	20	69,316	119	6,291	693	6,303
장항항 정문초소	40	10,747	331	351	107	1,040
경비실및중대본부	50	32,184	466	746	322	3,144
군산내항 1초소	40	2,672	420	69	27	260
군산내항 2초소	40	4,949	420	127	49	482
군산외항 망루대	50	20,015	540	400	200	1,961
군산내항해안초소	40	2,330	359	70	23	226
청사후문초소	40	7,057	420	181	71	688
군산청 숙소초소	40	2,903	420	75	29	283
군산청사후문초소	40	1,340	382	38	13	130
군산외항망루초소	40	3,183	380	90	32	309
군산외항망루초소	40	3,167	395	87	32	308

군산의항 망루대	40	4,763	335	154	48	461
테니스장 샤워실	40	1,224	395	33	12	119
군산직원숙소차고	40	1,975	420	51	20	192
군산의항비상발전실	40	57,178	240	2,573	572	5,460
식 수 대	30	1,055	300	38	11	102
외항자전거보관소	10	3,248	60	585	32	266
군산청사 울타리	20	8,911	142	678	89	823
내항 테니스장담	20	3,897	106	397	39	350
장항울타리	40	17,043	420	438	170	1,660
장항항 망루대	40	3,408	407	90	34	332
군산청사조경시설	30	12,697	285	481	127	1,222
군산의항조경시설	30	13,887	299	502	139	1,339
장항소공원	30	9,890	300	356	99	953
군산청사테니스장	30	2,729	232	127	27	260
장항 제1호합선	20	41,571	131	3,427	416	3,814
장항 제2호합선	20	41,577	131	3,428	416	3,815
외항램프합선	20	94,210	240	4,239	942	8,997
역무선 제1호합선	20	177,863	180	10,672	1,779	16,719
역무선 제2호합선	20	177,868	180	10,672	1,779	16,720
역무선 제3호합선	20	177,868	180	10,672	1,779	16,720
여객잔교 합선	20	49,207	167	3,182	492	4,602
장항항 조명장치	35	20,953	112	2,020	210	1,893
외항초소조명장치	35	39,431	275	1,549	394	3,788
외항진입조명등주	35	12,644	347	394	126	1,225
장항직원숙소	60	83,500	660	1,366	835	8,213
군산청 직원숙소	60	479,936	660	7,853	4,799	47,208
장항출장소 숙소	60	37,789	659	619	378	3,717
장항오염자재창고	40	5,159	420	133	52	503
군산청물품창고	40	1,612	420	41	16	157
내항오염자재창고	40	4,240	319	144	42	410
군산항조립식차고	40	4,729	407	125	47	460
외항오염자재창고	40	4,240	319	144	42	410
전북920호	20	380,195	180	22,812	3,802	35,738
장항자전거보관소	10	5,063			51	506
군산 제 4호합선	20	20,999			210	2,100

군산 제1호합선	20	19,066			191	1,907
군산 제2호합선	20	19,066			191	1,907
군산 제3호합선	20	19,066			191	1,907
내항 A잔교 합선	20	26,533	0		265	2,653
내항 C잔교 합선	20	29,371	0		294	2,937
장항 A잔교 합선	20	20,515	0		205	2,052
장항 B잔교 합선	20	20,515	0		205	2,052
외항 3부두 초소	40	80,588			806	8,059
군산내항자재창고	40	155	383		2	16
합계		3,679,846		134,277	36,798	354,557

3. 대산항

1) 선박입항료

개 별 자 산 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천원)	잔존 상각월수	감가상각비 (천원)	보수비 (천원)	투자보수비 (천원)
외죽도등표	50	70,556	540	1,411	706	6,914
행 여 등 표	50	69,505	435	1,726	695	6,778
소 녀 함 등 표	50	6,644	437	164	66	648
신 은 항 등 표	50	6,503	437	161	65	634
가 대 함 등 표	50	93,690	501	2,020	937	9,167
대천항방파제등대	50	4,197	139	326	42	387
외연도항방파제등대	50	5,152	406	137	52	501
녹도항방파제등대	50	7,355	436	182	74	717
안흥방파제등대	50	6,806	388	189	68	662
대화사도등대	50	21,162	540	423	212	2,074
불안도등대	50	22,694	540	454	227	2,224
대천북방파제등대	50	5,057	540	101	51	496
외연도서방파제등대	50	10,853	540	217	109	1,064
안흥신항북방파제	50	6,693	540	134	67	656
안흥신항남방파제	50	7,307	540	146	73	716
정곡두등대	50	27,954	540	559	280	2,739
안 흥 항 입 표	50	21,671	540	433	217	2,124
용도등대 사무실	50	370	260	15	4	35
격렬비도 사무실	50	18,346	526	377	183	1,797
통신실발동발전기	15	7,828	120	705	78	712
격렬비발동발전기	15	21,484	120	1,934	215	1,955
용도 발동발전기	15	16,830	120	1,515	168	1,532
태양광발전장치	15	60,305	120	5,427	603	5,488
태양광발전장치	15	51,777	120	4,660	518	4,712
용도등대무신호사	40	354	26	147	4	21
용도등대 화장실	40	4,368	405	116	44	425
대천통신실보안담	40	10,712	359	322	107	1,039
용도등대 울타리	40	885	81	118	9	77
격렬비등대울타리	40	25,487	81	3,398	255	2,209
격렬비등대저수조	40	6,184	335	199	62	598
격렬비도 2호숙소	50	50,858	454	1,210	509	4,965
격렬비도 5호숙소	50	474	370	14	5	46
용도등대 호숙소	50	57,284	467	1,325	573	5,596
용도등대부속창고	50	14,053	524	290	141	1,376
용도등대유류창고	40	3,162	270	126	32	304
격렬비도등대창고	40	9,152	379	261	92	889
격렬비도무신호기	15	62,768	120	5,649	628	5,712

용도등대무신호기	15	9,704	107	979	97	872
용도등대무신호기	15	6,061	79	829	61	523
용도등대	50	217,187	0	0	2,172	0
격렬비도등대	50	310,231	0	0	3,102	0
격렬비도 동력실	40	5,636	0	0	56	0
격렬비도 원격실	40	2,802	0	0	28	0
대천항통신실창고	40	1,506	359	45	15	146
대천통신실무선탑	30	12,317	215	619	123	1,170
안도등대	50	65,475	468	1,511	655	6,396
안도등대담	40	8,550	348	265	86	828
안도등대저수	50	30,945	540	619	309	3,033
안도등대저수	50	16,170	468	373	162	1,580
안도등대저수	50	10,137	552	198	101	994
안도무신호기	15	11,200	60	2,016	112	918
안도발동발전	15	2,640	72	396	26	224
안도선착장	40	103,637	396	2,826	1,036	10,081
보령항만관제실	60	76,477	575	1,436	765	7,504
용도등대동력실	40	3,309	272	131	33	318
안도등대숙소	50	34,524	487	766	345	3,376
안도등대창고	40	5,181	359	156	52	503
안도등대동력실	40	39,423	359	1,186	394	3,824
안도등대육실	40	17,037	431	427	170	1,661
대산항만관제실철탑	30	20,377	383	575	204	1,980
격렬비도안개감지장치	15	39,898	162	2,660	399	3,724
보령항만관제실 수도	15	2,210	35	682	22	153
합계		1,869,116		55,288	18,691	127,797

2) 공통

개 별 자 산 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천원)	잔존 상각월수	감가상각비 (천원)	보수비 (천원)	투자보수비 (천원)
청사	60	1,143,085	720	17,146	11,431	112,594
한우리호	20	690,000	240	31,050	6,900	65,895
충남874호	20	50,769	148	3,705	508	4,706
비축함선	20	26,533	167	1,716	265	2,482
청사발전기	15	18,295	180	1,098	183	1,720
안도태양광발전기	15	42,655	70	6,581	427	3,607
청사전기인입선	10	4,820	120	434	48	439
소각로	30	10,450	360	314	105	1,014
청사상황실	60	26,807	720	402	268	2,640
식당	60	5,170	720	78	52	509
합계		2,018,584		62,523	20,186	195,606

4. 목포항

1) 선박입항료

개 별 자 산 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잔존 상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가도등대	50	945,900	284	35,971	9,459	90,993
가사도 1,2호숙소	50	79,219,073	474	1,804,992	792,191	7,741,408
가사도등대	50	46,037,570	239	2,080,359	460,376	4,395,721
가사도등대 저통	50	10,469,000	474	238,534	104,690	1,023,047
가사도등대무선탑	30	2,599,200	234	119,963	25,992	247,924
가사도등대사무실	50	41,454,000	474	944,522	414,540	4,050,948
가사도등대선착장	40	29,750,540	354	1,008,493	297,505	2,874,205
가사도등대올타리	40	8,017,050	354	244,588	80,171	777,246
가사도등대전기폰	15	2,508,000	47	640,340	25,080	186,766
가사도발동발전기	15	8,030,160	47	1,845,228	80,302	618,493
가사도선착장창고	40	6,133,500	354	187,124	61,335	594,638
가산입표	50	30,340,940	526	622,970	303,409	2,971,797
각시여등표	50	8,314,480	435	206,428	83,145	810,805
갈두리북방등표	50	39,754,130	562	763,958	397,541	3,899,017
경서초입표	50	5,503,080	475	125,123	55,031	537,796
경치도등대	50	6,334,660	476	143,728	63,347	619,093
광표소 올타리	40	13,172,160	299	475,784	131,722	1,269,638
구도등대	50	1,485,210	140	114,573	14,852	137,064
구자도등대	50	7,680,100	461	179,924	76,801	750,018
금당도무인등대	50	17,376,840	550	341,218	173,768	1,703,562
금수실	40	545,000	299	19,686	5,450	52,531
금수탱크	40	3,630,900	347	113,008	36,309	351,789
김팽여등부표	15	456,000	40	123,120	4,560	33,288
까막섬입표	50	20,310,030	515	425,919	203,100	1,988,411
내도입표	50	9,524,300	503	204,498	95,243	931,980
녹도등대	50	6,217,330	440	152,607	62,173	606,472
눌옥도등대	50	10,614,400	503	227,904	106,144	1,038,650
달도입표	50	20,991,550	515	440,211	209,916	2,055,134
달리도등대	50	16,701,450	561	321,525	167,015	1,637,992
대노룩도등대	50	1,421,870	119	129,044	14,219	129,283
대항도등대	50	7,291,440	477	165,089	72,914	712,635
대흑산도남방파제	50	2,941,886,930	503	70,184,181	29,418,869	287,170,275
대흑산방파제등대	50	4,886,630	452	116,760	48,866	476,987
도로	30	26,658,660	179	1,787,173	266,587	2,487,149
도어두지무인등대	50	15,428,080	550	302,951	154,281	1,512,513
도초도등부표	15	4,600,000	83	598,554	46,000	400,145
도초도무인등대	50	32,255,370	599	581,566	322,554	3,167,380
독거도등대	50	7,291,440	477	165,089	72,914	712,635
등대 공청안테나	15	293,550	59	59,705	2,936	23,384
등대자녀합숙소	50	15,978,412	419	411,854	159,784	1,556,656
등대자녀합숙소	50	16,209,700	419	417,816	162,097	1,579,188

등명기	10	1,760,000	143	132,923	17,600	162,708
마량항방파제등대	50	29,275,000	599	527,830	292,750	2,874,717
마진도등부표	15	17,220,836	171	1,087,632	172,208	1,613,320
만재도등대	50	6,952,740	451	166,496	69,527	678,624
매물도등대	50	9,487,760	478	214,368	94,878	927,339
메루암등표	50	130,787,090	474	2,979,959	1,307,871	12,780,713
명량도등표	50	1,104,490	233	51,195	11,045	105,329
모항도등대	50	7,680,100	461	179,924	76,801	750,018
목포구 1호속소	50	2,512,017	239	113,514	25,120	239,850
목포구 2호속소	50	3,711,087	239	167,698	37,111	354,339
목포구 부속창고	40	121,480	119	11,025	1,215	11,045
목포구 육실창고	40	236,990	119	21,508	2,370	21,548
목포구 유류창고	40	254,163	119	23,067	2,542	23,110
목포구등대	50	976,790	71	148,582	9,768	82,821
목포구등대 저통	50	1,909,570	455	45,326	19,096	186,424
목포구등대 저통	30	321,640	227	15,303	3,216	30,634
목포구등대배전반	15	1,187,720	83	154,547	11,877	103,317
목포구등대사무실	50	5,682,688	203	302,330	56,827	538,036
목포구등대선착장	40	33,830,070	405	1,002,372	338,301	3,282,770
목포구등대울타리	40	868,130	119	78,788	8,681	78,934
목포구등대전기폰	15	471,630	11	514,505	4,716	0
목포구발동발전기	15	4,068,480	20	2,196,979	40,685	187,150
목포북항 호안	50	1,703,853,890	547	37,378,879	17,038,539	166,647,501
목포항2호등부표	15	456,000	40	123,120	4,560	33,288
목포항4호등부표	15	2,905,050	68	461,390	29,051	244,366
목포항6호등부표	15	342,000	40	92,340	3,420	24,966
목포항7호등부표	15	342,000	38	97,200	3,420	24,480
몽하도등대	50	32,172,720	515	674,690	321,727	3,149,803
무선전신주	30	300,000	179	18,101	3,000	28,190
무선전신주	30	300,000	179	18,101	3,000	28,190
무정전전원장치	10	3,900,000	138	305,217	39,000	359,478
물성말무인등대	50	17,723,160	549	348,652	177,232	1,737,451
밀매도등대	50	16,761,470	515	351,503	167,615	1,640,997
바이콘	10	19,316,867	136	1,533,986	193,169	1,778,288
바이콘	10	19,700,000	138	1,541,739	197,000	1,815,826
변도등대	50	651,960	286	24,619	6,520	62,734
변도등대레이콘	15	17,118,610	150	1,232,540	171,186	1,588,607
변서등표	50	143,768,500	598	2,596,488	1,437,685	14,117,201
병풍도등대	50	9,487,760	478	214,368	94,878	927,339
북도등표	50	27,076,140	515	567,810	270,761	2,650,833
북사초등표	50	336,272,080	590	6,155,489	3,362,721	33,011,659
북강진입표	50	22,814,820	515	478,447	228,148	2,233,637
북진입표	50	22,151,200	515	464,530	221,512	2,168,667
불도등대	50	13,879,970	539	278,114	138,800	1,360,186
불무도등대	50	14,724,570	526	302,330	147,246	1,442,224
비금등부표	15	4,955,890	115	465,423	49,559	449,047
비도등대	50	11,316,000	503	242,968	113,160	1,107,303
삼도등대	50	10,655,900	503	228,795	106,559	1,042,711
삼봉단등대	50	14,770,380	539	295,956	147,704	1,447,442
삼학도안벽망루	40	2,949,680	310	102,763	29,497	284,692
상마도등대	50	21,912,620	451	524,737	219,126	2,138,788

상사치도입표	50	23,684,120	526	486,290	236,841	2,319,783
상수치도등대	50	789,090	176	48,421	7,891	74,067
서거차동방파등대	50	8,487,000	503	182,226	84,870	830,477
서거차등대	50	2,402,930	434	59,796	24,029	234,313
서거차서방파등대	50	8,487,000	503	182,226	84,870	830,477
서넙도등대	50	16,332,820	515	342,514	163,328	1,599,031
서망남 등대	50	11,969,220	581	222,492	119,692	1,174,673
서망북 등대	50	11,969,220	581	222,492	119,692	1,174,673
석도입표	50	11,321,110	475	257,406	113,211	1,106,370
새목등대	50	5,075,460	437	125,435	50,755	495,003
소덕우도등대	50	7,680,100	461	179,924	76,801	750,018
소마진도등부표	15	4,600,000	77	645,195	46,000	395,481
소모도등대	50	1,052,680	318	35,751	10,527	101,693
송도등대	50	972,520	239	43,947	9,725	92,857
숙소및부대시설	60	269,759,740	706	4,126,636	2,697,597	26,563,310
숙소및식당	50	87,085,935	467	2,013,979	870,859	8,507,196
시하도 1호숙소	50	3,315,150	173	206,957	33,152	310,819
시하도 2호숙소	50	28,775,985	479	648,811	287,760	2,812,717
시하도 동력실	40	45,710	53	9,314	457	3,640
시하도 부속창고	40	717,953	53	146,300	7,180	57,165
시하도 부속창고	40	238,344	53	48,568	2,383	18,978
시하도 부속창고	40	722,343	53	147,194	7,223	57,515
시하도등대	50	1,766,000	71	268,631	17,660	149,737
시하도등대 저통	30	4,983,330	249	216,144	49,833	476,719
시하도등대배전반	15	193,250	58	35,984	1,933	15,727
시하도등대사무실	50	14,313,145	479	322,718	143,131	1,399,043
시하도등대선착장	40	7,465,500	95	943,011	74,655	652,249
시하도등대선착장	40	29,243,160	419	837,513	292,432	2,840,565
시하도등대울타리	40	16,550	11	16,249	166	30
시하도등대화장실	40	3,126,200	346	97,581	31,262	302,862
시하도발동발전기	15	4,591,560	65	762,905	45,916	382,865
시하도북방등부표	15	4,600,000	77	645,195	46,000	395,481
시하도서방등부표	15	4,600,000	77	645,195	46,000	395,481
시하도선착장창고	40	8,335,966	416	216,415	83,360	811,955
신지도등대	50	3,706,910	270	148,276	37,069	355,863
암치도입표	50	24,608,810	526	505,276	246,088	2,410,353
암태도등대	50	778,800	71	118,465	7,788	66,033
어란진1호입표	50	261,940	233	12,141	2,619	24,980
어란진2호입표	50	1,031,940	434	25,680	10,319	100,626
어란진방파제등대	50	6,917,240	71	1,052,200	69,172	586,504
어룡도 1호숙소	50	44,649,154	453	1,064,483	446,492	4,358,467
어룡도 2호숙소	50	30,348,273	503	651,613	303,483	2,969,666
어룡도 부속창고	40	102,204	47	23,485	1,022	7,872
어룡도 유류창고	40	396,900	173	24,778	3,969	37,212
어룡도등대	50	5,776,580	71	878,691	57,766	489,789
어룡도등대 저통	50	1,941,870	454	46,194	19,419	189,568
어룡도등대 저통	50	7,659,290	510	162,197	76,593	749,709
어룡도등대사무실	50	2,706,688	263	111,149	27,067	259,554
어룡도등대울타리	40	9,930	11	9,749	99	18
어룡도발동발전기	15	1,513,880	10	1,634,990	15,139	0
어룡도발동발전기	15	4,015,080	10	4,336,286	40,151	0

어부암 입표	50	1,031,940	434	25,680	10,319	100,626
여객선관계무선탑	15	595,560	65	98,955	5,956	49,661
여서도등대	50	1,176,360	270	47,054	11,764	112,931
연출서입표	50	6,010,810	475	136,667	60,108	587,414
오도등대	50	17,279,890	515	362,374	172,799	1,691,752
완도 통신 무선탑	15	2,834,090	64	478,253	28,341	235,584
완도소발동발전기	15	2,192,660	71	333,531	21,927	185,913
완도항방파제	50	3,050,988,030	551	66,446,200	30,509,880	298,454,183
완도항방파제등대	50	11,117,580	579	207,375	111,176	1,091,021
외갈도 등대	50	38,525,980	570	729,966	385,260	3,779,601
외달도등대	50	16,701,450	561	321,525	167,015	1,637,992
외병도등대	50	18,154,330	526	372,751	181,543	1,778,158
용전초입표	50	87,735,790	560	1,692,047	877,358	8,604,374
우물	50	10,269,270	419	264,697	102,693	1,000,457
우세도등대	50	11,594,040	486	257,645	115,940	1,133,639
우이도등대	50	15,193,010	539	304,424	151,930	1,488,859
우이만등부표	15	304,000	26	126,277	3,040	17,772
원평항방파제등대	50	12,684,190	515	265,999	126,842	1,241,819
임하도등대	50	457,730	296	16,701	4,577	44,103
자동녹음장치	6	2,028,556	87	251,821	20,286	177,674
자동녹음장치	6	19,200,000	95	2,182,737	192,000	1,701,726
자동녹음장치	5	1,100,000	59	201,356	11,000	89,864
자섬입표	50	41,682,430	559	805,313	416,824	4,087,712
자은도등대	50	7,291,440	477	165,089	72,914	712,635
자지도 1호속소	50	4,356,947	263	178,916	43,569	417,803
자지도 2호속소	50	42,400,204	453	1,010,866	424,002	4,138,934
자지도 육실창고	40	13,461,449	405	358,972	134,614	1,310,248
자지도등대	50	4,698,090	71	714,639	46,981	398,345
자지도등대 저통	30	2,783,000	250	120,226	27,830	266,277
자지도등대배전반	15	207,530	45	49,807	2,075	15,772
자지도등대사무실	50	117,040	71	17,803	1,170	9,924
자지도등대사무실	50	18,560,000	478	419,347	185,600	1,814,065
자지도등대선착장	40	2,695,870	95	340,531	26,959	235,534
자지도등대울타리	40	11,520	11	11,311	115	21
자지도발동발전기	15	1,036,980	8	1,399,923	10,370	0
자지도발동발전기	15	3,653,320	59	668,743	36,533	298,458
자지도선착장창고	40	5,367,843	346	167,551	53,678	520,029
자지도에어싸이랜	15	5,947,800	80	892,170	59,478	505,563
장도등대	50	12,636,200	503	271,314	126,362	1,236,489
장산도(북강)입표	50	6,738,180	475	153,205	67,382	658,498
장좌리 입표	50	355,070	233	16,458	3,551	33,861
저도등대	50	1,110,780	332	36,134	11,108	107,465
전파수신기	15	6,245,000	9	7,494,000	62,450	0
전파수신기	15	6,245,000	9	7,494,000	62,450	0
정도등대	50	5,075,460	437	125,435	50,755	495,003
정도등대	50	33,903,710	540	678,074	339,037	3,322,564
정동리입표	50	38,089,310	551	746,578	380,893	3,734,273
조명등	35	7,398,850	239	334,341	73,989	706,451
조약도등대	50	15,298,680	526	314,117	152,987	1,498,456
종다리암입표	50	9,999,970	475	227,368	100,000	977,260
죽굴도등대	50	15,328,300	515	321,448	153,283	1,500,685

죽도 선착장창고	40	4,726,500	368	138,713	47,265	458,779
죽도 에어싸이렌	15	2,567,260	80	385,089	25,673	218,217
죽도 에어싸이렌	15	2,567,260	80	385,089	25,673	218,217
죽도등대	50	4,699,320	71	714,826	46,993	398,449
죽도등대 1호숙소	50	26,614,037	466	616,806	266,140	2,599,723
죽도등대 2호숙소	50	19,906,528	466	461,353	199,065	1,944,517
죽도등대 저통	30	4,879,990	239	220,518	48,800	465,947
죽도등대 화장실	40	2,612,345	346	81,541	26,123	253,080
죽도등대무선표지	15	4,989,600	71	758,981	49,896	423,062
죽도등대무선표지	15	9,556,210	83	1,243,459	95,562	831,275
죽도등대무선호사	40	12,485	26	5,186	125	730
죽도등대배전반	15	207,530	45	49,807	2,075	15,772
죽도등대부속창고	40	6,165,000	368	180,929	61,650	598,407
죽도등대사무실	50	684,152	71	104,068	6,842	58,008
죽도등대사무실	50	21,418,943	466	496,405	214,189	2,092,254
죽도등대선착장	40	9,539,250	95	1,204,958	95,393	833,429
죽도등대육실창고	40	231,206	26	96,039	2,312	13,517
죽도등대울타리	40	20,790	11	20,412	208	38
죽도등대유류창고	40	374,334	26	155,493	3,743	21,884
죽도발동발전기	15	1,088,920	9	1,306,704	10,889	0
죽도발동발전기	15	4,068,970	20	2,197,244	40,690	187,173
죽항등대	50	30,584,480	586	563,673	305,845	3,002,081
중단파송수신기	15	5,210,000	120	468,900	52,100	474,110
중리입표	50	37,931,860	551	743,492	379,319	3,718,837
중산도무인등대	50	31,955,370	599	576,157	319,554	3,137,921
지시이도등대	50	19,896,920	526	408,530	198,969	1,948,839
진서말무인등대	50	23,543,200	550	462,303	235,432	2,308,090
청산항남방파등대	50	2,859,140	332	93,008	28,591	276,613
청산항방파제등대	50	12,747,570	515	267,328	127,476	1,248,024
초단파 송수신기	15	10,076,000	120	906,840	100,760	916,916
추포도등부표	15	4,600,000	77	645,195	46,000	395,481
치도등대	50	15,568,660	515	326,488	155,687	1,524,217
칠발도 1호숙소	50	54,774,883	441	1,341,426	547,749	5,343,346
칠발도 무선호사	40	33,097,383	383	933,294	330,974	3,216,409
칠발도 부속창고	40	312,270	26	129,712	3,123	18,256
칠발도 부속창고	40	538,364	26	223,628	5,384	31,474
칠발도등대	50	1,707,220	71	259,690	17,072	144,753
칠발도등대 저통	30	4,876,000	251	209,804	48,760	466,620
칠발도등대사무실	50	1,365,301	149	98,961	13,653	126,634
칠발도등대선착장	40	3,722,330	95	470,189	37,223	325,214
칠발도등대울타리	40	19,600	11	19,244	196	36
칠발도등대전기론	15	2,006,400	47	512,272	20,064	149,413
칠발도선착장창고	40	93,103	26	38,674	931	5,443
칠발도에어싸이렌	15	398,350	35	136,577	3,984	26,177
칠발도에어싸이렌	15	6,361,800	83	919,778	63,618	544,202
태양광 발전장치	15	82,929,480	155	5,778,312	829,295	7,715,117
태양광 발전장치	15	50,897,090	143	3,843,976	508,971	4,705,311
태양광발전장치	15	22,846,200	58	4,254,120	228,462	1,859,208
태양광발전장치	15	44,258,440	83	5,758,930	442,584	3,849,951
태양광발전장치	15	45,261,780	96	5,091,950	452,618	4,016,983
태양광발전장치	15	64,939,740	112	6,262,046	649,397	5,867,769

태양광발전장치	15	77,134,330	120	6,942,090	771,343	7,019,224
파랑관측기기	15	27,650,900	119	2,788,326	276,509	2,486,257
팔금도등대	50	434,380	296	15,849	4,344	41,853
팔금등부표	15	1,252,920	115	117,666	12,529	113,525
팽진부표	15	2,441,588	176	149,825	24,416	229,176
펌프실	40	4,409,000	347	137,225	44,090	427,177
하남덕도등대	50	10,876,420	485	242,197	108,764	1,063,422
하조도 1,2호속소	50	2,025,919	335	65,313	20,259	196,061
하조도 동력실	40	2,198,977	215	110,460	21,990	208,852
하조도 무신호사	40	22,054	165	1,444	221	2,061
하조도 부속창고	40	1,322,116	227	62,902	13,221	125,921
하조도등대	50	5,408,160	71	822,650	54,082	458,551
하조도등대 저통	50	2,358,050	479	53,167	23,581	230,488
하조도등대배전반	15	1,423,450	101	152,210	14,235	127,124
하조도등대사무실	50	23,620,443	509	501,180	236,204	2,311,926
하조도등대울타리	40	45,920	71	6,985	459	3,893
하조도등대전기폰	15	600,000	15	480,000	6,000	12,000
하조도발동발전기	15	2,496,000	20	1,347,840	24,960	114,816
하조도선착장창고	40	3,704	167	240	37	346
하조도에어싸이렌	15	5,085,990	71	859,604	50,860	422,639
하조도에어싸이렌	15	5,148,780	83	744,402	51,488	440,438
하조등대조경시설	30	2,316,850	191	131,005	23,169	218,584
하죽도등대	50	2,402,930	326	79,606	24,029	232,332
하태도등대	50	697,280	309	24,371	6,973	67,291
항무통신용무선탑	30	1,949,870	167	126,099	19,499	182,377
항무통신용무선탑	30	1,845,190	201	99,145	18,452	174,605
해서도입표	50	8,958,500	503	192,350	89,585	876,615
해수서입표	50	24,594,990	515	515,778	245,950	2,407,921
호장도등대	50	14,770,380	539	295,956	147,704	1,447,442
홍도등대	50	6,202,860	71	943,534	62,029	525,933
홍도등대 1호속소	50	39,141,788	479	882,529	391,418	3,825,926
홍도등대 2호속소	50	18,652,913	131	1,537,797	186,529	1,711,512
홍도등대 울타리	40	32,050	11	31,467	321	58
홍도등대 저통	30	5,375,290	239	242,900	53,753	513,239
홍도등대동력실	40	14,693,822	359	442,043	146,938	1,425,178
홍도등대배전반	15	193,250	58	35,984	1,933	15,727
홍도등대부속창고	40	7,292,732	359	219,391	72,927	707,334
홍도등대사무실	50	699,208	193	39,127	6,992	66,008
홍도등대선착장	40	18,828,510	405	557,882	188,285	1,827,063
홍도등무선안테나	15	876,060	107	88,425	8,761	78,764
홍도발동발전기	15	4,773,940	11	4,687,141	47,739	8,680
홍도선착장창고	40	2,637,093	308	92,469	26,371	254,462
화원등대	50	17,122,420	570	324,425	171,224	1,679,800
황제남서당등대	30	8,341,080	328	274,645	83,411	806,643
황제도등대	50	14,661,930	539	293,783	146,619	1,436,815
횡간도등대	50	7,680,100	461	179,924	76,801	750,018
횡도등대	50	16,233,230	515	340,425	162,332	1,589,280
흑산도 1호속소	50	17,653,875	431	442,371	176,539	1,721,150
흑산도 2호속소	50	191,538	59	35,061	1,915	15,648
흑산도 무신호사	40	33,361,145	407	885,259	333,611	3,247,589
흑산도 부속창고	40	5,623,220	371	163,695	56,232	545,953

흑산도 육실창고	40	156,901	23	73,675	1,569	8,323
흑산도 유류창고	40	199,366	23	93,615	1,994	10,575
흑산도등대	50	986,300	71	150,029	9,863	83,627
흑산도등대 저통	50	4,532,150	503	97,311	45,322	443,484
흑산도등대배전반	15	207,530	45	49,807	2,075	15,772
흑산도등대사무실	50	79,162	57	14,999	792	6,416
흑산도등대사무실	50	18,560,000	466	430,146	185,600	1,812,985
흑산도등대선착장	40	3,110,620	95	392,920	31,106	271,770
흑산도등대올타리	40	28,340	11	27,825	283	52
흑산도발동발전기	15	4,015,080	47	922,614	40,151	309,247
흑산도발동발전기	15	4,626,830	65	768,766	46,268	385,806
흑산도선착장창고	40	105,272	23	49,432	1,053	5,584
흑산도선착장창고	40	5,367,842	346	167,551	53,678	520,029
흑산도에어싸이렌	15	196,080	27	87,147	1,961	10,893
흑산도에어싸이렌	15	8,581,160	89	1,157,010	85,812	742,415
CCTV카메라	10	6,630,000	143	500,727	66,300	612,927
SSB 송수신기	15	1,151,833	120	103,665	11,518	104,817
SSB 송수신기	15	1,113,850	18	668,310	11,139	44,554
SSB 송수신기	15	1,113,850	18	668,310	11,139	44,554
SSB 송수신기	15	1,067,500	43	268,116	10,675	79,938
SSB 송수신기	15	1,067,500	43	268,116	10,675	79,938
SSB 송수신기	15	1,233,333	65	204,923	12,333	102,841
SSB 송수신기	15	1,233,333	65	204,923	12,333	102,841
SSB 송수신기	15	1,233,334	65	204,923	12,333	102,841
SSB 송수신기	15	1,286,318	74	187,733	12,863	109,859
SSB 송수신기	15	1,286,318	74	187,733	12,863	109,859
SSB 송수신기	15	1,286,317	74	187,733	12,863	109,858
SSB 송수신기	15	1,286,317	74	187,733	12,863	109,858
SSB 송수신기	15	1,298,000	99	141,600	12,980	115,640
SSB 송수신기	15	3,180,000	65	528,369	31,800	265,163
SSB 송수신기	15	4,400,000	72	660,000	44,000	374,000
SSB 송수신기	15	4,400,000	72	660,000	44,000	374,000
SSB무선통신장치	15	4,695,530	119	426,149	46,955	426,938
SSB송수신기	10	3,400,000	136	270,000	34,000	313,000
SSB송수신기	15	13,200,000	177	805,424	132,000	1,239,458
VHF 송수신기	15	4,180,000	65	694,523	41,800	348,548
VHF 송수신기	15	4,070,000	82	536,049	40,700	353,395
VHF 송수신기	15	1,095,750	65	182,063	10,958	91,369
VHF 송수신기	15	1,095,750	65	182,063	10,958	91,369
VHF 송수신기	15	1,095,750	65	182,063	10,958	91,369
VHF 송수신기	15	1,095,750	65	182,063	10,958	91,369
VHF송수신기	15	1,900,000	108	190,000	19,000	171,000
합계		11,983,255,837		379,521,469	119,832,558	1,160,729,829

2) 선석사용료

개 별 자 산 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잔존 상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1호잔교 합선	20	40,203,400	107	4,508,793	402,034	3,569,461
1호잔교 합선	20	40,203,400	107	4,508,793	402,034	3,569,461
1호잔교연락도교	30	2,901,790	227	138,059	29,018	276,373
2호잔교 합선	20	17,640,000	59	3,587,797	176,400	1,405,220
2호잔교 합선	20	17,640,000	59	3,587,797	176,400	1,405,220
2호잔교연락도교	30	647,280	189	36,987	6,473	61,029
2호잔교연락도교	30	647,280	189	36,987	6,473	61,029
5호잔교연락도교	30	647,280	189	36,987	6,473	61,029
목포고정잔교합선	20	5,785,920	143	485,532	57,859	530,039
목포내항물양장	40	999,761,500	395	30,372,501	9,997,615	96,938,900
목포북항물양장	40	1,844,383,090	383	57,787,460	18,443,831	178,659,563
목포석탄부두안벽	40	8,980,066,270	335	321,674,016	89,800,663	865,839,225
목포연락제물양장	40	733,965,620	311	28,320,217	7,339,656	70,564,540
목포외항부두안벽	40	1,002,045,650	172	69,910,162	10,020,457	93,213,549
목포항고정잔교	30	12,497,280	263	513,196	124,973	1,198,408
목포항카체리부두	40	2,479,817,190	287	103,685,736	24,798,172	237,613,145
목포항통신장합선	20	34,519,590	119	3,480,967	345,196	3,103,862
영해잔교가동도교	30	2,779,920	203	147,897	27,799	263,202
완도진입로물양장	40	1,247,092,270	335	44,671,962	12,470,923	120,242,031
완도항 합선	20	7,424,500	71	1,254,845	74,245	616,965
완도항 합선	20	6,150,910	43	1,716,533	61,509	443,438
완도항 화물부두	40	3,415,004,150	420	97,571,547	34,150,042	331,743,260
완도항경사물양장	40	469,800,000	335	16,828,657	4,698,000	45,297,134
완도항카체리부두	40	3,091,387,050	335	110,736,253	30,913,871	298,065,080
완도항화물부두	40	3,780,907,730	347	130,751,852	37,809,077	365,015,588
전매잔교가동도교	30	2,779,920	203	147,897	27,799	263,202
통신장가동도교	30	9,957,860	239	449,979	99,579	950,788
해경잔교비상합선	20	3,480,000	8	5,220,000	34,800	0
해경잔교연락도교	30	647,280	189	36,987	6,473	61,029
합계		28,250,784,130		1,042,206,395	282,507,841	2,721,031,774

3) 부두사용료

(1) 건물, 공작물

개 별 자 산 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잔존 상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1부두 경비실	50	49,199,738	491	1,082,194	491,997	4,811,754
1부두 보안담	20	1,133,160	88	139,070	11,332	99,409
1부두 화장실	40	2,811,188	347	87,495	28,112	272,369
2부두 변전실	50	39,778,370	359	1,196,675	397,784	3,858,169

2부두 보안담	40	29,426,020	263	1,208,369	294,260	2,821,765
2부두 펌프실	50	24,012,428	515	503,562	240,124	2,350,887
2부두해수펌프실	50	17,088,534	467	395,195	170,885	1,669,334
3야적장보안등	35	1,548,550	275	60,816	15,486	148,773
내항물양장 담	40	17,537,510	343	552,201	175,375	1,698,531
노무자휴게소	60	156,583,742	559	3,025,232	1,565,837	15,355,851
노무자휴게소	60	37,146,395	554	724,154	371,464	3,642,224
노무자휴게소	60	37,786,102	554	736,624	377,861	3,704,948
노무자휴게소	60	135,283,194	599	2,439,163	1,352,832	13,284,403
노무자휴게소	60	22,536,800	634	383,908	225,368	2,215,289
목포석탄부두화단	30	2,207,060	239	99,733	22,071	210,733
삼학도야적장화단	30	6,201,780	251	266,849	62,018	593,493
석탄 비탄방진망	30	162,221,590	308	6,320,322	1,622,216	15,590,127
석탄부두 물탱크	50	104,701,060	515	2,439,636	1,047,011	10,226,142
석탄부두간이초소	15	503,230	71	85,053	5,032	41,818
석탄부두간이초소	15	843,330	98	103,265	8,433	74,007
석탄부두변전설비	15	22,405,870	47	5,720,648	224,059	1,668,522
석탄부두세차시설	30	12,351,580	275	538,978	123,516	1,181,260
석탄부두압력탱크	30	23,695,670	275	1,033,993	236,957	2,266,168
석탄부두임항철도	40	204,344,830	347	7,066,680	2,043,448	19,727,815
석탄부두조명타워	35	36,074,200	287	1,357,496	360,742	3,471,670
석탄부두조명타워	35	36,074,200	287	1,357,496	360,742	3,471,670
석탄부두침전조	30	54,595,800	227	2,886,122	545,958	5,170,968
석탄비탄방지시설	30	67,350,160	227	3,560,361	673,502	6,378,980
연락제 조명타워	35	14,380,830	311	499,399	143,808	1,388,143
연락제물양조명등	35	490,400	275	19,259	4,904	47,114
완도항 램프시설	30	215,049,600	215	10,802,492	2,150,496	20,424,711
외항부두보안등	35	4,742,750	311	164,700	47,428	457,805
외항부두보안등	35	13,980,410	383	394,226	139,804	1,358,618
외항부두조명타워	35	50,600,000	311	1,757,170	506,000	4,884,283
외항부두조명타워	35	82,088,090	371	2,389,626	820,881	7,969,846
외항부두조명타워	35	74,173,650	299	2,679,182	741,737	7,149,447
중삼물양조명타워	35	30,431,340	390	842,714	304,313	2,958,863
통선장 사무실	50	17,953,002	479	404,786	179,530	1,754,822
항만소방파출소	60	38,629,144	562	742,339	386,291	3,788,680
화물부두조명타워	35	9,123,770	347	283,967	91,238	883,980
합계		1,857,085,077		66,351,149	18,570,851	179,073,393

(2) 토지

개 별 자 산 명	지 번	지목	면 적 (M ²)	재평가액(원)
화물부두용지	완도 완도 군내 296-1	잡	104.00	8,299,200
화물부두용지	완도 완도 군내 296-2	도로	2,352.00	187,689,600
화물부두용지	완도 완도 군내 296-3	잡	324.00	25,855,200
연락제물양장부지	목포 산정 1427	잡	7,338.00	708,850,800
연락제물양장부지	목포 산정 1427-1	도로	36.00	3,427,200

5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28	대지	12,714.00	1,245,972,000
1부두2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55-3	대지	2,036.40	128,293,200
임항지구내부지	완도 완도 군내 308-30	제방	198.00	117,671,400
2부두3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81	대지	8,619.00	603,330,000
2부두1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83	대지	3,593.40	226,384,200
2부두1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84	잡	3,576.00	225,288,000
2부두1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84-1	잡	2,638.00	166,194,000
2부두1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84-2	잡	11,898.00	749,574,000
완도항진입도로	완도 완도 군내 1277	도로	13,970.00	3,114,611,500
2부두1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84-3	도로	606.00	38,178,000
완도항진입도로	완도 완도 가용 1017	도로	10,026.00	2,530,061,100
2부두1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84-4	도로	1,221.00	79,771,715
완도항진입도로	완도 완도 가용 1038	도로	4,740.00	1,294,020,000
2부두1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84-5	잡	6,321.00	398,223,000
화물부두 제방	완도 완도 군내 296-5	제방	434.00	34,633,200
제4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86	대지	4,786.80	338,426,760
화물부두후면도로	완도 완도 군내 296-6	도로	62.00	4,947,600
제4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87	대지	7,047.90	498,286,530
화물부두후면부지	완도 완도 군내 1255-3	잡	36,992.00	3,314,483,200
화물부두후면도로	완도 완도 군내 1255-4	도로	1,966.00	176,153,600
화물부두후면부지	완도 완도 군내 1255-5	잡	273.00	24,460,800
화물부두 제방	완도 완도 군내 1255-6	제방	146.00	13,081,600
부두외곽부지	완도 완도 가용 1017-1	제방	894.00	225,288,000
부두외곽시설	완도 완도 가용리1017-2	제방	483.00	121,885,050
제5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576-1	잡	1,256.20	96,727,400
용당도선장부지	목포 항동 1-116	대지	396.00	152,460,000
연락제물양장부지	목포 동명 10-2	도로	889.30	170,567,740
연락제물양장부지	목포 동명 10-3	대지	403.30	67,189,780
영해잔교후면부지	목포 영해1가 13-3	대지	277.70	46,264,820
부두외곽부지	목포 서산 24-31	도로	162.00	9,449,962
부두외곽부지	목포 서산 24-33	제방	126.00	21,256,200
부두외곽부지	목포 온금194-22	제방	20.00	266,000
북항물양장 부지	목포 죽교 549-5	잡	4,258.00	116,818,600
북항물양장 부지	목포 죽교 549-6	도로	129.00	6,642,360
북항물양장 부지	목포 죽교 549-8	대지	3,800.00	228,760,000
북항물양장 부지	목포 죽교 549-12	대지	1,131.00	31,668,000
북항물양장 부지	목포 죽교 549-15	대지	24.00	2,352,000
북항물양장 부지	목포 죽교 620-101	잡	7,124.00	1,196,832,000
북항물양장 부지	목포 죽교 620-102	도로	1,480.00	244,840,980

북항물양장 부지	목포 죽교 620-103	잡	226.00	41,764,800
원목야적장	목포 산정 1500-2	대지	1,264.00	106,176,000
원목야적장	목포 산정 1530-4	대지	2,482.20	208,504,800
원목야적장	목포 산정 1545-1	대지	116.00	9,744,000
원목야적장	목포 산정 1554	대지	36.40	3,057,600
북항물양장부지	목포 죽교 549-38	도로	36.00	1,853,680
북항물양장부지	목포 죽교 549-40	도로	716.00	36,867,690
원목야적장	목포 산정 1500-1	대지	2,056.50	247,140,000
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84-6	잡	24,144.30	9,797,333,211
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454-6	잡	4,265.00	7,381,485,900
야적장부지	목포 산정 1576-4	도로	1,618.70	113,309,000
부두외곽부지	영암 삼호 용당 1457-13	잡	7,117.00	72,256,000
합계			210,950.10	37,014,928,978
당 평균지가				175,468

4) 여객터미널사용료

개 별 자 산 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잔존 상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목포터미널 조정	30	17,917,710	310	624,230	179,177	1,729,348
목포터미널방풍망	30	10,740,500	215	599,470	107,405	1,014,103
목포터미널조명등	35	3,474,700	249	150,710	34,747	332,399
목포항여객터미널	60	356,293,767	558	6,896,008	3,562,938	34,939,776
목포항터미널 담	40	18,896,760	343	595,000	188,968	1,830,176
여객잔교가동도교	30	2,469,440	189	141,111	24,694	232,833
여객잔교가동도교	30	2,469,440	189	141,111	24,694	232,833
여객잔교가동도교	30	2,469,440	189	141,111	24,694	232,833
여객잔교가동도교	30	35,350,130	276	1,383,266	353,501	3,396,686
여객잔교가동도교	30	12,257,290	227	583,166	122,573	1,167,412
여객잔교가동도교	30	12,257,290	227	583,166	122,573	1,167,412
여객잔교가동도교	30	12,136,640	263	498,387	121,366	1,163,825
완도여객잔교함선	20	9,873,780	143	828,569	98,738	904,521
완도터미널방풍망	30	33,690,800	275	1,470,144	336,908	3,222,066
완도터미널조명등	35	5,798,970	284	220,524	57,990	557,845
완도터미널조명타워	35	7,745,600	284	294,551	77,456	745,105
완도터미널조명타워	35	7,745,600	284	294,551	77,456	745,105
완도항여객터미널	60	1,131,531,630	575	21,253,116	11,315,316	111,027,851
완도항터미널 담	40	42,661,050	227	2,029,689	426,611	4,063,136
완도항터미널정원	30	224,982,030	227	10,703,991	2,249,820	21,427,804
제2여객터미널	60	188,044,130	727	2,793,503	1,880,441	18,525,063
흑산항여객터미널	60	83,912,500	611	1,483,232	839,125	8,242,927
합계		2,222,719,197		53,708,606	22,227,192	216,901,059

5) 공통

개 별 자 산 명	내용 연수	대장가액	잔존 상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계중기실	50	8,743,720	467	202,210	87,437	854,151
관계용앰프시설	15	1,700,000	47	390,638	17,000	130,936
동명분실사무실	40	6,343,823	328	208,882	63,438	613,494
목포청 직원숙소	60	576,111,400	719	8,653,690	5,761,114	56,745,771
목포청 직원숙소	60	576,111,400	719	8,653,690	5,761,114	56,745,771
목포청 청사	60	189,548,898	526	3,891,879	1,895,489	18,565,702
목포청사보안담	40	10,464,500	287	393,786	104,645	1,007,071
목포청사조경시설	30	1,718,180	167	111,116	17,182	160,706
오염방제자재창고	40	6,497,421	359	195,466	64,974	630,196
오염자재창고	40	9,450,000	471	216,688	94,500	923,331
완도소 직원숙소	60	35,715,250	660	584,431	357,153	3,513,082
완도소 직원숙소	60	48,866,290	660	799,630	488,663	4,806,666
자동전압조정기	15	1,280,000	95	145,516	12,800	113,448
직원숙소물품창고	40	27,144,369	81	3,619,249	271,444	2,352,512
직원숙소창고	40	1,981,994	143	149,689	19,820	183,230
청사 수위실	40	3,537,012	323	118,265	35,370	341,875
청사 휴게실	40	19,476,783	323	651,236	194,768	1,882,555
청사물품창고	50	11,734,780	414	306,125	117,348	1,142,866
청사별관	40	99,460,770	467	2,300,163	994,608	9,716,061
탁구장시설	10	1,673,550	47	427,289	16,736	124,626
합계		1,637,560,140		32,019,639	16,375,601	160,554,050

5. 여수(광양)항

1) 선박입항료

(1) 여수항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2호방파제 남등대	50	1,277,657	284	48,588	12,777	122,907
2호방파제 북등대	50	1,277,657	284	48,588	12,777	122,907
가막암부표	15	1,761,085	167	113,892	17,611	164,719
거문 반여등표	50	36,985,081	503	794,112	369,851	3,619,097
거문남방파등대	50	17,524,060	600	315,432	175,241	1,720,863
거문도 무신폭기	15	8,601,600	107	868,200	86,016	773,340
거문도동방부표	15	5,214,097	127	443,400	52,141	477,070
거문도등대	50	5,716,456	201	280,224	57,165	543,623
거문도등대 답	40	229,009	139	13,992	2,290	21,502
거문도등대무선탑	30	30,602,000	323	1,023,228	306,020	2,957,877
거문도등대저수조	50	26,878,200	574	505,728	268,782	2,637,247
거문도등대저수조	50	7,855,065	296	199,404	78,551	765,566
거문도발동발전기	15	3,183,934	69	498,360	31,839	268,557
거문도항남방파제		3,402,194,190	480	76,549,368	34,021,942	332,564,482
거문도동방파제등대	50	3,437,385	536	69,264	34,374	336,812
거문북방파제등대	50	2,326,800	363	69,228	23,268	225,757
거문통신소저수조	50	5,448,960	527	111,672	54,490	533,729
경호리등부표	15	103,740	0	-	1,037	10,374
고흥 나로도등대	50	1,834,000	206	96,156	18,340	173,784
고흥 소록도등대	50	1,149,579	233	53,280	11,496	109,630
고흥 시산도등대	50	10,025,335	464	233,352	100,253	979,198
고흥 신금등대	50	9,710,650	450	233,052	97,107	947,760
고흥 탕근여등대	50	35,022,160	201	1,881,780	350,222	3,314,038
고흥봉래방파제	40	1,508,782,430	364	44,766,072	15,087,824	146,401,636
고흥사양도등대	50	2,879,929	206	150,984	28,799	272,895
군내입표	30	25,672,661	287	966,084	256,727	2,470,658
나로도 삼암등표	50	80,824,702	547	1,595,808	808,247	7,922,889
나로도서방파제등대	50	2,715,966	273	107,448	27,160	260,852
나로도항부표	15	240,494	31	83,784	2,405	15,671

남향동방파제등대	50	7,691,070	486	170,916	76,911	752,015
남향서방파제등대	50	5,123,090	431	128,376	51,231	499,471
남해 금산등대	50	3,894,912	297	141,636	38,949	375,328
남해 대도등대	50	8,771,112	296	320,028	87,711	845,108
남해 삼기등표	50	26,457,348	289	1,018,788	264,573	2,543,856
남해 상탄등대	50	7,415,150	296	270,552	74,152	714,460
남해 세존도등대	50	36,044,562	527	738,672	360,446	3,530,589
남해 엄수도등표	50	29,155,095	527	597,480	291,551	2,855,762
남해 옥동등대	50	18,017,326	538	361,692	180,173	1,765,563
남해 우모서등표	50	24,359,151	527	499,200	243,592	2,385,995
남해 지족등표	50	45,093,106	536	908,592	450,931	4,418,451
남해 평산등대	50	7,203,470	296	262,824	72,035	694,065
남해 향기도등대	50	1,915,200	201	102,912	19,152	181,229
남해와도등대	50	35,921,740	561	691,536	359,217	3,523,020
노랑여등부표	15	2,518,561	150	181,332	25,186	233,723
녹동남방파등대	50	14,379,975	600	258,840	143,800	1,412,114
녹동등대	50	9,070,404	551	177,792	90,704	889,261
녹동북도제등대	50	14,379,975	600	258,840	143,800	1,412,114
녹동향방파제등대	50	2,995,257	435	74,364	29,953	292,089
대형간서방위등표	50	3,587,818	237	163,500	35,878	342,432
돌산 금성등표	50	17,033,034	498	369,396	170,330	1,666,364
돌산 여초등표	50	1,368,171	263	56,184	13,682	131,199
돌산 우암등표	50	28,959,296	527	593,472	289,593	2,836,582
동방부표	15	1,784,883	117	164,760	17,849	162,012
등대 통신장치	30	3,495,660	179	210,912	34,957	328,475
등대 통신장치	30	1,565,429	233	72,564	15,654	149,287
물건북방파등대	50	15,924,058	600	286,632	159,241	1,563,743
미조향방파제등대	50	1,149,120	201	61,740	11,491	108,738
백야도등대	50	35,428,307	347	1,323,516	354,283	3,410,479
백야도등대 담	40	10,466,733	310	306,072	104,667	1,016,066
백야도등대저수조	50	11,642,710	546	230,292	116,427	1,141,242
백야도등대저수조	50	20,677,249	251	889,704	206,772	1,978,755
백야도등대지하수	20	12,300,000	240	553,500	123,000	1,174,650
백야도발동발전기	15	201,672	0	-	2,017	20,167
백야도등대무신호기		34,229,080	180	684,580	342,291	3,354,450
서도방파제등대	50	8,130,807	488	179,940	81,308	795,087

서리등부표	15	301,971	0	-	3,020	30,197
서방부표	15	2,659,384	117	245,484	26,594	241,390
소리도 무신호기	15	10,893,513	127	926,376	108,935	996,714
소리도등대	50	9,032,363	201	484,008	90,324	854,836
소리도등대저수조	50	3,536,292	340	81,840	35,363	345,445
소리도발동발전기	15	23,940	0	-	239	2,394
소유등표		77,411,150	504	138,234	774,112	7,727,292
시산도북등대	50	29,294,122	549	576,276	292,941	2,871,785
신강서등표	50	59,448,932	573	1,120,500	594,489	5,832,843
신항북방파등부표	15	198,550	0	-	1,986	19,855
썰레여부표	15	375,370	57	71,124	3,754	30,425
여수 구몽암등대	50	17,968,223	502	386,568	179,682	1,758,166
여수 암목도등대	50	2,696,371	418	69,672	26,964	262,670
여수 야도등대	50	2,696,371	418	69,672	26,964	262,670
여수 양암등표	50	40,730,594	500	879,780	407,306	3,985,081
여수 장군도등대	50	11,963,882	499	258,936	119,639	1,170,495
여수구항등대	50	6,275,880	437	155,100	62,759	612,078
여수구항부표	15	192,444	0	-	1,924	19,244
여수대두역서등대	50	9,975,632	467	230,700	99,756	974,493
여수북파등대	50	6,693,920	563	128,412	66,939	656,551
여수신항 A부표	15	192,444	0	-	1,924	19,244
여수신항등부표	15	2,711,743	40	732,168	27,117	197,958
여수외항등부표	15	6,733,361	106	686,040	67,334	604,732
여수항동방파제	40	6,424,815,579	371	187,029,672	64,248,156	623,778,591
여수항등부표	15	177,841	0	53,353	1,778	12,449
여수항북방파제	40	3,489,732,641	371	101,587,908	34,897,326	338,814,473
여수항서방파제	40	5,641,861,674	371	164,237,496	56,418,617	547,762,418
여수항선유파제제	40	309,462,450	371	9,008,616	3,094,625	30,045,383
여자만등표	50	57,131,622	558	1,105,776	571,316	5,602,585
연도 절리서등표	50	26,563,166	503	570,348	265,632	2,599,282
오동도 무신호기	15	33,831,000	180	2,029,860	338,310	3,180,114
오동도등대	50	8,189,370	201	440,028	81,894	774,934
오동도등대 담	40	1,624,529	300	58,488	16,245	156,604
오동도등대배전반		25,549,450	180	510,988	255,495	2,503,846
오동도등대저수조	50	1,191,254	201	64,008	11,913	112,725
오동도발동발전기	15	1,167,733	35	360,324	11,677	80,741

완도 섬도등대	50	29,637,364	233	1,402,860	296,374	2,823,450
응봉등부표	15	8,433,343	143	636,924	84,333	779,642
주인여등표	50	75,305,890	600	1,355,508	753,059	7,395,038
충전실발동발전기	15	551,221	0	-	5,512	55,122
충전실발동발전기	15	1,304,996	75	187,920	13,050	111,708
충전실발동발전기	15	296,808	21	114,487	2,968	18,232
파랑관측장치	15	7,201,402	103	755,100	72,014	644,630
표지선접안시설		576,512,510	480	12,971,531	5,765,125	56,354,098
하동 노량등대	50	306,432	201	16,464	3,064	28,997
하동 백서등대	28	40,378,656	297	1,468,308	403,787	3,891,035
하동 와기등표	50	5,408,340	425	137,436	54,083	527,090
하백도등대	50	41,756,164	316	459,800	417,562	4,129,636
하백도등대레이콘		29,368,535	518	204,104	293,685	2,916,443
하중도등표		121,067,480	600	726,404	1,210,675	12,034,108
항도부표	15	1,640,091	143	123,864	16,401	151,623
호리도등표		111,058,500	600	1,999,056	1,110,585	10,905,944
거문도등대동력실	40	34,209,585	368	1,003,980	342,096	3,320,561
거문도등대사무실	50	8,935,675	181	865,260	89,357	807,042
거문도등대숙소	60	17,706,219	339	450,132	177,062	1,725,609
거문도등대숙소	50	12,949,104	269	430,704	129,491	1,251,840
거문도등대숙소	50	16,005,889	209	692,496	160,059	1,531,339
거문도등대숙소	50	30,320,684	292	801,660	303,207	2,951,902
거문도등대유류고	35	3,009	21	1,548	30	146
거문도등대창고	35	6,950,658	285	289,512	69,507	666,115
거문도통신소숙소	50	24,753,722	563	474,852	247,537	2,427,887
거문도통신소숙소	50	35,298,648	515	740,244	352,986	3,455,840
거문도통신소숙소	50	35,298,648	515	740,244	352,986	3,455,840
거문도통신소창고	35	10,551,476	335	340,164	105,515	1,021,131
거문도표지관리소	60	95,196,136	720	1,439,088	951,961	9,375,705
거문도항무통신소	60	31,527,249	635	536,208	315,272	3,099,104
거문통신소동력실	40	9,726,604	395	265,944	97,266	946,066
나로도무인중계소	60	21,611,889	623	374,652	216,119	2,123,724
낙포각통신중계소	60	458,710,340	720	6,880,656	4,587,103	45,182,968
백야도등대 갑옥	50	406,788	201	21,852	4,068	38,494
백야도등대동력실	35	34,956,185	344	1,097,460	349,562	3,385,873
백야도등대사무실	50	7,191,587	477	162,828	71,916	702,876

백야도등대숙소	50	44,582,268	256	1,278,588	445,823	4,330,368
백야도등대숙소	50	48,301,344	478	1,091,328	483,013	4,721,002
백야도등대펄프실	45	4,960,632	486	110,232	49,606	485,040
소리도 무선호사	40	18,540,210	368	544,116	185,402	1,799,609
소리도등대 욕실	45	168,254	222	8,184	1,683	16,007
소리도등대사무실	60	3,914,137	321	131,688	39,141	378,245
소리도등대숙소	50	34,565,808	249	1,070,400	345,658	3,349,541
소리도등대숙소	50	14,276,485	250	642,852	142,765	1,363,363
소리도등대숙소	50	9,195,438	238	417,276	91,954	877,816
소리도등대유류고	35	81,047	57	15,360	810	6,569
소리도등대창고	35	118,253	104	12,276	1,183	10,598
소리도등대창고	35	10,250,712	104	1,064,496	102,507	918,622
여수항보조관제소	50	14,989,266	263	615,528	149,893	1,437,374
여수항파고관측소	50	20,691,732	449	497,712	206,917	2,019,402
여수항항만관제소	60	273,410,381	623	10,103,520	2,734,104	26,330,686
오동도등대 욕실	45	242,880	153	17,148	2,429	22,573
오동도등대사무실	50	530,896	201	28,524	5,309	50,237
오동도등대숙소	50	128,710	201	6,912	1,287	12,180
오동도등대숙소	50	29,127,826	280	898,980	291,278	2,822,885
거문도등대숙소	50	15,500,000	600	279,000	155,000	1,522,100
파고관측소	50	3,291,152	357	99,564	32,912	319,159
표지충전실	60	12,413,031	569	235,608	124,130	1,217,742
표지충전실	50	9,110,798	524	187,776	91,108	892,302
소계		24,582,059,261		667,365,119	491,641,185	2,391,469,414

(2) 광양항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광양항15호등부표	15	5,692,324	180	341,544	56,923	535,078
낙포관제설발전기	15	18,800,000	180	564,000	188,000	1,823,600
묘도 10호등부표	15	2,539,938	52	527,520	25,399	201,242
묘도 12호등부표	15	1,263,928	0	-	12,639	126,393
묘도 14호등부표	15	2,887,958	64	487,344	28,880	240,061
묘도 17호등부표	15	673,480	0	86,592	6,735	58,689
묘도 18호등부표	15	2,879,851	66	471,252	28,799	240,860
묘도 19호등부표	15	673,480	0	46,620	6,735	62,686

묘도 22호등부표	15	672,381	0	-	6,724	67,238
업수도등부표	15	1,595,226	26	662,628	15,952	93,260
광양항 1호등부표	15	7,927,002	95	901,176	79,270	702,583
광양항 2호등부표	15	7,927,002	95	901,176	79,270	702,583
광양항 3호등부표	15	7,927,002	95	901,176	79,270	702,583
광양항 4호등부표	15	7,927,002	95	901,176	79,270	702,583
광양항 5호등부표	15	8,500,949	95	966,420	85,009	753,453
광양항 6호등부표	15	7,927,002	95	901,176	79,270	702,583
광양항 7호등부표	15	6,224,963	95	707,676	62,250	551,729
광양항 8호등부표	15	6,798,910	95	772,932	67,989	602,598
광양항 9호등부표	15	7,043,862	95	800,772	70,439	624,309
광양항10호등부표	15	7,205,470	95	819,144	72,055	638,633
광양항12호등부표	15	7,205,470	95	819,144	72,055	638,633
광양항13호등부표	15	6,518,702	95	741,072	65,187	577,763
광양항14호등부표	15	7,252,732	95	824,520	72,527	642,821
광양항16호등부표	15	8,837,000	95	1,016,640	88,370	782,036
광양항19호등부표	15	7,179,788	95	816,228	71,798	636,356
광양항20호등부표	15	7,179,788	95	816,228	71,798	636,356
광양항21호등부표	15	7,179,788	95	816,228	71,798	636,356
광양항22호등부표	15	7,179,788	95	816,228	71,798	636,356
광양항23호등부표	15	7,179,788	95	816,228	71,798	636,356
광양항24호등부표	15	7,212,312	95	819,924	72,123	639,239
광양항25호등부표	15	7,065,951	95	803,292	70,660	626,266
광양항26호등부표	15	7,065,951	95	803,292	70,660	626,266
광양항27호등부표	15	7,212,312	95	819,924	72,123	639,239
광양항29호등부표	15	6,237,252	95	709,080	62,373	552,817
묘도8호등부표	15	14,463,227	140	1,115,736	144,632	1,334,749
묘도9호등부표	15	14,463,227	140	1,115,736	144,632	1,334,749
묘도23호등부표	15	14,463,227	140	1,115,736	144,632	1,334,749
묘도25호등부표	15	14,463,227	140	1,115,736	144,632	1,334,749
묘도26호등부표	15	14,463,227	140	1,115,736	144,632	1,334,749
묘도29호등부표	15	14,463,227	140	1,115,736	144,632	1,334,749
묘도28호등부표	15	14,463,227	140	1,115,736	144,632	1,334,749
묘도31호등부표	15	14,463,227	140	1,115,736	144,632	1,334,749
묘도34호등부표	15	14,463,227	140	1,115,736	144,632	1,334,749
묘도36호등부표	15	14,463,227	140	1,115,736	144,632	1,334,749

코스모스 1호부표	15	1,734,872	77	243,336	17,349	149,154
코스모스 2호부표	15	951,236	65	158,052	9,512	79,318
코스모스 3호부표	15	1,846,610	77	259,008	18,466	158,760
코스모스 4호부표	15	951,236	65	158,052	9,512	79,318
코스모스 5호부표	15	1,061,290	65	176,340	10,613	88,495
코스모스 6호부표	15	1,734,872	77	243,336	17,349	149,154
광양항41호등부표	15	8,922,346	150	642,408	89,223	827,994
광양항42호등부표	15	8,922,346	150	642,408	89,223	827,994
광양항43호등부표	15	4,489,434	150	323,244	44,894	416,619
광양항24호 부표	15	1,722,454	150	124,020	17,225	159,843
광양항지진도호안	40	3,570,724,648	440	87,645,060	35,707,246	348,307,959
제품부두 4기호안	40	54,201,946	451	1,297,968	542,019	5,290,398
컨부두1기호안	40	2,458,884,923	455	58,364,736	24,588,849	240,052,019
사포부두호안	40	2,184,597,569	480	49,153,452	21,845,976	213,544,412
여천 간여암등대	50	38,985,382	521	808,140	389,854	3,817,724
여천 거마각등대	50	11,405,277	479	257,160	114,053	1,114,812
여천 고서등대	50	7,924,080	488	175,368	79,241	774,871
여천 낭도등대	50	8,130,807	488	179,940	81,308	795,087
여천 녹산곶등대	50	1,915,200	201	102,912	19,152	181,229
여천 돌산도등대	50	9,523,144	485	212,064	95,231	931,108
여천 백골등대	50	12,049,424	488	266,664	120,494	1,178,276
여천 소유등표	50	130,787,235	527	1,232,094	1,307,872	12,955,514
여천 손죽도등대	50	8,099,640	436	200,628	80,996	789,901
여천 역만도등대	50	11,437,920	479	257,892	114,379	1,118,003
여천 초도등대	50	9,914,520	449	238,476	99,145	967,604
여천삼산동방파제	40	5,964,815,645	416	154,855,788	59,648,156	580,995,986
여천소횡간도등대	50	18,828,864	527	385,872	188,289	1,844,299
여천항묘도동호안	40	1,851,855,741	440	45,454,644	18,518,557	180,640,110
여천항월래동호안	40	557,568,000	386	15,600,348	5,575,680	54,196,765
여천항적량동호안	40	538,560,000	386	15,068,520	5,385,600	52,349,148
여천항중흥동호안	40	2,592,569,340	440	63,635,796	25,925,693	252,893,354
소계		20,433,342,623		532,719,438	204,333,426	1,990,062,319
총계(광양+여수)		45,015,401,884		1,200,084,557	695,974,611	4,381,531,733

2) 선석사용료

(1) 여수항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3부두 계선부표	15	172,337,338	119	15,640,704	1,723,373	15,669,663
여수석탄부두철도	40	209,972,839	431	5,261,496	2,099,728	20,471,134
구항물양장 도교	35	3,191,822	274	125,808	31,918	306,601
구항물양장연락교	35	50,602,514	274	1,994,556	506,025	4,860,796
여수항구항물양장	40	2,838,269,546	371	78,056,047	28,382,695	276,021,350
여수항수협물양장	40	570,936,120	527	11,995,212	5,709,361	55,894,091
제2동방파물양장	40	1,069,001,990	480	24,052,548	10,690,020	104,494,944
여수구항물양장		565,600,000	348	1,462,759	5,656,000	56,413,724
여수항 1부두안벽	40	3,585,052,994	371	133,738,296	35,850,530	345,131,470
여수항 2부두안벽	40	73,953,652	60	13,311,660	739,537	6,064,199
신항제2부두 도교	35	12,100,100	407	321,084	121,001	1,177,902
여수항 3부두안벽	40	1,075,890,684	176	59,692,440	10,758,907	101,619,824
여수항관용선부두	40	854,735,111	257	28,107,780	8,547,351	82,662,733
소 계		11,081,644,710		373,760,390	110,816,447	1,070,788,432

(2) 광양항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낙포부두	40	247,680,420	241	2,774,844	2,476,804	24,490,558
광양항낙포물양장	40	144,585,000	262	5,959,992	1,445,850	13,862,501
광양항중홍물양장	40	83,695,276	345	2,620,032	836,953	8,107,524
광양항 낙포부두	40	8,370,702,926	262	337,619,700	83,707,029	803,308,323
권부두1기안벽	40	5,160,986,580	455	122,502,540	51,609,866	503,848,404
광양관리부두안벽	40	5,333,772,115	440	130,919,856	53,337,721	520,285,226
소 계		19,341,422,317		602,396,964	193,414,223	1,873,902,535
광양+여수		30,423,067,027		976,157,354	304,230,670	2,944,690,967

3) 부두사용료

(1) 건물+공작물

가. 여수항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여수항 1부두 담	30	39,817,478	217	2,041,908	398,175	3,777,557
1부두 조명등주	35	6,897,663	335	222,372	68,977	667,529
1부두조명등주	35	5,609,792	394	153,768	56,098	545,602
2부두 조명배전반	15	6,408,998	119	581,652	64,090	582,735
여수2부두조명탑	35	11,372,571	383	320,688	113,726	1,105,188
3부두 조명등탑	35	6,021,203	359	181,140	60,212	584,006
여수항3부두담	30	11,473,080	360	28,683	114,731	1,144,440
3부두 조명등주	35	3,878,914	212	197,604	38,789	368,131
여수항 3부두 담	30	25,600,513	207	952,083	256,005	2,464,843
여수항 3부두조경	35	4,424,871	365	130,932	44,249	429,394
3부두 조명등주	35	5,835,301	190	436,752	58,353	539,855
3부두 조명등주	35	4,350,597	347	135,408	43,506	421,519
3부두 조명등주	35	828,800	103	86,904	8,288	74,190
1부두 조명등주	35	6,411,485	236	278,280	64,115	613,321
여수3부두 조명탑	35	12,320,285	383	347,412	123,203	1,197,287
3부두 탑조등	35	630,422	359	18,960	6,304	61,146
3부두 화장실	45	2,949,966	413	77,136	29,500	287,283
구항 화물취급소	30	11,511,655	299	415,800	115,117	1,109,586
여수항운노조회관	60	149,080,049	593	2,715,120	1,490,800	14,636,493
소계		315,423,643		9,322,602	3,154,236	30,610,104

나. 광양항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낙포부두 울타리	30	15,352,794	245	680,604	153,528	1,467,219
낙포부두조명등주	35	4,796,857	251	206,400	47,969	459,046
낙포부두조명등주	35	5,806,131	227	276,240	58,061	552,989
낙포부두조명등주	35	5,212,460	238	236,532	52,125	497,593
낙포부두접현등	35	64,932,379	420	1,669,692	649,324	6,326,269
낙포각가드레일		12,125,500	180	363,768	121,255	1,176,173
낙포진입도로포장		127,216,000	180	7,632,960	1,272,160	11,958,304
원료부두울타리	30	20,391,416	307	717,348	203,914	1,967,407

광양제품정문담	30	4,126,790	360	10,317	41,268	411,647
제품부두 보안담	30	43,885,122	312	1,519,104	438,851	4,236,602
제품부두보안담	30	31,378,950	331	1,023,840	313,790	3,035,511
광양제품 정문담	30	4,126,790	360	10,317	41,268	411,647
관리부두 보안담	30	33,993,750	335	1,069,416	339,938	3,292,433
관리부두조명담	35	10,654,051	420	273,960	106,541	1,038,009
관리부두조명등주	35	7,388,499	394	203,040	73,885	718,546
광양항 경비초소	15	1,419,516	114	134,484	14,195	128,503
접안속도계	15	76,757,674	105	7,895,076	767,577	6,886,260
접안속도계	15	118,603,333	127	10,085,952	1,186,033	10,851,738
광양근로자대기실	60	213,301,143	683	3,372,840	2,133,011	20,992,830
광양항운노조회관	60	202,042,496	665	3,281,292	2,020,425	19,876,120
전천후부두사무실	50	202,050,248	572	3,814,932	2,020,502	19,823,532
항운노조복지회관	60	71,383,211	549	1,404,264	713,832	6,997,895
소 계		1,276,945,110		45,882,378	12,769,451	123,106,273
합계		1,592,368,753		55,204,980	15,923,688	153,716,377

(2) 참고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전천후부두참고	30	1,096,230,489	332	35,660,508	10,962,305	106,056,998

(3) 토지

가. 여수항

개 별 자 산 명	지목	면 적 (M ²)	재평가액(원)
여수항 1부두용지	구거	98	6,905,688
여수항 1부두용지	대	125,364	5,440,797,600
여수항 1부두용지	대	2,782	129,696,840
여수항3부두용지	대	57,613	3,230,360,910
여수항3부두용지	대	331	20,250,580
여수항3부두용지	대	1,031	151,557,000
구항물양장용지	대	72	61,488,000
구항물양장용지	대	7,740	6,501,600,000
수협물양장용지	대	792	171,864,000
부두외곽부지	대	2,298	19,174,512

부두외곽부지	대	886	4,911,984
부두외곽부지	대	793	16,653,000
여수항3부두용지	대	953	53,434,710
관용선부두용지	도로	195	61,652,409
관용선부두용지	도로	124	39,204,609
구항부두외곽부지	도로	178	13,557,548
구항부두외곽부지	도로	80	6,093,280
수협물양장용지	도로	218	29,909,600
수협물양장용지	도로	430	58,996,000
관용선부두용지	잡	853	40,961,060
관용선부두용지	잡	30	1,102,500
관용선부두용지	잡	70	2,572,500
관용선부두용지	잡	1,976	66,808,560
관용선부두용지	잡	8	270,480
관용선부두용지	잡	10	338,100
구항부두외곽부지	잡	152	12,038,400
구항부두외곽부지	잡	196	19,090,400
구항부두외곽부지	잡	26	3,848,000
구항부두외곽부지	잡	264	54,648,000
구항부두외곽부지	잡	15	2,215,500
구항물양장용지	잡	5,943	4,031,136,900
구항물양장용지	잡	35	21,119,000
구항물양장용지	잡	1,016	256,743,200
구항물양장용지	잡	1,587	1,577,478,000
여수항2부두용지	철도	1,450	458,440,990
여수항2부두용지	철도	9,798	3,097,796,428
1부두 외곽부지	철도	6,015	423,854,193
소계		231,422	26,088,570,481
평균지가		112,732	

나. 광양/여천

개 별 자 산 명	지목	면 적 (M²)	재평가액(원)
낙포부두외곽부지	구거	54	2,948,400
관리부두외곽부지	대	60,167	2,580,375,224
관리부두외곽부지	대	75,467	3,232,989,144
낙포부두외곽부지	도로	1,470	6,379,800

낙포부두외곽부지	도로	804	3,489,360
낙포부두외곽부지	도로	10,782	166,042,800
낙포부두외곽부지	도로	72	1,108,800
낙포부두외곽부지	도로	3,545	54,593,000
낙포부두외곽부지	도로	1,326	20,420,400
제품부두외곽부지	도로	27,323	1,830,641,000
제품부두외곽부지	도로	16,653	1,115,757,700
제품부두외곽부지	도로	6,581	440,947,100
낙포부두외곽부지	잡	7,183	191,067,800
낙포부두외곽부지	잡	1,614	42,932,400
낙포부두외곽부지	잡	30	798,000
낙포부두외곽부지	잡	5,832	155,131,200
낙포부두외곽부지	잡	456	12,129,600
낙포부두외곽부지	잡	691	37,728,600
낙포부두외곽부지	잡	10,346	564,891,600
낙포부두외곽부지	잡	23,628	1,290,088,800
제품부두외곽부지	잡	22,732	869,058,155
소계		276,756	12,619,518,883
평균지가		45,598	
total		276,756	12,619,518,883
평균지가		45,598	

4) 공통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무선중계통신장치	30	5,765,810	263	236,772	57,658	552,904
거문도 통신장치	30	48,450,336	275	1,902,780	484,503	4,654,756
여천출장소청사담	30	10,699,382	251	399,408	106,994	1,029,997
청사 발동발전기	15	1,676,532	47	385,248	16,765	129,128
여수청사조경시설	35	16,239,240	225	1,237,932	162,392	1,500,131
통신소발동발전기	15	3,003,733	96	337,920	30,037	266,581
거문통신소배전반	15	1,704,069	116	158,652	17,041	154,542
거문통신소울타리	30	11,787,500	311	409,344	117,875	1,137,816
통신소 조명등주	35	1,744,759	356	52,932	17,448	169,183
여수청사 담	30	11,677,848	240	500,724	116,778	1,117,712
항만관제실발전기	15	18,000,000	180	1,080,000	180,000	1,692,000

구항물양경비초소	15	2,805,000	180	168,300	28,050	263,670
관제실통신장치	30	732,445	155	51,036	7,324	68,141
여수항 1부두조경	35	9,405,942	356	285,348	94,059	912,059
관제실통신장치	30	60,095,267	263	2,467,788	600,953	5,762,748
낙포통신소울타리	30	18,200,000	360	546,000	182,000	1,765,400
낙포통신소조경	35	5,252,660	420	135,072	52,527	511,759
두인중계무선탑	30	13,651,704	274	538,092	136,517	1,311,361
낙포관제실발전기	15	18,800,000	180	564,000	188,000	1,823,600
통신 송신탑	30	3,489,200	360	104,676	34,892	338,452
무인중계소 답	30	2,928,135	263	120,240	29,281	280,790
전남956호	18	55,963,958	71	8,512,824	559,640	4,745,113
전남958호	18	472,141,600	162	30,980,441	4,721,416	44,116,116
전남939호	18	1,924,891,900	216	8,020,383	19,248,919	191,687,152
전남909호	18	105,729,167	63	18,125,004	1,057,292	8,760,416
전남911호	18	17,539,144	138	1,372,632	175,391	1,616,651
전남912호	18	400,808,000	216	21,710,429	4,008,080	37,909,757
전남938호	18	503,554,995	112	47,918,962	5,035,550	45,563,603
새마을5호	18	4,347,905	22	2,134,428	43,479	221,348
구항물양장부관교	20	102,509,925	94	11,777,736	1,025,099	9,073,219
구항물양장부관교	20	3,497,690	94	401,868	34,977	309,582
비축합선	20	4,938,326	23	2,318,868	49,383	261,946
비축합선	20	4,938,326	23	2,318,868	49,383	261,946
비축합선	20	11,512,039	35	3,552,288	115,120	795,975
비축합선	20	11,512,039	35	3,552,288	115,120	795,975
비축합선	20	91,447,302	142	6,955,152	914,473	8,449,215
여수항비축합선		543,665,000	240	2,038,744	5,436,650	54,162,626
관리부두경비초소	60	13,164,827	680	209,088	131,648	1,295,574
광양원료경비초소	50	9,713,000	600	174,840	97,130	953,816
광양제품경비초소	60	9,951,700	720	149,280	99,517	980,242
낙포부두경비초소	60	4,082,303	695	63,432	40,823	401,887
원료부두경비초소	60	45,303,670	667	733,548	453,037	4,457,012
제품부두경비초소	60	24,138,808	680	383,376	241,388	2,375,543
중흥분실청사	60	126,593,333	720	949,452	1,265,933	12,564,388
중흥분실청사	60	15,056,937	562	168,791	150,569	1,488,815
낙포부두경비초소	50	1,541,217	416	40,008	15,412	150,121
여천출장소수위실	50	2,687,278	407	71,304	26,873	261,597

여천합동경비초소	50	29,638,497	491	651,924	296,385	2,898,657
광양출장직원숙소	50	39,425,220	563	756,288	394,252	3,866,893
광양출장직원숙소	50	39,425,220	563	756,288	394,252	3,866,893
1부두 경비초소	50	2,068,635	431	51,840	20,686	201,680
1부두 경비초소	50	4,545,199	515	95,316	45,452	444,988
2부두 경비초소	60	25,679,950	599	463,008	256,800	2,521,694
3부두 경비초소	50	4,545,199	515	95,316	45,452	444,988
여수권선원대기실	50	25,700,000	600	462,600	257,000	2,523,740
여수항선원대기실	50	8,741,055	539	175,140	87,411	856,592
여수신항경비초소	50	725,116	467	16,764	7,251	70,835
여수신항경비초소	50	7,276,130	720	9,095	72,761	726,704
여수청 청사	60	204,671,926	518	9,059,416	2,046,719	19,561,251
여수청 직원숙소	60	99,638,153	218	3,749,640	996,382	9,588,851
여수테니스사위실	45	12,800,000	540	255,996	128,000	1,254,400
여수항 선원회관	60	243,517,133	659	3,990,876	2,435,171	23,952,626
여수항건설사무소	60	286,247,470	720	715,618	2,862,475	28,553,185
여수항선원대기실	50	23,400,000	600	175,500	234,000	2,322,450
오염방제자재창고	30	14,073,167	250	607,956	140,732	1,346,521
선원복지회관	60	264,649,506	720	3,969,744	2,646,495	26,067,976
오염방제자재창고	35	24,557,500	420	631,476	245,575	2,392,602
청사 수위실	50	1,655,743	404	44,268	16,557	161,148
항만소방파출소	60	28,164,827	561	542,208	281,648	2,762,262
여천출장직원숙소	50	25,006,117	551	490,140	250,061	2,451,598
여천출장직원숙소	50	25,006,117	551	490,140	250,061	2,451,598
여천출장소 청사	60	32,565,911	533	1,532,748	325,659	3,103,316
	15	9,800,000	180	490,000	98,000	931,000
오염방제자재창고	35	5,665,884	251	243,792	56,659	542,209
중흥분실청사	60	126,593,333	720	949,452	1,265,933	12,564,388
항만소방파출소	60	60,632,945	539	1,214,904	606,329	5,941,804
여수신항경비초소	60	7,276,130	720	9,095	72,761	726,704
여수항건설사무소	60	286,247,470	720	715,618	2,862,475	28,553,185
여수항 해운센터	60	49,487,160	410	1,303,560	494,872	4,818,360
여수항선원대기실	50	23,400,000	600	175,500	234,000	2,322,450
합계		6,820,166,664		221,207,524	68,201,667	659,895,914

6. 포항항

1) 선박입항료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 장 가 액	잔존상 각월수	당 년 감 가	보수비	투자보수비
대보항교석초등표	50	248,538,900	201	13,354,332	2,485,389	23,518,457
포항신항 전등탑	30	107,445,560	252	4,604,808	1,074,456	10,284,075
포항신항 후등탑	30	107,445,560	252	4,604,808	1,074,456	10,284,075
포항신항 지향등	30	107,445,560	252	4,604,808	1,074,456	10,284,075
신항 제1호등부표	15	967,386	0		9,674	96,739
신항 제4호등부표	15	967,386	0		9,674	96,739
신항 제5호등부표	15	967,386	0		9,674	96,739
신항 제8호등부표	15	967,386	0		9,674	96,739
신항 제9호등부표	15	967,386	0		9,674	96,739
구항 3호등부표	15	895,440	0		8,954	89,544
포항항두호 A등부표	15	111,430			1,114	11,143
신항 2호등부표	15	2,610,050	60	469,812	26,101	214,024
신항 12호등부표	15	4,297,250	80	580,128	42,973	371,712
포항항등부표	15	2,596,230	62	452,244	25,962	214,399
화보말등대	50	9,121,510	461	213,696	91,215	890,781
구항서방파제등대	50	14,133,960	546	279,576	141,340	1,385,438
신항동방파제등대	50	1,656,810	311	57,540	16,568	159,927
신파제제서단등대	30	7,831,640	197	429,348	78,316	740,229
외항동항방파제등대	50	13,549,300	452	323,748	135,493	1,322,555
대보항방파제등대	50	6,322,170	459	148,752	63,222	617,342
구룡포북방파등대	50	6,554,490	478	148,092	65,545	640,640
포항항여남갑등대	50	22,366,180	513	470,868	223,662	2,189,531
구룡포사라말등대	50	1,955,650	220	96,000	19,557	185,965
양포항등대	50	3,664,440	201	196,896	36,644	346,754
감포남방파제등대	50	1,389,670	201	74,664	13,897	131,501
강구1호등대	50	3,538,600	227	168,360	35,386	337,024
월포등대	50	8,736,690	461	204,672	87,367	853,202
축산남방파제등대	30	3,847,490	0		38,475	384,749
축산항등대	50	19,658,920	523	405,960	196,589	1,925,296
후포항방파제등대	30	1,644,570	275	64,584	16,446	157,999

창포말등대	50	9,994,820	473	228,216	99,948	976,660
진미말등대	50	9,994,820	473	228,216	99,948	976,660
죽변서방파제등대	30	4,016,530	57	761,028	40,165	325,550
죽변동방파제등대	50	3,037,560	342	95,928	30,376	294,163
울릉가두봉등대	50	32,467,960	527	665,376	324,680	3,180,258
저동남방파제등대	30	13,250,760	261	548,304	132,508	1,270,246
저동북방파제등대	50	11,950,560	513	251,592	119,506	1,169,897
독도등대	50	4,633,350	270	185,340	46,334	444,801
양포항방파제등대	50	6,791,670	547	134,100	67,917	665,757
도동항방파제등대	30	9,584,100	311	332,820	95,841	925,128
구항동방파제등대	50	23,437,420	562	450,396	234,374	2,298,702
2파제제동단등대	30	4,515,440	323	150,984	45,154	436,446
2파제제서단등대	30	4,515,440	323	150,984	45,154	436,446
구룡포남방파등대	50	11,962,430	563	229,476	119,624	1,173,295
감포북방파제등대	50	12,196,710	563	233,964	121,967	1,196,275
구계항동방파제등대	50	11,814,100	581	212,652	118,141	1,160,145
구계항방파제등대	50	11,814,100	581	212,652	118,141	1,160,145
구계항남방파제등대	50	11,814,100	581	212,652	118,141	1,160,145
후포울방파제등대	50	15,315,720	584	275,688	153,157	1,504,003
강구항 동방파제	50	13,067,330	587	235,212	130,673	1,283,212
대보항 남방파제	50	16,500,000	587	297,000	165,000	1,620,300
장기갑등대	50	37,203,140	201	1,998,972	372,031	3,520,417
송대말등대	50	4,198,010	238	190,500	41,980	400,751
후포등대	50	12,860,150	275	505,056	128,602	1,235,509
죽변등대	50	26,453,780	215	1,328,844	264,538	2,512,494
도동등대	50	6,376,200	408	168,780	63,762	620,742
울릉등대	50	30,213,190	201	1,623,396	302,132	2,858,979
15만톤부두호안제	50	1,637,830,212	524	33,756,804	16,378,302	160,407,341
15만톤부두이안제	50	9,943,205,661	524	204,936,300	99,432,057	973,826,936
구항송도 방사제	50	1,497,558,000	395	40,945,884	14,975,580	145,661,212
후포항 방사제	50	3,291,679,680	443	80,248,620	32,916,797	321,143,106
죽변항 방사제	50	662,166,190	227	2,625,329	6,621,662	65,954,086
강구항 방사제	50	92,167,180	443	187,247	921,672	9,197,993
포항구항동방파제	50	10,573,457,090	293	372,901,598	105,734,571	1,020,055,549
후포항 방파제	50	13,910,791,670	396	379,385,232	139,107,917	1,353,140,644
월포항 방파제	50	405,934,550	443	9,896,376	4,059,346	39,603,817

구룡포항북방파제	50	9,832,294,140	442	115,053,555	98,322,941	971,724,059
구룡포항남방파제	50	3,720,445,840	442	90,906,816	37,204,458	362,953,902
도동항 방파제	50	9,072,856,410	432	226,821,408	90,728,564	884,603,500
도동항 방사제	50	4,278,030	443	104,292	42,780	417,374
포항신항북방파제	50	17,571,512,151	431	440,307,036	175,715,122	1,713,120,512
신항내항 방파제	50	1,001,246,400	347	31,162,716	10,012,464	97,008,368
포항신항동방파제	50	17,049,852,600	452	407,385,864	170,498,526	1,664,246,674
울릉도사동항	50	12,894,758,410	599	151,308,291	128,947,584	1,274,345,012
신항 3투기장호안	50	6,768,000,000	599	121,824,000	67,680,000	664,617,600
신항3투기장이안	50	1,956,000,000	599	35,208,000	19,560,000	192,079,200
포항구항동방파제	50	498,300,000	600	747,450	4,983,000	49,755,255
울릉 사동항	50	4,896,810,000	600	7,345,215	48,968,100	488,946,479
죽변항 방파제	50	5,126,929,900	396	11,652,113	51,269,299	511,527,779
강구항 방파제	50	4,710,628,240	443	9,570,125	47,106,282	470,105,812
감포항 남방파제	50	383,228,260	430	802,106	3,832,283	38,242,615
감포항 북방파제	50	3,127,251,990	394	7,143,469	31,272,520	312,010,852
구항북부 파제제	50	142,862,630	359	4,297,812	1,428,626	13,856,482
신항제2파제제	50	6,435,362,847	563	123,449,232	64,353,628	631,191,362
쓰레기소각장	50	11,990,000	600	215,820	119,900	1,177,418
수 도 관	50	143,902,634	600	2,590,248	1,439,026	14,131,239
급수탱크	30	27,751,513	191	1,569,192	277,515	2,618,232
저 통	30	13,423,223	360	402,696	134,232	1,302,053
전 력 선	30	53,295,011	360	1,598,856	532,950	5,169,616
전 화 선	30	5,338,334	360	160,152	53,383	517,818
축 대	50	173,916,201	600	3,130,488	1,739,162	17,078,571
포 장	50	61,640,232	600	1,109,520	616,402	6,053,071
하 수 관	30	61,599,671	360	1,847,988	615,997	5,975,168
급수펌프실	40	4,984,570	371	145,104	49,846	483,947
신항 축전지실	40	4,023,380	437	99,432	40,234	392,395
신항 축전지실	40	4,023,380	437	99,432	40,234	392,395
도동항파고측정기	15	31,000,810	142	2,357,808	310,008	2,864,300
포항항파고측정기	15	1,138,500	131	93,864	11,385	104,464
대보항파고측정기	15	34,428,070	141	2,637,048	344,281	3,179,102
송대말등대 담	40	702,076	203	124,176	7,021	57,790
울릉등대 담	40	12,298,440	407	334,284	122,984	1,196,416
장기갑등대 담	40	227,392	81	42,468	2,274	18,492

죽변동대 담	40	3,820,480	371	141,396	38,205	367,908
표지소울타리	40	52,195,542	311	610,536	521,955	5,158,501
표지소울타리	40	106,290,752	480	2,391,540	1,062,908	10,389,921
후포동대 담	40	1,368,007	272	126,492	13,680	124,152
울릉동철탑안테나	30	268,208	122	29,868	2,682	23,834
장기갑철탑안테나	30	12,496,000	256	521,232	124,960	1,197,477
장기갑철탑안테나	30	7,000,000	212	330,576	70,000	666,942
로란 C 송신장비	50	4,256,589,574	600	76,618,608	42,565,896	417,997,097
무선표지소안테나	30	300,605,683	360	9,018,168	3,006,057	29,158,752
감포동대무신호기	15	7,538,427	92	729,192	75,384	680,924
감포동대무신호기	15	7,538,426	92	729,192	75,384	680,923
대보동대무신호기	15	7,989,762	92	772,848	79,898	721,691
대보동대무신호기	15	14,850,000	140	943,956	148,500	1,390,604
도동동대무신호기	15	5,500,000	-	-	55,000	550,000
도동동대무신호기	15	24,358,880	167	1,204,308	243,589	2,315,457
울릉동대무신호기	15	8,750,646	92	846,456	87,506	790,419
울릉동대무신호기	15	14,850,000	140	943,956	148,500	1,390,604
죽변동대무신호기	15	6,720,000	-	-	67,200	672,000
후포동대무신호기	15	8,140,000	35	2,069,700	81,400	607,030
감포동대 발전기	15	5,900,000	23	2,282,844	59,000	361,716
대보동대 발전기	15	6,655,000	67	883,944	66,550	577,106
도동동대 발전기	15	6,500,000	58	997,320	65,000	550,268
울릉동대 발전기	15	5,900,000	16	3,281,580	59,000	261,842
죽변동대 발전기	15	6,500,000	-	-	65,000	650,000
후포동대 발전기	15	6,060,000	35	1,540,836	60,600	451,916
표지소보안등	35	3,138,471	420	80,700	31,385	305,777
통신실철탑안테나	30	20,405,800	239	851,760	204,058	1,955,404
통신실철탑안테나	30	1,279,717	248	52,932	12,797	122,679
관제실 발전기	10	25,520,000	126	2,296,800	255,200	2,322,320
표지소직원숙소	60	196,597,250	680	3,122,424	1,965,973	19,347,483
감포동대 1호숙소	50	55,220,460	512	1,164,804	552,205	5,405,566
감포동대 사무실	50	5,353,780	237	243,972	53,538	510,981
감포동대유류창고	40	179,490	119	16,284	1,795	16,321
대보동대사무실,통신	50	37,130,380	587	668,352	371,304	3,646,203
장기갑 3호숙소	50	27,911,950	450	669,888	279,120	2,724,206
대보동대숙소	50	74,519,500	596	1,341,348	745,195	7,317,815

장기갑 무신호사	40	217,170	69	33,996	2,172	18,317
장기갑 유류창고	40	340,850	95	38,748	3,409	30,210
장기갑 부속창고	40	186,680	248	8,124	1,867	17,856
장기갑 부속창고	40	67,390	107	6,804	674	6,059
장기갑등대충전실	40	418,860	102	44,352	4,189	37,451
도동등대 충전실	40	10,320,000	429	259,800	103,200	1,006,020
울릉등대 1호숙소	50	20,242,640	464	471,168	202,426	1,977,147
울릉등대 2호숙소	50	48,689,840	503	1,045,428	486,898	4,764,441
도동등대 숙소	50	12,538,670	411	329,484	125,387	1,220,919
울릉등대숙소	50	119,629,000	600	2,153,328	1,196,290	11,747,567
울릉등대 동력실	40	22,410,120	405	597,600	224,101	2,181,252
도동등대 욕실	40	4,149,600	375	119,508	41,496	403,009
울릉등대 사무실	50	46,801,570	371	1,362,420	468,016	4,543,915
도동등대사무실	50	89,626,130	411	2,355,144	896,261	8,727,099
울릉등대유류창고	40	160,680	117	14,832	1,607	14,585
울릉등대부속창고	40	196,840	251	8,472	1,968	18,837
울릉 선착장창고	40	528,460	251	22,740	5,285	50,572
도동등대 창고	40	1,840,240	291	68,292	18,402	177,195
도동등대숙소	50	88,500,000	600	1,593,000	885,000	8,690,700
죽변등대 숙소	50	36,619,190	478	827,376	366,192	3,579,181
도동등대 변소	40	1,119,470	291	41,544	11,195	107,793
죽변등대사무실	50	6,555,070	201	352,212	65,551	620,286
죽변등대 창고	40	5,519,140	371	160,668	55,191	535,847
항만주유소	40	48,121,882	480	360,916	481,219	4,776,097
신항 항만관제실(6부	60	325,723,920	605	5,814,576	3,257,239	31,990,934
후포등대 1호숙소	50	47,414,760	525	975,384	474,148	4,643,938
후포등대 2호숙소	60	5,142,980	514	108,060	51,430	503,492
후포등대 동력실	40	32,920,640	417	852,624	329,206	3,206,802
후포항파고관측소	50	25,280,010	563	484,944	252,800	2,479,507
후포항파고관측소	50	1,272,700	359	38,292	12,727	123,441
후포등대사무소	50	1,536,600	344	48,240	15,366	148,836
후포등대 충전실	40	3,129,000	316	106,944	31,290	302,206
무선표지소건물	50	781,265,325	600	14,062,776	7,812,653	76,720,255
합계		156,045,393,520		3,124,684,898	1,560,453,935	15,292,070,862

2) 전석사용료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 장 가 액	잔존상 각월수	당 년 감 가	보수비	투자보수비
신항제1부두 안벽	40	6,132,732,086	299	221,516,748	61,327,321	591,121,534
신항15만톤 안벽	40	10,257,927,745	347	319,266,912	102,579,277	993,866,083
신항제2부두 안벽	40	2,401,385,807	209	124,090,752	24,013,858	227,729,506
신항제3부두 안벽	40	3,514,465,045	177	214,441,932	35,144,650	330,002,311
신항제4부두 안벽	40	2,081,311,100	263	85,468,284	20,813,111	199,584,282
신항제5부두 안벽	40	1,531,832,807	227	72,880,152	15,318,328	145,895,266
신항제6부두 안벽	40	636,194,190	209	32,875,104	6,361,942	60,331,909
신항제7부두 안벽	40	25,820,965,830	347	800,226,031	258,209,658	2,502,073,980
신항제8부두 안벽	40	8,054,921,387	365	238,337,400	80,549,214	781,658,399
신항호안부두안벽	40	153,742,356	212	7,832,160	1,537,424	14,591,020
구항개발부두안벽	40	5,441,221,200	322	182,500,584	54,412,212	525,872,062
구항1물양장 안벽	40	109,552,180	0	-	1,095,522	10,955,218
구항2물양장 안벽	40	110,236,880	0	-	1,102,369	11,023,688
구항3물양장 안벽	40	147,243,300	0	-	1,472,433	14,724,330
구항4물양장 안벽	40	5,661,150,290	431	141,857,136	56,611,503	551,929,315
울릉도동항물양장	40	4,648,803,000	274	183,237,492	46,488,030	446,556,551
신항 25만톤안벽	40	13,500,498,383	428	340,666,776	135,004,984	1,315,983,161
신항7부두안벽	40	120,000,000	480	225,000	1,200,000	11,977,500
소계		90,324,183,586		2,965,422,463	1,806,483,672	8,735,876,112

3) 부두사용료

(1) 건물+공작물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 장 가 액	잔존상 각월수	당 년 감 가	보수비	투자보수비
15만톤부두보안등	35	62,000,000	312	2,201,952	620,000	5,979,805
1부두 보안담	40	12,492,169	395	329,316	124,922	1,216,285
25만톤부두조명탑	35	85,897,000	371	2,546,940	858,970	8,335,006
신항3부두조명탑	35	87,788,500	382	2,428,080	877,885	8,536,042
신항4부두조명탑	35	89,814,000	371	2,265,924	898,140	8,754,808
신항4부두조명탑	35	34,714,000	392	869,376	347,140	3,384,462
신항5부두보안등	35	195,883,620	335	6,665,016	1,958,836	18,921,860
신항7부두보안등	35	400,960,840	292	8,400,420	4,009,608	39,256,042

신항8부두보안등	35	590,989,160	292	22,014,636	5,909,892	56,897,452
구항개발부두 담	20	24,887,726	155	1,618,056	248,877	2,326,967
개발부두조명등탑	35	59,958,500	380	1,704,084	599,585	5,825,442
오염자제창고	15	8,230,200	172	493,812	82,302	773,639
포항신항옥탑	30	6,997,120	360	17,493	69,971	697,963
신항 주변전실	40	16,891,200	407	448,224	168,912	1,644,298
신항 보조변전실	40	11,259,440	407	298,776	112,594	1,096,066
신항 보조변전실	40	11,259,440	407	298,776	112,594	1,096,066
신항 보조변전실	40	11,259,440	407	298,776	112,594	1,096,066
신항 보조변전실	40	11,259,440	407	298,776	112,594	1,096,066
신항5부두, 전기실	40	4,670,555,800	466	105,087,504	46,705,558	456,546,830
포항신항내보안담	20	84,922,000	131	5,276,232	849,220	7,964,577
구항노무자대기실	50	54,101,520	542	1,078,032	541,015	5,302,349
신항7부두전기실	50	75,852,820	569	1,439,736	758,528	7,441,308
신항노무자대기소	60	161,496,750	551	3,165,456	1,614,968	15,833,129
신항노무자대기실	60	101,091,750	541	2,018,100	1,010,918	9,907,365
신항노무자대기실	60	157,950,660	656	2,600,412	1,579,507	15,535,025
신항항만자휴게소	60	137,592,570	639	2,325,504	1,375,926	13,526,707
노조식당	40	149,845,200	480	280,960	1,498,452	14,956,424
노조식당	40	149,845,300	480	280,960	1,498,453	14,956,434
소계		7,465,796,165		176,751,329	74,657,962	728,904,484

(2) 토지

개 별 자 산 명	지 번	지목	면 적 (M²)	대장가액(원)
1부두 1,2물양장	포항 항구 58-34	잡	6,866	394,795,000
4물양장부지	포항 동빈1가 981-1	잡	9,057	687,055,366
4물양장부지	포항 동빈1가 981-7	잡	761	57,728,738
4물양장부지	포항 동빈1가 981-8	잡	342	25,943,796
4물양장부지	포항 동빈2가 148	잡	15,475	3,094,940,000
신부두 배면부지	포항 송도 253-55	잡	71,744	1,970,621,980
신부두야적장부지	포항 송도 253-65	잡	3,382	7,555,388
신부두야적장부지	포항 송도 253-62	대	2,491	30,643,975
신부두야적장부지	포항 송도 253-21	잡	33	280,500
4물양장도로	포항 동빈 1가 981-2	도로	5,839	443,527,305
신부두진입도로부지	포항 송도 474-6	도로	7,682	1,301,755,820
신부두진입도로부지	포항 송도 474-7	도로	2,988	506,358,880

신항1,2부두용지	포항 송정 1-20	잡	117,971	7,668,115,000
2,3,호안부두부지	포항 송내 1-306	잡	86,358	2,590,740,000
4,5,6,7부두용지	포항 동촌 375-20	잡	339,399	22,060,935,000
신항 7,8부두용지	포항 청림 710-8	잡	294,225	6,992,294,824
신항정문입구용지	포항 청림 710-11	잡	7,471	672,390,000
신항진입로도로	포항 청림 710-13	도	32,286	849,121,800
신항 도로부지	포항시 남구 송정동 394	도로	10,175	4,904,453,230
합계			1,014,544	54,259,256,602
			평균	53,481

4) 공통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 장 가 액	잔존상 각원수	당 년 감 가	보수비	투자보수비
신항출장소 담	20	8,520,000	72	625,800	85,200	789,420
포항청 청사담	40	8,873,152	359	241,032	88,732	863,212
포항청 직원숙소담	20	4,000,000	82	359,208	40,000	364,079
출장소옥탑	30	6,997,120	360	17,493	69,971	697,963
선원복지회관(8부두	60	179,142,300	649	2,981,100	1,791,423	17,616,120
구항 경비초소	50	48,500,000	600	800,250	485,000	4,769,975
포항청사휴게실	50	19,407,100	527	397,716	194,071	1,900,938
포항청 직원숙소	60	301,713,030	562	5,798,040	3,017,130	29,591,499
청사 발 전 실	40	1,721,790	320	58,116	17,218	166,367
포항청 청사	60	342,872,420	503	7,361,868	3,428,724	33,551,055
포항청 민원실	60	79,180,200	659	1,297,644	791,802	7,788,256
구항 경비초소	50	48,500,000	600	800,250	485,000	4,769,975
구항 경비초소	40	2,276,280	308	79,812	22,763	219,647
선원대기실	40	7,489,700	455	177,780	74,897	731,192
신항출장소 청사	60	149,613,390	555	2,911,392	1,496,134	14,670,200
선원가족대기실	50	22,528,000	526	462,552	225,280	2,206,545
선원가족대기실	50	10,230,000	600	122,760	102,300	1,010,724
선원가족대기실	50	10,230,000	600	122,760	102,300	1,010,724
신항 경비초소	40	1,955,740	365	57,864	19,557	189,788
신항 경비초소	40	1,955,740	365	57,864	19,557	189,788
신항 경비초소	40	1,955,740	371	56,928	19,557	189,881
신항 경비초소	40	1,955,740	371	56,928	19,557	189,881
개발부두경비초소	40	12,509,950	395	342,048	125,100	1,216,790

정문 화장실	40	1,605,000	443	39,132	16,050	156,587
정문 휴게실	60	29,830,000	720	447,456	298,300	2,938,254
포항제1호합선	20	25,470,240	0	-	254,702	2,547,024
포항제2호합선	20	25,470,240	0	-	254,702	2,547,024
포항제3호합선	20	41,181,000	46	9,668,580	411,810	3,151,242
포항제4호합선	20	77,729,190	143	5,870,460	777,292	7,185,873
4물양장 임항창고	40	210,780	34	66,948	2,108	14,383
4물양장 임항창고	40	210,780	34	66,948	2,108	14,383
4물양장 임항창고	40	210,780	34	66,948	2,108	14,383
4물양장 임항창고	40	210,780	34	66,948	2,108	14,383
신항 임항창고	40	336,317,050	443	8,199,156	3,363,171	32,811,789
청사 물품창고	50	19,712,210	383	555,852	197,122	1,915,636
무기고,탄약고	50	26,179,150	515	549,000	261,792	2,563,015
합계		1,856,464,592		50,784,633	18,564,646	180,567,996

7. 마산항

1) 선박입항료

개 별 자 산 명	대장가액	내용 년수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가덕 1호등표	38,467,545	50	523	794,364	384,675	3,767,318
가덕 2호등표	38,467,544	50	523	794,364	384,675	3,767,318
가덕 3호부표	343,925	15	43	86,376	3,439	25,755
가덕도	25,381,930	50	600	266,511	253,819	2,511,542
거제 매암등표	5,761,101	50	452	137,652	57,611	562,345
거제 북여도등표	57,535,747	50	527	1,179,096	575,357	5,635,665
거제소범북도등표	13,942,604	50	527	285,732	139,426	1,365,687
견내량 2호등부표	1,081,710	15	107	109,176	10,817	97,253
견내량등대	16,098,686	50	575	302,376	160,987	1,579,631
고암등대	108,334,435	50	565	2,070,816	1,083,344	10,626,362
구도등대	8,965,308	50	491	197,196	89,653	876,811
구돌서등대	9,922,869	50	491	218,268	99,229	970,460
귀도등대	4,275,039	50	287	160,872	42,750	411,417
노루섬등표	131,043,160	50	600	2,358,780	1,310,432	12,868,438
능양동방파제등대	12,138,756	50	561	233,688	121,388	1,190,507
능양등대	24,959,590	50	600	449,268	249,596	2,451,032
능포동방파제등대	3,973,788	50	546	78,600	39,738	389,519
능포서방파제등대	3,973,788	50	546	78,600	39,738	389,519
대유등부표	975,626	15	116	90,840	9,756	88,479
대초등표	89,246,200	50	600	1,606,428	892,462	8,763,977
도남동방서단등대	11,755,787	50	515	246,528	117,558	1,150,926
도남서방파제등대	5,882,522	50	524	121,248	58,825	576,127
도남중방동단등대	11,755,787	50	515	246,528	117,558	1,150,926
도루마리암등표	2,483,907	50	491	54,636	24,839	242,927
동강등대	61,701,400	50	600	1,110,624	617,014	6,059,078
동도등대	31,113,500	50	600	560,040	311,135	3,055,346
마산구항등대	68,990,000	50	600	1,241,820	689,900	6,774,818
마산항 3호등부표	699,676	15	107	70,620	6,997	62,906

마산항 4호등부표	7,609,342	15	107	768,048	76,093	684,129
마산항 6호등부표	1,078,636	15	107	108,876	10,786	96,976
마산항 7호등부표	678,095	15	107	68,448	6,781	60,965
막개도등대	12,658,207	50	287	476,340	126,582	1,218,187
망각산등대	48,752,190	50	600	877,536	487,522	4,787,465
맥전포방파제등대	10,268,153	50	571	194,208	102,682	1,007,395
묘개도등표	41,501,750	50	551	813,468	415,018	4,068,828
묘서등표	45,113,460	50	600	203,010	451,135	4,491,045
묘서등표	130,152,000	50	600	585,684	1,301,520	12,956,632
방화도등대	580,164	30	199	31,488	5,802	54,868
봉도등대	12,436,929	50	539	249,204	124,369	1,218,773
봉암도등대	10,045,536	50	513	211,488	100,455	983,405
부도등대	6,513,510	50	476	147,780	65,135	636,573
부도수도 2등부표	1,070,744	15	107	108,072	10,707	96,267
부도수도 4등부표	1,070,744	15	107	108,072	10,707	96,267
비산도등표	63,972,983	50	571	1,209,996	639,730	6,276,299
사랑도등대	6,513,510	50	476	147,780	65,135	636,573
사서등대	324,112	50	287	12,192	3,241	31,192
산호어촌방파제등대	71,812,000	50	600	1,292,616	718,120	7,051,938
삼천포 밤암등표	76,156,671	50	561	1,466,112	761,567	7,469,056
삼천포 수도등표	297,675	50	301	10,680	2,977	28,700
삼천포 장서등표	81,957,494	50	573	1,544,748	819,575	8,041,275
삼천포 추도등표	14,675,953	50	508	312,012	146,760	1,436,394
삼천포 향도등대	27,525,890	50	600	495,468	275,259	2,703,042
삼천포마뢰등부표	7,407,464	15	143	559,440	74,075	684,802
삼천포항등부표	3,060,793	15	80	413,208	30,608	264,759
삼천포항등표	9,783,246	50	491	215,196	97,832	956,805
서이말등대	12,538,846	50	287	471,840	125,388	1,206,701
서좌도등부표	1,148,037	15	125	99,192	11,480	104,885
석문도등대	6,513,510	50	476	147,780	65,135	636,573
성포등대	6,837,518	50	287	257,304	68,375	658,021
소렬도등부표	1,530,819	15	125	132,264	15,308	139,856
소매물도등대	25,086,229	50	503	538,632	250,862	2,454,760
소지도등대	23,002,410	50	575	432,048	230,024	2,257,036

신수남방파제등대	12,138,756	50	561	233,688	121,388	1,190,507
신수북방파제등대	7,896,989	50	524	162,768	78,970	773,422
신항방파제등대	14,436,263	50	572	272,568	144,363	1,416,370
양지암치등대	8,713,226	30	245	384,096	87,132	832,913
연화도 복외등표	6,698,777	15	125	578,772	66,988	612,001
예침도등대	8,599,400	50	497	186,864	85,994	841,254
오곡도등대	14,472,555	50	524	298,284	144,726	1,417,427
옥포남방파제등대	3,194,591	50	437	78,948	31,946	311,564
옥포북방파제등대	2,087,467	50	442	51,000	20,875	203,647
외포등대	1,554,371	50	406	41,352	15,544	151,302
외포항북방파등대	10,268,153	50	571	194,208	102,682	1,007,395
육지도등대	51,539,232	50	369	1,508,460	515,392	5,003,077
육지서방파제등대	14,460,760	50	600	260,292	144,608	1,420,047
용도 북방등부표	5,724,749	15	180	343,488	57,247	538,126
율포말등대	2,964,120	50	301	106,356	29,641	285,776
의창 사근서등표	5,016,821	50	491	110,352	50,168	490,647
의창 잠도등부표	3,185,811	15	103	334,044	31,858	285,177
의창 흑암등표	939,373	50	491	20,664	9,394	91,871
의창남포만등부표	1,004,467	15	107	101,388	10,045	90,308
장도등부표	2,617,977	15	150	188,496	26,180	242,948
장승포동방파제등대	1,030,338	50	418	26,616	10,303	100,372
장승포서방파제등대	1,030,338	50	418	26,616	10,303	100,372
저도등대	4,672,792	50	301	167,664	46,728	450,513
저도등대	35,905,900	50	600	646,308	359,059	3,525,959
조도등대	15,097,997	50	513	317,856	150,980	1,478,014
좌사리도등대	6,864,482	50	462	160,464	68,645	670,402
진해 중죽도등표	15,449,051	50	527	316,608	154,491	1,513,244
진해만 백암등표	26,547,875	50	517	554,580	265,479	2,599,330
진해만마당서등표	1,146,741	50	491	25,224	11,467	112,152
진해부표등표	298,281	15	12	268,452	2,983	2,983
진해서등표	86,729,090	50	584	1,603,896	867,291	8,512,519
진해행암만등부표	3,866,165	15	107	390,228	38,662	347,594
찬넬초 A등부표	8,299,100	15	180	497,952	82,991	780,115
찬넬초 B등부표	8,299,100	15	180	497,952	82,991	780,115

찬별초등표	142,073,160	50	600	2,557,320	1,420,732	13,951,584
초리도등대	651,007	50	287	24,492	6,510	62,652
추도등대	10,945,386	50	513	230,424	109,454	1,071,496
충무 간도등부표	858,375	15	107	86,640	8,584	77,174
충무 실암말등대	13,524,710	50	546	267,516	135,247	1,325,719
충무 장서등표	5,036,729	50	491	110,784	50,367	492,595
충무2호등부표	11,327,109	15	600	101,946	113,271	1,122,516
충무2호등부표	734,585	15	600	6,612	7,346	72,797
충무외항등부표	628,876	15	107	63,480	6,289	56,540
충무운하 7호등표	41,913,859	50	517	875,568	419,139	4,103,829
충무운하 8호등표	27,730,292	50	440	680,652	277,303	2,704,964
충무운하1호등표	5,660,928	50	432	58,970	56,609	560,196
충무운하2호등표	27,821	50	287	435	278	2,739
충무운하6호등간	6,048	15	24	-	60	605
충무항 1호등부표	2,375,551	15	107	239,772	23,756	213,578
충무항로 2등부표	1,509,067	15	109	149,520	15,091	135,955
충무항로 3등부표	1,232,473	15	109	122,112	12,325	111,036
통영 각수서등표	6,864,482	50	462	160,464	68,645	670,402
통영 견내량등표	92,163,329	50	491	46,836	921,633	9,211,649
통영 남무도등표	31,114,236	50	527	637,632	311,142	3,047,660
통영 백서등표	17,650,673	50	502	379,740	176,507	1,727,093
통영 사랑도등표	14,005,948	50	502	301,320	140,059	1,370,463
통영 산서등표	46,896,185	50	517	979,644	468,962	4,591,654
통영 저도등표	5,761,101	50	452	137,652	57,611	562,345
통영 철초등표	5,761,101	50	452	137,652	57,611	562,345
통영 한산만등표	6,205,898	50	491	136,500	62,059	606,940
하대구도등대	11,973,049	50	513	252,060	119,730	1,172,099
한산도등부표	6,206,108	15	135	496,488	62,061	570,962
해말항만등부표	989,632	15	116	92,136	9,896	89,750
호도등대	28,973,734	50	517	605,256	289,737	2,836,848
홍도등대	171,701,423	50	287	6,461,244	1,717,014	16,524,018
황덕도등대	4,509,404	50	285	170,880	45,094	433,852
흑암등표	51,379,730	50	600	231,210	513,797	5,114,852
서이말등대발전기	483,974	15	33	158,388	4,840	32,559

소매물도 발전기	268,632	15	19	152,700	2,686	11,593
소매물도발동발전기	5,804,226	15	93	674,040	58,042	513,019
홍도등대 발전기	691,600	15	57	131,040	6,916	56,056
홍도등대발동발전기	227,430	15	24		2,274	22,743
사이말등무신호기	9,285,848	15	93	1,078,356	92,858	820,749
소매물도무신호기	802,121	15	12	721,906	8,021	8,022
소매물도무신호기	11,235,078	15	155	782,832	112,351	1,045,225
홍도등대무신호기	203,057	15	9	-	2,031	20,306
홍도등대무신호기	22,148,896	15	155	1,543,272	221,489	2,060,562
마산청전산설비	17,160,777	10	40	4,247,287	171,608	1,291,349
서이말등대저수조	3,883,964	50	491	85,428	38,840	379,854
소매물도 저수조	2,836,820	50	491	62,400	28,368	277,442
소매물도 지하수	7,482,922	50	539	149,940	74,829	733,298
홍도등대 저수조	17,171,862	50	515	360,108	171,719	1,681,175
항로표지충전실	9,279,720	50	440	227,772	92,797	905,195
홍도등대 충전실	39,621,699	40	411	1,041,156	396,217	3,858,054
홍도등대물치장	14,516	40	95	1,656	145	1,286
고성 하이 덕포리	488,846,028	50	600	4,399,614	4,888,460	48,444,641
고성 하이 덕포리	51,151,231,955	50	600	460,361,088	511,512,320	5,069,087,087
남해서상 제방	1,169,660,800	50	566	13,158,684	11,696,608	115,650,212
남해서상 호안	1,798,353,480	50	566	20,231,478	17,983,535	177,812,200
도남중앙방파제	844,842,323	50	515	17,717,076	8,448,423	82,712,525
마산 구항 파জে제	1,152,521,000	50	600	20,745,384	11,525,210	113,177,562
마산3부두 호안	136,402,000	50	600	2,455,236	1,364,020	13,394,676
마산4부두 호안	2,453,445,715	50	572	46,323,804	24,534,457	240,712,191
마산항 5부두호안	3,294,673,546	50	403	88,293,984	32,946,735	320,637,956
산호어촌 방파제	1,695,188,000	50	600	30,513,384	16,951,880	166,467,462
삼천포발전소호안	947,057,629	50	482	21,220,380	9,470,576	92,583,725
삼천포항파জে제	188,242,680	50	478	4,253,184	1,882,427	18,398,950
옥포조선소 호안	512,415,713	50	521	10,622,052	5,124,157	50,179,366
옥포조선특수선호안	1,241,933,850	50	600	22,354,812	12,419,339	121,957,904
옥포항남방파제	1,205,015,718	50	459	28,353,312	12,050,157	117,666,241
옥포항북방파제	5,461,068,172	50	459	128,495,724	54,610,682	533,257,245
장승포항 호안	198,996,000	50	555	3,872,352	1,989,960	19,512,365

장승포항방파제	263,930,678	50	548	5,201,556	2,639,307	25,872,912
충무도남동파제	1,098,955,648	50	515	23,046,060	10,989,556	107,590,959
충무도남서방파제	554,645,305	50	524	11,431,620	5,546,453	54,321,369
충무동호항방파제	4,184,885,880	50	559	80,852,892	41,848,859	410,403,299
충무항수협호안	233,583,388	50	569	4,433,568	2,335,834	22,914,982
마산청사	6,688,700	30	248	291,288	66,887	639,741
서이말등대올타리	473,326	40	167	30,612	4,733	44,271
홍도등대올타리	54,200,800	40	480	1,219,524	542,008	5,298,128
서이말등대 창고	3,403,462	40	400	91,896	34,035	331,156.6
서이말등대 창고	5,196,576	40	400	140,304	51,966	505,627.2
소매물도등대창고	67,687	50	215	3,396	677	6,429.1
소매물도등대창고	10,180,467	40	355	309,720	101,805	987,074.7
홍도등대유류창고	3,319,636	40	400	89,628	33,196	323,000.8
홍도등대유류창고	2,740,399	40	341	86,796	27,404	265,360.3
서이말등대동력실	11,383,253	40	383	320,988	113,833	1,106,227
서이말등무신호사	593,932	40	95	67,524	5,939	52,641
소매물도 동력실	15,604,646	40	332	507,624	156,046	1,509,702
소매물도무신호사	11,002,707	40	332	357,924	110,027	1,064,478
서이말등대 숙소	112,160,753	50	215	5,634,120	1,121,608	10,652,663
서이말등대 숙소	65,101,825	50	215	3,270,228	651,018	6,183,160
소매물도등대숙소	235,495	50	215	11,832	2,355	22,366
소매물도등대숙소	23,037,933	50	515	483,120	230,379	2,255,481
소매물도등대숙소	44,366,083	50	515	930,396	443,661	4,343,569
홍도등대 숙소	10,470,957	50	431	262,380	104,710	1,020,858
홍도등대 숙소	13,127,039	50	329	430,920	131,270	1,269,612
합계	83,537,943,993			1,131,916,483	835,379,440	8,240,602,751

2) 선석사용료

개 별 자 산 명	대장가액	내용 년수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마산항 함선도교	6,928,499	30	298	251,100	69,285	667,740
삼천포항 부선	296,806	20	80	40,068	2,968	25,674
마산4부두물양장	1,176,385,346	40	452	28,108,320	11,763,853	114,827,703
장승포항물양장	571,032,000	40	435	14,177,352	5,710,320	55,685,465

충무 봉평 물양장	186,587,000	40	480	4,198,212	1,865,870	18,238,879
충무 서호 물양장	3,863,670,000	40	480	86,932,572	38,636,700	377,673,743
충무항 물양장	147,982,841	40	383	4,172,880	1,479,828	14,380,996
마산항 1부두안벽	631,188,502	40	324	21,039,612	6,311,885	61,014,889
삼천포 1부두안벽	446,434,825	40	406	11,875,608	4,464,348	43,455,922
진해항 1부두안벽	2,721,404,648	40	324	90,713,484	27,214,046	263,069,116
마산항 2부두안벽	506,007,810	40	324	16,866,924	5,060,078	48,914,089
삼천포 2부두안벽	398,315,964	40	324	13,277,196	3,983,160	38,503,877
마산항 3부두안벽	763,985,934	40	274	30,113,316	7,639,859	73,387,262
마산항 4부두안벽	5,520,112,543	40	340	172,508,268	55,201,125	534,760,428
마산항 5부두안벽	6,459,460,317	40	403	173,107,128	64,594,603	628,635,319
마산구항안벽	2,868,948,000	40	480	64,551,336	28,689,480	280,439,666
마산서항부두안벽	7,043,320,100	40	480	158,474,700	70,433,201	688,484,540
육포항하역부두	373,908,150	40	401	10,070,340	3,739,082	36,383,781
마산중앙부두안벽	121,773,997	40	324	4,059,132	1,217,740	11,771,487
충무 화물부두안벽	238,509,029	40	290	8,882,400	2,385,090	22,962,663
고현 1호지구안벽	566,910,836	40	437	14,010,612	5,669,108	55,290,022
고현 4호지구안벽	308,571,880	40	434	7,678,752	3,085,719	30,089,313
고현 안벽	173,052,000	40	480	3,893,676	1,730,520	16,915,832
고현항하역부두	27,107,359	40	434	674,556	271,074	2,643,280
마산 3부두 안벽	541,013,000	40	480	12,172,788	5,410,130	52,884,021
충무 동호항안벽	7,555,791,600	40	439	185,882,796	75,557,916	736,990,880
봉암 접안시설	9,356,707,000	40	480	52,631,478	93,567,070	930,407,552
목조밋콘조 잔교	1,542,996	40	167	99,792	15,430	144,320
해경부두철골잔교	71,010,253	40	388	1,976,580	710,103	6,903,367
합계	52,647,959,235			1,192,440,978	526,479,592	5,145,551,826

3) 부두사용료

(1) 건물+공작물

개 별 자 산 명	대장가액	내용 년수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1부두보안울타리	12,455,262	40	347	387,660	124,553	1,206,760
항만근로자대기소	2,178,961	50	416	56,568	21,790	212,239

진해항보안울타리	30,460,237	40	383	858,936	304,602	2,960,130
진해2부두보안담	19,432,067	40	431	486,924	194,321	1,894,514
3부두보안울타리	15,052,394	40	383	424,452	150,524	1,462,794
3부두복지회관 담	3,800,160	30	192	213,756	38,002	358,640
4부두보안울타리	63,179,356	30	311	2,194,008	631,794	6,098,535
5부두보안울타리	3,838,250	40	480	86,364	38,383	375,189
충무항보안울타리	2,981,160	40	317	101,568	29,812	287,959
1부공해방지시설	557,004,053	30	335	17,957,148	5,570,041	53,904,691
마산1부두 조명등	9,181,503	35	347	285,768	91,815	889,574
마산1부두보안등	4,383,428	35	176	268,980	43,834	411,445
진해부두 보안등	2,357,569	35	221	115,212	23,576	224,236
삼천포부두보안등	5,613,189	35	272	222,876	56,132	539,031
삼천포안벽조명등	38,512,515	35	346	1,202,124	385,125	3,731,039
진해2부두 조명등	26,010,608	35	323	869,700	260,106	2,514,091
마산3부두 보안등	1,852,518	35	169	118,380	18,525	173,414
마산3부두 조명등	114,078,890	35	420	488,910	1,140,789	11,358,998
마산4부두 보안등	15,446,328	35	295	565,488	154,463	1,488,084
서항부두조명시설	6,507,000	35	420	167,328	65,070	633,967
중양,2부두보안등	4,419,129	35	251	190,140	44,191	422,899
마산4부두 조명등	131,954,248	35	280	5,089,668	1,319,542	12,686,458
3부두복지회관	116,237,619	60	556	2,257,848	1,162,376	11,397,977
4부두복지회관	86,548,896	60	599	1,560,480	865,489	8,498,842
근로자복지회관	141,617,481	60	690	2,216,616	1,416,175	13,940,087
삼천포 복지회관	80,644,221	60	657	1,325,664	806,442	7,931,856
중양부두복지회관	583,534,290	60	720	8,753,016	5,835,343	57,478,127
진해항복지회관	103,818,614	60	587	1,910,124	1,038,186	10,190,849
충무근로자휴게소	91,319,345	60	638	1,545,840	913,193	8,977,351
5부두 조명등탑	60,805,606	35	343	1,914,576	608,056	5,889,103
합계	2,335,224,897			53,836,122	23,352,249	228,138,878

(2) 토지

개별자산명	주소	지목	면적(m²)	재평가액(원)
1부두외곽부지	마산 월영 621-62	구거	101	20,149,500
1부두외곽부지	마산 월영 621-60	도로	3,702	738,549,000

1부두용지	마산 월남1가 46-2	대지	1,248	499,779,280
1부두용지	마산 월남1가 47-4	도로	1,531	612,972,360
1부두용지	마산 월남1가 47-3	도로	2,267	904,023,120
1부두용지	삼천포 향촌 1198-4	유	270	404,460
1부두용지	마산 월남1가 46-3	잡	4,206	1,684,242,560
1부두용지	마산 월남1가 46-4	잡	28,144	11,269,017,760
1부두용지	삼천포 향촌 1031-15	잡	9,767	403,377,100
2부두용지	마산 신포 46-2	대지	202	65,370,970
2부두용지	마산 신포 45-5	대지	259	84,601,720
2부두용지	마산 신포 45-1	대지	1,656	594,741,420
3구물양장부지	장승포 장승포 291-58	구거	26	7,498,400
3구물양장부지	장승포 장승포 291-55	도로	172	49,604,800
3구물양장부지	장승포 장승포 291-59	도로	170	28,004,627
3부두 외곽	마산 회원 양덕 976-25	도로	1,577	567,720,000
3부두 외곽	마산 회원 양덕 976-26	잡	525	44,625,000
4부두용지	창원 신촌 63-2	구거	3,025	319,742,500
4부두용지	창원 신촌 66-7	잡	60	8,385,832
4부두용지	창원 신촌 66-8	잡	1,050	147,503,557
4부두용지	창원 신촌 63-6	잡	5,805	613,620,210
4부두용지	창원 신촌 66-9	잡	18,271	2,566,387,707
4부두용지	창원 신촌 63-3	잡	90,275	9,542,035,790
4부두용지	창원 신촌 63-1	잡	105,328	11,133,116,750
5부두용지	창원 귀곡 576	잡	27,637	29,521,630
5부두용지	창원 귀곡 575	잡	71,160	76,012,898
5부두용지	창원 귀곡 577	잡	104,464	111,588,445
5부두용지	창원 귀곡 574-2	잡	200,553	214,230,608
고현항만부지	거제 신현 장평 1208	잡	857	20,000,000
고현항만부지	거제 신현 고현 990	대지	2,635	117,139,085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서동 346-30	잡	420	129,360,000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동동 484-12	잡	486	336,798,000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동동 485-2	잡	215	148,995,000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서금 127-1	잡	1,164	309,624,000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선구 336-25	잡	929	461,713,000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서동 311-85	잡	83	63,910,000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서동 311-88	잡	245	188,650,000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서동 311-91	잡	63	48,510,000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서동 311-97	잡	89	68,530,000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서동 311-109	잡	374	259,182,000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서금 127-5	잡	1,227	300,615,000
구항물양장부지	삼천포 서동 311-134	잡	1,370	949,410,000
부두외곽부지	충무 동호 314-10	대지	522	161,506,800
부두외곽부지	충무 동호 300-13	대지	893	155,649,900
부두외곽부지	충무 봉평 427-1	대지	107	11,085,200
부두외곽부지	충무 동호 1158-63	도로	128	36,736,000
부두외곽부지	충무 정량 1346-7	도로	265	32,771,543
부두외곽부지	충무 동호 334-21	도로	1,221	116,808,430
부두외곽부지	통영 서호 316-2	도로	437	360,962,000
부두외곽부지	통영 동호 364	도로	3,363	960,587,040
부두외곽부지	통영 동호 365	도로	7,426	2,120,837,040
부두외곽부지	충무 봉평 430-1	도로	1,670	81,011,700
부두외곽부지	충무 정량 1346-6	도로	1,247	154,211,751
부두외곽부지	통영 동호 344	도로	1,192	484,908,410
부두외곽부지	통영 서호 320	잡	217	40,145,000
부두외곽부지	통영 서호 316-1	잡	20,895	17,259,270,000
부두외곽부지	충무 봉평 14-7	잡	1,841	186,861,500
서항부두용지	마산 합포 해운 72	잡	9,282	1,986,262,400
서항부두용지	마산 합포 해운 71	잡	11,520	2,592,000,000
서항부두용지	마산 해운 57	잡	15,330	5,494,415,360
서항부두용지	마산 해운 56	잡	21,057	9,389,137,940
외곽부지	장승포 장승포 548-30	대지	683	37,626,470
외곽부지	장승포 장승포 549-3	대지	134	5,496,680
외곽부지	장승포 장승포 214-4	도로	218	22,737,400
외곽부지	장승포 장승포 199-3	도로	68	4,680,651
외곽부지	장승포 장승포 684	도로	214	45,881,150
외곽부지	장승포 장승포 704-1	도로	2,785	694,071,840
외곽부지	삼천포 서동 311-133	잡	344	105,952,000
외곽부지	장승포 장승포 703	잡	6,408	1,668,747,360
외곽부지	장승포 장승포 705	잡	2,116	556,904,880

중앙부두용지	마산 신포 47-5	대지	3,365	1,168,432,160
중앙부두용지	마산 월포 1-2	대지	7,808	3,230,335,080
중앙부두용지	마산 월포 1-35	도로	2,270	939,140,370
중앙부두용지	마산 합포 월포 3	도로	9,450	1,304,100,000
중앙부두용지	마산 월포 1-34	도로	1,802	745,363,290
중앙부두용지	마산 신포 47-6	잡	654	235,453,120
중앙부두용지	마산 신포 47-4	잡	1,260	461,102,950
중앙부두용지	마산 월포 1-3	잡	5,987	2,476,739,160
중앙부두용지	마산 월포 1-4	잡	7,783	3,219,992,580
중앙부두용지	마산 월포 1-5	잡	8,116	3,357,465,090
진해부지의외곽부지	진해 장천 709-3	대지	284	21,801,601
진해부지의외곽부지	진해 장천 708	대지	302	23,183,392
진해부지의외곽부지	진해 행암 88-6	잡	2,942	329,504,000
진해부지의외곽부지	진해 행암 88-7	잡	9,999	1,119,888,000
진해항 2부두용지	진해 장천 783	구거	239	14,231,542
진해항 2부두용지	진해 장천 782	잡	110,518	7,762,021,746
진해항1부두용지	진해 장천 701-7	잡	20	1,300,124
진해항1부두용지	진해 장천 710-1	잡	354	27,175,235
진해항1부두용지	진해 장천 708-13	잡	1,634	113,808,100
진해항1부두용지	진해 장천 705-3	잡	15,956	1,063,307,840
충무내만부지	충무 항남 1-59	대지	116	171,332,000
충무내만부지	충무 항남 1-60	대지	165	243,705,000
충무내만부지	충무 항남 303	도로	319	58,355,659
충무내만부지	충무 항남 304	도로	377	68,965,779
충무내만부지	충무 항남 305	잡	151	77,583,800
충무항 외곽부지	충무 도남 205-6	잡	654	84,693,000
충무항외곽부지	충무 항남 308	대지	314	192,984,400
충무항외곽부지	충무 항남 306	잡	98	48,294,400
충무항외곽부지	통영 도천 1028	잡	593	109,705,000
화물선부두용지	충무 항남 307	잡	4,165	3,148,740,000
합계			1,002,885	122,325,234,952
평균지가			121,973	

4) 공통

개 별 자 산 명	대장가액	내용 년수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마산청사 발전기	1,732,192	15	59	317,076	17,322	141,512
마산청사비상발전기	1,211,705	15	47	278,436	12,117	93,327
항무통신용무선탑	13,377,261	30	248	582,564	133,773	1,279,470
장승포소직원숙소	44,670,427	60	671	718,992	446,704	4,395,144
충무소 직원숙소	73,243,731	60	683	1,158,168	732,437	7,208,556
충무출장소숙직실	1,203,418	50	394	32,988	12,034	117,043
1부두 경비초소	8,318,917	40	359	250,260	83,189	806,866
3부두분실사무실	2,636,726	50	359	79,320	26,367	255,741
4부두 운영건물	74,745,075	60	636	1,269,252	747,451	7,347,582
5부두 경비초소	8,119,144	40	418	209,772	81,191	790,937
4부두 변전실	138,898,061	50	551	2,722,500	1,388,981	13,617,556
고현분실	5,254,460	40	480	118,224	52,545	513,624
국기계양대건물	34,520,372	50	455	819,384	345,204	3,370,099
마산서항경비초소	11,293,430	40	480	254,100	112,934	1,103,933
마산청 청사	125,708,977	60	488	2,782,080	1,257,090	12,292,690
마산청 민원실	50,136,392	60	560	966,912	501,364	4,916,948
마산청 직원숙소	114,802,517	60	581	2,134,020	1,148,025	11,266,850
마산폐유수용시설	460,000,000	40	480	3,450,000	4,600,000	45,655,000
마산항 관제소	173,496,488	60	607	3,086,928	1,734,965	17,040,956
마산항 선원회관	207,055,769	60	640	3,494,064	2,070,558	20,356,171
마산항소방파출소	31,133,494	60	539	623,820	311,335	3,050,967
삼천포소직원숙소	44,670,427	60	671	718,992	446,704	4,395,144
삼천포수협위판장	46,817,556	40	444	1,138,800	468,176	4,567,876
삼천포출장소청사	42,158,970	60	544	836,976	421,590	4,132,199
월영대부두초소	17,510,000	40	480	393,972	175,100	1,711,603
장승포출장소청사	31,041,287	60	539	621,972	310,413	3,041,932
중앙부두경비실	526,411	40	274	20,748	5,264	50,566
진해2부두경비초소	12,321,890	40	480	277,248	123,219	1,204,464
진해부두경비초소	8,318,917	40	359	250,260	83,189	806,866
창원부두 경비실	528,882	40	306	18,672	5,289	51,021
창원부두운영건물	18,413,188	50	467	425,832	184,132	1,798,736

충무경비초소	2,724,700	40	480	61,308	27,247	266,339
충무출장소 청사	45,788,561	60	503	983,136	457,886	4,480,543
충무출장소통신실	18,071,667	50	549	355,512	180,717	1,771,616
삼천포출장소 담	15,191,800	40	262	626,232	151,918	1,456,557
장승포출장소 담	5,648,189	40	306	199,344	56,482	544,885
청사보안울타리	25,653,712	40	362	765,360	256,537	2,488,835
합계	1,916,944,713			31,865,148	19,169,447	188,390,149

8. 울산항

1) 선박입항료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간절갑 1호숙소	50	21,099,363	515	442,472	210,994	2,065,689
간절갑 1호창고	40	13,766	143	1,040	138	1,273
간절갑 2호숙소	50	11,072,356	369	324,069	110,724	1,074,829
간절갑 2호창고	40	6,007,181	441	147,115	60,072	586,007
간절갑 3호숙소	50	6,641,000	453	158,328	66,410	648,267
간절갑 3호창고	40	6,252,369	441	153,119	62,524	609,925
간절갑 등대	50	2,062,944	535	41,644	20,629	202,130
간절갑등대 무선호기	15	27,463,920	168	1,765,538	274,639	2,569,838
간절갑등대 발전기	15	4,386,720	114	415,584	43,867	397,114
간절갑등대 사무실	60	14,022,225	576	262,917	140,222	1,375,931
간절갑등대 우물	50	1,857,960	510	39,345	18,580	181,861
간절갑등대 우물	50	12,508,320	588	229,745	125,083	1,227,858
간절갑등대 울타리	40	12,077,074	462	282,321	120,771	1,179,475
간절갑등대 저동	20	273,173	149	19,800	2,732	25,337
간절갑등대 철탑	30	563,767	270	22,551	5,638	54,122
경남 937호	20	232,502,400	123	20,414,845	2,325,024	21,208,756
경남 961호	20	32,193,250	59	5,893,002	321,933	2,630,025
관제실 진입로담	20	7,301,966	155	508,782	73,020	679,318
근치남서방 등부표	15	230,000	0	-	2,300	23,000
남화동 방파제	50	52,400,088	364	1,554,728	524,001	5,084,536
미포북방파제 등대	50	14,724,216	587	270,906	147,242	1,445,331
방어동 568-1 매립	50	3,756,245,000	468	86,682,577	37,562,450	366,956,242
방어진 남방파제 등대	50	12,987,936	570	246,087	129,879	1,274,185
방어진북방파제 등대	50	6,320,492	588	116,091	63,205	620,440
선류장 울타리	40	5,838,629	468	134,738	58,386	570,389
선류장 진입로 화단	30	875,680	304	31,110	8,757	84,457
슬도 등대	50	7,973,784	534	161,268	79,738	781,252
양죽방파제 등대	50	1,966,536	412	51,550	19,665	191,499
온산남방파제 등대	50	2,645,136	471	60,653	26,451	258,448
온산북방파제 등대	50	2,878,200	471	65,997	28,782	281,220

온산항 10호 등부표	15	2,305,333	51	488,188	23,053	181,714
온산항 11호 등부표	15	2,675,462	168	171,994	26,755	250,347
온산항 12호 부표	15	481,173	63	82,487	4,812	39,869
온산항 14호 등부표	15	2,675,462	168	171,994	26,755	250,347
온산항 1호 등부표	15	2,675,462	168	171,994	26,755	250,347
온산항 32호 등부표	15	2,161,813	51	457,796	21,618	170,402
온산항 34호 등부표	15	2,675,462	168	171,994	26,755	250,347
온산항 3호 등부표	15	3,056,507	168	196,490	30,565	286,002
온산항 4호 등부표	15	2,161,813	51	457,796	21,618	170,402
온산항 5호 등부표	15	7,754,121	168	498,479	77,541	725,564
온산항 7호 등부표	15	6,258,121	168	402,308	62,581	585,581
온산항 9호 등부표	15	267,562	168	17,200	2,676	25,036
온산항 남 방파제	50	6,079,560,552	471	139,403,936	60,795,606	594,015,662
온산항 북 방파제	50	5,202,794,972	471	119,299,757	52,027,950	508,349,521
용잠동 방파제	50	2,566,512	440	62,996	25,665	250,352
울기 구등대	50	4,215,744	419	108,664	42,157	410,708
울기등대	50	53,596,248	563	1,028,134	535,962	5,256,811
울기등대 1호속소	50	25,017,767	380	711,031	250,178	2,430,674
울기등대 2호속소	50	33,374,824	500	720,896	333,748	3,265,393
울기등대 무선호기	15	6,739,200	168	433,234	67,392	630,597
울기등대 무선호사	40	17,838,480	443	434,888	178,385	1,740,359
울기등대 발전기	15	4,081,653	83	531,107	40,817	355,055
울기등대 사무실	50	13,892,924	488	307,466	138,929	1,358,546
울기등대 울타리	20	41,477,273	224	1,999,797	414,773	3,947,748
울기등대 저통	20	655,893	118	60,031	6,559	59,586
울기등대 창고	40	12,180,432	443	296,950	121,804	1,188,348
울산 거무암 등부표	15	756,427	74	110,397	7,564	64,603
울산청사 무선철탑	30	13,307,667	224	641,620	133,077	1,266,605
울산항 11호 등부표	15	232,000	0	-	2,320	23,200
울산항 12호 등부표	15	235,000	0	-	2,350	23,500
울산항 13호 등부표	15	3,120,000	99	340,364	31,200	277,964
울산항 14호 등부표	15	55,000	0	-	550	5,500
울산항 15호 등부표	15	28,000	0	-	280	2,800
울산항 16호 등부표	15	671,840	99	73,292	6,718	59,855
울산항 17호 등부표	15	200,000	0	-	2,000	20,000
울산항 18호 등부표	15	24,000	0	-	240	2,400

울산항 19호 등부표	15	1,021,973	12	919,776	10,220	10,220
울산항 20호 등부표	15	46,000	0	-	460	4,600
울산항 22호 등부표	15	277,333	12	249,600	2,773	2,773
울산항 5호 등부표	15	7,245,333	131	597,325	72,453	664,801
울산항 7호 등부표	15	7,245,333	131	597,325	72,453	664,801
울산항 부표	15	219,093	63	37,559	2,191	18,153
울산항 항만관제실	60	116,696,175	505	2,495,681	1,166,962	11,420,049
울산항 A호 등부표	15	2,675,462	168	171,994	26,755	250,347
울산화력 호안	50	729,010,741	588	13,389,993	7,290,107	71,562,075
이덕서 등표	50	230,632,272	582	4,279,774	2,306,323	22,635,250
일반부두 선류장창고	40	2,493,602	377	71,435	24,936	242,217
장생포 1호 등부표	15	7,245,333	131	597,325	72,453	664,801
장생포 23호 등부표	15	7,245,333	131	597,325	72,453	664,801
장생포 4호 등부표	15	7,245,333	131	597,325	72,453	664,801
장생포 5호 등부표	15	56,000	12	50,400	560	560
장생포 6호 등부표	15	889,547	74	129,826	8,895	75,972
장생포 7호 등부표	15	94,987	74	13,863	950	8,112
장생포 8호 등부표	15	893,707	74	130,433	8,937	76,327
장생포항 3호 부표	15	524,201	168	33,699	5,242	49,050
정자항 남방파제 등대	50	9,256,045	588	170,009	92,560	908,604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	50	9,256,045	588	170,009	92,560	908,604
주전파랑관측소	50	23,062,641	505	493,221	230,626	2,256,942
청사전면 방파제	50	854,275,968	440	20,968,592	8,542,760	83,330,738
청사전면 파제제	50	6,175,728	525	127,044	61,757	604,868
파랑관측소 창고	10	475,120	38	135,034	4,751	34,009
항만관제실 발전실	15	3,380,847	113	323,125	33,808	305,772
항만관제실 발전기	15	4,461,600	114	422,678	44,616	403,892
항만관제실 발전기	15	1,345,067	79	183,883	13,451	116,118
항만관제실 화단	30	471,480	249	20,450	4,715	45,103
화암추동대 사무실	60	576,339,509	708	8,791,620	5,763,395	56,754,789
화암추동대 사무실	60	623,946,891	708	9,517,834	6,239,469	61,442,906
화암추동대 우물	50	12,000,000	588	220,408	120,000	1,177,959
합계		19,061,360,849		456,855,762	190,613,608	1,860,450,509

2) 선석사용료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울산 2.3부두 연결부	40	1,072,506,890	452	25,626,271	10,725,069	104,688,062
울산 6부두 안벽	40	29,388,542,572	468	678,197,136	293,885,426	2,871,034,544
울산 석탄부두 안벽	40	6,833,582,484	363	203,313,198	68,335,825	663,026,929
울산 일반부두 안벽	40	4,248,754,551	335	136,974,774	42,487,546	411,177,978
울산항 1부두 안벽	40	1,320,663,528	269	53,022,922	13,206,635	126,764,061
울산항 2부두 안벽	40	7,620,920,115	229	359,414,573	76,209,201	726,150,554
울산항 3부두 안벽	40	9,309,979,211	250	402,191,102	93,099,792	890,778,811
울산항 4부두 안벽	40	102,406,780	468	2,363,233	1,024,068	10,004,355
제4부두 야적장 포장	40	404,765,550	469	9,320,827	4,047,656	39,544,472
울산항 4부두 안벽	40	543,094,140	468	12,532,942	5,430,941	53,056,120
울산항 4부두 안벽	40	1,565,778,326	193	87,618,684	15,657,783	147,815,964
울산항 5부두 안벽	40	56,593,200	468	1,305,997	565,932	5,528,720
울산항 5부두 안벽	40	3,113,617,738	359	93,668,723	31,136,177	301,994,901
방어동 568-1 매립지	40	2,699,394,620	468	62,293,722	26,993,946	263,710,090
방어동 568-1 매립지	40	9,205,655,306	468	212,438,199	92,056,553	899,321,711
합계		77,486,255,011		2,340,282,303	774,862,550	7,514,597,271

3) 부두사용료

(1) 건물+공작물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1.2부두 조명등탑	35	123,991,236	408	3,282,121	1,239,912	12,070,912
2.3부두 조명등탑	35	11,969,100	387	334,021	119,691	1,163,508
2부두 조명등주	35	43,013,100	169	2,748,766	430,131	4,026,433
3부두 조명등주	35	49,592,400	190	2,818,936	495,924	4,677,346
4부두 조명등탑	35	27,211,860	403	729,251	272,119	2,648,261
4부두배면 조명탑	35	104,248,732	409	2,752,778	1,042,487	10,149,595
5부두 조명등주	35	21,608,340	299	780,502	216,083	2,082,784
6부두 조명등탑	35	310,758,739	408	8,225,967	3,107,587	30,253,277
6부두 조명시설	35	609,927,666	408	16,145,144	6,099,277	59,378,252
울산1부두 보호책	30	12,603,184	348	391,133	126,032	1,221,205

울산2부두 변압기	15	61,707	0	-	617	6,171
울산3부두 변압기	15	62,400	0	-	624	6,240
울산5부두 변압기	15	624,000	59	114,224	6,240	50,978
울산항 1.2부두 담	20	41,770,915	167	2,701,353	417,709	3,906,956
울산항 3.5부두 담	20	39,555,299	203	2,104,420	395,553	3,745,088
울산항 6부두 담	30	21,521,657	228	1,019,447	215,217	2,050,221
일반부두 변압기	15	897,173	35	276,842	8,972	62,033
일반부두 울타리	40	20,144,460	324	671,482	201,445	1,947,298
일반부두 조명등주	35	13,153,920	275	516,590	131,539	1,263,733
일반부두 진입화단	30	4,708,320	303	167,821	47,083	454,050
2부두 경비초소	40	18,313,914	468	422,629	183,139	1,789,129
2부두 한양기계실	50	78,662,571	588	1,444,823	786,626	7,721,775
3부두 경비초소	40	33,410,925	468	771,021	334,109	3,263,990
3부두 근로자의집	60	99,123,051	623	1,718,345	991,231	9,740,471
3부두 근로자의집 창	40	6,167,238	383	173,906	61,672	599,333
울산근로자 휴게소	60	364,919,464	708	5,566,568	3,649,195	35,935,290
울산근로자집 저통	20	1,104,480	143	83,415	11,045	102,106
울산청 직원숙소	60	77,123,651	591	1,409,366	771,237	7,571,428
울산항 근로자집 담	20	4,922,057	143	371,736	49,221	455,032
일반 근로자집 담	40	1,975,555	383	55,708	19,756	191,985
일반근로자의집 변소	40	2,285,234	371	66,524	22,852	221,871
일반근로자의집 창고	40	1,214,533	376	34,886	12,145	117,965
5부두 경비본부	50	28,118,163	569	533,702	281,182	2,758,446
6부두 경비초소	40	9,571,584	468	220,883	95,716	935,070
일반부두 1초소	40	2,947,692	359	88,677	29,477	285,901
일반부두 2초소	40	6,641,598	407	176,239	66,416	646,536
일반부두 근로자의집	60	125,935,752	611	2,226,033	1,259,358	12,370,972
일반부두 화장실	40	7,181,483	407	190,565	71,815	699,092
항운노조 간이대기소	10	3,602,940	108	360,294	36,029	324,265
컨테이너부두 표지	10	5,332,800	88	654,480	53,328	467,832
합 계		2,335,978,893		62,350,598	23,359,789	227,362,829

(2) 토지

자 산 명	소재지	지목	면 적	대 장 가 액
6부두 배후부지	매암동360-39		722	101,080,000

6부두유수지배면도로	매암동 360-17	도로	6,902	142,182,000
6부두배후부지	매암동 360-4	잡	2,800	392,000,000
6부두배후부지	매암동 360-35	구거	485	67,900,000
6부두배후부지	매암동 360-36	공장	34,178	4,784,920,000
6부두배후부지	매암동 360-37	구거	811	113,540,000
6부두배후부지	매암동 360-38	잡	41,947	5,872,580,000
6부두배후부지	매암동 360-40		598	83,720,000
6부두배후부지	매암동 472-40	잡	965	105,185,000
다목적 수출입부두	염포동 265-28	잡	52,617	7,892,550,000
일반부두	매암동 139-17	잡	58,447	8,650,156,000
일반부두 배면도로	매암동 139-1	도로	8,301	1,184,276,000
일반부두 배면도로	매암동 139-14	잡	687	134,652,000
일반부두 배면부지	매암동 139-12	잡	28,106	3,934,840,000
일반부두 측면도로	매암동 139-13	도로	2,116	95,220,000
임항창고 부지	매암동 360-33	잡	11,861	780,000,000
제1,2부두	여천동 187-12	잡	113,640	14,432,280,000
제1,2부두 배면	여천동 187-10	잡	51,458	6,535,166,000
제1,2부두 배면	여천동 50-6	공장	142,244	18,491,720,000
제3부두 배면부지	매암동 472-21	잡	11,848	1,350,672,000
제3부두 배면부지	매암동 472-35	잡	13,030	1,563,600,000
제3부두 안벽	매암동 472-20		1,415	162,725,000
제4부두 배면부지	매암동 472-2	잡	124,787	14,225,718,000
제4부두안벽	매암동 472-4		469	51,121,000
제4부두안벽	매암동 472-41		69	7,521,000
제4부두안벽	매암동 472-42		1,912	208,408,000
제5부두 배면부지	매암동 472-6	잡	28,920	3,296,880,000
제5부두 배면부지	매암동 472-37	잡	1,897	227,640,000
제5부두 안벽	매암동 472-36	잡	9,368	1,124,160,000
제5부두 후면도로	매암동 360-16	도로	3,051	137,295,000
제6부두 배면도로	매암동 290-10	도로	8,450	1,102,725,000
제6부두 배면부지	매암동 382-9	잡	8,185	1,203,195,000
제6부두 배면부지	매암동 290-12	잡	1,177	128,293,000
합계			773,463	98,583,920,000
평균				127,458

4) 공통

개 별 자 산 명	내용 년수	대장가액	잔존상 각월수	당년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경남 915호	20	151,164,000	136	12,004,200	1,511,640	13,915,980
경남 918호	20	19,270,332	158	1,317,213	192,703	1,795,312
경비본부 화단	35	5,502,640	331	179,542	55,026	532,310
무인육상 관측기기	15	10,539,000	151	753,783	105,390	978,522
미포분실 울타리	40	3,733,152	383	105,269	37,332	362,788
미포분실 청사	60	78,026,467	623	1,352,626	780,265	7,667,384
미포분실 화단	30	797,680	263	32,756	7,977	76,492
오염방제 자재창고	40	9,553,029	371	278,094	95,530	927,494
온산2부두 경비실	40	25,890,609	468	597,476	258,906	2,529,313
온산근로자의집 변압	15	1,582,187	83	205,875	15,822	137,631
온산출장소 울타리	40	1,566,081	348	48,603	15,661	151,748
온산출장소 제1화단	30	5,931,220	228	280,953	59,312	565,027
온산출장소 청사	60	45,837,007	588	841,904	458,370	4,499,510
온산항 근로자의집	60	52,841,485	622	917,505	528,415	5,192,398
온산항 근로자집 담	20	1,547,734	142	117,715	15,477	143,002
울산청 청사	60	1,029,953,818	587	18,949,747	10,299,538	101,100,407
울산청사 변압기	15	18,579,947	23	8,724,497	185,799	985,545
울산청사 소각장	30	4,954,733	311	172,061	49,547	478,267
울산청사 수위실	40	3,386,168	347	105,391	33,862	328,078
울산청사 울타리	40	7,386,937	400	199,447	73,869	718,749
울산청사 정구장	30	22,116,648	286	835,174	221,166	2,128,147
울산청사 초소	10	90,000	0	-	900	9,000
울산청사 화단	30	30,197,000	227	1,436,685	301,970	2,876,031
울산항 함선 1호	20	42,125,460	71	6,407,816	421,255	3,571,764
울산항 함선 2호	20	46,026,240	71	7,001,175	460,262	3,902,507
울산항 함선 3호	20	89,629,800	155	6,245,173	896,298	8,338,463
장생포분실 울타리	20	2,756,297	163	182,626	27,563	257,367
장생포분실 청사	60	107,006,673	640	1,805,738	1,070,067	10,520,094
재박현황 시스템	10	17,600,000	108	1,760,000	176,000	1,584,000

정구장 철조망	20	1,727,589	137	136,189	17,276	159,140
제2직원 숙소	60	229,001,085	707	3,498,178	2,290,011	22,550,291
직원숙소 올타리	40	1,014,163	431	25,413	10,142	98,875
직원숙소 차고	10	443,560	23	208,280	4,436	23,528
직원숙소 화단	30	12,932,510	231	604,637	129,325	1,232,787
청사창고 및 식당	35	21,288,446	287	801,098	212,884	2,048,735
울산항 함선 4호	20	87,778,080	165	5,745,474	877,781	8,203,261
합계		2,189,777,777		83,878,312	21,897,778	210,589,946

9. 제주항

1) 선박입항료

개별자산	내용 년수	경과 년수	대장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등대사무실	50	28	1,278,141	52,288	12,781	122,585
등대사무실	50	10	27,520,753	619,217	275,208	2,690,154
등대사무실	50	16	18,327,316	485,135	183,273	1,784,218
등대사무실	50	6	41,480,105	848,457	414,801	4,063,165
등대사무실	50	2	9,700,000	181,875	97,000	951,813
관측소	60	12	17,184,356	322,207	171,844	1,686,215
등대관사	50	28	2,131,890	87,214	21,319	204,468
등대관사	50	9	27,589,999	605,634	275,900	2,698,436
등대관사	50	5	32,196,780	643,936	321,968	3,155,284
등대관사	50	23	1,744,001	58,133	17,440	168,587
등대관사	50	10	34,703,862	780,837	347,039	3,392,303
등대관사	50	10	14,966,323	336,742	149,663	1,462,958
등대관사	50	14	5,581,726	139,543	55,817	544,218
등대관사	50	14	14,046,848	351,171	140,468	1,369,568
등대관사	50	3	56,000,911	1,072,358	560,009	5,492,855
등대관사	50	2	49,992,000	937,350	499,920	4,905,465
등대창고	40	28	214,368	16,078	2,144	19,829
등대창고	40	33	141,098	18,141	1,411	12,296
등대창고	40	36	107,455	24,177	1,075	8,328
등대창고	40	18	252,491	10,329	2,525	24,216
등대창고	40	18	170,687	6,983	1,707	16,370
등대창고	40	7	6,557,384	178,838	65,574	637,855
등대창고	40	14	3,761,323	130,200	37,613	363,112
등대창고	40	14	1,640,237	56,777	16,402	158,346
무신호사	40	8	22,007,344	618,957	220,073	2,138,839
급유소	50	5	5,595,395	111,908	55,954	548,349
통제소	40	9	1,587,355	46,085	15,874	154,127
산지등대동력실	40	1	39,907,860	920,951	399,079	3,898,691
산지등대	40	33	203,413	26,153	2,034	17,726
우도등대	40	36	342,916	77,156	3,429	26,576

추자도등대	40	14	5,451,266	188,698	54,513	526,257
마라도등대	30	10	540,521	24,323	5,405	51,620
우도등대	30	10	539,597	24,282	5,396	51,532
제주항	30	1	66,179,480	2,053,846	661,795	6,412,563
산지등대	50	33	497,839	26,356	4,978	47,148
산지등대	50	33	642,921	34,037	6,429	60,888
우도등대	50	36	326,712	21,003	3,267	30,571
우도등대	50	36	537,550	34,557	5,375	50,299
추자도등대	50	15	1,444,848	37,153	14,448	140,770
추자도등대	50	15	2,269,649	58,362	22,696	221,129
마라도등대	50	7	11,611,507	243,032	116,115	1,136,848
우도등대	50	4	18,892,424	369,634	188,924	1,852,279
우도등대	50	1	20,762,500	381,352	207,625	2,038,115
동방파제	50	24	969,696	33,566	9,697	93,613
귀덕등대	50	10	11,201,120	252,025	112,011	1,094,909
비양도등대	50	40	804,384	72,395	8,044	73,199
신창등대	50	8	12,016,734	257,501	120,167	1,175,923
차귀도등대	50	38	1,233,803	92,535	12,338	114,127
비양동등대	50	16	2,206,017	58,395	22,060	214,762
추자도등대	50	16	10,969,211	290,361	109,692	1,067,885
추자방서	50	11	8,216,747	189,617	82,167	802,713
추자도	50	31	662,230	31,369	6,622	63,086
횡간도	50	12	5,307,078	125,694	53,071	518,138
모슬포동	30	11	4,556,654	215,842	45,567	434,081
성산항동방파제	50	15	2,414,246	62,081	24,142	235,217
방두포	50	16	2,485,444	65,791	24,854	241,965
가마등대	50	8	14,549,771	311,781	145,498	1,423,799
개민포등대	50	10	4,112,192	92,524	41,122	401,967
지귀도등대	50	16	2,642,776	69,956	26,428	257,282
구서방파제	30	14	663,203	37,305	6,632	62,590
마라도등대	50	8	38,420,494	823,296	384,205	3,759,720
화순항방파제	30	10	2,339,960	105,298	23,400	223,466
애월항남방파제	50	10	5,355,056	120,489	53,551	523,457
망도등대	50	10	7,562,000	170,145	75,620	739,186
새별곶등대	50	10	7,762,238	174,650	77,622	758,759
표선방파제	30	13	379,610	20,097	3,796	35,951

화도동대	50	9	24,492,613	537,643	244,926	2,395,497
달서동대	50	9	9,232,244	202,659	92,322	902,959
조도동대	30	10	2,839,804	127,791	28,398	271,201
녹도동대	50	10	6,321,728	142,239	63,217	617,949
서귀포항	30	9	3,257,122	139,591	32,571	311,753
행원서방파제	50	7	8,989,291	188,148	89,893	880,114
화북서방파제	50	7	6,352,497	132,959	63,525	621,954
외항동방파제	30	7	1,717,333	67,200	17,173	165,013
장수도동대	50	6	31,291,334	640,050	312,913	3,065,128
운용곶동대	50	5	12,089,572	241,791	120,896	1,184,778
성산항서방파제	30	5	16,348,893	588,560	163,489	1,576,033
신양방파제	50	5	5,675,733	113,515	56,757	556,222
대봉안곶	50	4	25,797,894	504,741	257,979	2,529,315
득생곶동대	50	4	15,966,197	312,382	159,662	1,565,382
가파항남방파제	50	3	23,865,313	456,995	238,653	2,340,832
성산외항동방파제	50	3	15,848,793	303,488	158,488	1,554,531
성산항북방파제	50	3	18,467,274	353,629	184,673	1,811,365
신흥관곶	50	3	12,415,519	237,744	124,155	1,217,778
신양항동대	50	3	14,241,622	272,712	142,416	1,396,891
모슬포항서방파제	50	4	7,993,328	156,391	79,933	783,694
애월항북방파제	50	5	6,303,150	126,063	63,032	617,709
애월항동방	50	5	6,303,150	126,063	63,032	617,709
우도방파제	50	1	24,799,000	455,492	247,990	2,434,351
산지동대	15	10	1,307,437	235,339	13,074	107,210
우도동대	15	10	1,320,255	237,646	13,203	108,261
마라도동대	15	14	421,163	379,047	4,212	4,212
마라도동대	15	10	1,348,993	242,819	13,490	110,617
추자동대	15	12	1,341,324	402,397	13,413	93,893
마라도동대	15	7	37,754,769	4,247,411	377,548	3,350,736
산지동대	15	11	913,914	205,631	9,139	70,828
	15	14	197,591	177,832	1,976	1,976
서비여	50	7	30,996,733	648,769	309,967	3,034,796
가막여동표	50	10	21,578,697	485,521	215,787	2,109,318
추자동동표	50	10	3,716,897	83,630	37,169	363,327
온평동표	50	8	30,462,797	652,774	304,628	2,981,002
번다탄동표	50	5	30,775,608	615,512	307,756	3,016,010

추자2호	15	13	112,931	50,819	1,129	6,211
추자5호	15	13	112,931	50,819	1,129	6,211
비양도남단	50	2	58,461,000	1,096,144	584,610	5,736,486
이어도동표	15	1	36,857,850	2,369,433	368,579	3,448,842
광포탄등표	50	1	65,593,230	1,204,774	655,932	6,438,846
추자제2	15	1	2,549,032	163,866	25,490	238,517
제주항	50	25	293,381,060	10,561,718	2,933,811	28,281,934
제주항서방	50	12	9,340,705,949	221,227,246	93,407,059	911,947,870
서귀포항동	50	12	4,545,014,746	107,645,086	45,450,147	443,736,966
서귀항서	50	37	27,680,424	1,916,337	276,804	2,576,409
제주항서	50	10	5,441,323,168	122,429,771	54,413,232	531,889,340
제주항동	50	9	3,585,050,282	78,696,226	35,850,503	350,635,406
서귀항동	50	10	2,805,134,691	63,115,531	28,051,347	274,201,916
서귀항남	50	9	1,617,781,877	35,512,285	16,177,819	158,226,959
우도등대	15	8	10,368,378	1,333,077	103,684	903,530
마라도등대	15	8	10,207,849	1,312,438	102,078	889,541
산지등대	15	3	18,784,069	1,408,805	187,841	1,737,526
추자도등대	15	2	36,894,220	2,554,215	368,942	3,434,000
파랑관측	15	9	343,469	51,520	3,435	29,195
"	15	9	204,481	30,672	2,045	17,381
파랑관측기	15	5	20,903,620	1,881,326	209,036	1,902,229
서귀포항	50	6	23,818,142	487,189	238,181	2,333,095
제주962호	20	8	184,604,113	13,845,308	1,846,041	17,075,880
제주935호	20	3	500,170,558	26,479,618	5,001,706	47,369,094
합계			29,802,265,468	727,400,575	298,022,655	2,907,486,489

2) 선석사용료

개별자산	내용 년수	경과 년수	대장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1부두물양장	40	14	486,713,864	16,847,788	4,867,139	46,986,608
2부두안벽	40	20	636,728,172	28,652,768	6,367,282	60,807,540
3부두안벽	40	18	892,525,602	36,512,411	8,925,256	85,601,319
5부두안벽	40	5	2,923,756,842	75,182,319	29,237,568	284,857,452
6부두안벽	40	7	2,095,434,851	57,148,223	20,954,349	203,828,663
6부두안벽	40	9	402,023,326	11,671,645	4,020,233	39,035,168
서귀포항안벽	40	11	88,208,371	2,737,501	882,084	8,547,087

서귀포항부잔교	30	6	98,841,296	3,706,549	988,413	9,513,475
합 계			7,624,232,325	232,459,203	76,242,323	739,177,312

3) 부두사용료

(1) 건물+공작물

개별자산	내용 년수	경과 년수	대장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부두울타리	40	14	16,699,691	578,066	166,997	1,612,162
부두울타리	40	15	14,932,234	537,560	149,322	1,439,467
부두울타리	20	5	10,293,938	617,636	102,939	967,630
보안등	35	13	309,430	12,659	3,094	29,677
타워등	35	11	10,747,828	403,044	107,478	1,034,478
타워등	35	11	3,571,647	133,937	35,716	343,771
타워등	35	11	3,732,448	139,967	37,324	359,248
타워등	35	11	8,200,201	307,508	82,002	789,269
보안등 울타리	35	22	129,177	8,943	1,292	12,023
타워등	35	5	23,951,404	718,542	239,514	2,323,286
타워등	35	5	24,874,136	746,224	248,741	2,412,791
타워등	35	5	25,909,256	777,278	259,093	2,513,198
타워등	35	5	25,909,256	777,278	259,093	2,513,198
가로등	35	5	9,748,277	292,448	97,483	945,583
가로등	35	5	34,604,851	1,038,146	346,049	3,356,671
인입장치전주	35	5	3,432,859	102,986	34,329	332,987
포장	40	5	612,068,535	15,738,905	6,120,685	59,632,963
쓰레기소각로	10	1	23,750,000	2,375,000	237,500	2,137,500
휴게소	60	15	38,774,705	775,494	387,747	3,799,921
휴게소	50	14	19,670,366	491,759	196,704	1,917,861
복지회관	60	4	118,841,333	1,909,950	1,188,413	11,693,138
후생시설	60	4	18,007,957	289,414	180,080	1,771,854
복지회관	60	1	444,710,580	6,783,721	4,447,106	43,792,686
합계			1,492,870,111	35,556,463	14,928,701	145,731,365

(2) 토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재평가액
1	제주시 건입동 918-30	대지	2,906	1,874,370,000
12	제주시 건입동918-25	잡종지	42,311	25,852,021,000
14	제주시 건입동918-6	대지	2,397	1,526,889,000
15	제주시 건입동918-7	대지	2,756	1,755,572,000
16	제주시 건입동918-8	대지	367	248,092,000
17	제주시 건입동918-36	대지	801	531,063,000
18	제주시 건입동918-44	도로	4,407	2,326,896,000
19	제주시 건입동918-46	도로	303	164,226,000
21	제주시 건입동904-4	도로	1,954	789,416,000
22	제주시 건입동908-9	잡종지	43,963	24,707,206,000
23	제주시 건입동908-1	잡종지	68,573	41,898,103,000
24	제주시 건입동918-13	도로	47,413	26,646,106,000
27	제주시 건입동865-2	도로	506	251,988,000
28	제주시 건입동887	잡종지	1,674	703,080,000
29	제주시 건입동888	대지	19,249	11,761,139,000
3	제주시 건입동918-28	잡종지	6,010	3,858,420,000
30	제주시 건입동893	대지	1,693	1,078,441,000
31	제주시 건입동893-3	대지	639	396,819,000
33	제주시 건입동922	대지	2,565	1,633,905,000
35	제주시 건입동943-1	대지	97	35,890,000
36	제주시 건입동946	전	409	164,009,000
37	제주시 건입동1428-5	잡종지	700	319,900,000
38	제주시 건입동1428-1	도로	518	191,142,000
39	제주시 건입동908-7	잡종지	564	228,420,000
4	제주시 건입동918-31	대지	2,934	1,892,430,000
40	제주시 건입동908-8	잡종지	204	124,236,000
41	제주시 건입동849	전	11,451	3,767,379,000
42	제주시 건입동851-1	잡종지	1,760	672,320,000
43	제주시 건입동861-2	도로	2,634	956,142,000
44	제주시 건입동902-2	대지	4,612	2,619,616,000
45	제주시 건입동 908	전	34,083	20,824,713,000
46	제주시 건입동347-9	전	102	36,516,000
47	제주시 건입동865-13	전	62	34,782,000

48	제주시 건입동902-4	대지	1,894	1,109,884,000
49	제주시 건입동908-3	전	1,672	638,704,000
5	제주시 건입동918-32	잡종지	9,148	5,196,064,000
50	제주시 건입동925	대지	565	226,565,000
51	제주시 건입동925-1	도로	56	22,176,000
52	제주시 건입동926	대지	5,837	3,601,429,000
56	제주시 건입동941-10	대지	51	17,697,000
58	서귀포시 서귀동783-7	대지	1,036	279,720,000
59	서귀포시 서귀동673-5	잡종지	8,246	2,152,206,000
6	제주시 건입동918-33	도로	4,970	2,624,160,000
60	서귀포시 서귀동673-8	대지	175	49,700,000
64	서귀포시 서귀동667-25	잡종지	308	125,972,000
66	서귀포시 서귀동673-18	도로	569	203,702,000
67	서귀포시 서귀동758-1	잡종지	15,869	3,475,311,000
68	서귀포시 서귀동758-2	잡종지	5,460	1,184,820,000
69	서귀포시 서귀동783-2	도로	2,314	485,940,000
70	서귀포시 서귀동783-14	도로	15	3,675,000
71	서귀포시 서귀동667-32	잡종지	1,316	502,712,000
72	서귀포시 서귀동667-33	잡종지	15	5,490,000
소 계			370,133	201,777,174,000
평균지가			545,148	

4) 공통

개별자산	내용 년수	경과 년수	대장가액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숙소울타리	40	15	4,029,156	145,050	40,292	388,411
숙소울타리	40	3	2,125,490	51,701	21,255	207,379
청사울타리	40	1	218,270,924	5,037,021	2,182,709	21,323,390
광장조경	30	14	41,831,253	2,353,008	418,313	3,947,825
상징탑	30	15	109,958,078	6,597,485	1,099,581	10,336,059
청사보안동	35	1	13,054,448	345,559	130,544	1,270,889
비상발전기	15	11	3,698,052	832,062	36,981	286,599
비상발전기	15	1	18,174,821	1,168,381	181,748	1,700,644
이동초소	20	14	566,975	85,046	5,670	48,193
이동초소	20	9	834,744	68,297	8,347	76,645
테니스장	30	1	60,302,000	1,871,441	603,020	5,843,056

조경	30	1	328,956,495	10,208,995	3,289,565	31,874,750
사무실(관리사무소)	60	4	33,827,836	543,662	338,278	3,328,417
청사	60	1	2,458,905,446	37,508,727	24,589,054	242,139,672
대기소	60	1	142,223,270	2,169,508	1,422,233	14,005,376
직원숙소	60	15	224,137,296	4,482,746	2,241,373	21,965,455
직원숙소	60	3	56,686,462	895,049	566,865	5,579,141
오염방지창고	50	11	5,950,872	137,328	59,509	581,354
초소	40	11	1,715,742	53,247	17,157	166,249
초소	40	14	1,928,825	66,767	19,288	186,206
초소	40	9	2,190,550	63,597	21,905	212,695
펌프실	50	14	61,081,810	1,527,045	610,818	5,955,476
발전실	50	11	2,540,538	58,628	25,405	248,191
간이변소	40	13	253,496	8,450	2,535	24,505
탈의장	40	5	15,932,963	409,705	159,330	1,552,326
보일러실	50	15	2,870,358	73,809	28,704	279,655
초소	50	14	1,052,519	26,313	10,525	102,621
초소	50	9	18,012,895	395,405	180,129	1,761,749
초소	50	7	18,401,814	385,154	184,018	1,801,666
변전실	50	3	40,664,400	778,680	406,644	3,988,572
폐수처리장	50	1	122,422,000	2,248,567	1,224,220	12,017,343
탈의장	60	1	35,000,000	533,898	350,000	3,446,610
탈의장	50	1	42,500,000	780,612	425,000	4,171,939
충전실	50	1	59,339,048	1,089,901	593,390	5,824,915
수위실	50	1	33,505,248	615,403	335,052	3,288,985
제주917호(순찰선)	20	12	60,415,663	6,796,762	604,157	5,361,890
합 계			4,243,361,487	90,413,009	42,433,615	415,294,848

<부록 C> 항만별 98년도 추정원가표

1. 부산항 원가회수율

(단위 : 백만원)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계	수입	원가회수율
선박입항료	2,972	1,476	14,486	1,237	989	21,160	25,679	121.3
선석사용료							22,187	-
컨부두	1,714	610	5,986	543	434	9,287	(6,963)	75
재래부두	2,216	666	6,536	615	492	10,525	(15,224)	144.6
부두사용료					0	0	21,779	19.3
컨부두	130	64	74,536	4,880	3,904	83,514	-	-
재래부두	147	69	25,946	1,708	1,367	29,236	-	-
합 계	7,179	2,886	127,490	8,983	7,186	153,724	69,645	45.3

2. 인천항 원가회수율

(단위 : 백만원)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수 입	원가회수율
선박입항료							10,192	
갑문내	1,180	407	4,025	1,248	998	7,858	(8,890)	113.1
외 항	376	151	1,497	450	360	2,835	(1,302)	46
평택항	49	12	114	39	31	245	(2,163)	882.9
선석사용료							26,901	
선거내	4,071	231	2,292	1,466	1,173	9,233	(25,628)	277.6
선거외	1,598	517	5,122	1,609	1,287	10,133	(1,273)	12.6
평택항	437	127	1,259	405	324	2,552	(947)	37.1
부두사용료								
인천항	534	4,260	42,172	10,442	8,354	65,761	9,980	15.2
평택항	1	42	419	103	82	647	1,169	180.7
합 계	8,246	5,747	56,899	15,762	12,610	99,264	51,352	51.7

3. 동해항 원가회수율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수입	원가회수율 (%)
선박입항료	1,677	939	9,211	4,628	1,851	18,306	993	5.4
선석사용료	663	230	2,261	1,234	494	4,882	3,107	63.6
부두사용료	245	51	5,009	2,076	830	8,211	1,255	15.3
합 계	2,585	1,220	16,480	7,938	3,175	31,399	5,355	17.1

4. 군산항 원가회수율

(단위 : 백만원)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계	수입	원가회수율 (%)
선박입항료	332	107	1,048	586	586	2,661	1,174	44.1
선석사용료	1,611	689	6,731	3,558	3,558	16,148	2,523	15.6
부두사용료	50	15	3,042	1,224	1,224	5,555	805	14.5
합계	1,993	811	10,821	5,369	5,369	24,364	4,502	18.5

5. 대산항 원가회수율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수입	원가회수율 (%)
선박입항료	55	21	208	645	645	1,575	1,818	115.4
공통비	63	23	225	704	704	1,717	-	0
합 계	118	44	433	1,349	1,349	3,292	1,818	55.2

6. 목포항 원가회수율

(단위 : 백만원)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수입	원가회수율 (%)
선박입항료	388	140	1,370	1,424	712	4,034	505	12.5
선석사용료	1,065	330	3,231	3,470	1,735	9,830	1,777	18.1
부두사용료	68	22	2,350	1,830	915	5,185	329	6.3
합 계	1,520	492	6,952	6,724	3,362	19,050	2,611	13.7

7. 여수항 원가회수율

(단위 : 백만원)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계	수입	원가회수율 (%)
선박입항료	1,319	551	5,367	3,527	4,232	14,996	9,960	66.4
선석사용료	1,073	373	3,627	2,472	2,966	10,511	3,897	37.1
부두사용료	61	19	2,521	1,267	1,521	5,389	1,030	19.1
합 계	2,453	943	11,515	7,266	8,719	30,896	14,887	48.2

8. 포항항 원가회수율

(단위 : 백만원)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수입	원가회수율 (%)
선박입항료	3,150	1,768	17,492	3,319	2,323	28,052	4,262	15.2
선석사용료	2,989	1,023	10,125	2,094	1,466	17,697	18,915	106.9
부두사용료	181	85	3,916	620	434	5,236	5,231	99.9
합 계	6,321	2,877	31,534	6,032	4,222	50,986	28,408	55.7

9. 마산항 원가회수율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수입	원가회수율()
선박입항료	1,147	953	9,392	2,290	1,832	15,614	3,309	21.2
선석사용료	1,208	600	5,919	1,540	1,232	10,500	4,842	46.1
부두사용료	55	27	7,208	1,453	1,162	9,904	1,175	11.9
합 계	2,410	1,580	22,519	5,283	4,226	36,019	9,326	25.9

10. 울산항 원가회수율

(단위 : 백만원)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 계	수입	원가회수율 (%)
선박입항료	470	219	2,153	526	578	3,946	15,859	402
선석사용료	2,409	891	8,756	2,229	2,452	16,739	5,296	31.6
부두사용료	64	27	5,891	1,106	1,217	8,304	1271	15.3
합 계	2,943	1,137	16,800	3,861	4,247	28,989	22,426	77.4

11. 제주항 원가회수율

(단위 : 백만원)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계	수입	원가회수율 (%)
선박입항료	727	335	3,319	969	1,066	6,416	19	0.3
선석사용료	232	86	849	258	284	1,709	366	21.4
부두사용료	36	17	11,515	2,557	2,813	16,937	132	0.78
합계	995	438	15,682	3,784	4,162	25,062	517	2.1

<부록 D> 埠頭使用料 算定方式

항 만	원가(백만원)	화물량('95)	x	화물량('96)	x	증가율(%)
부산항 (컨부두) (재래부두)	112,750 (83,514) (29,236)	} 370,372,388x	225	386,860,194x	291	4.5
인천항	65,761					
평택항	647					
동해항	8,211	181,616,000x	362	181,616,000x	362	10.3
군산항	5,555	19,877,820x	33	25,987,219x	25	30.7
목포항	8,211	21,339,683x	385	21,506,873x	382	0.8
여수항	5,555	13,698,148x	406	17,031,566x	326	24.3
포항항	5,185	5,599,037x	926	6,679,096x	776	19.3
마산항	5,389	17,511,159x	308	18,157,173x	297	3.7
울산항	5,236	88,965,220x	59	95,796,382x	55	7.7
제주항	9,904	19,987,057x	496	20,056,884x	494	0.3
	8,304	21,630,000x	384	22,000,179x	377	1.7
	16,937	2,240,086x	7,561	2,760,175x	6,136	23.2
합계	243,879	762,836,598x	320	798,451,740x	305	6.1

<부록 E> 현행사용료 적용시 98년도 사용료 예상수입 및 원가 회수율

1. 선박입항료

現行使用料 適用時의 98年度 船舶入出港料 豫想收入 및 原價回收率

항만	원가(백만원)	추정수입(백만원)	원가회수율(%)
부산항	21,160	25,679	121.4
인천항	10,693	10,192	95.3
(선거내)	(7,858)	(8,890)	-
(선거외)	(2,835)	(1,302)	-
평택항	245	2,163	882.9
동해항	18,306	993	5.4
군산항	2,661	1,174	44.1
대산항	3,292	1,818	55.2
목포항	4,034	505	12.5
여수항	14,996	9,960	66.4
포항항	28,052	4,262	15.2
마산항	15,614	3,309	21.2
울산항	3,946	15,859	401.9
제주항	6,416	19	0.3
합 계	129,415	75,933	58.7

주) 추정수입금액은 외항선입항톤수 추정치에 현행 사용료 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선석사용료

現行使用料 適用時 98年度 船席使用料 收入 및 原價回收率

항 만	원가(백만원)	추정수입(백만원)	원가회수율(%)
부산항	19,814	22,187	112.0
(컨부두)	(9,289)	(6,963)	75.0
(재래부두)	(10,525)	(15,224)	(144.6)
인천항	19,366	26,901	(138.9)
(선거내)	(9,233)	(25,628)	277.6
(선거외)	(10,133)	(1,273)	12.6
평택항	2,552	947	37.1
동해항	4,882	3,107	63.6
군산항	16,148	2,523	15.6
대산항	-	-	-
목포항	9,830	1,777	18.1
여수항	10,511	3,897	37.1
포항항	17,697	18,915	106.9
마산항	10,500	4,842	46.1
울산항	16,739	5,296	31.6
제주항	1,709	366	21.4
합 계	129,746	90,758	70.0

주 1) 추정수입금액은 1998년도의 선박접안톤수 추정치에 현행 접안료 적용하여 산출

3. 부두사용료

現行 使用料 適用時 98年度 埠頭使用料 收入 및 費用 推定値

항 만	부두사용료원가(백만원)	예상수입(백만원)	원가회수율(%)
부산항	112,750	21,779	19.3
인천항	65,761	9,980	15.2
평택항	647	1,169	180.7
동해항	8,211	1,255	15.3
군산항	5,555	805	14.5
대산항	-	-	-
목포항	5,185	329	6.3
여수항	5,389	1,030	19.1
포항항	5,236	5,231	99.9
마산항	9,904	1,175	11.9
울산항	8,304	1,271	15.3
제주항	16,937	132	0.8
합 계	243,879	44,156	18.1

주 1) 예상수입금액은 98년도의 입출항화물에 현행 요율 수준 적용시 예상되는 수입임.

4. 사용료 예상 총수입 및 원가회수율

現行 使用料 適用時 98年度 總收入 및 總費用 推定値

(단위 : 백만원)

항 만	선박입출항료 수입	선석사용료 수입	부두사용료 수입	총비용	총수입	원가회수율 (%)
부산항	25,679	22,187	21,779	153,724	69,645	45.3
(컨부두)	-	(6,963)	-	-	-	-
(재래부두)	-	(15,224)	-	-	-	-
인천항	10,192	26,901	9,980	95,820	47,073	49.1
(선거내)	(8,890)	(25,628)	-	-	-	-
(선거외)	(1,302)	(1,273)	-	-	-	-
평택항	2,163	947	1,169	3,444	4,279	124.2
동해항	993	3,107	1,255	31,399	5,355	17.1
군산항	1,174	2,523	805	24,364	4,502	18.5
대산항	1,818	-	-	3,292	1,818	55.2
목포항	505	1,777	329	19,050	2,611	13.7
여수항	9,960	3,897	1,030	30,896	14,887	48.2
포항항	4,262	18,915	5,231	50,986	28,408	55.7
마산항	3,309	4,842	1,175	36,019	9,326	25.9
울산항	15,859	5,296	1,271	28,989	22,426	77.4
제주항	19	366	132	25,062	517	2.1
합 계	75,933	90,758	44,156	503,045	210,847	41.9

全國 港灣의 施設使用料率 算定에 관한 研究

1997年 10月 25日 印刷

1997年 10月 31日 發行

編輯兼 洪 承 湧
發行人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4-10
電 話 569-2761 ~ 8 FAX. 565-7403
登 錄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 永信印刷公社 267-3550